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학술대회

일제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일본군 '위안부'

-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09:30~17:00
- 장 소: 서울 프레스센터 회의실(19층)
- 주 최: 한국근대현대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근현대사학회

305-764

220

042-821-6317

hjong@cnu.ac.kr

<http://www.kmch.or.kr>

동북아역사재단

120-705

77

02-2012-6072

drhyunju@historyfoundation.or.kr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학술대회 일정

접 수 09:30
개 회 식 10:00~10:20

사회 : 이훈 (동북아역사재단 제1연구실장)

개회사 : 김상기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축 사 :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제1부 기조발표 및 주제발표 ■

사회 : 이훈

기조발표 일본군 '위안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윤정옥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10:20~10:40

제1주제 일본의 군 '위안부'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발표 : 吉見義明 (일본 中央大 교수)10:40~11:10

토론 : 정태현 (고려대 교수)

휴 식 (11:10~11:20)

제2주제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여성정책과 일본군성노예제

발표 : 강정숙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11:20~11:50

토론 :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3주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징집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

발표 : 윤명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11:50~12:20

토론 : 김부자 (한신대 교수)

오 찬 (12:20~13:20)

■ 제2부 주제발표 ■

사회 :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제4주제 동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에게 행해진 강제매춘(1942~1945)과
현재(1945~2007) 네덜란드 생존자의 증언

발표 : Esther Captain (네덜란드 Utrecht대학 연구원)13:20~13:50

토론 : 장석홍 (국민대 교수)

제5주제 대만의 일본군 위안소와 성폭력(1936~1945)

발표 : 朱德蘭 (대만 中央研究院 연구원)13:50~14:20

토론 : 藤永壯 (일본 大阪産業大學 교수)

휴 식 (14:20~14:30)

제6주제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

발표 : 한혜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14:30~15:00

토론 : 박명수 (원광대 교수)

휴 식 (15:00~15:10)

종합토론 15:10~17:00

좌장 : 박찬승 (한양대 교수)

만찬 (17:30~)

개 회 사

한국근현대사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일제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원을 비롯한 연구자 여러분께 주최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중·일 나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 7월 미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1월에는 네덜란드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제가 자행한 반인륜적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군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증거하는 자료가 없다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제 침략과 관련된 일본 우익세력의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우익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연구와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 역사학계는 제대로 대응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었지만, 한국 역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자료의 발굴과 고증에 철저한 역사학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윤정옥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吉見義明 교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성과를 현단계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강정숙 선생님은 ‘위안부’제도의 운영에서 일제 권력기관의 강제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명숙 박사는 한국인 여성의 ‘군위안부’로의 강제동원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 Esther S.J. Captain 박사와 朱德蘭 박사는 일본군의 네덜란드와 대만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성폭력 실태를 고발합니다. 한혜인 박사는 일제의 폭력적인 조선인 노동력 동원의 실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조발표를 흔쾌히 맡아주신 윤정옥 선생님과 발표를 수락하여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박찬승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정태

현, 서현주, 김부자, 장석홍, 藤永壯, 박맹수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제의 강제성을 구명하는 학술연구와 발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뿐 만 아니라, 20세기 제국주의국가의 폭력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안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역사 속에 숨어 있던 사실들이 새롭게 발굴되어 한 맺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예우와 추모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한국근현대사학회장 충남대 교수 김 상 기

축 사

존경하는 김상기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님과 그간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일제 지배의 폭력성과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기조 강연을 맡아 주신 윤정옥 선생님과 바쁘신 가운데 네덜란드와 대만 및 일본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및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기라고 할 만한 해였습니다. 미국 하원과 네덜란드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캐나다와 유럽의회에서도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을 받아들이라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회의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과 대만 및 네덜란드에서의 일본군 위안부제의 실태를 고찰하고 일본에서의 군 ‘위안부’ 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함으로써,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침략점령했던 아시아 각국에 일본군 ‘위안부’가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여성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재와 향후의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제의 전체상을 해명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아직도 그 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게으름을 스스로 채찍질하고 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목 차

기조발표	일본군 ‘위안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윤정옥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11
제1주제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발표 : 吉見義明 (일본 中央大 교수) …… 토론 : 정태현 (고려대 교수) 《원문》 ……	17 43
제2주제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여성정책과 일본군성노예제 발표 : 강정숙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토론 :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67
제3주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징집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 발표 : 윤명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토론 : 김부자 (한신대 교수)	87
제4주제	동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에게 행해진 강제매춘(1942~1945)과 현재(1945~2007) 네덜란드 생존자의 증언 발표 : Esther Captain (네덜란드 Utrecht대학 연구원) …… 토론 : 장석홍 (국민대 교수) 《원문》 ……	109 128
제5주제	대만의 일본군 위안소와 성폭력(1936~1945) 발표 : 朱德蘭 (대만 中央研究院 연구원) …… 토론 : 藤永壯 (일본 大阪産業大學 교수) 《원문》 ……	149 180
제6주제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 발표 : 한혜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토론 : 박맹수 (원광대 교수)	199

《기조발표》

일본군 '위안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윤 정 옥*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 까지 일본에 의해 강제 연행된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조선에서 연행된 소녀와 여성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밑에서 성차별을 받고,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서민층의 딸들이기 때문에 조선 사회 안에서도 차별 받아 끌려갔던 것이다.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는 일제의 수탈이 점점 심해져 결국에는 말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는 시기였다. 노동력을 목적으로 장정들을 끌어갔던 일본은 젊은 청년들을 일본 군인으로 끌어갔다. 이때 조선 사회에서는 우리의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삼는다고 격분했다. 문서상으로 '중군 위안부'로 끌려가기 시작 한 해는 1932년으로 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기 시작한 시기는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1932년 보다 앞선다고 추측된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관이 '정신대'라는 이름아래 미혼녀들을 연행해 갔다. 일반 사람들은 처녀만을 잡아간다고 해서 '처녀공출'이라고 불렀다. 정확한 이름은 일본군 성노예일 것이다. 사실 2000년 12월에 열렸던 '일본군 성노예제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도 이들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불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성노예가 아니고 '위안부'로 불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안부'라고 부른다.

본인이 이 시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조선 사회에서도 소외되었던 서민층의 어

*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일본 강점 아래 가장 참혹했고 무거웠던 멍에를 짊어졌다는 사실이다. 1992년 일본의 미야자와 총리가 방한 한 것을 계기로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 본인은 이때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 조선 여성들은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당한 순간부터 사람임을 강탈당했다. 이효재 교수와 본인은 이 할머니들이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 피해자들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가 일본에 요구해 온 항목은 :

1. 진상을 규명하라.
2. 공식 사죄하라.
3.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하라.
4. 책임자를 처벌하라.
5. 추모비를 건립하라.
6.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라.

이다. 한국에 머무른 동안 미야자와 총리는 여러 번 사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총리 개인의 사과였지 일본의 공식 사죄가 아니었다. 피해자들과 정대협이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강도 높게 요구하자 해방 50주년이 되는 1995년을 기해 일본이 내놓은 안은 '아시아의 여성과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이었다. 국민기금은 일본군 '위안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기금의 발상은 정부요, 사무실 일체 비용도 정부가 대고 인건비도 정부가 지불했다. 피해자들의 위로비는 국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치고 의료비 명목은 정부 예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이 단체가 사단법인인데 국민기금을 대표해서 편지를 쓴 사람은 관리인 정부의 총리로 돼 있었다. 사단법인 국민기금의 이사장이 대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처음부터 국민기금을 한국과 북조선, 대만 등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을 반대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으며, 배상금 대신 일반 국민들에게 돈을 거두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조로 건네는 형식으로 국제여론을 무마해,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되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기금의 돈과 편지를 받으

면 피해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된다. 대만 정부는 1997년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200만엔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고 국민기금에게는 피해자들 몫으로 책정한 돈을 대만 정부에 보내라고 통고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국민기금 상당액(IMF관계로 본시 책정했던 금액보다 약간 적어졌지만) 3,150만원을 전달했다. 이때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을 받지 않는다, 만일 받을 경우에는 한국정부에서 받은 돈을 한국정부에 반환한다'라는 각서에 서명하고 날인했다.

국민기금측은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불하기 전에 기금을 받은 피해자 인원수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국민기금의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이 피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국민기금을 받으라고 종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고도 국민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각서에 도장을 찍었을지라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그의 방문은 돈을 받은 피해자와 받지 않은 피해자, 정대협과 피해자 사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대협은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그 사람을 한 때 입국 금지 시킬 정도였다. 국민기금은 그 돈을 받은 피해자의 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1992년 미야자와 전 총리의 방한부터 시작한 일본 안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망언은 역사교과서 왜곡에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내명을 다 못 산다'고 하는가 하면 '사죄를 받아 낼 때까지 죽지 못 한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1998년 4월 제5차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2000년 12월에 '일본군 성노예제 전범 여성 국제법정'(여성국제법정)을 도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에서 공식사죄 등을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피해자들은 예외없이 고령인데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두 세가지 이상의 병을 앓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본군의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온 세계에 알리고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모든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목적이었다. 실제로 2000년 12월 도쿄에서 판결과 사실인정을 하고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1991년 12월부터 김학순 할머니가 일으킨 재판을 시작으로 일본에 고소한 8건의 고소는 모두 기각당했다. 성노예제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불처벌'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트로이 전쟁터를 발굴하는 것과 같은 고고학

적 학문이 아니다. 반세기 너머 그 수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젊음을 짓밟힌 여성들--지금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제는 할머니가 된 여성들의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여성 국제 법정 of the 현장 작성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판사, 법률 고문, 수석 검사들을 모시는 것도 어려웠다. 법정을 열기 위한 모금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법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정을 제안한 마쓰이 야요리와 VAW-net Japan의 힘이 컸던 점을 감사한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남과 북은 준비단계에서 끝까지 완전히 하나의 '코리아'였다는 점도 말해둔다.

또한 힘들었던 문제 중 하나는 일왕 히로히토를 피고로 앉히는 일이었다. 법률고문과 판사 등 법정 수뇌부는 전범자9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왕 히로히토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그를 피고로 앉히기를 꺼려했다. 그들이 내는 해결책은 가능한 한 재판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대 규모의 심포지움이었다. 코리아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남북 '위안부' 피해자들의 바람은 일본 재판정보보다 더 큰, 더 권위있는 재판정에서 일왕 히로히토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육해군의 총책임자이며 대원수였던 일왕을 피고로 앉힐 수 없다면 코리아는 이 법정에 참가할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당시 일왕 히로히토는 일주일에 한번 어전회의를 열어 보고를 받았다. 전쟁에 관한 한 모든 것은 그의 명령 아래 이루어지고 '중군 위안부'도 그가 '어린 자식'(세키시)에게 내린 하사품이었다. 만일 그가 '위안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결국 코리아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여성국제법정에서 수석판사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부장판사가 '텐노' 히로히토와 9명의 전범의 유죄 판결과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 책임 있음'을 선포하였다.

여성국제법정은 시민재판으로, 상징적 재판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주최측은 이 법정에서 내린 심판은 세계인의 양심과 도덕의 힘이 내린 심판으로 어느 국가의 사법기관이 내린 판결보다 약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인정한 권위 있는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법정은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과 사죄와 보상 등 9개 항목의 권고를 공포했다.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우리의 희망은 강덕경 할머니의 그림 중 마지막 대작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그림 가운데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그 나무에 일왕 히로히토로

추측되는 군인이 가시철망으로 묶여있다. 삼세번을 뜻하는 동·서·남 세 군데에서 권총을 든 세손이 그를 겨누고 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책임자를 처벌하라'이다. 그런데 새빨간 배경에는 새하얀 비둘기가 여러 마리 날고 있고 나뭇가지에는 소복이 놓인 비둘기 알이 빛나고 있다.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법정이 열리던 도쿄 '구단자카 군인구락부'밖에서는 일본의 극우들이 확성기로 여성국제 법정은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열고 있다고 계속 소리쳤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 중에는 일본이 판결에 굴복해서 사죄하고 배상은 아니라도 보상을 하리라고 기대한 분이 있었다. 관련단체들은 일본이 그렇게 쉽게 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종판결 후의 일본극우의 태도는 의외였다. NHK에서 방영한 법정 다큐멘터리는 날조에 가까운 왜곡이었다. 많은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대목이 삭제되는가 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는 평화 헌법 제9조 개헌론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결의안이 미국 하원과 네덜란드 의회를 통과했고 지금 여러 나라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문제 조사에 협조적이기를 기대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피해자들은 조선이 가장 참혹했던 역사를 짊어진 주인공들이다. 김구, 김좌진 등과 다른 의미에서 우리 역사를 짊어진 주인공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수가 몇 만명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이 기막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국내에서 연구가 되지 않고, 학교에서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2세, 3세가 또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우리 딸들을 몽고에 보낸 일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TV같은 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넓게 공유하고 있었다면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그곳 여성에게 그렇게 대규모로 무참하게 성폭행 내지 여성 학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에서 우리의 2세가 30대 중반이고 그들의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베트남 여성 성폭행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학문에서 경계선에 허물어지고 있는 줄 안다. 역사학, 사회학, 문학, 정치학, 법학 등등과 폭 넓게 문호 개방을 하여 연구하고 있는 줄 안다. 학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삶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를 연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기대가 크다. 반세기

넘어 끌어 온 역사의 숙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푸는데 다른 분야와 손을 잡고 풀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아있는 동안 일본의 사죄와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성노예제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남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후세에 철저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 강덕경 할머니를 위시해서 모든 피해자와 피해국과 가해국의 모든 사람들이 반세기 넘게 끌어온 숙제를 풀 수 있었으면 한다.

지구 시민들의 숙원인 사회정의와 평화에 조금이라도 많이 다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吉見義明 *

1. 들어가는 말
2. '위안부'제도와 일본군의 관계에 대해
3. 강제 내용
4. 위안소에서 강제
5. 모집 시의 강제
6. 미성년자의 연행과 매춘 강요
7.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1991년 12월, 김학순(金學順)씨를 비롯한 한국인 전 '위안부(慰安婦)'가 다른 전쟁피해자와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지 16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일본에서의 군 '위안부' 문제 연구는 매우 왕성하게 진행되어 왔다.¹⁾ 물론 일본에서는 '위안부'문제의 본질은 상행위라고 주장하는 측의 캠페인도 매우 격렬하게 이루어졌으나 이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연구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하야시 히로시〔林博史〕 편, 『공동연구 일본군 위안부』(大月書店, 1999)와 요시미 요시아키, 『중군위안부』(岩波新書, 1995), 그리고 VAW-NET JAPAN 편,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한다 - 2000년 여성전

* 日本 中央大學 교수.

1) 본고는 줄고 「從軍慰安婦問題-研究の到達点と課題」, 『歴史評論』 576호, 998.4, 「日本軍性奴隸(從軍慰安婦)制度研究の現段階」, 『戦争責任研究』 38호, 2002.12; 「米下院'慰安婦'決議案と河野談話」, 『戦争責任研究』 56호, 2007. 6 를 종합하여 가필한 것이다.

범 국제법정의 기록(日本軍性奴隸制を裁く—2000年女性戦犯国際法廷の記録)』 전6권(綠風出版, 2000-2002)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해 우선 첫 번째로 들고 싶은 점은 생존 '위안부', 지원 단체, 법률가, 역사연구자가 협동했다는 사실이다. 1994년 11월에 ICJ(국제법률가 위원회)의 보고가 이루어진 이래,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 2월에는 국제인권위원회에 크마라스와미 보고, 1998년에는 동 소위원회에서 맥도걸 보고, 1996년 3월 ILO 전문 위원회의 연차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2001년 1월에는 2000년에 열린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큰 국제적 조류 속에서 '위안부'문제가 부녀매매금지 조약, 강제노동 조약, 헤이그 육전(陸戰) 법규, 노예조약에 위반하는 문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욱이 전체적으로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민이나 지원 단체, 역사연구자의 활동에 힘입어 생존 '위안부'들의 구술자료 확보나 문헌자료 발굴이 진전되었다. 전 '위안부'인 이들이 자진해서 발언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불가능하게 여겨진 아시아 각지의 생존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성사되었고 많은 이들의 노력이 거듭된 결과 증언기록이 제법 축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료의 발굴도 상당히 진전되었다.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에서는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1993년 7월에 공표한 바 있다.²⁾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에 있는 전사(戰史), 전쟁 체험기 중에 있는 '위안부'관련 기술 조사를 수행하여 1994년 3월에 공표했다.³⁾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일본 국가의 단순한 '관여'라는 정도를 넘어, 군 자신이 이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한 점, 군이 바로 주체였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더욱이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대표가 중심이 되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 배상, 갱생의 권리에 관한 원칙을 천명한 환·보벤 보고가 소개되었고⁴⁾ 이것과 관련지으면서 1995년 5월에 자료센터는 전 '위안부'의 피해회복을 위한 제언을 공표했다.⁵⁾

셋째, 이상의 성과를 통하여 '위안부'제도라는 것은 일본군의 성노예제였음이 명백

2) 『戦争責任研究』創刊号,1993.7 수록

3) 『戦争責任研究』3号,1994.3, 5号 1993.9 수록

4) 『ファン・ボーベン国連最終報告書』, 日本戦争責任センター,1994.

5) 『戦争責任研究』4호,1994.6

해지게 되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강제연행'의 사실여부나 '강제매춘'이라는 낯은 시점을 불식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군(軍)의 성 노예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각 지역에서의 조사와 연구가 매우 심화되어 왔다.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네덜란드 여성을 포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의 사례가 꽤 밝혀지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내용적인 정밀도는 차이가 있으나 1995년 이래 전개된 연구 중에는 중국 산서성 조사와 같은 눈부신 성과가 산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동부 뉴기니 등 태평양 지역의 연구가 적다는 점은 현재의 한계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의 그동안의 연구를 개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위안부'제도와 일본군의 관계에 대해

1) 일본군은 다소 '관여'했을 뿐인가? 주역의 문제

'위안부'의 모집과 동원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1992년에 군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1993년에는 강제성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누가 강제했고 누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는 확실하지 않다. 1993년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河野洋平〕의 담화를 보면, 그 주요책임은 업자에게 있으며 군은 다소 '관여'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이해된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일본정부는 보상금은 일절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그것은 이러한 정부견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안부'제도가 존재했다는 점 자체도 일본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동안 군 관계 자료가 다수 발굴되었다. 또한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는 국회도서관에 있는 전 일본군인의 전쟁체험기나 부대사(部隊史) 조사에도 착수했다. 그 결과 제1차 상해사변(1932) 때나 중일전쟁(1937)기에는 위안부 설치에 파견군이나 방면군(方面軍) 등 현지 군의 수뇌가 지시했다는 점, 아시아 태평양 전쟁 기에는 육군성과 해군성이 지시했다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위안부'제도의 창

설과 운용의 주역은 군이며, 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⁶⁾

전지(戰地)와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만들 때 그 결정은 부대장 등이 하는 것이며 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위안부' 모집의 지시, 건물의 접수, 위안소 규칙·요금 결정, 각 부대 이용일 지정, 경영·경리 감독, 영업보고서 제출 지시, '위안부'의 성병 검사 등도 군이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위안소라는 것은 군인·군속 전용 시설이었다. 위안소의 법적, 제도적 성격에 관해서 나가이〔永井和〕씨는 당초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에 기초하여 병참 부속시설로 설치되었다고 설명한다.⁷⁾ 따라서 위안부 문제가 '제도'가 아니었다던가, 군은 약간 '관여'했다던가의 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일본군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2) 보조자 역할 해명 문제

그러나 해명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그 중 하나는 제도를 뒷받침한 군 이외의 사적 조직에 속하는 인물들의 연구인데 이것은 그동안 미진한 분야로 생각된다. 이것은 중개업자 혹은 인신매매업, 매춘업에 관여한 조직이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야스마루〔安丸良夫〕씨가 필자의 연구에 대해 제기한 비판 가운데 중개업자와 인신매매업자의 중요성을 들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매춘, 도박, 여러 가지 흥행, 하역업, 건축업 등 하층 노동력 조달과 밀수 등에 관계하고 있으면서 그 중 비합법적 수단을 구사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은 근대화해가는 일본사회를 근저에서부터 지탱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일 텐데 그들은 식민지라던가 전쟁터라던가 라는 상황에서는 한층 악랄한 활동을 전개했을 것이다.⁸⁾

이와 같은 사람들의 중요성은 물론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사의 실마리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해오지 못한 것은 그가 지적하는 대로이다. 이 방면의 연구가 진전된다면 이 문제는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그동안의 조사와 연구를 열거하면, 센타〔千田夏光〕씨가 중개업자와 인신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연구⁹⁾를 비롯하여 그 후 니시노〔西野瑠美子〕씨의 일본

6)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親書, 1995, 전계 『共同研究 - 日本軍慰安婦』가 대표적 성과이다.

7) 永井和, 『日中戦争から世界戦争へ』, 思文閣出版, 2007, 제5장

8) 安丸良夫, 「從軍慰安婦問題と歴史家の仕事」 『世界』 1998.5월호.

9) 千田夏光, 『從軍慰安婦』 双葉社, 1973.

인 업자를 인터뷰한 연구 성과¹⁰⁾, 그리고 나가이〔永井和〕씨의 경찰 대학교에서 출판한 경찰자료를 엄밀히 분석하여 1938년 초 일본내지의 업자의 동향을 밝힌 연구¹¹⁾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사 가운데 조선에서의接客업자의 상세한 연구를 포함한 윤명숙씨의 박사학위논문 『일본의 군대위안부 제도 및 조선인 군대 위안부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특별해야할 훌륭한 연구이다.¹²⁾

또한 타이완에서는 주덕란(朱德蘭)씨의 연구가 중요한데¹³⁾ 그 중요한 연구 성과의 하나는 일본해군이 해남도(海南島)에서 만든 위안소 건설, 〈특요원〉의 모집, 영업자금 대부 등을 타이완 척식주식회사가 청부맡아 복대공사(福大公司)라는 타이완의 하청회사에 발주했다는 구조를 해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가 축적된다면 군 '위안부'제도의 실상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며 군의 책임소재도 한층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일본군은 왜 '위안소'를 필요로 했는가? 설치 동기에 관하여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위안부'를 필요로 했을까? 청일, 러일전쟁 시에는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건너가 창부(娼婦)에 종사한 여성을 가리킴〕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이 두 전쟁을 포함하여 제1차 세계대전, 시베리아전쟁, 산둥출병 등에서는 어떠한지를 군의 자료에 입각하여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군 '위안부'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현재까지의 자료와 오카무라〔岡村寧次〕대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1차 상해사변부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매매춘 제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새롭게 재정립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군의 자료에 나타난 설치 동기를 정리하면, ①일본 군인에 의한 강간 방지, ②성병蔓延 방지, ③위안 제공, ④스파이 방지(방첩)의 네 가지 이유였다.¹⁴⁾

10) 西野瑠美子, 『從軍慰安婦』明石書店, 1992.

11) 永井和, 「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 『二十世紀研究』創刊號, 2000.12. 나중엔 永井和, 『日中戦争から世界戦争へ』, 思文閣出版, 2007 에 수록.

12) 이것은 尹明淑,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明石書店, 2003.으로 간행되었다.

13) 朱德蘭, 『臺灣總督府と慰安婦』, 明石書店, 2005, 朱德蘭 編, 『臺灣慰安婦關係資料集』全2卷, 不二出版, 2001. 이러한 하청관계가 성립한 경위는 해남도에 있는 일본해군이 대만 총독부에 요청하여 대만총독부가 지시하고 대만척식이든 복대공사가 건축, 모집, 자금대부 등을 담당하는 구조였음이 해명되었다.

14) 이하는 吉見義明, 「從軍慰安婦」問題で何が問われているか, 中村政則ほか編, 『歴史と眞実』,

이 가운데 ①강간 방지는 그다지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군기와 풍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안소를 설치한다는 조치는 모순이며 오히려 풍기를 어지럽혀 성폭력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②의 성병 방지도 마찬가지로 위안소의 존재가 성병 만연을 막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강간 방지도 성병 방지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 위안소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시되는데 그것은 ③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병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동기가 특히 일본군의 경우는 컸다. 왜냐하면 침략전쟁이었던 점, 승리의 전망도 불투명한 진흙탕 속의 전쟁이 되고 있었던 점, 출동한 병사의 명확한 교체·귀환의 기준이나 휴가제도가 없었던 점, 복지가 열악했던 점, 병사의 인권억압이 심했던 점 등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방치한 채로, 동시에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끓어오르는 불만이 군부 내에서 폭발하거나, 상관에 대항하거나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에게 〈여자〉를 제공했던 것이다.(또 하나 풍부하게 공급된 것이 술이었다.)

그리고 ④의 스파이 방지라는 이유가 첨가되었다. 이것은 장병이 전지에서 민간의 매춘업소를 다니며 그 곳의 여자와 친밀해지면 군의 기밀이 새어나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병에게는 민간 매춘업소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에 업자나 여성을 군이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위안소를 만들게 한 것이다.

이상이 그동안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항인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명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그것은 왜, 일본군은 이러한 강간사건을 수없이 일으키는 한편으로 '위안부'를 필요로 하는 군대가 되었는가 라는 문제이다. 그것은 근대적인 원정군에게 공통하는 문제(제국주의와 타민족 억압), 천황제 군대의 문제, 근대가 낳은 대중적 욕망 해방의 문제,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제(남권주의) 문제, 성적 방종을 내용으로 하는 남성문화의 문제,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위안부'제도 창설은 남성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점) 등의 문제들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에게 특징적인 문제와 제국주의적인 군대에 공통하는 문제를 관련지으면서 연구를 전개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인종차별(민족차별)과 계층차별(계급차별)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육군이

위에서부터 배치하는 '위안부' 수는 병사 100명 당 1명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던 점은 가네하라〔金原節三〕 육군성 의사과장의 업무일지나 다카마츠〔高松宮〕의 일기에서 밝혀진 사실이다.¹⁵⁾

그러나 각지에 주둔하는 부대가 독자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많았고 원래 명부 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의 숫자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앙이나 파견군 차원에서 명부를 만들어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1938년 11월에 육군성과 제21군의 요구로 내무성이 5 부현(府縣)의 경찰부에 명령하여 업자를 선정, 모집하게 하여 중국 광둥성(廣東省)으로 보낸 400명의 '위안부'의 경우, 내무성은 업자의 성명과 주소는 보고하게 했으나 '위안부'에 관해서는 인원수만을 기록하면 된다고 하였다.¹⁶⁾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정되는 인원수는 일정기간 감금, 강간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로 잡아서 5만 명 전후이며, 일정기간 감금되고 강간당한 이들을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숫자인 8만에서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실제의 인원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사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별 위안소의 숫자는 오키나와,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에서 행한 하야시 히로시〔林博史〕씨의 조사 등이 있는데¹⁷⁾ 이와 같은 조사는 각 지역에서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로 누가 희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압도적 다수는 일본인 이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이었다. '위안부'의 국가(민족)별 비율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곤란하나 어느 정도 추산은 가능하다. 1940년에 대본영 육군부 연구반이 정리한 「중일전쟁에서의 군기, 풍기의 견지에서 관찰한 성병에 관하여〔支那事変ニ於ケル軍紀風紀ノ見地ヨリ觀察セル性病ニ就イテ〕」를 토대로 살펴볼 때, 전지에서 새롭게 성병에 걸린 일본군 병사의 '상대녀'의 비율이 거의 '위안부'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선인은 51.8%, 중국인 36.0%, 일본인 12.2%이어서 압도적 비율은 조선인과

15) 金原, 「陸軍省業務日誌摘録」 1939.4.15 기술, 『戦争責任研究』 創刊號, 1993.9.21쪽, 『高松宮日記』 제4권, 中央公論社, 1996, 32쪽, 1942년1월16일의 기술.

16) 内務省警報局長通牒案, 「南支方面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 吉川春子 『從軍慰安婦』 あゆみ出版, 1997, 178-79쪽. 이것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17) 賀数かつ子, 「沖縄県の慰安所マップ作成をとおして」, 『第五回全国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報告書』 1994, 浦崎成子, 「沖縄戦と軍慰安婦」,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3卷, 緑風出版, 2000, 林博史, 「マレー半島の日本軍慰安所」, 『世界』 580号, 1993.3, 同, 「マレー半島における日本軍慰安所について」, 『関東学院大学経済学部一般教育論集』 15号 `同, 「シンガポールの日本軍慰安所」, 『戦争責任研究』 4号 `1994.6., 同, 「東南アジアの日本軍慰安婦」,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4卷.

중국인이다.¹⁸⁾ 만약 동일한 조사가 1942년에 이루어졌다면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 사실은 식민지·점령지 여성이 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있었던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0% 전후의 일본인 여성에 관해서 살펴 보면, 외무성은 1920년대 이래 내지에서 '가라유키상' 등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내무성은 1938년2월 경보국장 통첩으로 예외 조치로서 일본군이 주둔한 중국 점령지에 한하여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도항을 묵인하기로 하고 만21세 이상으로서 현재 「창기 그 외, 사실상 추업(醜業)에 종사하는」자의 도항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군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것 같다. 이러한 여성의 경우는 희생이 되더라도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겠으나 실제로 「창기 그 외, 사실상 추업(醜業)에 종사하는」자라는 것은 공인된 공창제나 묵인되고 있던 사창제라고 하는 사실상 성노예제도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며 농촌이나 도시의 압도적 빈곤가정출신 여성이므로 명백한 계급·계층차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인 '위안부'는 피해자로서 나서는 자가 없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일본상황으로는 나서자마자 '매춘부'로 매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인 업자의 조사와 더불어 일본인 전 '위안부'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실을 규명하는 신중한 조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3. 강제 내용

강제의 유무를 둘러싼 논의에 관해서는 일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자는 강제연행만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 개념 정의에서도 「관현이 말단에서 직접 관여한 노예사냥과 같은 폭력적 연행」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극히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연구자는 관현의 말단에서의 직접개입 문제나 모집 당시의 강제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18) 이 계산 방법은 앞서 소개한 『공동연구·일본군위안부』 12쪽 참조. 또한 일본군이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1942년 이후에는 이 지역여성들이 '위안부'로 모집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달라진다. 또한 점령지에서 일정기간 감금되어 고문을 당한 여성들을 더하면 전지, 점령지 여성의 비율은 높아 질 것이다.

이 사안이 넓은 의미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¹⁹⁾

그 내용은 ① 위안소에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가 있었던 점, ② 모집 당시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가 있었던 점, ③ 위안소에 미성년자가 연행되고 매춘을 강제당한 점 (국제 법에서 미성년자는 만21세 미만)이다. ②의 강제라는 것은 선불금으로 묶어두는 경우(인신매매 등)나 속여서 데리고 온 경우, 그리고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이론구성은 역사학자와 법률가와의 토론을 거쳐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²⁰⁾

이에 대해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논의, 예를 들면 우에노〔上野千鶴子〕씨는 국제법 위반이었다는 논의에 대해, 그렇다면 관련 국제법 체결 이전에는 '위법'이 아니었는가? 왜 '위안부'만이 대상으로 되는가, 국제 법은 열강간의 파워 폴리틱스의 타협의 산물인데 그에 의거하는 논의 자체는 국제질서를 정의로 착각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²¹⁾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들은 일본이 가입하고 있던 당시의 국제법 여하에 관계없이 '위안부'제도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국가의 책임을 문제삼는다. 또한 당시 국제 법에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국제법이 제약이 많은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법을 조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통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국제 법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는 없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 가운데에는 '인도에 대한 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우에노 씨는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전시 중의 국제법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나 제2차 대전 중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묻기 위해서 전후(戰後)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법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19) 吉見, 『從軍慰安婦』외에, 同, 「從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世界』626号,1996.9, 同, 「歴史資料をどう読むか」『世界』632号,1997.3 등.

20) 법률가의 성과로는 阿部浩己, 「軍隊'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 『法学セミナー』466号,1993.10, 日本辯護士連合会 『從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提言』,1995.1, 國際法律家委員會, 『國際法からみた從軍慰安婦問題』, 明石書店,1995, 『R・クマラスワミ國連報告書』,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1996, 戸塚悦朗, 「國際法による奴隷禁止と國連の活動」, 『法学セミナー』512号,1997.8 등 참조.

21) 上野千鶴子, 「記憶の政治學」, 『インパクション』103号,1997.6,161쪽.

4. 위안소에서의 강제

1) 약취(略取), 유괴, 인신매매

다음에서는 세 가지 측면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위안소에서의 강제인데 이것이 있었다면 모집 당시의 강제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군, 따라서 일본국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즉 형법의 약취·유괴죄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원력의 지배하에 두는 것인데 그 경우 속여서 그랬다던가, 유혹했다던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연행했다던가의 사항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²²⁾

이 점에 관하여 당시 일본·조선·대만에서 시행된 형법 제226조의 규정이 최근 세삼 주목받게 되었다. '위안부'문제와의 관련에서 그 중요성을 제기한 것은 도즈카〔戸塚悦朗〕 씨이다. 그는 1935년에서 1936년까지 상해(上海) 해군 지정 위안소 사건 재판의 판결문을 발굴하여 일본의 주선업자와 위안소업자가 1932년에 나가사키〔長崎〕에 사는 여성들을 유혹하거나 혹은 속여서 상해의 해군지정 위안소에 약 2년간 구속했던 일에 대해 형법 제226조 국외이송목적 유괴죄, 국외 이송죄에 해당한다고 고소당하였는데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와 나가사키 공소원(控訴院), 대심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상세하게 규명했다.²³⁾

이를 계승하여 필자는 형법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㉑ 형법제226조에서는 국외이송목적 약취죄, 국외이송목적 유괴죄, 인신매매죄, 국외이송죄가 동일한 죄라고 되어 있다.

㉒ 국외이송목적 약취죄라는 것은 국외이송을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이며, 국외이송목적 유괴죄는 국외이송을 위하여 사기 또는 유혹(감언)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이며, 인신매매죄라는 것은 국외이송을 위한 대가를 받고 인신(人身)을 수수(授受)하는 것이다.

㉓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약취의 경우만이 아니라, 속이거나 감언을 구사한 경우(유괴)나 인신매매(선불금을 주고 구속하는 것)도 유죄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거의 '위안부'의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²⁴⁾

22) 渡辺春己 외, 『歴史の事実をどう認定し、どう教えるか』, 教育史料出版會, 1997, 179-190쪽.

23) 戸塚悦朗, 「日本軍「從軍慰安婦」被害者の拉致事件を処罰した戦前の下級審刑事判決を發掘」 正・續, 『龍谷法學』 37卷3号, 2004.12. 38卷14号, 2006.3.

2) 군 '위안부' 제도는 성노예제도

위안소에서의 강제여부를 따질 때 '거부할 자유'나 국내의 공창제에서 외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폐업의 자유', '외출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거부할 자유'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은 피해자의 증언에서도, 당시 일본군의 증언에서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유명한 오키나와〔沖繩〕의 위안소 규정(산제(山第)3475부대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軍人俱樂部=関スル規定〕」)에 의하면 '위안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 첫째」라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²⁵⁾

'폐업의 자유'가 없었던 점은 그러한 '자유폐업'의 규정을 적어놓은 위안소 규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당해서 끌려온 '매춘'한 전력이 없는 일본인 여성이 아무리 저항해도 군은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는 점²⁶⁾, 군은 고생하며 모집한 '위안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즉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리가 없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폐업의 자유'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하타(秦郁彦) 씨와 같은 연구자조차 그 의미를 오해하여 선불금을 갚은 자에게 귀국을 인정하는 것이 '폐업의 자유'로 생각했다는 점도 드러났다.²⁷⁾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초보적인 오해이다.

일본군이 '외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은 각 부대가 작성한 많은 위안소 규정에 '위안부'의 외출을 제한한 조항이 있던 것에서도 명백하다.²⁸⁾

3) 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를 후지메〔藤目ゆき〕씨는 '폐업의 자유' 등을 운운하는 것은 근대공창제도의 명목성을 높이 평가하여 「합법화된 폭력인 공창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²⁹⁾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두고

24) 吉見, 「米'下院'決議案と河野談話-日本軍'慰安婦'制度研究の最新の知見から」, 『戦争責任研究』 56号, 2007.6, 2-3쪽.

25) 吉見, 「沖繩の慰安所規定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 『人文研紀要』(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 30号, 1997.11, 11쪽.

26) 長沢健一, 『漢口慰安所』, 圖書出版社, 1983, 147-149쪽, 吉見, 「米'下院'決議案と河野談話」, 『戦争責任研究』 56号, 2007.6, 8-9쪽.

27) 秦郁彦, 「慰安婦と731部隊'合體'の仕掛人」 『諸君』 1997.3, 49쪽 및 「朝まで生テレビ」 1997.2.1에서의 하타씨의 증언.

28) 吉見, 「沖繩の慰安所規定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 참조.

싶다. 공창제도와 '위안부'제도는 다른가, 아니면 양자는 모두 공창제도라고 간주해야 하는가라는 논의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필자는 근대공창제도의 명목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창기는 자유의사로 매춘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가 '자유폐업' 등을 지면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은 결여되어 있었다.³⁰⁾ 또한 창기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없었는데 '거부할 자유'는 있었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 1955년에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선불금으로 묶어놓고 매춘을 강제하는 시스템(인신매매)은 재판소가 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매매춘문제에 관한 무법상태를 시야에 넣지 않으면 역사의 실상은 밝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창제도는 사실상 성노예제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폐업'이라는 애매한 규정 밖에 없고 외출의 자유규정이 없는 식민지에서는 그 이상이다.³¹⁾ 군이나 총독부가 '위안부'를 송출하기 시작했을 때 식민지 지배 하에서 자립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던 하층민에게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³²⁾

그러나 '위안부'제도에서는 위에서 말한 명목적인 '자유'조차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공창제도에 관하여 「창기 가업(稼業)은 자유 가업으로서 소위 실(室) 대여업자와 창기가 고용계약 등을 하여 창기의 의사를 구속하고 추행을 강제하는 것 같은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재하고 있는데³³⁾ 의견상의 자유폐업 규정조차 없고 외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였던 '위안부'제도의 경우, 일본정부는 그러한 주장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공창제를 광의의 국가관리 매춘제도로 정의한다면, 국내의 관리매춘제도 뿐 아니라 (당시에도 현재에도) '위안부'제도도 모두 공창제도였던 것이 될 것이다. 그 점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위안부'문제의 해결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결을 위하여 양자의 공통하는 면과 차이점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 견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역사

29) 藤目ゆき, 「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 『戦争責任研究』 18号, 1997, 8쪽.

30) 小野沢あかね, 「戦間期日本における公娼制度廢止問題の歴史的特質」, 歴史學研究會篇 『性と勸力關係の歴史』 青木書店, 2004, 172-73쪽 참조.

31)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国家管理売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号, 41쪽.

32) 金富子, 「朝鮮植民地支配と朝鮮人女性」, 『共同研究・日本軍'慰安婦』 참조.

33) 外務省, 『婦人及兒童ノ売買禁止ニ関スル諸條約説明書』, 1925, 6.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우파의 논의로서 '위안부'제도와 공창제도는 동일한 것으로 모두 상행위이며 합법적이며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둘째, 양자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위안부'제도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북한에서 보이는 견해로서 여성의 처녀성을 중시하고 소위 '매춘부'와는 구별되는 순진무구한 '위안부'관, 희생양으로 보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견해이다. 셋째, 양자 모두 용서할 수 없으나 구별해야 한다고 보아서 '위안부'제도는 공창제보다도 노골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 입장에 속한다. 넷째, 양자는 같은 성격의 것이라는 입장으로 '위안부'제도를 공창제의 연장으로 볼지, 발전 형태로 볼지, 전면개화로 볼지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용서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송연옥씨나 스즈키 유코〔鈴木裕子〕씨, 후지메 유키씨 등이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즉 공창제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하는가라는 점이다. 창기단속규칙 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협의의 공창제를 가리키는지, 후지메씨와 같이 광의에서 국가관리 매춘제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지, 혹은 현재의 풍속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꽤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의미에서 공창제를 생각하고 싶은데 현재 단계에서의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싶다. 양자는 성노예제도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공창제도가 성노예제도라는 점은 1945년 이전의 폐창운동 중에서도, 인신매매와 자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의 '노예제도'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이 성노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가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는 의견상의 의제(擬制)를 만들어 성립시켰다는 점도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위안부'제도와 공창제도가 모두 성노예제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국가 자신이 정책적으로 개설, 운영, 감독했는지 어떤지의 차이이다. 군은 국가의 중핵인데 그것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였던 점은 공창제와 크게 다른 점이다. 둘째, 군인·군속의 전용이었는지, 개방된 민간인용이었는지의 차이이다. 셋째, 하야시 히로시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시(戰時)·전지(戰地)·점령지라는 군지배하에서 혹은 군법이 적용되는 아래에서의 성폭력인지, 평상시의 시민법이 적용되는 하에서의 성폭력인지의 차이이다. (더욱이 성폭력이 일본국내에서인지, 식민지에서인지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군 성노예제 하에서 매매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산서성(山西

省) 우현(孟縣)과 같은 감금·강간의 경우를 국가관리 매춘으로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위안부'제도는 공창제도의 발전 혹은 전면개화인지, 역전(逆轉)인지의 문제이다. 이 점은 하야시 히로시씨가 싱가포르의 공창제 폐지 당시 일본외무성이 협력하여 일본인의 창기를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위안부'를 다시 대량으로 동원해왔다는 점에서 '위안부'제도 창설은 역전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³⁴⁾ 또한 앞서 언급한 나가이씨의 논문은 1938년 초 '위안부' 모집에 나선 업자를 유괴범으로 오인하여 체포한 이유가 군이 위안소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업자의 설명에 대해 당초 경찰은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이며 사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군의 정책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업자의 행동을 공인하고 더불어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상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던 것은 아닌가?

단, 오노사와 (小野沢あかね) 씨는 일본정부는 유럽 폐창국의 비관을 받아 동남아시아로부터는 일본인 매춘부를 귀국시켰으나 일본세력권 안의 동아시아 각지로 나가는 인신매매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³⁵⁾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전쟁 이전과 전시에 일본에는 두 종류의 성노예제도가 있었다. 하나는 평상시를 중심으로 시민법이 작동하는 가운데 일본국내와 식민지에서의 공창제와 사창을 묵인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전시, 군법 하에서 전지 혹은 점령지에서의 군 성노예제(군'위안부'제)로서 여기에는 매매춘의 형태를 띤 것과 일정기간 감금과 강간의 형태를 취한 것이 있었다. 군 '위안부'제도는 노골적인 성노예제도이며 의견상의 '보호'규정 조차 없었다.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당시의 국제법만이 아니라, 국내법 저촉을 피할 수 없다. 국가와 군의 책임도 보다 직접적이었다. 공창제는 합법적인 의견을 가장한 교묘한 성노예제도였으며 식민지에서는 그 폭력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었다. 단,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악질적인가라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희생된 여성들에게는 그 어느 쪽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느 쪽도 지극히 악질적인 성노예제도, 성폭력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34) 『共同研究・日本軍'慰安婦'』, 113쪽.

35) 小野沢あかね, 「戦間期日本における公娼制度廢止問題の歴史的特質」, 歴史學研究會篇 『性と勸力關係の歴史』 青木書店, 2004, 176쪽.

5. 모집 시의 강제

모집의 강제에 관해서는 우선 ①약취, ②유괴, ③인신매매 등과 연결되는 사항이 문제라는 점은 앞서 서술한 대로이다.

1) 조선과 대만에서의 모집

조선과 대만 여성들이 대량으로 '위안부'로 송출당하는 사태는 애당초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³⁶⁾ 일본의 경보국장 통첩(1938년2월23일)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21세 미만여성의 도항금지, 비'매춘부'의 도항금지 만이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도항금지도 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총독부에서는 이러한 통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취급방법이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대만에서 「관헌이 말단에서 직접 노예사냥과 같은 폭력적 연행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은 노동동원이며 '위안부' 동원과는 관계가 없고 일본 측 증언에는 요시다(吉田清治) 씨의 증언이 있으나 때와 장소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는 등, 애매한 주장이어서 증언으로서 채용하기는 어렵다.³⁷⁾

그렇다면 실제로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해외로 송출되었는가? 조선과 대만의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유혹과 감언, 혹은 속아서, 혹은 일정한 협박에 의해 국외로 송출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것은 증언이나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리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소에 들어가거나 매춘을 강요당하게 된 것인데 이를 주도한 자는 앞서 언급한 형법 제226조의 네 가지 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조선 혹은 대만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여성들을 데리고 간 경우에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하기보다는 속이거나 인신매매로 끌고 가는 쪽이 가는 도중에 도망하거나 자살하는 예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취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적인 실행자는 과건군 혹은 조선총독부나 대만총독부가 선정한 업자, 혹은 조선군이거나 대만군이 선정한 업자였다. 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업자에게 청

36) 藤永壯, 「朝鮮殖民地支配と'慰安婦'制度の成立過程」, 『2000年國際戰犯法廷の記録』3卷은 이 시점에서 '위안부'제도의 성립과정을 밝힌 중요한 논문이다.

37) 吉見義明·川田文子編, 『從軍慰安婦をめぐる30のウソと眞実』, 大月書店, 1997, 26-7쪽 참조.

부하는 것, 지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웃소싱하는 쪽이 교묘하며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1941년12월에 태평양전쟁이 시작하기 전까지 식민지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독부가 맡고 있었다. 1942년 이후는 전쟁의 규모가 보다 커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조선군이냐 대만군이 선정하는 방식이 되었다.

조선총독부·조선군·대만총독부·대만군은 실제로 파견군의 요청에 따라 모집을 지시하고 있으며 업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업자가 여성들을 모집할 경우에 인신매매, 유괴, 약취에 버금가는 경우가 발생해도 실제로는 그것이 묵인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미군의 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신매매에 의해, 혹은 유괴, 기망(欺罔) 등, 예를 들면 쉬운 일이라던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던가, 간호부와 같은 일이라던가 라고 하여 매춘을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데리고 갔기 때문에 형법 226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에 그것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점령지의 군, 실제로 위안소를 설치한 현지의 파견군도 '위안부' 개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자세히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이 인신매매 혹은 유괴 등의 방법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예가 있다하더라도 위안소에 수용되어 매춘을 강요당했다.

다음으로 식민지에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가와노〔河野〕담화의 내용은 식민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의 문맥 속에서 진술한 것이다. 즉 조선과 대만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관해서도 다소 언급하고자 한다.

군인이나 총독부의 직원이 모집의 현장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헌병이라던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증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 직접 관여했는가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예를 들면 전 '위안부' 문필기(文必琪)씨는 속임수로 끌려 간 경우인데 연행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경관이 입회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윤명숙씨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을 해외로 유괴하는 사건을 조선총독부가 적발한 사례가 꽤 발견된다.³⁸⁾ 그 중에는 부산 호적부의 담당자가 유괴단에게 협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헌 등의 협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941년 관동군 특종 연습 당시 약 3,000명의 조선인 여성이 중국동북부(만주)

38) 윤명숙, 앞의 논문, 394-97쪽.

로 위안부로서 끌려갔다고 하는 전 일본군의 증언이 있는데³⁹⁾ 이처럼 대규모로 모집되는 경우는 어떠했는지는 앞으로 규명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군이나 관헌이 모집 현장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관헌이 모집 현장에서 직접 관여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모집 자체가 업자가 임의로 했던 것이 아니라 총독부 혹은 군이 전체로서 관리·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말단의 현장에서 어떠했는지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전도의 관점이다.

현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선군과 대만군, 혹은 총독부가 기존의 인신매매와 관리매춘조직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모집하게 했다는 점일 것이다. 윤명숙씨의 뛰어난 연구에는 그 점이 잘 명시되었다.⁴⁰⁾ 그리고 인신매매와 관리매춘에 관여하는 업자들이 유괴와 인신매매, 때로는 약취에 의해 여성들을 모집했다는 점도 규명되었다.

거기에서 문제는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을 담당하던 업자의 성격인데, ①그 업자는 군 혹은 총독부가 선정했다는 점, ②군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1942년 이후는 <군종속자>), ③모집과 도항에 있어서 군이나 총독부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점, ④군의 지시로 각 부대에 배속되었다는 점, ⑤군속은 아니지만 군속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이 밝혀졌기 때문에 위안부 제도가 군 혹은 총독부의 지휘 하에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미 서술한 것처럼 위안부의 창설과 운영의 주체는 군이었기 때문에 모집 당시나 이들을 부리는 데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주된 책임은 군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모집 실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전 '위안부'의 증언⁴¹⁾을 제외하면 단편적인 자료가 있는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해명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피해자 측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식민지의 총독부 관계자와 군관계자, 업자, 목격자의 증언 모음과 일본정부 소관 총독부 문서의 공개가 요구된다. 또한 조선에서 여성의 유괴범으로서 적발된 업자들의 재판기록 조사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재판기록은 한국 내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9) 金富子解説, 「関東軍による「慰安婦」動員に関する手紙」,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3巻, 334-37쪽.

40) 尹明淑, 「日中戦争期における朝鮮人軍慰安婦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32号, 1991.10; 同,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41) 조선과 대만의 전 '위안부'의 증언기록으로서 중요한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외, 『證言』, 明石出版, 1993, 台北市婦女救援社會福利事業基金會, 『臺灣地區慰安婦訪問調查個別分析報告書』, 1993이다. 또한 川田文子, 『皇軍慰安所の女たち』, 筑摩書房, 1993, 金富子외, 『もつと知りたいたい(慰安婦)問題』, 明石書店, 1995에 있는 송신도(宋神道)씨의 증언은 신뢰할만하다.

2)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모집

점령지인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어떠했을까? 이들 지역 출신의 여성들(인도네시아에서 구류된 네덜란드인 여성의 경우도 있는데)은 인신매매나 유괴만이 아니라 지역의 유력자로부터 인신제공의 측면에서 제공된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일본군이나 일본군 지배하의 관헌에 의해 약취되어 위안소에 들어간 경우, 소위 협의의 강제도 있는데 모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당했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

관헌에 의한 약취의 사례로 확인되는 예를 보면, 중국 산서성 우현의 예에 대한 재판이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이시다〔石田米子〕씨 등의 조사와 연구에 의해 실태가 해명되고 있다.⁴²⁾ 이것은 현지에 있었던 일본군 소부대와 중국인 경비대가 현지의 주민을 연행하여 일정기간 감금과 강간을 했던 예이다.⁴³⁾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일본군의 성폭력 실태를 정리한 기록을 소개한 가사하라〔笠原十九司〕씨의 귀중한 성과가 있다.⁴⁴⁾

42) 石田米子内田知行編, 『黄土の村の性暴力-大娘たちの戦争は終わらない』, 創土社, 2004.

43) 이것은 세 건의 재판이 이루어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재판소에서 사실인정이 이루어졌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인'위안부' 손해배상청구사건 제1차 소송의 도쿄 고등재판 판결(2004.7.28): 중국 산서성 이수매(李秀梅)씨 등 4명의 여성이 일본군 부대에 연행당해 감금과 강간을 당한 것에 관하여, 「팔로군이 1940년 8월에 행한 대규모 반격작전에 의해 일본군 북중국 방면군은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북중국 방면군은 동년부터 1942년에 걸쳐 주둔지 근처에 사는 중국인 여성(소녀를 포함)을 강제적으로 납치하고 연행하여 강간하였고 감금상태에서 연일 강간을 거듭한 행위, 소위 위안부 상태에 처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인정했다. ②중국인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사건 제2차 소송의 도쿄지방법관 판결(2002.3.29)과 도쿄 고등재판 판결(2005.3.18)과 최고재판소 판결(2007.4.27): 도쿄 지방재판은 1942년 일본병과 청향대(淸郷隊; 일본군에 협력한 중국인 무장조직)이 마을을 습격하여 산서성의 원고 곽희취(郭喜翠)씨와 후교련(侯巧蓮)씨를 폭력적으로 납치하고 감금한 후 윤간하였다(곽씨는 그후 두 차례 납치, 감금, 윤간 당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도쿄 고등재판은 이 인정을 거듭 확인했다. 그 후 최고재판소는 원고에 의한 상고를 기각했으나 일본병과 청향대에 의한 폭력적인 납치와 감금, 윤간의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했다. ③산서성 성폭력피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도쿄지방법관 판결(2003.4.24), 도쿄 고등재판 판결(2005.3.31): 도쿄 지방재판은 산서성의 만애화(萬愛花)씨 등 10명의 여성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1940년 말부터 1944년 초에 걸쳐 성폭력피해의 상황을 거의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했다. 또한 도쿄 고등재판은 이 인정을 답습했다. 역시 ④해남도 전 시 성폭력 피해배상 청구사건의 도쿄지방법관 판결(2005.8.30)에서도 중국 해남도의 여성 8명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본병에게 강간당한 후 납치, 연행되어 감금과 강간을 당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44) 笠原十九司, 「中國戦線における日本軍の性犯罪」, 『戦争責任研究』 13号, 1996.9, 同 「日本軍による性暴力の構造」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4巻.

(2)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도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압도적 다수는 감금과 강간을 당한 예이다. 대표적인 예는 마리아·로나·헨슨 씨에 대해 후지메〔藤目ゆき〕 씨가 매우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서 정리하였다.⁴⁵⁾ 헨슨 씨의 경우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본군에게 연행되어 일정기간 감금과 강간을 당한 경우인데 다른 여성들도 이러한 예가 매우 많다는 점이 피해여성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⁴⁶⁾

(3)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관해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를 한 공문서가 1994년에 공표되었다.⁴⁷⁾ 이에 의하면 미수를 포함하여 적어도 9건의 약취사건이 군과 관헌에 의해 일어났다. 첫째, 전쟁의 절정기와 점령 초기에는 일본 군인에 의한 강간사건이 다라칸, 메나드, 반둥, 파단, 플로렌스 등에서 다발하였고 자바 섬의 세마랑 인근 블로라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은 15명의 유럽인 여성이 두 채의 집에 감금되어 3주간 강간당했다고 적혀있다. 이것은 중국 산서성의 예, 필리핀의 예와 매우 유사하다.

둘째와 셋째는 마젤랑과 세마랑의 경우인데 구류소에 억류된 유럽인 여성 가운데 젊은 여성들을 선택하여 문자 그대로 관헌이 위안소에 연행해온 경우이다. 마젤랑의 경우는 1944년 1월 문틸란 구류소에서 일본군과 경찰은 여성들을 선별하여, 반대하는 구류소 주민의 폭동을 억압하고 연행했다는 것인데 그 일부는 되돌려 보냈고 대신에 '지원자'를 보냈다. 남은 13명의 여성은 마젤랑에서 연행되어 매춘을 강제당했다.

세마랑의 예는 동년 2월 세마랑 근교의 세 군데의 구류소에서 연행된 적어도 24명의 여성들이 세마랑으로 연행되어 매춘을 강제 당하였다.(유명한 세마랑 위안소 사건). 그 후 도망간 두 명은 경관에게 잡혀 되돌아왔으며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다른 한 명은 자살을 기도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 한 명은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았다. 그 후 포로수용소 관계자가 시찰을 갔을 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중지시켰으나 아무도 처벌하지는 않았다. 실제적인 처벌은 일본 패전 후 이루어진 BC급 전범재판을 기다리

45) 마리아·로사·르나·헨슨(藤目ゆき訳) 『ある日本軍'慰安婦'の回想』 岩波書店,1995.

46) 上田敏明, 「フィリピンの'慰安婦'性暴力の実態」, 横田雄一 「フィリピン・パナン島における性暴力」, 岡野文彦, 「フィリピン・マバニケ村」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4巻.

47)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voormalig Nederlands-Indie," *Tweede Kamer, vergaderjaar 1993-1994*, 23607, nr.1, Januari 1994. 이 문서의 영역을 토대로 한 일본어 역은 「日本占領下蘭領東インドにおけるオランダ人女性に対する強制売春に関するオランダ政府調査報告」, 『戦争責任研究』 4号, 1994.6 참조.

지 않으면 안 되었다.⁴⁸⁾

이것은 네덜란드 정부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료에 입각하여 적어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백인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강제의 범위를 매우 좁혀서 해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비의 강제'에 한해서라도 이만큼의 사례를 실제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위안부'문제를 극동 국제군사재판이나 BC급 전범재판에서 추궁하여 여러 건의 '위안부'재판을 행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 재판자료나 재판 자체의 연구도 중요한데, 토타니〔戸谷由麻〕씨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관하여 네덜란드가 일본군에 의한 여성의 조직적 성적 예속을 광범위하게 입증하고자 하여 피해여성으로서 아시아계여성을 선택했다는 점과 함께 그것이 <전쟁범죄>라는 주장을 역사상 처음으로 확립했던 점 등을 논증했다.⁴⁹⁾ 하야시〔林博史〕씨는 군과 관헌에 의한 약취의 사례를 입증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증거서류를 다시 정리하여 공표했다.⁵⁰⁾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관해서는 기무라〔木村公一〕씨의 연구를 비롯하여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⁵¹⁾, 네덜란드 정부 소장 자료의 대부분은 아직 비공개이다.

이에 입각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일본군의 성폭력과 '위안부'정책의 실태가 상당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들 자료의 전면공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48) 이하, 네 번째는 1944년4월, 헌병과 경찰은 세마랑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체포하여 세마랑 클럽(위안소)에서 선고를 행하여 20명의 여성을 스라바야로 이송한다. 그 가운데 17명이 플로레스 섬의 위안소로 이송되어 매춘을 강제 당했다. 라고 적혀있다. 다섯 번째는 1943년 8월, 시트본드의 헌병장교와 경찰이 4명의 유럽인 여성에게 출두를 명했다는 사례인데 여성들은 본드위소 호텔로 끌려가서 2일간 강간을 당했다. 그 가운데 두명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여섯 번째는 1943년 10월 헌병장교가 상기한 소녀 두 명과 다른 네 명의 여성을 본드위소 호텔로 연행한 사례이다. 그 외에 8명이 연행되었다고 적혀있다. 일곱 번째는 마랑의 사례인데 어느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마랑의 헌병이 세 명의 유럽인 여성을 감금하여 매춘을 강제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덟 번째는 미수사건인데 1943년 12월, 자바 섬의 솔로 구류소에서 일본군이 여성들을 연행하고자 했는데 구류소의 리더들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홉 번째는 과당의 사례인데, 1943년 11월 경, 일본군은 과당의 구류소에서 25명의 여성을 포트데콕크로 연행하고자 했으나, 구류소의 리더들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11명이 구류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선택'에 응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마지막 사례는 극단적인 식량 부족 등 구류소의 열악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9) 戸谷由麻, 「東京裁判における戦争犯罪と判決—南京事件と性奴隷に対する国家指導者責任を中心に」, 笠原十九司・吉田裕編, 『現代歴史學と南京事件』, 柏書房, 2006.

50) 林博史解説, 「東京裁判で裁かれた日本軍『慰安婦』制度」, 『戦争責任研究』 56号, 2007.6.

51) 内海愛子, 「スマラン慰安所事件」, 『インドネシア2』 5・6合併号, 1995, 川田文子, 『インドネシアの慰安婦』, 明石書店, 1997, 山本まゆみ, ウィリアム・ブラッドリー・ホートン 「日本占領下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慰安婦』問題」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4卷, 2000.

*

이상과 같이 전지와 점령지에서 군이나 그 지도하에 있던 관헌이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또한 『2000년 여성 국제전범 법정의 기록(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4권에 수록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다.⁵²⁾

(4) 일본군 협력자의 문제

전지·점령지에서는 총독부에 상당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현지의 모집에서는 현지군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부대의 부관이나 경리장교 등이 모집에 관여하여 현지의 유력자에게 요청하고(사실상 명령), 유력자가 희생자를 제공하는 사례나 군과 관헌에 의한 폭력적인 연행 사례가 꽤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전지에 출정한 경험이 있는 전 일본군이 부대사(部隊史)를 작성하거나 체험기를 출판하는 습관 덕분에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자료가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총독부의 직원이나 식민지 군에 있었던 일본군들은 철수 당시의 고충을 기록하는 것 외에 그와 같은 습관은 없다.)

이것과 관련하여 전지·점령지에서의 일본군에 협력한 이들의 문제도 앞으로 더욱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괴뢰정권과 위안소 설치와는 깊은 관계가 있다. VAW-NET JAPAN 편, 『2000년 여성 국제전범 법정의 기록』 전6권은 이 문제의 검토를 포함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연구의 최근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인데 이 가운데에는 임백요(林伯耀), 장우동(張友棟)에 의한 연구가 있다. 이에 의하면 괴뢰정권의 천진(天津)시 경찰이 천진 주재 일본군의 '요청'에 응하여 '위안부'를 제공한 실태가 천진 경찰자료에 의해 밝혀져 있다.⁵³⁾ 필자도 상해(上海)시 당안관(檔案館)에 있는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상해 시 정공서(政公署) 경찰국장이 1938년 9월13일에 상해의 백전(百田)부대 의광대(依光隊) 의광승(依光昇) 대장이 위안소〔妓室〕를 설치하고 강북(江北)출신 '기녀(妓女)' 12명을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군의 부당한 요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재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독변공서(督弁公署)에 보고하고 있는 자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37년12월에 상해 파견군은 남경(南京)시에 위안소를 만들고자 했는

52) 이하 소개하는 것 외에, 陳麗菲, 蘇智良, 「中國の慰安所に関する調査報告」, 森川万智子 「ビルマの慰安婦・性暴力」 등.

53) 林伯耀·張友棟, 「天津の日本軍慰安婦供出システム」, 『2000년 여성 국제전범 법정의 기록』 4권.

데 그 당시 이 임무를 담당한 장용(長勇) 참모는 상해로 가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여 청방(靑幫) 두목인 황금영(黃金榮)에게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⁵⁴⁾

산서성에 관해서는 이시다〔石田米子〕와 오모리〔大森典子〕 씨의 획기적인 연구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군에 협력한 〈경비대〉 문제가 있다. 이 경비대라는 것은 팔로군에 적대하던 현지의 유력자를 포함한 주민을 조직한 것인데 지휘권은 일본군이 갖고 있었다.⁵⁵⁾ 그리고 이 경비대의 구성원이 해방구의 여성 약취를 담당하고 있었다.

후지와라〔藤原彰〕 씨의 장교 시절의 회상기에 의하면 하북성(河北省) 경화진(景和鎭)에 있던 요리점 겸 위안소는 사진관과 과자점도 운영하고 있었고 마약도 취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지의 지주 출신자가 대장인 '특별공작대'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⁵⁶⁾

필자가 고서점에서 발견한 상해 파견군 군의부에 소속된 와타나베〔渡辺進〕 군의 대위의 일기에 의하면, 남경에 위안소를 만들 때 몇 루트로부터 '위안부'가 조달되는데, 그 중 하나가 동화양행(東和洋行)이라는 일본 현지기업이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군의들이 성병 검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되는 기록이 있다.⁵⁷⁾

이와 같이 일본군에 협력한 조직의 연구도 앞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6. 미성년자의 연행과 매춘 개요

이에 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이미 피해자 측의 증언, 일본군 자료, 미군 자료 등에서 조선과 대만 출신의 전 '위안부'나 필리핀 전 '위안부'의 경우 그 태반이 미성년자였던 점이 밝혀졌다. 다른 지역에서 모집된 '위안부'의 연령에 관해서도 연구는 진전되어야 한다.

54) 吉見, 「南京事件前後における軍慰安所の設置と運営」, 笠原十九司・吉田裕編, 『現代歴史學と南京事件』, 柏書房, 2006. 「飯沼守日記」 『南京戦史資料集』 偕行社, 1989 참조.

55) 石田米子・大森典子, 「中国山西省における日本軍性暴力の實態」,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4卷.

56) 藤原彰, 『中國戦線従軍記』, 大月書店, 2002.

57) 吉見, 「南京事件前後における軍慰安所の設置と運営」

7. 맺음말

연구의 진전에 불가결한 자료 발굴의 측면에서 일본국내에서는 전 일본 군인이 갖고 있던 일기나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업무일지나 종군일지의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연구는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발굴이 기대되는 지역은 중국이나 대만이 아닐까? 미국에서의 자료 공개는 「일본제국정부 기록 정보공개법」에 의한 신 자료의 공개가 진전되고 있어서, 군'위안부'문제에 관한 비공개인 자료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전쟁 중 미군이 압수한 일본군 자료는 원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다지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국민정부가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혹은 전후에 압수한 일본군자료나 재외공관자료 등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아직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이 공개되는 때가 온다면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해명될 것이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괴뢰정권의 자료, 혹은 그 경찰자료와 같은 자료가 중국 각지에서 공개된다면 자료 문제는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관해서는 네덜란드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침략전쟁을 행한 일본군이 일으킨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종차별과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중첩된 문제이다. 사실은 단순하지 않고 다면적이다. 그 다면적인 실태와 전체상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과제는 아직 남겨져 있다. 이것은 인식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식의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중학생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뿌리 깊은 주장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종차별, 계급차별이라는 문제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도 느낀다. 또한 현대사회의 군대에 성폭력이 항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여 이를 제거할 것인가하는 것도 21세기를 향한 중대한 과제이다. 근대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후 반세기 동안이나 방치되어온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현대 일본사회 및 문화의 문제로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번역: 윤소영, 충남대강사)

「일본의 군 '위안부'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 : 정 태 현(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먼저, 구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해 개척적인 연구를 하고 계신 요시미 요시아키 선생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분야 연구를 한 적이 없는 토론자가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 저간의 연구가 “강제연행의 사실여부나 강제매춘이라는 낡은 시각을 불식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군의 성노예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했다고 평가 -->

강제연행이나 강제매춘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낡은 시각”과 “성노예” 관점이 서로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가? 연구 시각의 “질적 전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군에게 특징적인 문제와 제국주의적 군대에 공통하는 문제”가 있다는 서술에 대하여 -->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양자가 뒤섞이면 '물타기'가 되어 제국주의 군대 일반의 보편적 특징(문제)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군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자를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왜 일본군에게만 군 소속 '위안부'가 존재했나? 일본의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가?

* 공창제나 사창제 하의 사실상 성노예 제도에서 고통 받았던 빈민층 여성에 대한 사회의 계급적 계층적 차별과 군 '위안부'의 존재양태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요시미 선생은 '위안부'를 공창제와 묵인된 사창제가 악화된(“공창제보다 노골적인”) 연장으로 보고 다만 군 성노예제는 매매춘 형태와 감금강간 형태가 함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자 모두 폭력적 성노예제도이고 “어느 쪽이 더 악질적인가라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 매매춘 범주에서 이해하는 것 같다. -->

그렇다면 돈을 번 조선인 ‘위안부’ 사례는 어떠하고, 있다면 요시미 선생은 조선인 ‘위안부’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반인륜적이더라도 ‘매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안부’가 돈을 번 사례가 일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서 ‘위안부’를 商行為라고 주장하는 인식과 요시미 선생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폭력이 수반된 매매춘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상 조선인(중국인 등 외국인) ‘위안부’가 피해자라는 점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또 감금 강간을 아주 좁은 의미로 제한한다. 결국 군인들의 일탈적 행위, 즉 범법당 사자와 해당 부대장 정도만 처벌하면 되는 수준이 되고 만다.

근대사회 들어 인권의식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국가권력의 묵인 아래 인신매매 형태가 존재했다. 이 때문에 요시미 선생은 성노예 개념을 공창, 사창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한다. 결국 요시미 선생의 성노예 개념은 매춘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구일본제국 군대 하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애초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할 때와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과연 군 ‘위안부’와 일본 민간사회에서의 공창-사창이 본질적으로 같은가?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시미 선생이 일본인의 시각에서만 ‘위안부’를 바라본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다른 외국인) 여성의 경우를 같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일본과 조선의 성문화나 ‘풍속산업’ 등 문화 차이, 식민지 지배 하의 조건을 배제하는 것 아닐까? 한국, 북한의 “순진무구한 ‘위안부’관” “희생양으로 보는 입장”은 요시미 선생이 보는 ‘위안부’관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희생양’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위안부’ 문제는 국적을 넘어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조선(외국) ‘위안부’에 대한 ‘특수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위안부’ 문제는 일본제국 군대 ‘내부’의 문제일 뿐이고 평화를 갈구하는 아시아인의 문제의식 소재로도 되기 어렵다.

* 일본인 여성 중에서 ‘위안부’ 피해자로 나서는 이가 없다는 것은 혹시 조선여성 피해자와 ‘위안부’에 이르게 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 요시미 선생은 ‘매춘부’

로 매도될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한국에서도 이러한 비난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이게 큰 우려일까?

*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강제연행'(관헌이 직접 관여했다는 좁은 의미)에 의한 '위안부'가 없다고 정말 단정할 수 있나? 요시다 증언이 모호한 점이 많지만 일제 지배 하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중개업자 인신매매업자 인터뷰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증언기록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다만, 요시미 교수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두거나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증언의 자료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 강제의 범주로 인신매매(선불금으로 구속), 속여서 데려온 경우, 폭행과 협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이 가운데 인신매매는 일본 우익들이 강조하는 상행위 사례 범주(물론 '나쁜' 경우이지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 경우에 대한 각각의 사례가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을까? 요시미 선생은 저간의 연구를 통해 세 경우의 비율이 어떻다고 보는가?

日本における軍「慰安婦」問題研究の成果と課題

吉見義明(中央大学 教授)

1. はじめに

1991年12月に、金学順さんをはじめ数名の韓国人元「慰安婦」が、他の戦争被害者とともに、日本政府の謝罪と補償を求めて東京地方裁判所に提訴してから、16年が経過した。この間の日本での軍「慰安婦」問題研究の進展にはめざましいものがある¹。もちろん、日本では軍「慰安婦」問題の本質は商行為だとする側のキャンペーンには大変激しいものがあったことは事実だが、しかし、それに負けないような成果の蓄積がある。その代表的なものは、吉見義明・林博史編『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大月書店、1999年)、吉見『従軍慰安婦』(岩波新書、1995年)、VAW-NET JAPAN 編『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 2000年女性戦犯国際法廷の記録』全6巻(緑風出版、2000-2002年)である。

まず、第一にあげるべきことは、サバイバー(元「慰安婦」)・支援団体・法律家・歴史研究者が協働したことだ。1994年11月に、ICJ(国際法律家委員会)の報告が出された。これが契機となって、1996年2月には国際人権委員会にクマラスワミ報告が出され、1998年には同小委員会にマクドゥーガル報告が出される。また、1996年3月のILO専門委員会の年次報告が出された。さらに、2001年1月には、前年に開かれた女性国際戦犯法廷の判決が出された。このような大きな国際的潮流の中で、「慰安婦」問題が、婦女売買禁止条約・強制労働条約・ハーグ陸戦法規・奴隷条約に違反する問題であったことが明確にされ、さらに、全体として「人道に対する罪」に該当する問題として捉えなお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これは非常に大きな成果だといえる。

第二に、市民や支援団体と歴史研究者の努力によって、サバイバーの方々からのヒアリングや資料の発掘が進んだ。元「慰安婦」の方々为名乗り出られることにより、それまでは不可能と思われていたアジア各地のサバイバーからのヒアリングが可能になり、多くの人々の努力の積み重ねにより、証言の蓄積が進むという状況が生まれた。

¹ 本稿は、私の小論「「従軍慰安婦」問題——研究の到達点と課題」(『歴史評論』576号、1998年4月)、「日本軍性奴隷(「従軍慰安婦」)制度研究の現段階」(『戦争責任研究』38号、2002年12月)、「米下院「慰安婦」決議案と河野談話」(『戦争責任研究』56号、2007年6月)を統合し、加筆して作成したものである。

資料の発掘も相当進んだ。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では、防衛庁防衛研究所図書館所蔵資料の調査を行い、その結果を 1993 年 7 月に公表している²。また、国立国会図書館にある戦史・戦争体験記の中にある「慰安婦」関係の記述調査を行ない、1994 年 3 月に公表している³。これらを通じて、日本国家の単なる「関与」という程度を超えた関係、軍自身がこの制度を作り、維持し、運営したこと、軍が主体であ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きた。

さらに、荒井信一代表が中心となって、人権と基本的自由の重大な被害を受けた被害者の被害回復・賠償・更生の権利に関する原則を明らかにしたファン・ボーベン報告を紹介し⁴、それを引照しながら、1995 年 5 月には、資料センターは元「慰安婦」の被害回復についての提言を公表している⁵。

第三に、以上の成果を基礎にして、「慰安婦」制度とは、日本軍の性奴隷制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明確にされてきたこと、いいかえれば、「強制連行」があったかどうかという視点や「強制売春」という古い視点から、人道に対する罪に該当する軍性奴隷制であるという新しい視点へと深化していったことが重要だと思う。

第四に、各地域での調査・研究が非常に進展し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ある。韓国・台湾・中国・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人女性を含む）・マレー・ビルマなどのケースがかなり明らかになってきた。地域によって、精粗の差は相当あるが、1995 年以降進展したところとして、たとえば、中国の山西省の調査には目覚ましいものがある。ただ、このように地域を並べてみると、フランス領インドシナについての研究が殆どないとか、東部ニューギニアなど太平洋地域の研究が少ないとか欠けているところが相当あるのも事実である。

以下では、日本における研究の進展を概観し、今後の課題にもふれていきたい。

2. 「慰安婦」制度と日本軍の関係について

1) 日本軍はちょっと「関与」しただけか。主役の問題。

「慰安婦」の徴募・使役に関して、日本政府は 1992 年に軍の関与を認め、1993 年に強制性と重大な人権侵害を認めた。しかし、だれが強制し、だれが重

² 『戦争責任研究』創刊号（1993 年 7 月）所収。

³ 『戦争責任研究』3 号（1994 年 3 月）・5 号（9 月）所収。

⁴ 『ファン・ボーベン国連最終報告書』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1994 年。

⁵ 『戦争責任研究』4 号（1994 年 6 月）所収。

大なる人権侵害をおこした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の日本政府の公式見解はあいまいなままである。1993年の河野洋平官房長官（当時）の談話をみると、その主要な責任は業者にあり、軍はちょっと「関与」しただけであるという様にも読める。「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の設立・運営に「関与」した日本政府は、補償金は一銭も出せないという立場を崩していないが、それは、このような政府見解と深い関連を持っていると思われる。また、「慰安婦」制度という制度があったということも政府は認めていないようだ。

しかし、この間、軍関係の資料が数多く発掘された。また、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は、国会図書館にある元軍人の戦争体験記や部隊史の調査を行った。その結果、第一次上海事変の時や日中戦争期には、慰安所の設置は、派遣軍や方面軍など現地の軍のトップが指示していること、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は、陸軍省・海軍省が指示していることなどをはじめ、多くの事実が明らかになり、「慰安婦」制度の創設・運用の主体は軍であり、業者が使われる場合でも、それはワキ役にすぎない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きた⁶。

戦地・占領地で慰安所をつくる時、その決定は部隊長等が行うのであり、業者を使う場合でも、「慰安婦」徴募の指示、建物の接收、慰安所規則・料金の決定、各部隊利用日の指定、経営・経理などの監督、営業報告書提出の指示、「慰安婦」の性病検査なども軍が行っている。また、慰安所とは、軍人・軍属専用の施設だった。なお、慰安所の法的・制度的性格について、永井和氏は、当初、「野戦酒保規程」に基づき兵站付属施設として設置されたと論じている⁷。こうして、それは、制度ではなかったとか、軍はちょっと「関与」しただけという議論がなりたないことは、日本軍の資料だけでも、十分に論証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2) ワキ役 の 役割 解明 の 課題

しかし、解明すべき他の問題群もあるように思う。そのひとつは、制度を支えた軍以外の非公然の組織あるいは人々の研究だが、これはそれほどなされ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これは、業者あるいは「女衞」、買売春にかかわる組織やネットワークに関する研究である。この問題については、すでに安丸良夫氏が、私の研究に対する批判の中で、業者・女衞の重要性を挙げ、つぎのように鋭い指摘をしている。

⁶ 吉見義明『従軍慰安婦』（岩波新書、1995年）、前掲『共同研究・日本軍慰安婦』が代表的な成果である。

⁷ 永井和『日中戦争から世界戦争へ』（思文閣出版、2007年）第5章。

「売春、博奕、種々の興行、荷役・建築などの下層労働力の調達、密輸などにたずさわる、なかば非合法の手段を駆使する暴力的な人びとは、近代化してゆく日本社会をその基底部で支えたといえるほどに重要だったはずで、彼らは、植民地とか戦地とかいう状況のもとではいっそう悪どい活動を展開していたのであろう。8」

このような人々の重要性はもちろんみな気づいているのだが、調査の手がかりが余りなく、つきつめて研究されていないのは彼の指摘の通りである。この方面の研究が進めば、この問題の研究はより立体的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これまでの調査・研究を列举すると、千田夏光氏が業者・女衞へのヒアリングをしているのが早い成果だが⁹、その後、西野瑠美子氏も日本人業者のヒアリングをしている¹⁰。また、永井和氏は、警察大学校から出てきた警察資料を綿密に分析し、1938年初めの日本内地における業者の動きが明らかにしている¹¹。

このような中で、朝鮮における接客業者の詳しい研究を含む尹明淑氏の博士論文『日本の軍隊慰安婦制度及び朝鮮人軍隊慰安婦の形成に関する研究』は特筆すべき優れた研究である¹²。

また、台湾については朱徳蘭氏の研究が重要であるが、¹³その中心的成果のひとつは、日本海軍が海南島に作った慰安所の建設、「特要員」の徴募、営業資金貸付などを台湾拓殖株式会社が請け負い、福大公司という台湾の下請け会社にやらせているという構造が解明された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な研究の蓄積が進めば、軍「慰安婦」制度の実像がより明確になり、軍の責任の所在も一層はっきりすると思う。

3) 日本軍はなぜ「慰安所」を必要としたか。設置の動機について

8 安丸良夫「「従軍慰安婦」問題と歴史家の仕事」『世界』1998年5月号。

9 千田夏光『従軍慰安婦』双葉社、1973年。

10 西野瑠美子『従軍慰安婦』明石書店、1992年。

11 永井和「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二十世紀研究』創刊号、2000年12月（後に永井『日中戦争から世界戦争へ』に収録）。

12 これは、尹明淑『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明石書店、2003年）として刊行された。

13 朱徳蘭『台湾総督府と慰安婦』明石書店、2005年。朱徳蘭編『台湾慰安婦関係資料集』全2巻、不二出版、2001年。このような下請け関係ができる経緯は、海南島にいる日本海軍が台湾総督府に「要請」し、それを受けて台湾総督府が指示し、台湾拓殖なり福大公司が建築・徴募・資金貸付などを担当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構図が解明された。

それでは、日本軍はなぜ「慰安婦」を必要としたのだろうか。日清・日露戦争では「からゆきさん」を利用するものだったようだが、これらの戦争を含め、第一次世界大戦・シベリア戦争・山東出兵などではどうだったかを、軍の資料に基づいて明らかにするのは今後の課題である。

軍「慰安婦」制度が最初につくられるのは、資料で確認される限り、また岡村寧次大将の証言にあるように、第一次上海事変からだが、そうだとすれば、これは既存の売春制度を前提にしながらも、新しくつくられたことになる。

軍の資料に現れる設置の動機を整理すると、①日本軍人による強姦の防止、②性病の蔓延防止、③慰安の提供、④スパイ防止（防諜）の四つであった¹⁴。

このうち、①強姦防止は、あまり達成され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なぜなら、軍紀風紀を確立するために慰安所を設けるという措置は矛盾しており、かえって風紀を乱し、性暴力を容認することになったからである。②の性病予防も同様で、慰安所をつくることによって性病の蔓延は防げなくなった。

そこで、強姦防止にも性病防止にもさほど役立たない慰安所が増え続けていった理由が問題となるが、それは③の理由があったからである。将兵に「性的慰安」を提供するという動機がとくに日本軍の場合には大きかった。なぜなら、侵略戦争であったこと、勝利の見通しもない泥沼の戦争になったこと、出動兵士の明確な交替・帰還の基準や休暇制度がなかったこと、給養が劣悪だったこと、兵士の人権抑圧がひどかったことなどが重なったからである。このように兵士を絶望的な状況に置いたまま、かつ自暴自棄になり不満が軍隊内で爆発したり、上官に向かったりするのをふせぐため、軍人に「女」が提供されたのである（もうひとつ豊富に供給されたのは酒であった）。

そして、④のスパイ防止という理由づけが付け加わる。これは、将兵が戦地で民間の売春宿に通い、その女性と親密になると軍の機密が漏れる恐れがあるので、将兵には民間の売春宿に行くことを禁止し、代わりに業者や女性を軍が管理統制できる慰安所をつく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以上がこれまでの研究で明らかになったことだが、より根本的な問題を今後明らかにしていく課題が残っている。それは、なぜ、日本軍はこのように強姦事件を数多くおこし、「慰安婦を必要とする」軍隊になった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それは、近代的な外征軍に共通する問題（帝国主義と他民族抑圧）、天皇制軍隊の問題、近代が生み出す大衆的な欲望の解放の問題、女性をモノ扱いする家父長制（男権主義）の問題、性的放縦を内容とする男性文化の問題、その中

¹⁴ 以下、吉見義明「「従軍慰安婦」問題で何が問われているか」（中村政則ほか編『歴史と真実』筑摩書房、1997年）56-58ページ。

で生ずる女性に対する性暴力の問題（「慰安婦」制度創設は男性に対する侮辱でもあること）などの問題群である。これら日本軍に特徴的な問題と、帝国主義的な軍隊に共通する問題を関連づけながら研究を深め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4) 人種差別（民族差別）と階層差別（階級差別）

「慰安婦」として使役された女性の総数がどれぐらいになるかは、未だにはっきりしない。陸軍が上から配置する「慰安婦」数として、兵 100 人につき 1 名という基準をもっていたことは、金原節三陸軍省医事課長の業務日誌や高松宮の日記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¹⁵。しかし、各地に駐屯する部隊が独自に徴募するケースも多く、そもそも名簿すら残っていないので、実数の推定は困難である。中央や派遣軍レベルでは、名簿をつくって把握していたかどうかも疑わしい。1938 年 11 月に、陸軍省と第 21 軍の要求で、内務省が 5 府県の警察部に命じて業者を選定して集めさせ、中国広東省に送った 400 名の「慰安婦」の場合、内務省は業者の氏名・住所は報告させているが、「慰安婦」については人数のみでよいとしている¹⁶。こうして、大まかな推計による概数は、一定期間の監禁・強姦のケースを除くと、最低でも 5 万前後、それを含めると通常いわれている 8 万から 20 万に近くなるというほかないが、その実数に迫りうる様な調査研究がまたれる。

また、地域別の慰安所数の調査は、沖縄での女性グループの調査や、マレー半島やシンガポールでの林博史氏の調査などがあるが¹⁷、このような調査は各地域で行う必要があるだろう。

¹⁵ 金原「陸軍省業務日誌摘録」1939 年 4 月 15 日の記述（『戦争責任研究』創刊号、1993 年 9 月）21 ページ、『高松宮日記』第 4 巻（中央公論社、1996 年）1942 年 1 月 16 日の記述（32 ページ）。

¹⁶ 内務省警保局長通牒案「南支方面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吉川春子『従軍慰安婦』あゆみ出版、1997 年、178-179 ページ所収）。これは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からも見ることができる。

¹⁷ 賀数かつ子「沖縄県の慰安所マップ作成をとおして」（『第 5 回全国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報告集』1994 年）。浦崎成子「沖縄戦と軍「慰安婦」」（『2000 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3 巻（緑風出版、2000 年）。林博史「マレー半島の日本軍慰安所」（『世界』580 号、1993 年 3 月）、同「マレー半島における日本軍慰安所について」（『関東学院大学経済学部一般教育論集』15 号、1993 年 7 月）、同「シンガポールの日本軍慰安所」（『戦争責任研究』4 号、1994 年 6 月）、同「東南アジアの日本軍慰安所」（『2000 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4 巻）。

つぎに、主にだれが犠牲にされたかを考えてみると、その圧倒的多数は日本人以外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女性だった。「慰安婦」の国（民族）別比率を正確に明らかにすることも困難だが、ある程度推計はできる。1940年に大本営陸軍部研究班がまとめた「支那事変ニ於ケル軍紀風紀ノ見地ヨリ觀察セル性病ニ就テ」にある戦地で新規に性病に感染した日本軍兵士の「相手女」の比率が、ほぼ「慰安婦」の比率を反映しているとすれば、朝鮮人 51.8%、中国人 36.0%、日本人 12.2%となり、圧倒的多数が朝鮮人・中国人となる¹⁸。もし同様の調査が1942年以後にあれば、東南アジア・太平洋地域の女性の比率が相当多くなるであろう。この事実は、植民地・占領地の女性が主に犠牲に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り、露骨な人種（民族）差別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また、一割前後の日本人女性についてみると、外務省は、1920年代以降、内地から「からゆきさん」などが海外に出ることを禁止するようになっており、内務省は、1938年2月の警保局長通牒で、例外措置として、日本軍がいる中国占領地に限って売春を目的とする女性の渡航を黙認することとし、満21歳以上で、現に「娼妓其ノ他事実上醜業ヲ営」む者の渡航だけを認めることにした。軍の強い要求を受け入れたのであろう。このような女性は犠牲になってもしかたがないという意味表示だが、現に「娼妓其ノ他事実上醜業ヲ営」む者とは、公認された公娼制や黙認されている私娼制という事実上の性奴隷制度の下で苦しんでいる女性たちのことであり、農村や都市の圧倒的に貧しい家庭出身の女性たちだから、明白な階級・階層差別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

しかし、現在、日本人「慰安婦」は被害者として名乗り出ていない。その理由は、現在の日本の状況では、名乗り出た途端に「売春婦」として罵倒されることが明らかだからである。日本人業者の調査と共に、日本人元「慰安婦」のプライバシーを侵さない慎重な調査は今後の課題である。

3. 強制の内容

強制の有無をめぐる議論については、日本国に法的責任がないとする論者は、強制連行だけを問題とし、その定義についても、整理すれば「官憲が末端で直

¹⁸ この計算方法は前掲『共同研究・日本軍慰安婦』12ページ参照。なお、日本軍が東南アジア・太平洋地域を占領していった1942年以降には、この地域の女性たちが「慰安婦」として徴募されるので、比率は異なってくる。また、占領地で一定期間監禁レイプされた女性たちを加えると、戦地・占領地の女性の比率が高くなるだろう。

接手を下した奴隷狩りのような暴力的連行」というようにきわめて狭く解釈している。

このような議論に対して、日本の研究者は、問題はこのような狭い意味での強制連行だけが問題ではないこと、また問題は徴募時の強制だけではないこと、もっと広い国際法違反が問われているのだと述べてきた¹⁹。

その内容は、①慰安所で女性たちの意思に反する強制があったこと、②徴募時に本人の意思の反する強制があったこと、③慰安所に未成年者が連行され使役されたこと（国際法では未成年者は満 21 歳未満）である。②の強制とは、前借金でしぼること（人身売買など）や、だまして連れていくことや、暴行・脅迫を用いることなどを含むものである。そして、これらの理論構成は、歴史研究者と法律家との議論のなかで形成されたものである²⁰。

これに対して、フェミニズムの側から批判が出されている。たとえば、上野千鶴子氏は、国際法違反であったという議論に対して、では関連国際法締結以前には「違法」ではないのか、なぜ「慰安婦」だけが対象になるのか、国際法は列強間パワー・ポリティクスの妥協の産物であるのに、それに依拠する議論は既存の国際秩序を正義と取り違える働きをする、と批判している²¹。

これに対しては、私はつぎのように考える。わたしたちは日本が加入していた当時の国際法如何にかかわらず、「慰安婦」制度をつくり運用したという国の責任を問題とする。また、当時の国際法にも違反していたと主張する。当時の国際法が制約の多い不十分な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は、人権問題に関心を持って国際法を多少とも調べたことがある者であれば誰でも痛感していることである。だから当時の国際法に違反しなかったからといって、それが正義であると思う者はいない。

¹⁹ 吉見『従軍慰安婦』のほか、同「「従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世界』626号、1996年9月）、同「歴史資料をどう読むか」（同、632号、1997年3月）など。

²⁰ 法律家の成果としては、阿部浩己「軍隊「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法学セミナー』466号、1993年10月）、日本弁護士連合会『「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提言』（同会、1995年1月）、国際法律家委員会『国際法からみた「従軍慰安婦」問題』（明石書店、1995年）、『R・クマラスワミ国連報告書』（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1996年）、戸塚悦朗「国際法による奴隷禁止と国連の活動」（『法学セミナー』512号、1997年8月）など参照。

²¹ 上野千鶴子「記憶の政治学」『インパクション』103号、1997年6月、161ページ。

つぎに、わたしたちが主張する国際法違反の中には「人道に対する罪」も入っている点を上野氏は無視している。これは必ずしも戦中の国際法ではない。1930年代や第二次大戦中の非人道的な行為を問うために、戦後に導入されたものである。従って、当時の国際法云々は不当な論難だと思う。

4. 慰安所における強制

1) 略取・誘拐・人身売買

さて、以下で三つの側面の違法行為について、より詳しくふれてみたい。まず、慰安所における強制だが、これがあれば、徴募時の強制の有無にかかわらず日本軍、従って日本国家の責任はまぬがれないことになる。つまり、刑法の略取・誘拐罪は人を不法に実力支配の下に置くことだが、その場合、だましてそうしたか、誘惑したか、暴行・脅迫で連れていったかは主要な問題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²²。

この点について、当時日本・朝鮮・台湾に施行されていた刑法第226条の規定が最近、改めて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慰安婦」問題との関連でその重要性を明らかにしたのは戸塚悦朗氏だが、彼は、1935-1936年の上海海軍指定慰安所事件裁判の判決文を発掘し、日本の周旋業者と慰安所業者が、1932年に長崎の女性たちを誘惑あるいは欺罔して上海の海軍指定慰安所に約2年間拘束したことが刑法第226条の国外移送目的誘拐罪・国外移送罪にあたるとして告訴され、長崎地方裁判所・長崎控訴院・大審院でいずれも有罪とされたという事実を詳細に明らかにした²³。

これを受けて、私は、刑法の規定を再検討し、つぎのことを明らかにした。

㉔刑法第226条では、国外移送目的略取罪・国外移送目的誘拐罪・人身売買罪・国外移送罪が同罪とされている。

㉕国外移送目的略取罪とは国外移送のため、暴行または脅迫を用いて人を保護されている状態から引き離して自己または第三者の事実的支配におくことであり、国外移送目的誘拐罪とは、国外移送のため、欺罔または誘惑（甘言）を手段として人を保護されている状態から引き離して自己または第三者

²² 渡辺春己ほか『歴史の事実をどう認定しどう教えるか』教育史料出版会、1997年、179-190ページ。

²³ 戸塚悦朗「日本軍「従軍慰安婦」被害者の拉致事件を処罰した戦前の下級審刑事判決を発掘」（正・続）、『龍谷法学』37巻3号（2004年12月）・38巻4号（2006年3月）。

の事後的支配におくことであり、人身売買罪とは、国外移送のため対価を得て人身を授受することである。

◎従って、暴行または脅迫を用いた略取の場合だけでなく、騙したり甘言を用いたりした場合（誘拐）や、人身売買（前借金を与えて拘束すること）も有罪であり、これらは殆どの「慰安婦」に関する²⁴。

2) 軍「慰安婦」制度は性奴隷制度

慰安所での強制を考える場合、「拒否する自由」や、国内の公娼制で建て前上認められていた「廃業の自由」「外出の自由」が認められていたかどうかを考えるとわかりやすい。「拒否する自由」が認められるような状況でなかったことは、被害者の証言でも、元軍人の証言でも立証できる。また、有名な沖縄の慰安所規定（山第 3475 部隊「軍人倶楽部ニ関スル規定」）によれば、「慰安婦」は「何人ニモ公平ヲ第一」とすることを義務づけ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²⁵。

「廃業の自由」がなかったことは、そのような「自由廃業」の規定を書き込んだ慰安所規則が一点もないこと、だまして連れてこられた「売春」の前歴のない日本人女性がどんなに抵抗しても軍は解放しようとしなかったこと²⁶、軍は苦勞して集めた「慰安婦」を本人の意思に従って直ちに故郷に帰すはずがないこと、などから明らかだろう。

なお、「廃業の自由」に関しては、強制性を認めない人々の中では、秦郁彦氏のような研究者でさえ、その意味を誤解し、前借金を返し終えた者に帰国を認めることが「廃業の自由」であると考え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²⁷。これは基本的な事柄に関する初歩的な誤りである。

日本軍が「外出の自由」を認めていなかったことは、各部隊が作成した慰安所規定の多くに「慰安婦」の外出を制限する条項があることから明らかである²⁸。

²⁴ 吉見「米「下院」決議案と河野談話——日本軍「慰安婦」制度研究の最新の知見から」『戦争責任研究』56号、2007年6月、2-3ページ。

²⁵ 吉見「沖縄の慰安所規定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人文研紀要』（中央大学人文科学研究所）、30号、1997年11月、11ページ。

²⁶ 長沢健一『漢口慰安所』図書出版社、1983年、147-149ページ。吉見「米「下院」決議案と河野談話」『戦争責任研究』56号、8-9ページ。

²⁷ 秦郁彦「「慰安婦」と七三一部隊合体の仕掛人」『諸君』1997年3月、49ページ、および「朝まで生テレビ」（1997年2月1日未明）での秦氏の発言。

²⁸ 前掲、吉見「沖縄の慰安所規定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参照。

3) 軍「慰安婦」制度と公娼制度の異同

ところで、このような議論を、藤目ゆき氏は、「廃業の自由」などを云々するのは近代公娼制度の名目性に高い評価を与え、「合法化された暴力たる公娼制度に対する批判を手控えるもの」だと批判している²⁹。そこで、この批判にもふれておきたい。公娼制度と「慰安婦」制度は違うものなのか、両者はともに公娼制度とよぶべきものなのか、という議論にかかわる問題である。

私は、近代公娼制度の名目性に高い評価を与えてはいない。それは、娼妓は自由意思で売春をしているのだという外見をつくるために、政府が「自由廃業」などを紙の上だけで認めているにすぎず、そのような権利を実現する条件を欠いていた³⁰。また、娼妓には「居住の自由」はなく、「拒否する自由」があったともいいがたいだろう。1955年に最高裁判決がでるまで、前借金でしばって売春を強制するシステム（人身売買）は、裁判所が保障していた。このような売買春問題に関する無法状態を視野に入れなければ、歴史の実像は明らかにならないだろう。

だから、公娼制度は事実上の性奴隷制度だったとっているのである。「自由廃業」のあいまいな規定しかなく、外出の自由規定がない植民地ではなおさらである³¹。軍や総督府が「慰安婦」送出をはじめたとき、植民地支配の下で、自立さえ困難な状況に追い込まれていた下層の民衆にとって、拒否できる自由がありえたと考える方が無理であろう³²。

しかし、「慰安婦」制度では、そのような名目的な「自由」すらなかったことも事実である。日本政府は、公娼制度に関して「娼妓稼業ハ自由稼業ニシテ所謂貸座敷営業者トノ間ニ雇傭契約等娼妓ノ意思ヲ拘束シ醜行ヲ強制スルカ如キ約束ハ存在セサルモノナルコト」と取り繕っていたが³³、外見上の自由廃業規定さえなく、外出の自由を認めない規定のある「慰安婦」制度の場合、日本政府はそのような主張もできないはずである。

²⁹ 藤目ゆき「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戦争責任研究』18号、1997年、8ページ。

³⁰ 小野沢あかね「戦間期日本における公娼制度廃止問題の歴史的特質」、歴史学研究会編『性と権力関係の歴史』青木書店、2004年、172-173ページ参照。

³¹ 宋連玉「日本の植民地支配と国家管理売春」、『朝鮮史研究会論文集』32号、41ページ。

³² 金富子「朝鮮植民地支配と朝鮮人女性」（前掲『共同研究・日本軍「慰安婦」』）参照。

³³ 外務省『婦人及児童ノ売買禁止ニ関スル諸条約説明書』同省、1925年6月。

なお、公娼制を広義の国家管理売春制度と定義すれば、国内の管理売春制度も（当時も現在も）、「慰安婦」制度とともに公娼制度ということになる。そのことに異論はない。しかし、「慰安婦」問題の解決が現実的な課題となっているときに、その解決に向かって、両者の共通する面と相違点をきちんと整理することが必要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この議論を整理すると、次の四つの見方があると思われる。第一は、「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など右派の議論で、「慰安婦」制度と公娼制度は同じもので、ともに商行為であり、合法的であり、許されるというものだ。第二は、両者は別のものであり、「慰安婦」制度は許されないとする立場だ。韓国・北朝鮮などで見られるもので、女性の処女性を重視し、いわゆる「売春婦」とは区別する無垢な「慰安婦」観・犠牲者観を前面に押し出すものだ。第三は、両者はともに許されないが、区別するべきであるとする立場だ。「慰安婦」制度は公娼制よりも露骨であるとする立場だ。私はこの立場である。第四は、両者は同じ性格のものであるとする立場で、「慰安婦」制度は、公娼制の延長とみるか、発展とみるか、全面開花とみるかの違いはあるが、ともに許されないとする立場だ。宋連玉氏や鈴木裕子氏や藤目ゆき氏などがこの立場だと思う。

もうひとつは、定義の問題がある。公娼制という語が何を意味しているもの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だ。娼妓取締規則などに基づいてつくられている狭義の公娼制を指すのか、藤目氏のようにひろく国家管理売春制度を指す概念として、あるいは現在の風俗産業も含まれるような概念として用いるのかで相当異なる。

ここでは、狭義の意味で公娼制を考えたいが、今の段階での私の考えを述べたい。両者は、性奴隷制度としての共通性を持っていることはまちがいない。公娼制度が性奴隷制度であるということは、戦前の娼妓運動の中でも、人身売買と自由拘束を内容とする事実上の「奴隷制度」であるという認識が形成されていた。それが性奴隷制度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国家がそうではないと外見上の擬制を作って成り立たせていたことも明らかだ。

他方、「慰安婦」制度と公娼制度がともに性奴隷制であるという共通性を持ちながら、いくつかの相違点があることも事実だろう。

第一は、国家自らが政策的に開設・運営・統制・監督したかどうかという点だ。軍は国家の中核だが、それが自ら制度をつくり、運営する主体であったという点は、公娼制との相当大きな相違だ。第二は、軍人・軍属の専用であったか、オープンな民間人用であったかという相違である。第三は、林博史氏がいうように戦時・戦地・占領地という軍支配下での、または軍法が適用される下

での性暴力か、平時を中心とする市民法が適用されるもとの性暴力かという違いだ（なお、内地における性暴力と植民地におけるそれとの相違という問題を考える必要もあると思う）。第四は、軍性奴隷制のもとでは、買売春の形態をとっていないケースがあったことをどう考えるか、という問題だ。山西省孟県のような監禁・レイプのケースを国家管理売春として考えることは困難だろう。

もうひとつ付け加えると、「慰安婦」制度は、公娼制度の発展あるいは全面開花なのか、逆転なのかという問題がある。この点は、林博史氏が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公娼制廃止に日本の外務省が協力し、日本人の娼妓も国に帰したのに、アジア太平洋戦争が始まると、「慰安婦」を大量に連れてく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問題から、「慰安婦」制度創設は逆転現象だという議論をしている³⁴。また、先に述べた永井論文は、一九三八年初めに「慰安婦」徴募に当たった業者が誘拐犯と間違えられて逮捕された理由は、軍が慰安所を作るのでという業者の説明を、当初警察は作り話であり、詐欺だと判断したからだ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しかし、それが事実だと分ってから、軍の政策だから、望ましくないがやむを得ないとして、警察は業者の行動を公認し、かつ隠蔽しようとしたというのだが、そうだとすれば、これは政策上の逆転が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ただし、小野沢あかね氏は、日本政府は欧米廃娼国の批判を受け、東南アジアからは日本人売春婦を帰国させたが、日本の勢力圏の東アジア各地に向けては人身売買を禁止しなかったとしている³⁵。

結論として、私はつぎのように考えたらどうかと思う。戦前・戦中の日本には二種類の性奴隷制度があった。ひとつは平時を中心とする市民法下の内地と植民地における公娼制と私娼黙認のシステムであった。もうひとつは戦時・軍法下の戦地あるいは占領地における軍性奴隷制（軍「慰安婦」制）で、これには買売春の形態をとったものと、一定期間の監禁・レイプの形態をとったものがあった。軍「慰安婦」制度はむきだしの性奴隷制度で、外見上の「保護」規定すらなかった。日本が加入している当時の国際法だけでなく、国内法もクリアできていなかった。国家・軍の責任もより直接的であった。公娼制は、合法的な外見を装った巧妙な性奴隷制度であったが、植民地ではその暴力性がより透けてみえるものであった。ただし、両者のどちらがより悪質であるかという議論は意味がない。なぜなら、犠牲にされた女性たちにとってはどちらも許せないものであり、どちらも極めて悪質な性奴隷制度、性暴力システムであっ

³⁴ 前掲『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113 ページ。

³⁵ 前掲、小野沢あかね「戦間期日本における公娼制度廃止問題の歴史的特質」、歴史学研究会編『性と権力関係の歴史』176 ページ。

たからである。以上のように整理したらどうか、というのが私の見解である。

5. 徴募時の強制

徴募時の強制については、まず、①略取、②誘拐、③人身売買などにつながる事柄が問題になることはこれまでのべてきたとおりである。

1) 朝鮮・台湾での徴募

朝鮮・台湾から女性たちが大量に「慰安婦」として送出されるのは、植民地支配がなければありえないことであった³⁶。日本内地で出された警保局長通牒（1938年2月23日）は、「売春」目的での21歳未満の女性の渡航禁止、非「売春婦」の渡航禁止だけでなく、人身売買による渡航も禁止していたが、このような通牒は、総督府からは出されなかった。最初から扱いが違ったのである。

ところで、朝鮮・台湾では「官憲が末端で直接手を下した奴隷狩りのような暴力的連行」があったことを裏づけるような資料は現在のところでない。女子挺身勤労令は労働動員であり、「慰安婦」の動員とは関係がない。日本側の証言では、吉田清治氏の証言はあるが、時と場所を変えている場合もあるとのべるなど、あいまいな証言なので、証言としては採用しがたい³⁷。

では、実際に植民地だった朝鮮・台湾ではどういう形で海外に連れていかれたのか。朝鮮・台湾の女性たちは、人身売買により、あるいは誘惑・甘言により、あるいはだまされて、あるいは一定の脅迫を受けたりして、国外に連れていかれたというのが大部分であろう。これは、証言や資料で確認できる。こうして、本人の意思に反して慰安所に入れられ、使役されることになるのだが、これを行った者は先ほど述べた刑法第226条の四つの罪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になる。

朝鮮あるいは台湾から中国や東南アジアに女性たちを連れていく場合には、直接の暴行・脅迫を用いるよりも、だましたり、人身売買で連れていく方が、途中で逃亡されたり、自殺されたりするケースが起こりにくいので、その方法が多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が、略取に当るケースがなかったとはいえないと思

³⁶ 藤永壮「朝鮮植民地支配と「慰安婦」制度の成立過程」（『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3巻）はこの視点から「慰安婦」制度の成立過程を論じた重要な論文である。

³⁷ 吉見義明・川田文子編『「従軍慰安婦」をめぐる30のウソと真実』大月書店、1997年、26-27ページ参照。

う。

実際の実行者は、派遣軍が選定した、または朝鮮総督府あるいは台湾総督府が選定した、あるいは朝鮮軍あるいは台湾軍が選定した業者だった。軍が直接するよりも、業者にやらせる、今の言葉で言うとアウトソーシングした方が巧妙であり、効率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だ。この選定は、植民地で業者を選定する場合には、1941年12月に対米英戦争が始まるまでは、総督府が選定をしていた。1942年以降は戦争の規模がより大きくなるが、この段階では朝鮮軍や台湾軍が選定をするという形になった。

朝鮮総督府・朝鮮軍、台湾総督府・台湾軍は、実際に派遣軍の要請に基づいて徴募を指示する。それから業者にさまざまな便宜を供与する。業者が女性たちを集める場合に、人身売買に類すること、あるいは誘拐に類すること、略取に類することが起こっても、実際にはそれが黙認されていたのだろう。これはアメリカ軍の資料などによっても確認されるのだが、多くの女性たちは人身売買により、あるいは誘惑・欺罔等、例えば、楽な仕事だとか、工場で働くとか、看護婦のような仕事だとかいわれるが、性的行為をさせられるということを受けられないで、連れていかれているので、刑法 226 条違反に該当する。けれども、実際にはそれが摘発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

占領地の軍、実際に慰安所を設置する現地の派遣軍も、人身売買あるいは誘拐などで連れてこられたということは、「慰安婦」の個々の身上について詳しくチェックしているので、それを知らないはずはない。しかし、そういうケースであっても、慰安所に入れて使役することになった。

次に、植民地で官憲等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見てみよう。「官憲等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という河野談話の文言は、植民地に限っておらず、全体の文脈の中で述べている。つまり、朝鮮・台湾であった、といっているのではないが、これについてもちょっと触れてみたい。

軍人や総督府の職員が徴募の現場にどこまで関わっていたのかに関しては、被害者が憲兵とか警察に連行されたという証言はたくさんある。なかったという証言はない。直接関わったかどうかに関しては、ケース・バイ・ケースであろう。例えば、文必ギムンピル（「王」偏+「基」）さんという元「慰安婦」はだまされて連れていかれるのだが、連行時に自分が知っている警官が立っていたと、証言している。尹明淑氏の研究によれば、女性たちを海外に誘拐する事件を朝鮮総督府が摘発したケースがかなりある³⁸。このケースでは、朝鮮の釜山の戸籍部

³⁸ 前掲、尹明淑『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394-397 ページ。

の役人が誘拐団に協力することもあったという。このような官憲等の関与は絶対になかったといえないだろう。

また、1941年の関東軍特種演習の時に、約3,000人の朝鮮人女性が中国東北部(「満州」)に「慰安婦」として連れていかれた、という元軍人の証言があるが³⁹、このように大規模に徴募される時にどうであったのかは、今後究明していく必要がある。しかし、軍や官憲が徴募の現場で組織的かつ大規模に直接手を下すことはなか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大切なことは、官憲が徴募の現場で直接手を下したかどうかではなく、徴募する場合には業者が勝手に行ったのではなく、総督府あるいは軍が、全体として管理・統制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全体を見ないで、一番末端の現場でどうだったのかだけを問題にするのは、おかしなことだ。

現在、確実にいえるのは、朝鮮軍・台湾軍なり総督府が既存の人身売買・管理売春組織を利用して、女性たちを集めさせたということだろう。尹明淑氏の優れた研究にはその点がよくうかがえる⁴⁰。そして、それは人身売買・管理売春にかかわる業者たちが誘拐・人身売買によって、ときには略取によって女性たちを徴募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

そこで、問題は、「慰安婦」の徴募と慰安所の運営に当たる業者の性格だが、①その業者は軍か総督府によって選定されていること、②軍の身分証明書を持っていること(1942年以降は「軍従属者」)、③徴募や渡航に際して軍や総督府から様々な便宜を供与されていること、④軍の指示で各部隊に配属されること、④軍属ではないが軍属待遇をうける場合が多かったことなどが分かっており、軍(または総督府)のコントロール下にあることは明白である。また、既に述べたように、慰安所の創設・運営の主体は軍であったから、徴募時や使役時に違法行為があれば、主たる責任は軍にあることになる。

しかし、植民地での徴募の実態解明のためには、元「慰安婦」の証言⁴¹を除

³⁹ 金富子解説「関東軍による「慰安婦」動員に関する手紙」『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3巻、334-337ページ。

⁴⁰ 尹明淑「日中戦争期における朝鮮人軍隊慰安婦の形成」(『朝鮮史研究会論文集』32号、1991年10月)、同『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⁴¹ 朝鮮・台湾の元「慰安婦」の証言記録として重要なのは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ほか『証言』(明石書店、1993年)、台北市婦女救援社会福利事業基金会『台湾地区慰安婦訪問調査個別分析報告書』(同会、1993年)である。また、川田文子『皇軍慰安所の女たち』(筑摩書房、1993年)、金富子ほか『もっと知りたい「慰安婦」問題』(明石書店、一九九五年)にある宋神道さんのヒアリング

けば、断片的な資料がある程度で、具体的に解明すべき課題は多い。被害者側の証言を裏づける、植民地にいた総督府関係者・軍関係者、業者、目撃者の証言集めと、日本政府所管総督府文書の公開が求められる。また、朝鮮で女性の誘拐犯として摘発された業者たちの裁判の記録の調査も重要な課題である。このような裁判記録は、韓国内に残っているはずである。

2) 中国・東南アジア・太平洋地域での徴募

占領地であった中国・東南アジア・太平洋地域ではどうだったのだろうか。これらの地域の地元の女性たち——インドネシアで抑留されたオランダ人女性のケースもあるが——は、人身売買や誘拐だけではなく、地域の有力者から人身御供として提供されるケースが多々ある。また、日本軍や日本軍支配下の官憲によって略取されて、慰安所に入れられるケース——いわゆる狭義の強制——もあるが、いずれも本人の意思に反して強制使役されたといえる。

(1) 中国

官憲による略取の事例で確認されるケースをみると、中国山西省の盂県でのケースが裁判になったが、その具体的な様相は石田米子氏ほかの調査・研究より実態が解明されている⁴²。これは現地にはいた日本軍の小部隊と中国人の警備隊が地元の住民を連行してきて、一定期間監禁・レイプするというケースである⁴³。関連する成果としては、日本軍の性暴力の実態をまとめた記録を紹介し

は信頼できる。

⁴² 石田米子・内田知行編『黄土の村の性暴力 大娘たちの戦争は終わらない』創土社、2004年。

⁴³ これは三件の裁判になり、請求は棄却されたが、裁判所で事実認定がなされている。その概要をみると次のようになる。①中国人「慰安婦」損害賠償請求事件第一次訴訟の東京高裁判決（2004年7月28日）：東京高裁は、中国山西省の李秀梅さんら4名の女性が日本軍部隊に連行され、監禁・強姦されたことについて、「八路軍が一九四〇年八月に行った大規模な反撃作戦により、日本軍北支那方面軍は大損害を被ったが、これに対し、北支那方面軍は、同年から一九四二年にかけて徹底した掃討、破壊、封鎖作戦を実施し（いわゆる三光作戦）、日本軍構成員による中国人に対する残虐行為も行われることがあった。このような中で、日本軍構成員らによって、駐屯地近くに住む中国人女性（少女も含む。）を強制的に拉致・連行して強姦し、監禁状態にして連日強姦を繰り返す行為、いわゆる慰安婦状態にする事件があった」と、明確に認定した。②中国人

た笠原十九司氏の仕事など貴重な成果が出てきている⁴⁴。

(2) フィリピン

フィリピンのケースも裁判になったが、圧倒的多数は監禁・レイプのケースである。代表的な例として、マリア・ロサ・ルナ・ヘンソンさんについて、藤目ゆきさんが非常に丁寧な聞き書きをしてまとめている⁴⁵。ヘンソンさんの場合は、道路を歩いていて日本軍に連行され、一定期間監禁・レイプされるというケースだが、ほかの女性たちにも、こういうケースが非常に多いことが被害女性からの聞き取りなどから明らかになっている⁴⁶。

(3) オランダ領東インド（インドネシア）

「慰安婦」損害賠償請求事件第二次訴訟の東京地裁判決（2002年3月29日）・東京高裁判決（2005年3月18日）・最高裁判所判決（2007年4月27日）：東京地裁は、1942年、日本兵と清郷隊（日本軍に協力した中国人武装組織）が集落を襲撃し、山西省の原告郭喜翠さんと侯巧蓮さんを、暴力的に拉致し、監禁・輪姦した（郭さんはその後二回拉致・監禁・輪姦された）と認定した。また、東京高裁は、この認定を踏襲した。その後、最高裁判所は原告による上告を棄却したが、日本兵と清郷隊による暴力的な拉致と監禁・輪姦の事実は明確に認定した。③山西省性暴力被害賠償等請求事件の東京地裁判決（2003年4月24日）・東京高裁判決（2005年3月31日）：東京地裁は、山西省の万愛花さんら10名の女性の被害事実について、1940年末から1944年初めにかけての性暴力被害の状況をほぼ原告の主張通りに認定した。また、東京高裁は、この認定を踏襲している。なお、④海南島戦時性暴力被害賠償請求事件の東京地裁判決（2005年8月30日）においても、中国海南島の8名の女性の被害事実について、日本兵に強姦された後、拉致・連行され、監禁・強姦されたと認定している。

⁴⁴ 笠原十九司「中国戦線における日本軍の性犯罪」『戦争責任研究』13号、1996年9月。同「日本軍による性暴力の構造」『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4巻。

⁴⁵ マリア・ロサ・ルナ・ヘンソン（藤目ゆき訳）『ある日本軍「慰安婦」の回想』岩波書店、1995年。

⁴⁶ 上田敏明「フィリピンの「慰安婦」性暴力の実態」・横田雄一「フィリピン・パナイ島における性暴力」・岡野文彦「フィリピン・マパニケ村」『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4巻。

次にインドネシアについては、オランダ政府が調査をした公文書が 1994 年に公表されている⁴⁷。これによると、未遂を含めると少なくとも 9 件の軍・官憲による略取事件が起きている。第一に、侵略の最中と占領の初期には、日本軍人による強姦事件が、タラカン、メナド、バンドン、パダン、フローレスなどで多発し、ジャワ島のスマランに近いプロラで発生した強姦事件は、15 名のヨーロッパ人女性が 2 軒の家に監禁され、3 週間の間強姦されたと書かれている。これは中国山西省のケース、フィリピンのケースと非常によく似ている。

第二と第三は、マゲランとスマランのケースだが、抑留所に抑留されていたヨーロッパ人女性の中から若い女性たちを選んで、文字通り官憲が、慰安所に連行していったというケースである。マゲランのケースは、1944 年 1 月、ムンチラン抑留所から、日本軍と警察は女性たちを選別し、反対する抑留所住民の暴動を抑圧して連行したというものだが、その一部は送り帰され、代わりに「志願者」が送られる。残りの 13 名の女性は、マゲランに連行され、売春を強制される。

スマランのケースは、同年 2 月、スマラン近郊の三つの抑留所から連行されたすくなくとも 24 名の女性たちがスマランに連行され、売春を強制される（有名なスマラン慰安所事件）。その後、逃亡した 2 名は警官につかまり、連れ戻され、1 名は精神病院に入院し、1 名は自殺を企てるまで追い込まれる。一名は妊娠し、中絶手術を受ける。その後、捕虜収容所の関係者が視察に行った時に、このケースを発見して、中止させるが、だれも処罰されなかった。実際に処罰されるのは、日本敗北後に行なわれる B C 級戦犯裁判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⁴⁸。

⁴⁷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voormalig Nederlands-Indië,” *Tweede Kamer, vergaderjaar 1993-1994*, 23 607, nr.1, januari 1994. この文書の英訳からの日本訳は「日本占領下蘭領東インドにおけるオランダ人女性に対する強制売春に関するオランダ政府調査報告」『戦争責任研究』(4 号、1994 年 6 月) 参照。

⁴⁸ 以下、第四は、1944 年 4 月、憲兵と警察は、スマランで数百人の女性を逮捕し、スマランクラブ(慰安所)で選考を行い、20 名の女性をスラバヤに移送する。そのうち 17 名がフローレス島の慰安所に移送され、売春を強制された、と記されている。第五は、1943 年 8 月、シトボンドの憲兵将校と警察が 4 人のヨーロッパ人女性に出頭を命じたというケースだが、女性たちはボンドウオソのホテルにつれて行かれて 2 日間強姦された。そのうち、2 名は自殺を図ったとされている。第六は、1943 年 10 月、憲兵将校が上記 2 名の少女と他の 4 名

これはオランダ政府が、自分たちが持っている資料に基づいて、少なくともこういうケースはあったとのべているものだ。白人の被害を中心にし、また、強制の範囲を非常に狭く取って解釈をしているが、それでも、「狭義の強制」に限っても、これだけの事例を実際に挙げている。

また、戦後、オランダ政府が「慰安婦」問題を極東国際軍事裁判や BC 級戦犯裁判で追及し、数件の「慰安婦」裁判を行ったために記録が残ったということも大きい。その意味で、これら裁判資料や裁判そのものの研究が重要であるが、戸谷由麻氏は、極東国際軍事裁判について、オランダが日本軍による女性の組織的性的隷属を広範囲に立証しようとし、被害女性としてアジア系の女性を選んでいくこと、それが「戦争犯罪」であるという主張を史上初めて確立したことなどを論証した⁴⁹。林博史氏は、軍・官憲による略取の事例を示す極東国際軍事裁判の証拠書類を改めて整理・公表した⁵⁰。

なお、インドネシアに関しては、木村公一氏の研究をはじめかなりの研究があるが⁵¹、オランダ政府所蔵の資料の多くはまだ非公開である。

の女性をボンドウオソのホテルに連行したというケースである。他に 8 名が連行されたと記されている。第七は、マランのケースだが、ある女性の証言によると、マランの憲兵が 3 名のヨーロッパ人女性を監禁して、売春を強いたと記されている。第八は、未遂事件だが、1943 年 12 月、ジャワ島のソロ抑留所から日本軍が女性たちを連行しようとしたが、抑留所のリーダーたちによって阻止されたと記されている。第九は、パダンのケースでだが、1943 年 11 月頃、日本軍はパダンの抑留所から 25 名の女性をフォートデコックに連行しようとしたが、抑留所のリーダーたちが断固拒否した。しかし、11 名が抑留所よりはましだと考えて「説得」に応じた、とされている。この最後のケースは、食料の極端な不足など、抑留所の劣悪で絶望的な環境を考慮すると、自由意志によるとはいいがたいものがある。

⁴⁹ 戸谷由麻「東京裁判における戦争犯罪訴追と判決——南京事件と性奴隷制に対する国家指導者責任を中心に」、笠原十九司・吉田裕編『現代歴史学と南京事件』（柏書房、2006 年）所収。

⁵⁰ 林博史解説「東京裁判で裁かれた日本軍「慰安婦」制度」『戦争責任研究』56 号、2007 年 6 月。

⁵¹ 内海愛子「[スマラン慰安所] 事件」『インドネシア 2』5・6 合併号、1995 年。川田文子『インドネシアの「慰安婦」』明石書店、1997 年。山本まゆみ、ウィリアム・ブラッドリー・ホートン「日本占領下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慰安婦」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慰安婦」問題調査報告・1999』同基金、

それに基づく研究ができれば、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と「慰安婦」政策の実態が相当深く明らかにできるであろう。これら資料の全面公開がつよく求められている。

*

以上のように、戦地・占領地では、軍やその指導下にある官憲が暴力的に連行するというケース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また、『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第4巻に収録された中国・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などに関する研究も重要である⁵²。

(4) 日本軍協力者の問題

戦地・占領地では、総督府に相当する組織がないので、地元での徴募にあたっては現地の軍が前面に出ざるをえない。そこで、部隊の副官や経理将校などが徴募に関わり、地元の有力者に要請し（事実上の命令）、有力者が犠牲者を差し出すというケースや、軍・官憲による暴力的な連行のケースがかなり多くなるのである。これらは、戦地に出かけた経験をもつ元軍人が部隊史を作ったり、体験記を出版したりするという習慣があるために、ある程度裏づけ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れに反し、総督府の職員や植民地の軍にいた軍人には、引き揚げの苦しさを記すこと以外、そのような習慣はない）。

これと関連して、戦地・占領地における日本軍協力者の問題がある。これももっと解明していく必要がある。たとえば、中国におけるカイライ政権と慰安所の設置とは深い関係がある。VAWW-NET JAPAN 編『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全6巻は、この問題の検討を含む、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研究の水準を示す重要な成果だが、この中には、林伯耀・張友棟両氏による研究がある。これによれば、カイライ政権の天津市警察が天津の日本軍の「要請」に応じて「慰安婦」を差し出している実態が天津の警察資料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ている⁵³。私も上海市档案馆にある資料を調べたことがあるが、その中に、上海市政公署警察局長が1938年9月13日に、上海の百田部隊依光隊の依光昇隊長が慰安所（「妓室」）を設置し、江北出身の「妓女」12名を入れているとの報告が上がってきている、軍の不当な要求とも思われないが、ご一考を願うと督

1999年。木村公一「インドネシア「慰安婦」問題」『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第4巻、2000年。

⁵² 以下に紹介するもののほか、陳麗菲・蘇智良「中国の慰安所に関する調査報告」、森川万智子「ビルマの「慰安婦」・性暴力」など。

⁵³ 林伯耀・張友棟「天津の日本軍「慰安婦」供出システム」『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4巻。

弁公署に報告している資料などがあつた。このような資料はもっとあると思う。また、1937年12月に上海派遣軍は南京市に慰安所を作ろうとするが、その時、この任務を担当した長勇参謀は、上海に飛んで、種々工作し、青幫の頭目、黄金榮に依頼して手筈を整えている⁵⁴。

山西省に関しては、石田米子・大森典子両氏の画期的な研究があるがこれによれば、日本軍に協力する「警備隊」の問題がある。この警備隊とは八路軍に敵対する地元の有力者を含む住民を組織したもので、指揮権は日本軍が持っている⁵⁵。そして、この警備隊のメンバーが解放区の女性の略取を担当している。

藤原彰氏の将校時代の回想記によれば、河北省景和鎮にあつた料理屋兼慰安所は写真屋・菓子屋もやっており、麻薬取扱いなどもしていたようだが、地元の地主出身者が隊長をつとめる「特別工作隊」とも深い関係があつたようだと記されている⁵⁶。

私が古本屋で見つけた上海派遣軍軍医部の渡辺進軍医大尉の日記によると、南京に慰安所を作る時に、いくつかのルートから「慰安婦」が調達されるが、そのひとつに、東和洋行という日本の現地企業が女性たちを連れてきて、軍医たちが性病検査をしていると思われる記録がある⁵⁷。

このような日本軍に協力する組織の研究も益々必要になっている。

6. 未成年者の連行・使役

これについては、多言を要しないが、すでに被害者側の証言、日本軍資料、米軍資料などから、朝鮮・台湾出身の元「慰安婦」やフィリピン人元「慰安婦」は、その半数以上が未成年者であつ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他の地域で徴募された「慰安婦」の年齢についても、研究が進むことが望ましい。

7. おわりに

研究の進展にかかせない資料の発掘は、日本の国内では、旧軍人がもっている日記や資料が重要だと思う。中でも防衛庁防衛研究所図書館が所蔵している

⁵⁴ 吉見「南京事件前後における軍慰安所の設置と運営」、笠原十九司・吉田裕編『現代歴史学と南京事件』所収。「飯沼守日記」『南京戦史資料集』偕行社、1989年参照。

⁵⁵ 石田米子・大森典子「中国山西省における日本軍性暴力の実態」『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4巻。

⁵⁶ 藤原彰『中国戦線従軍記』大月書店、2002年。

⁵⁷ 前掲吉見「南京事件前後における軍慰安所の設置と運営」。

業務日誌や従軍日誌の公開が進めば、研究は相当進むと思われる。

それから、今後の発掘が期待されるのは、中国や台湾ではないだろうか。アメリカでの資料公開は、「日本帝国政府記録情報公開法」による新資料の公開が進んだが、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は、未だに非公開となっている資料はほとんどないと思われる。また、戦場でアメリカ軍に押収された日本軍の資料は、現物が保存されていればいいのだが、あまり残っていないようだ。

これに対して、中国や台湾では、国民政府が戦中に戦場で、あるいは戦後に押収した日本軍資料や在外公館資料などがたくさんあるはずだが、いまだにほとんど出てきていない。これらが公開される時がくれば、「慰安婦」問題に限らず、様々な事柄が解明されるはずである。もうひとつは、先に述べたようなカイライ政権の資料、あるいはその警察資料が一部出てきているが、中国各地のそのような資料が公開されれば、資料状況は大きく変わるとと思われる。また、インドネシアに関しては、オランダの資料調査を徹底的にやってみる必要がある。

日本軍「慰安婦」問題とは、侵略戦争を行った日本軍が起こした大規模な重大人権侵害問題であり、女性に対する暴力と人種差別と貧しい者に対する差別が重なっていた。事実は単一ではなく、多面的である。その多面的な実態、全体像を十分な説得力を持つまでに解明する課題はなお残されている。これは、認識論的なパラダイム転換をすれば、すっぱりと解決するような簡単な課題ではない。

また、日本社会で根深くある、中学生に教えるのは早すぎるという言説については、問題を女性に対する性暴力、人種差別、階級差別という問題としてとらえられない問題を感じる。また、現代の軍隊に性暴力がつきまとうとすれば、どうしてそれをなくすのかは、二一世紀にむけての重大な課題である。軍隊と性に関する広範な研究が求められている⁵⁸。

さらに、日本の問題としては、近代の日本でこのような問題が起き、戦後半世紀も放置されてきたわけだが、なぜそのようになったか、近現代日本社会および文化の問題として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⁵⁸ この意味で、田中利幸「なぜ米軍は従軍慰安婦問題を無視したのか」上・下（『世界』627・628号、1996年10・11月）、大久保桂子「戦争と女性・女性と軍隊」（『岩波講座世界歴史』25巻、1997年）、林博史「アメリカ軍の性対策の歴史」（『女性・戦争・人権』（7号、2005年3月）などは、実証的な研究として注目すべき成果である。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여성정책과 일본군성노예제 *

강 정 숙 **

머 리 말

- I. 인력동원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 법령
- II. 일제 말기 선전정책과 여성지식인
- III. 여성노동력 동원
- IV. 가족 . 인구 . 성 정책
 - 1. 인구배분
 - 2. 동화정책

맺 음 말

머 리 말

이 글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일제가 식민지화한 조선여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동원하였으며 또 이러한 여성동원은 일본군성노예의 동원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밝히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식민지화한 조선의 기층여성 삶에 주목하여 兩性關係, 계층, 민족문제가 여성과 여성동원정책 등과 어떤 방식으로 직조되어졌는가를 분석한다.

전쟁시기에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와 달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

* 이 연구는 필자가 소속된 기관과 무관하게 개인차원에서 이루졌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되어 구성원들에 대한 지배권력층의 정책의도와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들은 한 국가만이 아니라 연합전선을 취하는 각 국가, 지역의 전면전의 성격을 띠었고 여기서 식민지란 전면전 수행을 위한 식민모국의 다양한 요구를 다양한 명목하게 요구받게 된다. 여기서 다루는 시기인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¹⁾기간은 근대 전면적 세계전쟁시기였다는 점에서 근대 전쟁의 보편적 요소와 일본이라는 특수한 점을 함께 주목해야 한다.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은 전장범위가 광대하고 1944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현 일본 지역 등 후방에 위협적인 공중폭격이 없는 상황이어서 후방과 전장과의 구분이 선명하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어떻게 전쟁을 잘 지원하는가가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인적 물적 동원을 함께 보아야 하겠으나 이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동원 배경으로서 여성 동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1) 조선 여성들의 동원하기 위한 일제의 조선여성에 대한 인적 파악 2) 조선의 상층지식인 여성들을 앞세운 이데올로기 선전정책 3) 여성노동력 동원 4) 가족·인구·성 정책을 살펴본다.

I. 인력동원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 법령

일제는 본격적인 조선인 동원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조선의 인적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다. 1940년의 노무조사, 1942년 조선기류령에 입각한 기류신고가 그 예이다.

전시가 되기 전에는 인구조사에서 기초적인 것은 호적과 기류등록 등이었다. 인구 조사와 신분등록의 양 측면을 가졌던 호적제도가 인구이동이 심해지면서 호적상의 호는 가족관계 중심의 신분등록체도로 변해갔다. 일제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아닌 인구조사나 거주자 등록이 필요했다.

1) 아시아태평양전쟁이란 용어는 아직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1941년 12월 일본이 제2차세계 대전에 참가하면서 태평양전쟁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교전한 것은 태평양만이 아니고 중국 등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연장선 속에 있다는 점, 또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와의 관련성만 부각되므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본토의 호적제도에서는 처음부터 일정기간 본적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기류’제도를 만들어, 호적과 기류를 연결시켜 운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징병이 실시가 결정된 1942년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기류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고, 호적제도와 별개의 임시적인 거주자 등록제도²⁾가 운용되었다. 물론 경찰은 일상적 순찰을 통해 별개의 ‘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거주사실과 가족사항은 물론, 개인의 사소한 동향과 사상적 성향까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적등본 임시적인 거주자 등록에는 기록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지문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호구조사부에도 전과자, 사상, 독립운동과 관련한 감시대상자, 여행자와 같은 특정범주의 인물들에게만 적용되었다.³⁾

거주등록을 호적제도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결국 [거주규칙]은 1942년에 가서야 [조선기류령]으로 대체되었다.⁴⁾ 기류령 실시는 기본적으로 조선인에 대해 징병하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조선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⁵⁾ 조선총독부는 식량배급표와 자녀취학 등 현실적인 이해와 제국신민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호소하여 조선인에게 기류신고를 유인하였다.⁶⁾ 기류신고는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신고⁷⁾나 무호적자⁸⁾ 신고를 기초로 수행되어서 이 때 처음으로 호적에 등재되고 주거신고를 하게 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호적과 연계한 기류자 파악은 1942년에 시행되었지만 일제의 목적에 따른 조사는 권력말단조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40년 들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노무자원조사’ 사업을 실시한 것도 그 예이다.

2) 1911년 6월 20일 부령 75호 [숙박 및 거주규칙]을 발포된 이후 2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 부면(1915년 이후)에 신고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거주등록은 호적제도와 연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거주 등록시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알기 힘들었고 본적지에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중복이나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서호철,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년 2월, 225쪽.

4) 기류령은 1942년 9월 22일 대일본제국 각의에서 공식결정되고 1942년 9월 26일 조선총독부에서 동년 10월 5일부터 기류령 및 그 부속법령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5) 이명중, ‘조선기류령’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6, 13쪽. 이명중, 일제말기 조선인의 징병을 위한 기류제도의 시행 및 호적조사, 사회와 역사 제74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년 여름.

6) 이명중 2003, 21쪽.

7) 이명중, 2003, 23쪽. 기류신고의 결과로 조선 전국의 기류자는 1942년 10월 28일 현재 10,190,678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는 1941년 말 인구 24,703,897명의 41.25%였다.

8)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조사에 의하면 1941년 말 조선의 무적자 수는 2백6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매일신보, 無籍의 浮動住民 全鮮에 2백60만, 1941.10.11.

노무자원조사⁹⁾는 '노무조정령'¹⁰⁾을 제정하기 전 기초조사로 이루어졌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장기전으로 가게 되자 점차 자원이 고갈되어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노동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전국의 각 도지사에게 통첩한 「노무자원조사에 관한 건」의 〈노무자원조사요강〉은 전국적으로 각 도·군별 노무자원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의 목적은 '군수(軍需) 및 생산력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농촌과 잉노동력의 소재 및 양을 늘 조사함으로써 적정한 노무의 배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 있었다. 조사의 방법은 郡의 이상경지면적을 표준으로 1개 면에 이 면적 미만의 토지경작농가의 호를 노무자원조사표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기초하여 각 도에서는 1940년 5-6월, 9월에는 조선총독부에 결과를 발송하였다. 여기에는 〈노동출嫁 및 노동轉業 가능자 수 조사〉와 〈노동출가 및 노동전업 희망자 수 조사〉가 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각 군별·남녀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2-19세, 20-30세, 31-41세, 41-45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은 12-19세만 조사하고, 남성은 20세 이상만 조사하고 있다. 이 결과 각 도별 과잉호수를 산출한 것을 보면, 당시 총 호수 3,058,755호 중 1/3 정도에 해당하는 1,023,491호가 과잉으로 집계되며, 특히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강원도가 많이 과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도별 보고 중 12-19세의 여성에 대한 것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¹¹⁾

〈표 노동출嫁·노동轉業 가능자 및 희망자 수〉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경기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총계
가능자수	19304	44671	11408	17631	39967	17785	4760	6017	11030	12667	33179	3478	10744	232,641
희망자수	2815	3691	1790	1544	3938	2717	325	513	1000	1127	721	29	557	20,767

표에서 보면, 12-19세의 여성노동력 중 전업이 가능하다고 본 수는 232,641명이며, 실제로 전업을 희망한 여성은 20,767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구장, 예국반장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여성들을 동원하는데

9) 조선총독부, 노무자원조사관계서류, 1940, (전시하조선인노무동원기초자료집1, 桶口雄一 편, 綠陰書房, 2000에 수록).

10) 노무조정령은 조선총독이 지정한 공장의 종업자의 해고 또는 퇴직의 경우 인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능자와 노무자의 이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다.(朝鮮總督府官報 1942.1.10 每日新報 1942.1.11).

11) 여성부,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집 (1)』, 2003.

기초가 되었음에 분명하다.

일제가 각종 법령과 이와 관련된 방침들을 통하여 동원하려고 하였던 여성들의 나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각종 법령과 방침과 여성동원연령 >

공포 시행 연도	법률 혹은 방침명	조선	일본
1939년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일명 국민등록제)	여자 및 50세 이상의 남자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능자를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여성에게도 적용(1940년 10월 개정에서부터)하여 1944년 2월 통합국민등록제에서는 연령을 12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자
1940년 1월 31일	청소년고입제한령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여성에겐 적용하지 않음	12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자
1940년 3월	노무자원조사	여성은 12-19세, 남성은 20-45세	
1941년 12월 1일 시행	국민근로보국협력령(勅令 第995號)	근로보국대는 14세 이상 40세(1944년 11월 개정에선 60세) 미만의 남자,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는 제외)(1944년 11월 개정엔 40세 미만의 여자)이며 지원가능	
1942년 1월 10일 시행(1941.12.10 공포)	노무조정령(勅令 第1063號)	접객업, 오락업 등에 있어 여자청소년(대개 연령 12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의 사용제한을 실시할 것	
1943년 11월	노무강화대책요강	신규학교 졸업자 및 연령 14세 이상의 미혼자 등의 전면적 동원체제	
1944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	강제규정없고 지원가능	만12세 이상 40세 미만 여자를 정신대 편성 1년간 의무

이처럼 전쟁수행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나날이 부족해지는 인력 부족

을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조선의 여성노동력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들의 각종 노동현장으로의 진출은 일찍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일제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분리될 수 있는 여성노동력은 주로 미혼여성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여성들은 결혼연령이 어려서, 실제로 일제가 주목한 여성노동연령대와 위안부로 동원한 여성들의 연령과도 겹쳐 있었다.

II. 일제 말기 선전정책과 여성지식인

일제 말기 이전에 일제가 젠더정치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정책으로 생각된다. 일제는 조선을 명실상부한 식민화를 위한 '풍화사업'으로서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일제는 1911년 8월에 공포한 조선교육령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목적에서 “부녀자의 덕목을 길러……성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듯이 교육방침을 정숙하고 근검한 여자 양성에 두었다. 교과목은 다양했어도 실제로는 이과, 가사, 재봉, 수예에 많은 시간을 쏟게 하였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층은 상층여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층 조선여성의 교육방침은 근대라는 시점에 있지만 미래의 주부에게 필요한 가사노동 등에 관한 지식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 직업교육이나 여성 지위향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대신 일제는 여성교육을 통하여 조선의 가정을 장악해 나가려는 의도를 초기부터 보이고 있었다.¹²⁾ 이것은 1930년대에 재해석된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글이다.

조선인 여자교육은 남자교육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제적 융합과 사회적 융합은 식민정책의 기초가 되지만 그 가운데에도 후자, 곧 사회적 감정의 융합이라는 것이 한층 더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성공을 하면 경제적 융합보다도 더 힘있는. 사회의 기초를 굳게 하는 시멘트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하여서든지 부녀자를 감화시키는 데서 들어가는 것이 지름길이다……자각심이 적은 감정적인 부녀자가 남자보다 훨씬 감화시키기가 쉬운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그런데 여자가 감화하면 남자는 저절로 감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밑에서부터 두드러가지 않으면 통치의 근거가 진정하게 되지 못한다.

12)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1992.

조선인의 가정을 풍화하는 것은 곧 전 사회를 풍화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우리와 저들과의 감정적 융합이란 것이 영구히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도 될 수 있는 대로 일본 부녀자를 써서 학생이 학교를 나가더라도 자유로이 가정에 출입하면서 영원히 풍화의 원천이 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생략)

이 글은 1914년 당시 법제국 참사관이었던 하라 소라이치로(原象一郎)가 쓴 『조선의 려(旅)』란 책에 실렸던 것이다. 우가키 총독 시기에 학무과장이었던 오노(大野謙一)가 이 내용을 달건이었다며 1936년에 다시 거론한 내용이다.¹³⁾ 조선여성을 파고 들으로써 조선인 가정이 일본 식민지로서 무리없이 융합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용어가 바뀌어도 식민정책 수행을 위해 조선여성교육을 장악해야 한다는 일제의 입장은 식민 지시기 내내 계속되었고 특히 일제가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 갔다.

그런데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들어온 여성에 제한되는 것이었다. 교육받은 여성들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해도 1920년대는 민족해방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어 민족 우파운동에 관여한 여성들도 일제 정책이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준전시체제에 돌입하여 일제는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일제 협력자 즉 반민족친일분자의 양성으로 나아갔다. 여성지식인 등에 대해 일제는 차츰 체제 내적으로 끌어들이고 여성지식인 일부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온존해 주는 대신 일제의 정책에 순종하고 일제의 정책을 선전대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30년대 전반기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조선여성도 학교 교장교사 등 교육계, 종교, 사회단체 등에서 이미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다수의 여성단체 및 조직들은 비타협적 혹은 사회주의적 운동 경향을 띠었고 내적으로 생활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는 일제 및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의 결과로 삶이 피폐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어떠한 방식이든 일제체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를 지나면서 사회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 여성들은 이념에 따라 양분되었다. 한쪽은 민족해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망명하거나 지하운동 등으로 들어갔으며 다른 한쪽은 일제의 탄압과 회유 속에서 일제와 타협하여 활동하였다.

농촌진흥운동기 일제는 여성에 대해서 가장 자주 내건 구호는 기혼여성들의 옥외노

13)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1936, 307~308쪽.

동 생활개선 저축장려 등이었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관제여성단체를 만들었다. 1934년 3월에는 충청북도에만 해도 총499개 회원이 17,000여명에 달하였다.¹⁴⁾ 국내 외에서 이러한 조직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수가 만들어졌지만¹⁵⁾ 특히 주목할 것은 지식인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부인문제연구회이다.¹⁶⁾

이러한 일반인, 나아가 조선여성지식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사전 작업을 한 이후 조선총독부는 1937년 10월 社會風潮一新 生活改善 10則을 제정하였다.¹⁷⁾ 이 시기까지만 해도 여성에 대한 공개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은 외면상으로는 그리 정치적 색깔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민족해방운동이나 민간단체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활동내용을 조선총독부의 목적에 따라 체제내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였던 '조선민족'을 국가 '일본'으로 대체해 갔다.

1938년에 가서는 조선총독부는 동창회 총연맹 발회식을 하여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을 체제 내로 끌어내었다.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 특히 여성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효과가 크다며 총독부 사회교육과에서는 중등학교 동창회 총연맹을 결성케 하여 2만 여명의 신여성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관련된 기사이다.¹⁸⁾

이 비상시국에 있어서 일반의 생활과 정신을 긴장시키고 장기전에 대처함에는 무엇보다도 가정으로부터 또는 여성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일단 강화하여야만 그 효과가 가장 크다 하여 총독부 사회교육과에서는 경성부내에 있는 十六교 중등여자학교 동창회총연맹을 결성시켜 회원 二萬여명의 신여성을 동원시키기로 하였다.

14) 東亞日報 1934.4.27.

15) 1934년 8월 3일 閔炳珪이 日本 東京에서 朝鮮人生活改善同盟을 조직(朝鮮獨立運動史 第3卷 640쪽)하였고 咸興救濟財團에서는 共濟團으로 이름을 바꾸고 會의 目的을 文化向上 生活改善 相互扶助 등을 내세웠으며(東亞日報 1935.7.20) 滿洲 新京郊外 寬城子村의 韓人青年 40餘名은 社會奉仕 教養生活 民衆生活改善을 目的으로 青年會를 창립(東亞日報 1936.4.16) 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 農村部에서 農民修養所를 설립하여 강조한 것도 생활개선 등(朝鮮日報 1936.10.24)이었다.

16) 金活蘭孫貞圭 등이 중심이 되어 婦人問題研究會가 조직되었다. 婦人問題研究會는 婦人問題·生活改善問題·修養問題 등을 연구함을 目的으로 하였으며 修養部·生活改善部를 두고 金活蘭이 修養部를, 孫貞奎가 生活改善部를 담당기로 하였다(朝鮮日報 1937.1.31).

17) 東亞日報 1937.10.10 社會風潮一新 生活改善 10則은 아래와 같다. 一. 時艱의 克服, 一致團結 二. 不動의 精神, 困苦에 堪耐하라. 三. 協力一致, 銃後의 堅固 四. 일하라. 自身을 爲해, 國家를 爲해 五. 豫備하라. 恒常 있는 힘을 다해 六. 陋習의 打破, 外形보다 精神 七. 잘 研究하여 物件를 活用하라. 八. 舶來品보다 國產品 九. 쓸 데 없는 것은 그만두고 國力을 培養하라 十. 싸움에 이겨도 奢侈에 지지 마라.

18) 동아일보, 非常時生活, 精神作興에 二萬의 新女性動員 十二日 「同窓會總聯盟」 發會式, 1938.6.08(21).

이 연맹의 결성을 벌써부터 준비를 진행하여 오던 중 이미 모든 준비가 정돈되었으므로 오는 十二일 오전十시부터 부내부민관(府民館)에서 발회식을 거행하기로 되었고 이날에는 재경각여학교 동창회 대표 一千五百여명이 출석하기로 되었으며 총독부 측으로는 남(南總督) 김사회교육과장(金社會教育課長) 이하 다수 관계관과 각 여학교 당국자도 참석할 터이다. 그리고 동연맹의 목적은 각 가정에서 생활개선(生活改善) 소비절약(消費節約) 시국인식(時局認識) 등 기타 가정생활 내지 사회생활에 적절한 실천운동을 장려조장시키게 하는데 주력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조선여성들은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고등교육을 받았던 여성들도 취업의 기회가 적어 전업주부가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일제가 이러한 여성을 공공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동창회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꽤 큰 비중을 둔 것은 미나미총독이 참석한다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이후 얼마나 일제의 조치에 대응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일제는 생활개선·소비절약·시국인식이란 중간층에 적당한 구호를 내세운 다음 각 관제조직과 일제의 정책에 순종하는 여성지식인들을 앞세워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게 하였다.

위 부인문제연구회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¹⁹⁾ 내선일체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던 [녹기연맹]에서도 츠다 세쓰코를 중심으로 한 '조선부인문제연구회'가 조직되었다. 1938년 7월 미나미 총독과의 면회를 통해 세쓰코는 조선의 여성 및 가정생활의 개선책을 건의했고, 2개월 후 총독부 지시로 조선부인문제연구회가 발족했다. 이 모임은 당대의 여성교육 지도자였던 손정규(孫貞圭), 조기홍(趙圻洪), 임숙재(任淑宰) 등으로 구성되어, 이른바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의 기본양식'을 제창하며, 조선인 여성에 대한 황민화 운동에 앞장섰다.²⁰⁾

제주일본인여성과 조선여성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전시체제기 여성들의 활동은 전시체제의 강화와 인적 물적 동원과 전시생활에서의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제의 필요에 의해 이들의 활동영역은 확장되었다. 이들은 생활개선, 소비절약, 개로노동, 시국인식 등 몇 가지 고정 레퍼토리를 시기에 따라 지원병 학병 징병 여자근로정신대 등을 권유하며 일제정책을 미화선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부일협력자 여성들이 어떠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²¹⁾

19) 부인문제연구회를 조직하였던 손정규가 이 조직에서도 중심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아 조직적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 李昇燁, 「〈新女性〉: 식민지시대 말기 여성의 '皇民化'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1998.

21) 河かおる, 「총력전 하의 조선여성」, 『역사평론』, 2001.4, 이승엽의 앞글과, 석사논문이 참고할

Ⅲ. 여성노동력 동원²²⁾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 노동력을 파악한 대표적인 것이 1939년 시행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일명 국민등록제)이다. 국민등록은 일본에서는 여성에게도 적용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여자 및 50세 이상의 남자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능자를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정연령층을 일제가 요구하는 산업에 배치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1월 31일)도 12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자이나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여자에겐 적용하지 않았다.

법률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법률로 여성들을 광범하게 동원하였던 근로보국대, 학교보국대였다. [근로보국협력령]에 의한 근로보국대는 14세 이상 40세(1944년 11월 개정에선 60세) 미만의 남자,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는 제외)(1944년 11월 개정엔 40세 미만의 여자)가 일률적인 적용대상이었고 지원의 경우 이 범위에 제한되지 않았다.

그러나 「府尹郡守島司회의 자문 및 청취사항 답신서」(1942년 5월 부윤군수도사회의, 전라남도)²³⁾ 곡성군 자료에는 ‘勤勞報國隊則을 강화하여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자에만 한정하지 말고 노동능력이 있는 부인은 계급의 귀천, 가정의 빈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반드시 근로보국대에 참가 봉사시킴은 물론 공동작업을 실시하여 근로호애의 정신을 함양’한다고 하였다. 근로보국대령이 공포되어 대상연령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지방차원으로 내려가면 실제로는 위와 같이 노동력 동원이 가능한 여성들은 애국반, 근로보국대 등에 편제되어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

1943년 11월 [노무강화대책요강]에서는 여자유휴노동력 적극 활용방침으로 ‘여자의 특성에 적응하는 직종을 선정하고, 신규학교 졸업자 및 연령 14세 이상의 미혼자 등의 전면적 동원체제를 확립할 것.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 관리 기타 제 시설 등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할 것. [노무조정령]을 개정하고 집객업, 오락업 등에 있어 여자청소년(대개 연령 12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의 사용제한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노무조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자청소년으로서 경찰 단속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만하다.

22) 노동력동원에 관한 법령은 아래 글이 있다. 강정숙, 서현주, 「일제말기 노동력 수탈정책」,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23)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본건에 준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 여성 동원과 관련하여 장기간 거주지를 떠나 동원하기 위한 법률에서 여성에 대한 적용은 대부분 보류되었다. 조선 내 남성인력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그 부족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조선여성의 노동 수준과 질 등이 관련있었을 것이고 가부장제를 인정해 주면서 조선여성을 동원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원거리, 장기간 동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자근로정신대, 전지로의 간호부 등이 바로 그것이며 군위안부 기업위안부로의 동원된 여성들은 동아시아 전장터 전역에 배치되어 수년간 노예적 처지에 있었다.

1944년 8월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도 조선에서는 법률적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에 의해 대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법령이 공포되기 전인 1944년 봄부터 명목상 지원에 의한 소녀들의 여자근로정신대 동원은 이루어지고 있었다.²⁴⁾ 그러나 지원은 순수하게 자발성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위해 학교나 단체인 등이 앞선 동원에 앞장섰다. 교사와 관리 등의 권위를 앞세워 '지원하면 일본에서 여학교에 갈 수 있다. 돈을 벌어 금의환향할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끌어내었다.²⁵⁾ 소녀들이 지원한다고 곧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미성년 소녀는 무능력자였고 부모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때문에 일제는 딸의 지원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학부형에 대해 각종 엄포와 압력을 사용하였다.

12-3,4세의 어린 소녀들을 동원해 가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들 소녀들이 동원되었다가 지진이나 폭격에 의해 사망하여도 가족에게 그 피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²⁶⁾ 조선인에 비해 일본인 여자근로정신대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제의 무리한 조선 소녀의 동원은 당시 일본어를 이해하고 노동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층으로 국민학교 졸업 전후의 소녀들을 주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선의 결혼연령이 일본에 비해 어렸고, 일본어를 해득률도 낮아 국민학교를 졸업하여 일본

24)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해서는 여순주, 일제 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4, 여순주, 정진성, 「日帝時期 女子勤勞挺身隊의 實相」,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등의 글이 있다.

25)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후원회, 『내 생전에 이 한을』, 신은주 역, 예원: 광주, 2000, 57쪽.

26) 필자가 근무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여성피해자들 중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여성수가 적지 않지만 일본정부가 여자근로정신대 등으로 동원한 여성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고 어떻게 돌아오지 못하는가를 아직도 몰라 애태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를 할 수 있는 이들을 일제가 끌어낼 수 있는 여성노동력으로 주목하였던 것이다. 1944년 제국의회설명자료의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中 노무배치대책을 서술하는 데에서 조선총독부측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었다.

반도의 민중은 民度가 낮아서 전시 하 노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얇고 근로보국 대 출동도 심지어 징용이라 하고 일반 노무모집에 대해서도 기피·도망 혹은 부정폭행의 주먹을 날릴 뿐만 아니라 **미혼여자의 징용은 반드시 그 중에 위안부가 되는 것처럼 황당무계한 유언을** 항간에 퍼뜨리니 이들 악질 유언과 더불어 노무사정은 금후 날로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²⁷⁾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혼여성들의 징용은 반드시 위안부가 되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다. 여성들의 징용은 특수직종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노동자로 혹은 간호일을 시켜준다면 구장이나 순사와 함께 다니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집하여 위안부를 삼은 사례는 피해자 증언에서 다수 발견된다. 노동자 모집원이 공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여성을 인육시장에 팔아넘긴 사건도 있었다.²⁸⁾ 일제는 조선의 민중의 민도가 낮아서 관에 의한 노무동원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일제의 폭압 속에서 유언비어는 공식보도보다 더 사실을 전할 때가 많았고 일제가 기밀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하여도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구금되는 실정이었다. 민족차별을 받고 있던 피지배민족 민중이 느끼고 있던 일제의 강제성에 대한 이해이며 비조직적 대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애국심으로 어느 정도 자발적 동원에 성공하였던 일본인들과의 차이이기도 하였다.

IV. 가족. 인구. 성 정책

일제는 여성의 성 정책에서도 계층별, 민족별로 다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은 하층 빈민여성으로 공창제도에 편입된 매춘여성들, 노동력과 노동력 생산의 대상으로 된 노동자 농민 여성, 내선일체 내지 황국신민화의 한 방편으로서 강조한 한국인이나

27)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編, 「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4. 龍溪書舎:東京, 1997.

28) 경성지법 판결문 〈昭和14年 刑公 第1309號〉.

일본인과 통혼한 여성 등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계층별로 또 조선여성과 일본여성의 민족적 차이가 엄존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천황제 파시즘 국가의 통치의 부분적 측면으로, 전체적으로 파시즘 국가 하의 가부장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일된다.

조선시기에도 신분제도로써 음성적으로 그 기능이 상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고정적이고 직업적인 매춘제도의 도입은 일제 침략과 더불어 들어온 공창제도²⁹⁾로부터 시작되었다. 공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여성의 몸, 성은 공창제에서 보듯 일제 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전시체제기에는 후방의 '일반 여성'들에게 또 다른 성 통제 정책을 펴 임신출산, 피임 금지, 우생학적 적용 등과 같은 개입이 이루어졌다. ³⁰⁾ 여성의 몸, 성을 국가, 사회의 이름으로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등에의 일제의 개입은 독려 수준일 수 밖에 없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양가 감정-징병제 실시 등과 같이 일제 내로 편입시켜야 하는 측면과 전쟁말기에 까지 믿지 못하는 양 측면은 조선여성 일반에게까지 적극적 개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³¹⁾

일제가 침략시기 인류학 우생학 등과 관련하여 일본과 다른 조선인을 연구하기 위해 조선인인골에 대한 채집 연구한 것이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일이다. 일본은 사람의 두개골을 연구자료로 삼은 적이 있었고 이것은 식민론과 인종론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³²⁾ 이러한 경향은 박람회에도 실제 인간을 전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대 초기의 폭력성이 잘 드러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은 일제 초기까지 꽤 비중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점차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선민족을 열등하다든지 조선의 문화를 없애려는 시도로 지속되었다. 일제말기에 와서는 조선민족을 황민화 내선일제 등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일본국민화하려고 하였다.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통혼은 앞선 시기부터 진행되었지만 1930년대 말에 가면 내선

29) 공창제도와 관련해서는 손정목,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 『도시행정연구』 3, 서울시립대 도시행정연구소, 1988, 야마시다영애, 「한국 근대공창제도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송연옥,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국가적 관리매춘: 조선의 공창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32집, 1994,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1997, 강정숙, 「대한제국. 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호, 1998 등이 있다.

30) 소현숙,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출산통제담론의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과 안태윤, 일제하 모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1 참고요.

31) 일제 말기 여성정책에서 식민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관점을 달리 한다. 좀더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부분이다.

32) 박맹수, 「동학군 유골과 식민지적 실험」, 『한국인, 몸의 사회사』, 한국사회사학회, 2004.10, 103쪽.

일체를 강조하면서 통혼정책³³⁾이 강조되었다. 조선총독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회에서는 '내선인의 통혼을 장려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³⁴⁾을 지적하고 있다. 1940년 2월에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3차 개정(창씨개명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은 이러한 통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³⁵⁾통혼정책과 관련하여 일제는 조선민사령 제3차 개정은 '내선통혼 및 內鮮緣組에 관하여 남아 있는 유일한 장벽을 철폐하여 내지인 남자가 조선인의 양자로서 그 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³⁶⁾이라며 통혼정책의 활성화의 방침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도 '혈연의 융합을 촉진시키는 것은 그 우수한 내지인의 피로써 조선동포의 황국신민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³⁷⁾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와의 통혼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가정에서의 일본적 훈육은 남편이 내지인일 때보다 처가 내지인인 경우가 보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며 좋은 경향'³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모순점이 있었다.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면, 그 자식은 당연히 조선적(朝鮮籍)에 편입되어 조선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내선일체의 이념목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내선결혼을 가로막을 뿐더러, 일본인 어머니에 의해 일본식 생활양식에 의해 자라난 2세의 사회·정치적 존재는 여전히 조선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³⁹⁾ 실제로 통혼의 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상형을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사적인 혼인에까지 국가권력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⁰⁾ 여성의 측면에서 보면, 통혼정책은 여성이 조선인이든 아니든 어느 쪽이나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여성 개인에게 이혼 등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33) 통혼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글이 있다. 최유리 일제하 통혼정책과 여성의 지위, 『국사관논총』, 제83집,鈴木裕子, 『從軍慰安婦. 內鮮結婚』, 동경: 미래사, 1992.

3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회자문답신서, 1938.

35) 이외에도 1944년경에 작성된 극비문서 '조선통치시책 기획상의 문제안'(『戰時期 植民地統治資料』 제7권, 水野直樹편 柏書房, 東京, 1998, 178-180쪽)에서도 '2. 가족제도에서는 내선통혼에 지장을 주는 것 같은 것은 점차 지도에 의해 개선하도록'이라 하여 패전까지 지속되었다.

36) 野村調太郎(1940), 조선가족제도의 추이, 『조선』 296, 21쪽.

37) 조선총독부, 조선통리와 황민화의 진전, 1943(최유리 앞글 144쪽에서 재인용).

3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사월보(최유리 앞글 158쪽 재인용).

39) 玄永燮, 「內鮮結婚論」, 『新生朝鮮の出發』, p.104(初出: 「內鮮一體內鮮相婚」, 『朝鮮及滿洲』 1938년 4월호), 이승엽, 녹기연맹의 내선일체운동 연구 -조선인 참가자의 활동과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쪽에서 재인용.

40) 일제가 적극적으로 개개인의 혼인에 직접 주선하는데 까지 나아간 것인지 어떤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표 2〉 조선인·일본인간 혼인수

연 도	夫가 조선인 妻가 일본인	夫가 일본인 妻가 조선인	계
1936	19(조선 내)	21(조선 내)	40
1937	26(상동)	23(상동)	49
1938	836(조선·일본포함)	68(조선·일본포함)	904
1939	900(상동)	105(상동)	1,005
1940	1,116(상동)	97(상동)	1,213 ⁴¹⁾
*1944.3.1현재 합 계	10,428(일본 내)	272(일본 내)	10,700

출전 : 조선총독부,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1941.12, * 표의 출전은 조선총독부, 〈朝鮮·臺灣人の參政權に關する參考資料〉(1944)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이 조선과 일본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일본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일본인들의 피임 낙태에 대해서 일제는 일찍부터 이것을 금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1930년 이전 일본에서 여성의 성의 자유,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피임과 낙태문제를 다룬 여성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1930년 12월 27일 內務省 令 제40호 [有害피임기구 取締法]이 공포(1931년 1월 10일 시행)되었다. 이것은 타태죄(墮胎罪)(형법)와 함께 피임과 낙태를 다룬 여성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 당시 산아조절을 인정하라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었다. 1933년 내무성령 [診療署取締規則]의 공포, [醫師法] 개정에 의해 일본산아제한협회가 경영한 오사카(大阪)우생상담소는 1934년 2월 폐쇄당하는 데 이르렀다.⁴²⁾

침략전쟁이 확대되어지자 병력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의 양, 질의 증강이 추구되고 조혼, 다산이 계통적으로 장려되어져 갔다. [國民優生法](1940년 제정)과 [인구정책확립요강](1941년 각의 결정)에 의해 악질유전병보유자 이외는 피임을 목적으로 한 불임조치를 금하게 하고, 의사는 불임수술,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사전 계출을 의무화하고, 피임, 낙태 등의 인위적 산아제한을 금지하는 출생증가방책이 제출되었다. 그리하여 산아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로서 엄중히 단속되어져 이 운동은 모두 탄압을 받았다.⁴³⁾

41) 1940년 1년간 조선 내에서 내선결혼한 137쌍 중 106쌍이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이었다. 「表彰された内鮮結婚者」, 『内鮮一體』 2-4(1941년 4월호), pp.67. (이승엽, 73쪽에서 재인용)

42) 藤目ゆき, 『性の歴史學』, 不二出版, 1999, 271쪽.

위 사실은 일본에만 해당되는 사실이다. 일제가 조선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형법 속의 타태죄는 일제가 일본 형법을 조선형사령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켜 일제시기 내내 조선에도 적용되었지만 위 일본의 내무성령과 같은 법은 조선에 없었다. 이는 산아조절이나 피임, 낙태 등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적 움직임이 적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일제 정책에서 조선과 일본에 적용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외면적으로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출산장려 운운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한 실제적인 시책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바로 위 노동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문제에 대해 대응한 일제 탁아정책 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래 일본 공문서자료는 인구와 관련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朝鮮統治施策 企劃上の 問題案]⁴³⁾

1. 인구배분

지리적, 문화적, 혈족적 환경에서 생성되는 민족감정을 大和민족화하기 위해서는 수적 및 문화적 우위를 요청하므로 조선민족의 수는 가급적 소수인 것이 적당하다. 그런데 현재 이미 2천4백만을 달하여 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을 자극하여 오히려 동화를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 하에 일부 이주, 증가억제 등의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금 그 수적 한계에 있어 고려하는데 조선은 장래 20년간에 공업화 등에 의해 적어도 3천만의 인구포용력을 가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선인의 증가추세, 내지증가인구의 배치, 동화수행상의 난이 등의 요청에 의해 비교 고려하여 3천만인 중 조선인 2천5백만인, 내지인 5백만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선인은 현재의 증가추세 2%으로 추이하는 것으로 하면 20년 후에는 3천오백만에 달하므로 조선 내 인구를 2천 5백만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개 다음의 정책을 찾는 것으로 한다.

(1) 증가인구의 억제

- ① 조혼의 폐풍을 타파하는 것과 함께 여자의 혼인연령을 현재에 비해 대개 2년 올려 20세 이상에 달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남자에 있어서도 대개 5년 올리도록 지도한다.
- ② 여자근로를 장려하고 여자를 내방에서 사회에 해방하도록 지도한다.

43) 藤目ゆき, 앞책, 274쪽.

44) 조선통치시책 기획상의 문제안, 『戰時期 植民地統治資料』 제7권, 水野直樹편 柏書房, 東京, 1998, 178-180쪽 이 문서는 위 자료집에는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으나 河かおる의 앞글에서는 비슷한 문서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내무성 문서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도 일본의 인구정책과 '외지' 인구정책은 구분되어 차별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남자의 단신출가를 장려하고 경제생활의 향상을 꾀도록 지도한다.
- ④ 억제방책에 적당한 우생법을 시행한다.

(중략)

2. 동화정책

조선인의 민족감정은 그 언어, 풍습, 역사,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혈연공동의 의식 내지 긍지이므로 이를 타파하고 점차 일본 민족으로 하여 의식 내지 긍지로 바뀌도록 지도를 집중하는 것으로 한다.

- (1)정신훈련(생략)
- (2)언어대책(생략)
- (3) 풍습개선

될 수 있는 한 대화민족의 풍습을 이식하고 조선인의 모방을 순치하도록 지도할 것 그를 위해

- ① 복장에서서는 될 수 있는 한 대화민족의 모방을 하게 하지만 필요하다면 국민복 등의 장려에 의해 조선재래 복장의 상용을 혐오하고 피하도록 지도한다.
- ② 가족제도에서는 내선통혼에 지장을 주는 것 같은 것은 점차 지도에 의해 개선하도록
- ③ 연중행사 및 관혼상제에서는 노력하여 대화민족을 모방하게 한다.
- ④ 식사에서는 음식 및 식사양식 등에 대화민족의 양식을 모방하도록 지도한다.
- ⑤ 주택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대화민족의 양식을 모방하게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선 절충의 양식을 장려한다.

(4)종교대책 (이하 생략)

위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제가 조선인, 조선민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선명히 보여주는 예이다. 일제가 조선인 여성의 피임낙태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하였던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깊이 간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또 단순히 탁아소에 대한 조선총독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은 단순히 예산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일제가 조선인의 인구 증가를 극히 우려하고 일본인에 의한 조선지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방식으로 조선인의 인구를 통제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일제는 조선인에게 조선의 제 문화를 혐오하게 하여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수는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통혼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 노동력동원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말기로 가면서 일제는 유흥업에 대

한 통제와 함께 유곽, 요리점 등 접객업소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하였다. 노동력배치라는 측면과 전쟁말기 극심한 물자부족 속에서 유흥업이 전과 같이 존립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관련하여 유흥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전업폐업을 해야 하는 수가 늘어났다.

일제의 노동력 편제 시도가 곧 접객업 여성들의 노동자 농민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일제의 유흥업 단속, 유흥세 인상, 조선의 전쟁물자동원을 위한 가혹한 수탈에 의한 조선인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은 유흥업 종사여성들을 오히려 군위안부나 기업위안부로 동원되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폐창운동가들은 일본 국내에 폐창운동을 건인하여 폐창에 동의하여 폐창하는 현들이 있었다. 폐창운동을 주도한 층은 창기의 처참한 생활에 대한 인도적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나 활동가들은 전지에도 여러번 방문하여 분명 군위안부들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안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전쟁말기에 들어가서는 전쟁에 협력하고 국민순결동맹을 결성하여 '순결보국운동'⁴⁵⁾에 나서 일종의 남성의 이중적 성도덕을 강화하고 일제의 파시즘체제에 동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전력증강을 위해 새로운 구상 하에 기업정비를 행하는 것으로 하여 드디어 '접객업의 정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특수시설의 소재지 신흥지대로서 이 종류의 업태의 존재도 특히 필요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고려할 것'⁴⁶⁾라고 유보조향을 두었다. 더구나 1943년 12월에는 일본 경보국에서 청부현 장관으로 보내는 통첩에서 '조선인의 창기 등록신청에 관해서는 1910년 9월 [內務省秘 第927號]⁴⁷⁾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爾今 이를 용인'⁴⁸⁾한다는데 이르렀다. 이것은 기업위안부제와 직결되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기업위안부제는 일본정부, 군, 기업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제도로서 기업위안소를 만든 직접적 요인은 기업위안부를 통해 노동자의 성적 욕구를 채우게 하여 노동효율, 동원된 노무자 도망방지, 노무자 성병예방 등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안소를 설치하는 측에서 위안부가 된 여성에게 '도망방지와 증산 격려의 책무를 여자들에게 지우고자'⁴⁹⁾하였던 데서 보듯이 조선 여성의 몸과 정서는 남성노동력에 의한 생산력 증강을 위해 이용되고 있었다.

일본의 폐창운동단체는 일본내에서는 폐창운동을 하면서도 조선인과 중국인 여성

45) 鈴木裕子 『페미니즘과 조선』, 今中保子, 「1920년대-1930년대의 폐창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일본여여성사논집 9 性と身體』, 총합여성사연구회편, 1998.6, 152쪽.

46) 『경찰연구』 제14권 제10호, 1943.10, 79쪽.

47) 바로 이 공문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이 시기에 나온 다른 공문을 통해 조선인은 일본에서 창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8) 『경찰연구』, 제15권 제1호, 1944.1, 76쪽.

49) 히구치(1992), 정진성(2003) 글 참고.

을 동원하여 기업위안소 설치나 전장에서 광범하게 설치되고 있었던 군위안부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

계층별, 민족별로 다중적인 태도를 취하여 일본 여성 중 성매매 영역에 있었던 여성 혹은 그쪽으로 동원될 여성과 '일반'여성에 대해선 엄격한 선을 긋고 있었다. 이에 비해 타민족 여성에 대해선 제한을 하고 있는 공문서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물론 타민족의 경우도 위안부 동원은 대부분은 계층적으로 제한되기 마련이다.

맺 음 말

일본군성노예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특성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일본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수만명의 여성들을 강제동원한 것은 인류역사상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근대전쟁에 있어서 원활하게 전쟁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여성의 성을 도구화한 것은 일본만은 아니었다. 제1차, 2차세계대전기 독일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있었다.⁵⁰⁾ 뿐만아니라 일본은 패전 후에도 일본의 여성을 지키기 위해 점령군의 위안소를 만들었다. 일본군 출신자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군 위안소도 한국전쟁기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위안소를 설치한 예가 있다.

이 문제는 분쟁지역이나 전쟁기 여성의 성동원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관습적으로 인간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인간해방의 방향으로 바꾸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있는 국가권력이다. 그런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국가권력이 앞장서 제도를 만들어 남성의 성욕해결을 위해 여성을 희생하였던 사실은, 왜곡된 양성관계를 증폭시키며 자기 민족내 계급정치이며 타민족여성에 대한 민족차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 인식의 공유와 확산은 인류사회의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0) M. 힐슈헤르트 감수(1930), 『戰爭と性』, 高山洋吉 역, 동경:河出書房, 1956.

정현백, 나치의 강제매춘정책과 인종주의, 역사비평 통권66호, 2004 봄, 274-299쪽.

크리스타 °파울(Christa Paul)(1994), 나치즘과強制賣春, イエミン惠子 등 역, 明石書店, 1996.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와 나치독일수용소의 강제성노동, 2007.11 참고.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여성정책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 서현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징집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

윤 명 숙**

1. 시작하면서
2. 용어 문제
3. 중일전쟁 직후 일본국내 및 조선에서의 징집 실태
4. 조선국내의 소개업과 경찰단속의 실태
5. 끝맺음을 대신하여

1. 시작하면서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한국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신대'나 논문에 주로 채용되는 일본군 '위안부', 혹은 NGO단체에서 강력히 제안하는 일본군성노예, 그 외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까지 일본군 '위안부'를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다. 이들 용어에 대해 검토하면서 사용 경위와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역사용어에 대한 제안도 함께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실태의 특징을 밝힌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일본의 공창제도가 소개업과 함께 국내 여성을 공급하던

*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는 일본군 '위안부'(군'위안부)/일본군위안소(군위안소)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역사적 용어로 채용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처럼 말그대로의 의미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따옴표를 붙여야 하지만 본문 이하 편의상 따옴표는 생략하였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매카니즘이 어떻게 '위안부' 징집에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 국내의 주산업의 실태와 이를 단속하는 식민경찰의 실태를 통해 항시적인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용어 문제¹⁾

한국사회에서 군위안부문제는 일본국내보다 이른 시기인 1988년경, 여성단체에 의해 문제제기 되었다. 당초는 '정신대'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1979년 10월, 18년간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리지만 군사독재는 전두환으로 이어져, 오랜 기간 민중의 소리는 억압되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은 1970년대 이래의 민주화투쟁 승리로 평가되는 '6.29선언' 발표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한국내 민주화의 진전은 여성운동에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매춘문제를 다루었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여성단체가 '정신대'문제도 함께 다루기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윤정옥, 김혜원, 김신실 3명이 1988년 2월 12일 부터 21일까지 후쿠오카, 오키나와에서 '정신대'에 대해 조사하고, 이 조사내용은 동년 4월, 동 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광문화'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이 조사는 1990년 1월 "한겨레신문"에 '정신대취재기'라는 제목으로 연재(4회)되었다. 이 연재물은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을 집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1990년 7월 22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정신대**연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후 동년 11월 16일, 3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1988년경부터 '정신대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게 된, 가히 폭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반향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부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생존자 김학순의 커밍아웃이었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용어를 검토한 글로는,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강정숙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바로쓰기 역사용어』 역사비평사, 2006 가 있다.

다. 김학순의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1990년 일본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이 깊다. 1990년 5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 촉발되어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중인 5월 25일 한국외무장관이 일본정부에게 강제연행자 명부작성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 동월 30일 사회당 다케무라 야스코(竹村泰子) 의원이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신속한 정부조사를 촉구하고, 이어서 6월 6일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이 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강제연행 가운데 종군위안부 라는 형태의 연행이 있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하였다²⁾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을 부인하면서 민간업자와 함께 군을 따라 이동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가 한국에 보도되자 격분한 김학순씨가 커밍아웃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80년대말(90년대초), 한국에서는 ‘정신대’라는 용어로,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현재는 아래 표에서처럼, 한국정부 및 군위안부문제관련 주요 단체의 공식적인 용어로는 일본군위안부로 정착되었다³⁾. 주요단체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한국정신대연구소, 나눔의 집 등이다. 잠시 곁가지들 얘기하자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에서는 여전히 ‘정신대’나 ‘종군위안부’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종군위안부의 ‘종군’이란 말에 ‘자발적으로’라는 뉴앙스가 포함되어 있어 군위안부의 동원방식의 논란과 연동되어 사용에 이의제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측 시민단체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가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아래 설명에서 공통적인 의견은, 공식명칭으로는 역사용어로서 일본군 ‘위안부’를 채용하지만, 이보다는 ‘성노예’가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주장이다. 또 한가지, 한국에서는 일제시기에도 ‘정신대’가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는 주장이다.

2) ‘참의원예산위원회 회의 제19호’, 1990년6월6일, “자료 전후보상문제국회의사록 제1집”, 전후보상문제국회의사록편집위원회, 16~21쪽, 1993년8월15일.

3)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일본군위안부란 용어해설 홈페이지 : <http://www.hermuseum.go.kr/>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womenandwar.net/index.php> ; 정대협이 추진중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홈페이지 : <http://www.whrmuseum.com/>에서도 공식용어는 일본군 ‘위안부’ 이다. ;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trueth.org/know/know.htm> ; 나눔의 집 홈페이지 : <http://www.nanum.org/main.htm>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홈페이지 : <http://www.1945815.or.kr/>

[표1]

단체	공식용어	설명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피 해자 e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일제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대나 처녀공출 이라는 말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 대신에 대개의 경우 정신대 라는 말을 썼다. [중략] 현재 한국 관계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소에 연행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쓰고 있다. 사실 위안부란 말은 전적으로 일본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 군문서에 위안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정부와 군의 관여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이들 피해자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새롭게 개념화 했다.[하략].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별도의 용어설명은 없음]
한국정신대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 라고 불려왔다. [중략]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일제 당시에는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정신대를 곧 '위안부'라고 인식 해왔다. ... 실제로 여자근로정신대로 간 여성 중에 일본군위안부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군'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가리켜 정신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이 여성들을 그밖에도 '작부(酌婦)', '창기, '추업부'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는 용어는 아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 제도를 만든 일본군의 일방적인 인식을 보여줄 뿐 피해자 측의 시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활동을 통해 붙여진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sexualslavery)]' 라는 용어가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군'위안부']는 당시 쓰이던 역사적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는 말로 불려왔다. '정신대'는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1943년 이후엔 여자정신대 혹은 여자근로

		<p>정신대에 한정해서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1944년 8월에 이르러 여자정신대근로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부터 정신대란 말은 전쟁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쓰이게 된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남성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매스컴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정신대'는 이름 그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의미로 썼던 '정신대'라는 용어는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40년대의 신문기사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여자들에게 '정신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자근로정신대'를 의미했다. '여자근로정신대' 중에서 다수의 여자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로 이용되었기에 '정신대'와 '위안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되었으나 정확히 따지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 이들은 일반적으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라고 불리어졌다. 하지만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 국제적으로는 '성노예'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우리는 현재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다.
<p>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97년 발족)</p>	<p>일본군 '위안부'</p>	<p>일본군 '위안부'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 강제적, 반복적인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렀으며 '성노예(sexual slave)',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는 용어이지만 현재는 일본군 '위안부'가 그 당시 쓰이던 역사적 용어이기에 사용하고 있다.</p>

상기 표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일본군위안부를 '정신대'로 불렀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이 다소 상이하다.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사용되었지만

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는 “일제당시나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대’가 일본군위안부를 지칭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일제시기 신문에는 '징용'의 동의어로 '공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⁴⁾, 여기서 관헌에 의한 강제적인 동원을 의미하는 '공출'이 합해져서 '처녀공출'이란 말이 생겼고, 이 말은 일제시기 여성동원과 관련해서 일반에게 가장 익숙한 말이었던 듯 싶다. 그리고 '정신'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스스로 나서는 것,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것'이며, '정신대'라는 용어는 남녀 구별없이 사용되어 특정단체를 가르키는 용어가 아니었다.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11월 13일 자 "매일신보"에 '농촌정신대'의 결성이 보도된 기사로 보여진다. 또한 '정신대'는 '부인농업정신대', 의사나 간호부를 상대로 한 '인술보국의 정신대', '어업정신대', 문화, 상공, 보도, 운수, 금융, 산업 등의 32단체로 결성된 '반도홍보정신대'라고 하는 등 여성동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동원에 대해 사용되고 있었다. 덧붙여 '여자근로정신대', '여자정신대', '근로정신대', '정신대'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일제시기 일반적으로 관헌에 의한 여성동원에 대해서는 '처녀공출' 혹은 정신대(혹은 데이신타이)로 기억하지만, '처녀공출'도 '데이신타이'도 당시에는 군위안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던 듯 하다. 또한 당시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동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 듯 하다. 오히려 조선의 해방직후에 국외로 끌려갔던 여자들이 군인을 상대로 했다고 귀향자 등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좀더 인터뷰 등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정신대'가 군위안부만을 지칭하게 되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것은 해방이후 80년대초가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 '90년대 이전에 발간된 군위안부관련 저서로 임종국 "정신대 실록"(일월서각, 1981), 한백홍 "여자정신대와 그 진상"(예술문화사, 1982), 정신대(김정면저, 임종국 역, 일월서각, 1992)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정신대'라는 용어가 '위안부'를 가르키는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연유로 군위안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표면화된 80년대말~90년대초에 '정신대'가 군위안부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던 것이 아닐까.

커밍아웃한 위안부피해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민중 가운데는 '처녀를 공출'한다는 여성동원에 관한 정보가 떠돌고 있었고 기혼여성이면 '징용'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⁵⁾ 그래서 징집업자 등에게 근로동원이라거나 '정신대'라고 협박받고 징집되

4) 1943년9월, 여자근로정신대의 결성이 차관회의에서 결정되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보도되고 있다. “여자근로정신대를 결성시켜 공출시킨다”. “여자정신대를 만들어 각각 긴요한 곳에 공출시킨다”(“매일신보” 1943.11.26,11.27).

거나, 거꾸로 '정신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기로 징집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의 군위안부의 징집 가운데 '처녀공출' 혹은 '정신대'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졌던 징집 역시도 취업사기와 결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⁶⁾. 이처럼 조선에서의 군위안부 징집이 징집업자(하청업자 등 포함)에 의한 취업사기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던 점은 조선에서의 징집이 일제의 항시적인 식민지배 폭력성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표2]

이름	징집형태	관련사항	징집업자	징집 당시의 상황	징집년도
황금주	사기·강제	'정신대'	반장의 부인과 식모집 여주인	일본의 <u>군수공장</u> 에 3년 계약으로 가면 돈도 벌고 각 호에서 1명은 반드시 가야한다고 해서 부친의 약값으로 빚을 갚는 것으로 양모(식모집주인)의 딸을 대신해 '지원'	1941
김복동	사기·강제		마을의 구장·반장과 일본인 군속(?)	아들이 없으니 대신 딸을 <u>정신대</u> 로 보내라, 안그러면 '비국민'이며 여기서 살 수 없게 된다고 협박. 데이신타이는 군복공장에서 3년간 일하면 된다고 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	1941
최명순	사기·강제		정내회(町内會)의 남자	집에 와서 무직이면 <u>정신대</u> 로 끌려간다고 하면서, 취직하면 돈도 벌고 정신대로 안가도 된다고 함	1945
이옥순	취업사기	처녀공출		" <u>처녀를 공출</u> "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서류상 결혼을 했는데 기혼자인 척 하는 것도 힘들어서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여 감	1938
여복실	납치		조선·일본인 순사와 군인 5,6명	일본인이 <u>여자를 연행</u>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병환중인 부친을 위해 있었는데 집에 와서 총검으로 연행됨	1939

5) 이순옥의 경우 증언집1

6) 특히 김은진이나 박순이의 경우는 일본국내에서 군위안부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군위안소제도는 기본적으로 점령지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일본국내나 식민지에서 평시에 시행된 '공창제도'가 전시체제하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시행되었는가는 일본국내에서 발견되는 '산업위안부'(혹은 기업위안부 등으로 불림)와 함께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과제이다.

강무자	납치		순사 1명, 헌병 3명	처녀를 연행한다는 소문이 있어 숨어 있었는데 배급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갔더니 수일후 집에서 폭력적으로 연행됨	1941
김태선	사기·폭력		조선인 1과 일본인 (2명)	백부에게 처녀를 연행해간다는 소문이 있다고 듣고 다락방에 숨어있었음, 배고파 내려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일본의 공장에서 1년간 일한다면서 양옆에서 강제로 끌어냄	1944
강덕경	도주 중 체포	여자근로정신대	일본 국내 헌병	토야마 후지코시(富山県不二越)공장 (44.6도착)에서 도망중 체포	1945
김은진	공습에 의한 이동			토야마 후지코시에서 일하다 공습있어 일을 못하게 돼서 아오모리현(靑森県)으로 이동, 군위안부	1945?
박순이	여자근로정신대*		경남 협천 초등학교 6년 담임과 남자	담임과 모르는 남자가 집에 와서 연행, 신사에서 장행회 하고 일본 토야마에서 6개월 훈련후 공장에는 안가고 군위안부	1944.9

마지막으로 ‘성노예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 (‘전시에 군사적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방문조사에 기초한 보고서’)에서 유래한다. 영어로는 이 보고서 이후 military sexual slavery(이전 comfort women)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역사연구자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NGO단체나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성노예제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의식에 따라 두 용어는 혼용될 수 있으나, 언론이나 역사논문 등에서는 가능한 한 역사적 용어인 일본군위안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단어에는 남성중심적인 성차별 의식이나 그릇된 성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중일전쟁 직후 일본국내 및 조선에서의 징집 실태

군위안부 징집은 식민지나 점령지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징집 형태로 행해진다. 피징집국·지역에 따라서 징집형태에 공통점도 많지만 상이점도 보인다. 또한 식민지나 점령지라는 구분만이 아니고 점령지에서도 전방과 후방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서도 징집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점령지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징집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중국에서는 1. 마을의 유력자에게 명령하여 동원한다. 2. 토벌시 연행한다. 3. 생활물자를 제공하고, 매춘업자에게서 여성을 양도 받는다⁷⁾.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징집에서도, '조선이나 대만 이상으로 군이 징집에서 해낸 역할은 컸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전선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조직적으로 위안소설치, 위안부의 징집이 행'해졌다. 징집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1. 현지제주 일본인에게 동원시킨다. 2. 신문광고로 모집한다. 3. 그 지역의 주민조직 간부들에게 위안부 동원을 명령하여 동원시킨다. 4. 사기에 의한 징집, 5. 폭력적인 납치에 의한 징집 등의 방법이 있다⁸⁾.

한편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의 경우, 점령지와는 달리, 징집에 있어 군이 전면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고 징집업자에 의한 취업사기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만에서의 징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징집업자에 의한 모집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체의 약 7할이 약간 넘는다. 둘째, 대만인군위안부피해자는 대개의 경우 가정의 빈곤을 배경으로 징집되었으며 약 5할정도는 가난한 집에서 양녀나 '장래의 며느리'로 출가했던 여성들이다. 또한 군위안부로 징집될 때까지 "조실부모, 병, 가업실패, 아편중독 등의 원인으로 빈곤에 빠져 가계가 곤란"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다. 셋째로는 징집은 "술집, 레스토랑, 극단, 여관, 다방, 매춘굴 등"의接客업이나 "세탁, 취사, 수공업, 찻잎 따기, 공장 노동자 라는 직업 혹은 시간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일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단복무"자, 간호부, 무직 등이 대상이 되었으나, 압도적인 다수는 가난한 도시의 여성이며, 취업사기에 의한 징집이 압도적으로 많다. 넷째, 취업사기 이외에 "轉居

7) 상세한 것은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新書, 1995, 112~127쪽. 林博史 「アジア太平洋戦争下の慰安所の展開」 105~107쪽 (吉見義明, 林博史編著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大月書店, 1995)을 참조.

8) 林博史 「アジア太平洋戦争下の慰安所の展開」 105~107頁 (吉見義明, 林博史編著, 前?書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東南アジア에서의 징집에 관해서는 이하의 논문도 있다. ①長田由美 「フィリピンにおける元『從軍慰安婦』調査報告」(『季刊 戦争責任研究』創刊號,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1993年), ②林博史 「シンガポールの日本軍慰安所」(『季刊 戦争責任研究』第4號?1994年).

수당”이라는 명목의 전차금을 받은 자도 약간 포함된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인원을 할당하여 강제적으로 끌고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취업사기를 동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위안부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행해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여섯 번째,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징집할 경우, 총독부의 상층부와의 관계나 업자와의 관계 확인은 불명하지만, 문헌자료로 대만총독부나 대만군이 징집이나 이송에 직접관계하고 있던 것은 명확히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대만국내에서의 징집에 중국대륙에서 볼 수 있는 군에 의한 폭력적 납치 형태는 증언이 없다⁹⁾.

이와 같은 식민지 대만에서의 징집형태와 조선의 경우를 비교하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업자의 취업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 또한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조선인위안부 피해자 175명중 156명(89%), 대만피해자의 경우 징집연령이 확실한 47명중 24명(51%)이 미성년자였다¹⁰⁾. 한편 일본국내의 경우 식민지와 달리 징집대상을 21세 이상의 “매춘경험자”로 제한하여 단속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긴 것일까. 그것은 ‘추업醜業=매매춘을 시키기 위한 부녀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 및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은 1925년 두 조약을 비준하였는데, 연령 제한이 만 21세 미만이었고 유보조항으로 식민지를 적용 제외지역으로 하였다. 이 두 조약은 이후 일본국내에서의 징집에 대한 대응과 식민지에서의 대응에 차이를 발생시켜, 결론적으로 일본국내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의 징집실태의 상이가 야기되었다고 사료된다. 동시에 식민지였다는 점이야 말로 국제법이나 국내형법을 위반하는 위안부징집이 관을 칠 수 있었다.

일본국내에서 징집 대상을 제한받게 되는 배경에는 1938년 초 일본국내에서의 징집

9) 대북시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재) 『대만지구 위안부 방문 조사 개별분석 보고서』 1993. 대만에서의 징집 형태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48명(중국대륙에서 징집 3명, 조선인1명 포함)에 관한 분석이다. 본 보고서에 관한 분석에 기초한 논문으로는 林博史 「台湾からの徴集」(吉見義明, 林博史編著 상기서 41~44쪽), 吉見義明 『従軍慰安婦』 109~112쪽이 있다. 대만총독부 및 대만군에 관한 자료는 吉見義明 『従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 130~148쪽)과 内務省警保局 「支那渡航婦女に関する伺」 1938.11기안(吉見義明제공) 참조.

10) 정진성 ‘연행시 위안부의 연령, 일본군“위안부”정책의 형성과 변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공동주최 제2차 한일공동연구회 보고문, 미간행, 1993.12.18)와 대북시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상기보고서 7쪽.

상황이 있다. 1938년 2월 『동경일일신문』에 '해외 유괴단 발각? 군부사칭 일당 동경에서 검거'라는 소제목의 기사('38.2.24일자)가 게재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사이타마현(埼玉縣) 하뉴경찰서(羽生署)가 만주에서 돌아온 가네코(金子良之)용의자를 관동군 사령부 경리부원 사칭과 부녀유괴 매매죄로 취조중이며, 가네코 용의자가 해외와 연락하면서 일본전국에 부녀유괴망을 구축하고 있던 사실이 관명되었으며 아이치현(愛知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동경 방면에 경찰관을 파견하였다. 계속해서 동경거주 시무라(志村秋太郎)용의자도 일당으로 구속, 취조중이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관한 속보가 없어서 수사결과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진상은 제쳐두더라도 이 사건에서 가네코 용의자가 관동군 사령부 경리부원을 '사칭'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기사가 보도된 하루전날인 2월 23일은, 내무성이 위안부 '모집'과 관련하여 각 청부현장관(庁府県長官)앞으로 대책을 통달하였다¹¹⁾.

1938년초 이러한 유사 '사건'은 각 현에서 빈발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사이타마현 가네코 사건의 기사는, 이러한 '사건'의 빙산의 일각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네코용의자의 사건이 보도된 직전의 동년 1월에는 매우 유사한 사건이 각현에서 빈발하였고 각현 지사가 현하 경찰서장 앞으로 엄중한 단속을 지시하고 있다. 야마가타현 지사는 1938년 1월 25일 스에지(末次信正) 정무대신·육군대신 스기야마(杉山)·경시총감·각청부현 장관 앞으로 '북지 파견군 위안작부모집에 관한 건'을 발송, 고베시 거주 대좌부업자 오우치(大内藤七)가 북지나 파견군의 군위소 개설에 필요한 '작부' 2500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관하 모가미군 신쇼초 사쿠라바마(最上郡新庄町桜馬場) 거주 소개업자에게 이 중에 500명 '모집'을 의뢰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의뢰에는 '소개수수료 전차금의 1할을 군부가 지급하는 것임 운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사는 '군부의 방침으로서는 당장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동 사건을 앞으로 '현하 경찰서장이 참조하여 단속함에 있어 유감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있다¹²⁾. 이보다 수일전인 1938년 1월 19일 군마현 지사도 내무대신·육군대신·

11) 内務省警保局長 「支那渡航婦女の取締に関する件」 1938年2月23日.

12) 山形縣知事 「北支派遣軍慰安酌婦募集に関する件」 1938年1月25日. 여기서 인용한 각 현지사에 의한 문서자료 및 징집에 관여한 내무성 자료는 "일본공산당 요시카와(吉川春子) 참의원의원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경찰청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경찰청"이 1996년 12월 19일 "경찰대학교에 보존되어 왔던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1992년 7월 6일 제1차정부조사결과에서 '경찰청 0건'이라고 발표하였지만(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 「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 1992년 7월 6일), 그 이후 「동청에서는 종군위안부관련자료는 한 점도 나오지 않았고, 이번 제출이 처음」이었다(『赤旗』1996년 12월 20일). 여기서 인용한 상기 자료 및 각현 지사들의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요시카와 참의원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이고, 필

북해도청장관·경시총감·각청부현장관·다카사키(高崎)연대구사령관·다카사키 헌병분대장·군마현하 각 경찰서장 앞으로 '상해과건군내 육군위안소에 있어서 작부 모집에 관한 건'을 송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야마가타현에서 군위안부의 '모집'을 의뢰했다고 하는 고베시 히가시구 후쿠하라쵸(神戸市東区福原町) 거주 대좌부업자 오우치(大内藤七)는, 동년 1월5일, 관하 마에바시시(前橋市) 소개업자 소리마치(反町忠太郎)에게 3000명의 '작부'가 필요하다고 하여 '모집'을 의뢰했는데,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오우치는 소개업자 소리마치에게는 "상해 육군 특무기관 의뢰라고 하고, 상해과건군내 육군위안소에 작부가업(추업)을 할 작부"의 모집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우치는 '상해육군특무기관'에 직접 징집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고, '상해 육군 특무기관'이 직접 의뢰한 것은 오우치와 같은 고베시 후쿠하라쵸 출신이며 당시 상해거주 대좌부업자인 나카노(中野光藏)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다시말해 오우치는 군에게 선정된 나카노 밑에서 일본국내에서 징집을 의뢰받은 하청업자였다. 또한 오우치는 경찰에서의 심문 당시 나카노 앞으로 '상해 육군 특무기관' 발행인 서류 4통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서류 발행처가 '과건군'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경찰은 서류 발행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신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보고를 받아서 군마현 지사는 "과연 군의 의뢰인가 아닌가 명확하지"않다고 언급하고 있다¹³⁾.

이처럼 각 현에서 빈발¹⁴⁾하고 있었던 군위안부 징집상황에 대해서 각현 지사가 단속할 것을 지시한 것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징집업자의 진술이나 불명확한 서류 만으로는 군부의 의뢰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둘째 이상과 같은 징집상황에서 "사안을 공공연하게 떠들며 모집하는 것과 같은 형태는 황군의

자는 요시미 요시아키 중앙대 교수로부터 제공받았다.

13) 群馬縣知事 「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に於ける酌婦募集に關する件」 1938年1月19日(吉見提供 자료).

14) 宮城縣知事が1938年2月15일에 내무대신 末次信正·각청부현 장관·管下各警察署長宛으로 송달한 「上海派遣軍?陸軍慰安所に於ける酌婦募集に關する件」에는, 群馬현의 通牒에 따라서 警察이 조사한 결과, 福島현 周旋業者로부터 동일한 「酌婦募集」의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중이라고 쓰여 있다. 또한 茨城縣知事が 동년 2월14일에 내무대신·육군대신·각청부현장관·水戸연대구사령관·水戸土, 浦현병분관대장·현하 각 경찰서장 앞으로 송달한 「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に於ける酌婦募集に關する件」에 있어서도, 본문에서 인용한 오우치가 출생지인 이바라키현(茨城縣)에 와서 周旋業者 오카와(大川松吉)에게 '모집'을 의뢰함과 동시에, 요리점(料理店)업자 이토(伊藤金三郎)이 데리고 있는 酌婦 2명을 전매받아 고베로 돌아간 것이 판명되었지만, "과연 군의 의뢰가 있었는지는 전혀 불명"이라고 하여, 현하의 경찰서장에게 엄중한 단속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吉見提供 자료).

위신을 실추”시킨다. 셋째 징집되는 여성이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과 같”고, “총후의 일반민심 특히 응소가정을 지키는 부녀자의 정신상에 미치는 악영향”과 동시에 “일반부녀의 매매 방지의 정신”에도 반한다¹⁵⁾. 다시말해, 서류 등의 불비에 의해 군부의 의뢰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만일 군부 의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군부가 공적으로 군위안부를 징집하는 것이 일반에게 알려지면 총후의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1938년 1월, 2월에 빈발한 각 현 지사에게 단속강화를 지시시킨 여러 사건은 실제로는 군부의 의뢰를 받은 징집업자에 의한 것이었으며, 초두에 보도기사를 인용한 사이타마현(埼玉縣) 유괴 매매사건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상기에 언급한 군마현에서 조사를 받았던 오우치가 심문중에 진술한 나카노中野라고 하는 인물은 화카야마현(和歌山縣)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1937년 가을경 일본국내에서 징집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카노는 씨명불명의 ‘육군어용상인’과 오사카거주 후지무라(藤村政次郎), 고니시(小西聖夫)와 함께 상경하여 도쿠히사(徳久)소좌를 통해서 아라키(荒木貞夫) 대장, 토오야마 미츠루(頭山満)와의 회합을 한 후, “상해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 3000명의 ‘모집’을 의뢰하고, 38년 1월3일 이 중에서 70명의 일본인여성을 오사카부 구죠(大阪府九条)경찰서장과 나가사키현(長崎縣) 외사과의 편의를 제공받아서 “육군어용선으로 나가사키항에서 헌병호위”를 받아 연행하였다. 그 후 가나자와(金沢甚右衛門)는, 해남시거주 소개업자 2명과 함께, 1938년 1월 6일 와카야마현 다나베초(田辺町)의 음식점가에서 수상하게 여긴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나자와는 경찰의 심문에 대해 자신들이 “상해 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 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미 여성 2명을 전차금으로 사들여 소개업자에게 맡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와카야마현 경찰은 오사카부 구죠(大阪府九条)경찰서에 가나자와의 신분조회를 해보니, “상해과건군 위안소 종업작부 모집 방법에 관해 내무성으로부터 비공식이긴 하지만 당부(当府) 경찰부장에게 의뢰한 것도 있어서, 당 부에서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미 첫 번째는 금월 3일에 도항시켰다”고 하는 회신과 함께 가나자와는 “신분 부정한 자가 아님”이라고 하여 오사카부 구죠 본서에서 ‘작부 공모 증명’이 송부되어 왔다. 또 나가사키현 외사과에도 조회한 결과,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서가 나가사키현 수상경찰서장 앞으로 1937년 12월 21일자 징집을 의뢰한 통첩이 첨부되었

15) 茨城縣知事, 群馬縣知事, 茨城縣知事, 전개資料 「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に於ける酌婦募集に關する件」, 山形縣知事, 전개資料 「北支派遣軍慰安酌婦募集に關する件」

다는 회답이 있었다. 이상에서 서술한 각현의 '상해 파견군내 육군위안소에서의 작부 모집에 관한' 사건은 화카야마현 경찰의 조사내용에 의해 1938년 2월초, 동 사건 관계자 전원이 군의 의뢰에 근거한 모집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던 것이다¹⁶⁾.

이상과 같은 일본국내의 징집상황에 대해서 각현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무성은 사태를 무겁게 보고, 1938년 2월 23일 신속하게 각청부현 장관앞으로 대책을 통달하였다. 내무성은 당시의 일본국내의 징집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었다. 내무성은, 중국의 치안회복에 따라 급증하는 도항자 중에는 중국에서 요리점, 음식점, 유사유희 등과 같은接客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부녀를 모집 주선하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당국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면서 “모집 주선”하는 자가 “최근 각지에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부녀의 모집 주선 등에 대해 단속함에 있어 적성이 부족하든지 제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황군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그치지 않고 총후 국민 특히 출정병사유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부녀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현지 실정과 각 사정을 고려하여 21세 이상의 매춘경험자를 징집 대상으로 하며 경찰은 부녀매매 또는 약취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일반 풍속에 관한 영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의 모집 주선등에 있어서 군의 양해 또는 군과 연락하고 있는 듯이 언사를 하거나 기타 군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하는 자는 모두 엄중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¹⁷⁾. 또한 징집업자와 일반소개업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첫째 초두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에 있어서 연령제한 및 일반부녀의 인신매매나 약취유괴 등의 위반 발생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군에 의뢰를 받은 징집업자에 경찰의 협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징집업자와 일반의 소개업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군 명의를 사칭하는 일반 소개업자에 대해서 엄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내무성 통첩에서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징집에 있어서 국제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했던 태도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국제법의 허용조건을 전제로 군위안부 징집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기 『동경일일신문』 기사는 내무성이 군위안부의 징집업자가 아닌 ‘업자’를

16) 和歌山縣知事 「刑第303號・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關する件」 1938年2月7日 (吉見提供자료). 동 자료에는, 인쇄글자로 소화 1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의 내용에서 볼 때 소화13년(1938년)의 오자라고 판단되어 수정하였다.

17) 內務省警保局長 「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關する件」 1938年2月23日 (吉見 『資料集』 102-104頁).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의사표명을 한 것과 동시에 일반사2007년 11월 29일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내무성 통달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상기 기사와 유사한 사건이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내무성이 군을 사칭한다고 의심한 업자에 의한, 또 유괴 등의 형법을 위반하거나 할 뻔한 위안부 징집이 조사결과 실제 군의 의뢰를 받은 징집업자들이 일본국내에 들어와 '하청업자'에게 일을 분담시켜 징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음이 밝혀졌다. 일본국내의 이러한 상황과, 중국에서의 남경학살 직후 위안소개설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맞물려 일본군이 국내 지방으로 보낸 의뢰장 송부나 업무가 내무성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정비가 되지 않은 채 국지적으로 진행된 탓에 각지 경찰서에서 내무성으로 조회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심각하다고 판단한 내무성이 단속강화를 조치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무성의 단속강화 지시 직후, 약 열흘후인 3월4일 육군성이 "군위안소 종업원 모집에 관한 건"이란 통첩을 시달하였다. 내무성의 지시와 유사한 내용이나 육군성의 통첩에는 위안부를 징집할 경우 해당지역의 경찰이나 헌병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행하라고 지시되어 있다. 육군성 통첩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내무성과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두가지 통첩은 조선에서의 징집형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내무성통첩은 일본국내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의 증명서를 받은 업자와 일반 접객업부를 모집을 위한 소개업자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위법을 엄히 단속하면서 징집업자가 국제법이나 형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징집지역의 경찰이나 헌병과 연계하여 징집해야 하게 된 데 비해, 식민지기 조선에서는 경찰이나 헌병과 연계하여 징집하라는 육군성 통첩만이 적용되게 된 셈이다.

전술한 내무성이나 육군청 통첩이 시달되기 직전의 38년초 일본국내에서의 징집 상황이 동 시기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상기 와카야마현 지사의 문서에 첨부되어 있던 1937년 12월 21일자 재상해일본총영사관경찰서 '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에 있어 편의 공여방식 의뢰 건'을 보면 "이미 가업부녀(작부) 모집을 위해 본방내 제[일본국내] 및 조선방면으로 여행중인 자가 있어 앞으로도 같은 용무로 여행하는 자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¹⁸⁾ 징집업자가 일본국내만이 아니고 조선국내에서도 동 시기에 징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국내에서도 전술한 일본국내의 징집 방법으로 징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선국

18) 和歌山縣知事 전개자료, 「刑第303號・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關する件」.

내의 징집 상황에서, 일본국내와는 달리 조선국내에서는 국제법이나 형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을 단속할 내무성과 동일한 단속지시 없이, 육군성 통첩의 징집 해당 지역의 경찰과 헌병과 연계하여 징집하라는 지시만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조선국내의 소개업과 경찰단속의 실태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군대위안부의 징집은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경우 접객업부의 조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성을 상업의 도구로 한 접객업과 인신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던 주선업과의 연계로 성립되어 있는 접객업부의 수요와 공급의 매카니즘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조선에서는 조선군사령부가 조선재주의 접객업자를 징집업자로서 선정한 것이나 일본정부가 일본국내에서의 징집업자로서 접객업자를 선정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객업자는 군대위안부의 징집업자로서 군대위안소제도에 편입되어 있었다. 주선업자(소개업자)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1910년대의 주선업은 각 도에서 조선총독부경무부령 '제 영업단속규칙'으로써 허가되고 있었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면 법규의 정비가 진행되어 각도에서 조선총독부도령 '소개영업단속규칙' 등으로 독립된 법규로써 공포되어 있었다. 1922년 1월 12일 조선총독부전라남도령제1호 '소개영업단속규칙'이 공포·시행된 것을 필두로 동년 5월 19일 조선총독부의 경기도령 제10호 '소개영업단속규칙'의 공포가 줄지어 이어져 1920년대말까지 전국의 각 도 마다 동일한 법규가 속속 공포되었다.

주선업은 '예기, 작부 또는 창기 가업자의 소개', '구혼자의 소개', '고용자의 소개', '토지가옥의 매매 혹은 임차의 소개'의 4종류로 되어 있지만, 평안남도의 규칙이외는 동일영업자에 의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신문에는 소개업의 영업소가 '인사 소개소'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다.

조선전도에 주선업의 법규의 정비가 일단락된 후의, 1930년대의 주선업의 실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본래의 주선업이라면 접객업부의 소개에 대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기나 유괴 등의 방법에 의한 인신매매나 접객업자로부터 수수하는 전차금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넘기는 식의 인신매매가 횡행했다.

1934년 현재 경찰관 강습소 교수인 마스다 미치요시(増田道義)는, 조선의 주선업의 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주선업자는 “모두가 인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왕왕 사람을 광혹하여 혹은 유괴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곳에 주선하고 …… 묘령의 부녀를 해외 또는 유곽에 유괴하고 혹은 강제로 추업을 행하게 하는 등 그 경우에 처하게 하는, 폐해를 헤아려” 볼 수도 없을 정도이며, “음매부가 그 경우에 처한 원인은 주로 고용인 중개인의 감언에 속아서 …… 인 경우”이고, “창기의 대다수는 그들의 마수에 의해 진흙탕 가업에 전락한다”고 하였다. 또한接客업부의 ‘주선’은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즉 “인신매매자”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다¹⁹⁾.

조선의 ‘소개영업단속규칙’은 일본국내의 경찰청령 제1호 ‘소개영업단속규칙’(1917년 2월 15일부터 시행)과 비교하면, 영업단속조항이 형식적인 것이었다. 조선의 ‘소개영업단속규칙’과 다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내에서는 영업의 종류가 9개로 분류되어, 그 중에서 “예기, 창기, 작부의 소개 또는 주선”은 타 종류와의 겸업이 금지되었다. 또한 영업자의 사기나 유괴, 인신매매 행위에 관해서도 12항목에 걸쳐 금지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영업자의 자격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그 중에서 영업자는 “300원(지점 개설 마다 300원 체증)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자격조건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영업자수를 감소시키고 또한 영업자의 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조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의 ‘소개영업단속규칙’에는 영업자의 자산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그 위에 조선인에게 “루트만 있다면 자격은 없어도 돈 벌 전망이 있는 직업” 이었고, “생활의 활로가 막혀있는 조선인에게 성공의 기대나 기업의욕을 만족시키는 많지 않은 직업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 소개업자는 매년 증가했다. 1913년 소개업자(고용인중개업과 중개업)는 조선인 385명, 일본인 133명이었지만, 1940년에는 조선인 3776명, 일본인 286명으로 조선인은 약 10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소개업자 중에는 창기나 작부 등의接客업부를 주선하는 고용인중개업은 1914년 조선인 25명 일본인 78명이었지만, 40년에는 조선인 219명, 일본인 62명으로, 일본인업자를 상당히 상회하고 약 9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接客업에의 여성의 공급은 주로 주선업자에 의해 행해졌지만,接客업자가 직접 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인 창기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1930년말 현재, 조선인창기 1372명 중에 985명이 주선업자에 의한 것으로 전체의 약 7할을 조금 넘게

19) 増田道義 「公娼制度並に芸娼妓自由は廢業に関する考察資料」 38쪽. 『警察彙報』 1934年2月에서 재인용, 원전은 桑原榮二郎 『警察法規用論』(242頁以下参照)로 되어 있다.

접하고 있다.接客업자와 부모 등의 '교섭'에 의한 경우는 180명,接客업자와 본인의 '교섭'에 의한 것은 198명, 기타 9명이다. 불법 업자인 '제겐'(女衛, 소위 여자장사)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문에서는 "적어도 내지어[일본어]를 아는 사람이나 예쁜 소녀는 중개인이 소개소의 문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카페나 식당에 데려간다고 그 상황의 일단을 보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영'의 주선업과는 별도로 '부영(府營)'의 직업소개소가 있고, 부영직업소개소에는 '일반직업소개소'와 '영리직업소개소'의 두 종류가 있다. 조선이나 대만 등의 식민지에서의 영리직업소개사업에는 일본국내와 달리, "선원의 직업소개, 예창기작부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직업소개"도 포함되어 있다. 1931년 9월 10일 현재, 조선에서 영리직업소개업자수 325명 가운데, 영업실적이 있는 자는, 1930년중 190명이었다. 이 중에서 일반영리소개업자 62명, 예창기작부소개업자 128명이고, 부영직업소개소에서 약7할 정도의 소개업자가 예창기작부의 소개업자였다.

부영직업소개소의 업자에 있어서도 사기나 유괴 등 폭력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았다. 영리직업소개업자 중에는 "자칫하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혹은 감언으로 선량한 구직자를 현혹시켜 장래를 망치게 하는 자"가 있고, 1930년중에 "단속규칙에 위반하여 과료처분 당한 자 60명"에나 이르며, 이외에 "훈계에 그쳐 처분하지 않은 자 약간명"이 존재했다. 동 년 소개영업단속규칙에 위반한 검거건수는 158건(인원 169명)이고, 이 중에서 검사송치 6건(9명), 즉결처분 120건(128명), 훈계방면 31건(31명), 기타 1건(1명)이었다. 또한 즉결처분의 내용은 벌금 1명, 과료 104명, 구류19명, 기타1명이었고, 부영직업소개소의 위반건수의 과료60명이라는 수치는 실제의 위반 건수의 일부 수치일 것이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던 주선업자의 불법행위는 그칠 줄 몰랐다. 1939년 12월 3일자 신문기사는 "인사소개업을 명랑하게·산업전선 여성을 보호·직업소개령 이달 중 '발포'라는 소재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종래의 인사소개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 내막은 실제로 암담했던 것이었고, 젊은 여성이 잠시 실패하면, 인사소개소의 마수에 걸려, 전생애를 망치고 진흙탕같은 상태에서 방황하는 일이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찰의 허가를 필요조건으로서 '소개영업'이 행해지고, 단속의 대상이었을 인사소개소는 실제로는 불법의 인신매매 등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주선업의 소개는 그 대부분이 사기나 유괴 등의 폭력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고, 소위 불허가의 '제겐'에 의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전술한 마스다는 조선에서는 “단속에 관한 통일된 법규가 없고, 각 지방의 편의에 의해 이를 단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따라서 그들 중에는 단속의 소홀함으로 예창기작부주선과 보통고인주선을 구별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듯하나, 이와 같으면 요리옥·음식점·대좌부 영업자에게 고용인주선업을 허가하는 것과 동일한 악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음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⁰⁾.

주선업자의 불법행위가 많았던 현실은, 경찰이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결코 아니었다. 각도의 단속규칙에 공통되는 소개에 관한 금지조항은 “1. 신상이 분명하지 않은자,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3. 보좌인의 동의 없는 준금치산자, 4. 남편의 승낙없는 처”라고 되어 있다. 또한 영업자에 금지된 행위는 “1. 피소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소개를 하는 것, 2. 사기적 언행을 하는 것, 3. 고용중이거나 가업중인 자를 권유하여 다른곳에 소개하는 것, 4. 명의가 무엇이든지간에 허가를 받은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²¹⁾. 그러나 이미 본대로 단속규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고, 경찰의 단속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다시말해 조선의 ‘소개영업단속규칙’의 목적은接客업부의 원활한 공급에 있었고 조선총독부는 주선의 과정에서 발생할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방치·묵인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태도가 변한 것은, 남성노동자의 동원에 의해서 남성노동자가 부족할 조짐이 보이자 여성의 노무동원이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 1940년 이후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1940s년 ‘조선직업소개령’이 공포되었다. 1940년 1월 11일 조선총독부제령제2호 ‘조선직업소개령’, 동월 20일 조선총독령 제7호 ‘조선직업소개령시행규칙’이 공포되어 부영직업소개소는 ‘국영’으로 재편되었다. 조선직업소개령은 전시체제에 따른 노무자의 원활한 공급과 배치를 위해 특히 광산, 고양, 토목, 건축방면에 필요한 노무자의 알선을 국가가 직접통제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이 국영이 된 직업소개사업은 노무자 동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전의 부영의 영리직업소개소에서의 예창기작부 등의 소개는 금지되었다. 이것에 의해接客업부의 주선업은 사영인 인사소개소로 단일화되었다.

接客업부의 소개에서는 인사소개소의 불법행위의 실태나 국영의 영리직업소개사업에서의接客업부소개의 금지 조치에 대해서 조선직업소개령의 공포가 가까워진 1939

20) 増田道義, 전계자료 「公娼制度並に芸娼妓自由は廢業に関する考察資料」.

21)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10호 「소개영업취체규칙」에 의함 『조선총독부관보』 제2930호, 1922년 5월22일.

년 12월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조선직업소개령의 공포는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산업전선에 이용할 수 있는 처녀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인사소개소에 대한 통제는 “앞으로는 경찰서장의 단순한 허가로 그치게 하지 않고, 각도지사의 권한 하에 엄격한 감독, 다속을 실시”하고, “직업소개소에서 감독을 하고, 경찰서와 함께 여기(인사소개소: 인용처)를 명랑하게 만들 것”이 된다.

‘소개영업단속규칙’의 목적이 주선업자의 불법행위방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1940년의 조선직업소개령에 의한 국영직업소개소에서의 접객업부의 주선금지의 조치 역시, 여성의 인권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가 겨냥한 것은 신체제하에서 민중의 향락생활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서, 접객업이나 접객업부의 축소로 가는 정책 시해의 포석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 신문기사는 군대위안부의 징집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다. 그때까지의 인사소개소에 대한 통제가 경찰 관하에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1940년의 조선직업소개령의 공포를 계기로, 조선총독부 또는 도지사의 감독 관하에 놓음으로써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에서 군대위안부의 징집시 관헌‘개입’의 정도가 한층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정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속에서, 예창기작부 등의 주선을 업으로 했던 인사소개소는 군대위안부의 징집의 장으로서도 이용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주선업자나 불허가의 ‘제젠’에 의한 접객업부의 소개방법은 군대위안부의 징집시에 활용되었다. 조선인군위안부 피해자 43명중에서 3명이 인사소개소에서 징집되었다. 그녀들은 인사소개소에 와있던 징집업자에게 징집되어 이들 중 2명은 각각 10명과 25명의 ‘모집인원’이 모여진 후 출발하고 있다.

5. 끝맺음을 대신하여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은, 전시체제하에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인 노무자나 군인·군속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이란 측면에서는 그 양상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노무자나 군인·군속 동원의 경우처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력이 전면에 드러났던 동원과는 양상을 달리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전쟁수행을 위해 여성의 성(性)을 이용하려는 인적동원을 일제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법이나 행정력을 이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식민지배하에 있던 식민지였기에 전시체제하 경찰이나 말단 행정(구장이나 애국반장 등)의 협조 혹은 묵인 하에 공창제도의 매카니즘을 이용한 일본군 '위안부' 징집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징집에 나타나는 식민지배 실태를 이해하면,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협회의 강제연행' 운운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문제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의 폭력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에 적합한 역사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20세기 전쟁의 승전국과 패전국간의 역사 청산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에 발생했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식민지배의 청산을 위한 문제제기에 적합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라고 생각한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징집 실태만을 보더라도, 식민지배 과정에서의 반인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국가 간의 관계란 과거청산 없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징집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토론문

토론: 김 부 자(한신대 교수)

동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에게 행해진 강제매춘(1942~1945)과 현재(1945~2007) 네덜란드 생존자의 증언

에스더 캡튼 **

1. 서론
2. 전 세계적인 로비활동
3. 간단한 역사적 고찰
4. 강제 매춘이란 문제에 대한 전후의 반응
 - 1)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의 진 러프 오현 여사
 - 2) 벳시 누호프 여사
 - 3)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
 - 4) 동경에서 진 러프 오현 여사
 - 5)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

논문요약: 일본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를 점령할 당시, 200명에서 300명의 네덜란드와 유라시아 계 여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매춘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내 논문의 전반부에서 나는 이전 네덜란드 식민지 땅에서 벌어진 강요된 매춘(위안부)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할 것이다. 네덜란드 대중매체의 관심을 받은 이들 여인들이 어떤 민족 출신인가에 대한 문제가 고려될 것이다. 네덜란드 대중매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특히 '서방' 여인들이 강요된 매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후부터이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방관적인 자세, 이들 여인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의 고통스런 투쟁, 금전적인 배상 요구, 점점 확대해 가는 일반대중들의 인식, 도의적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후 이 이슈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네덜란드 우트레흐트대학교.

1. 서론

오늘 이 컨퍼런스의 발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김 교수의 초청을 받았고 아시아를 다시 여행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때, 나는 한국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자 매우 갈망했다. 그래서 요즘 여행자들이 그렇듯이, 나는 스스로 이번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에 관한 『론리 플래닛 가이드』(*Lonely Planet Guide*)라는 관광안내책자를 구입했다. 『론리 플래닛 가이드』의 역사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쨌거나 관광안내서인 이 책에 '위안부 여자들'의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다루는 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 남자들과 여자들(3백만 명 이상!)이 “그들의 고향땅에서 뿌리 채 뽑혀 탄광의 광부로, 농장 노동자로, 외국, 주로 일본과 만주로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¹⁾ 그 다음 부분의 인용은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 “이 거대한 인력 동원의 최악의 양상은 (중략) '위안부'라는 형태로 왔다 - 100,000명에서 200,000명에 이르는 한국의 어린 여자아이들은 일본군을 위한 성적 노예로 일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이다.”²⁾ 위안부 출신의 황금주라는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위안부들의 끔찍스러운 시련을 독특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한국 '위안부 여인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신고 있는 웹사이트 (www.twotigers.org)를 참조하면 이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³⁾

내 의견으로, 일본군의 점령 당시 강제로 매춘행위를 한 한국의 위안부 문제가 관광안내 책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일본은 그 여인들의 요구 조건 자체를 완전히 들어준 적은 결코 없었지만, 그들의 로비활동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그렇게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아주 광범위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것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성과이다.

1) 로빈슨(Robinson), 마틴(Martin), 레이 바틀릿(Ray Bartlett) 록 화이트(Rob Whyte)의, 『론리 플래닛 가이드 - 한국 편』(*Lonely Planet Guide - Korea*). Victoria: Lonely Planet Publications, 2007 (제7판, 1988년 초판인쇄), p. 37.

2) 『론리 플래닛 가이드』, p. 38.

3) “기나긴 투쟁. 1992년부터 황금주 여사와 소수의 몇몇 한국인 '위안부' 출신의 여인들, 즉 일본군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병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매주 수요일 정오에 서울에 있는 주한일본 대사관 밖에서 데모를 해왔다. '우리 생존자들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들 늙은 여인들은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황금주 여인은 대사관 앞에서 554회가 넘는 데모를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행한 짓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론리 플래닛 가이드』, p. 37)

'위안부 여인들'의 전 세계적인 로비활동은 분명히 일반 대중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논문의 전반부에서 나는 이전 네덜란드 식민지 땅에서 벌어진 강요된 매춘(위안부)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할 것이다. 후반부에서 나는 네덜란드에 있는 생존자들이 전하는 전후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위안부들'의 문제를 전쟁 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반응에 집중할 것이다. 비록 나는 법적인 문제가 '위안부들'에 대한 이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법률 분야와 법적인 것과 관련된 다른 주제에 대해선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전 세계적인 로비활동

내가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논하기 전에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국제문제의 영역에서 '위안부'에 대하여 성공적인 로비활동을 한 그들의 업적으로 돌아와 언급을 하고자 한다. 현재 85세로 호주에 살고 있는 진 러프 오현 여사가 미국 워싱턴 DC의 미 의회에서 증언한 것은 2007년 2월이었다. 그녀는 과거 '위안부' 출신으로서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이곳은 독립 후 인도네시아로 알려진 나라이다)에서 전쟁 중에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그녀는 두 명의 한국인 생존자들과 동반해서 나왔다.

러프 오현 여사는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 미국 민주당 의원이 초청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혼다 의원은 미 하원이 결의안 121호, 즉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질 것"이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희망했다.⁴⁾ 전 일본총리 아베는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스스로를 곤란에 빠뜨렸었다. 6개월 후 결의안 121호는 2007년 7월30일 미 하원 전체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 "121 연합"으

4) 키누에 토쿠도메(Tokudome, Kinue): " '위안부'에 대한 미 하원 결의안 121호의 통과를 통해본 미국 의회와 일본의 역사 인식," 2007년 9월3일 『아시아 태평양 뉴스』 ('Passage of H.R. 121 on 'Comfort Women', the US Congress and Historical Memory in Japan' in: *Asia Pacific Newsletter*, September 3, 2007). 이 기사는 2007년 8월30일 『일본 초점』(*Japan Focus*)이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다.



워싱턴 DC에서 증언하는 진 러프 오현 여사.
출처: 2007년 2월17일자 *Trouw*

로 알려진 결의안을 지지하는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미국 전역을 통하여 잘 알려진 한국계 미국시민 단체와 인권 단체 등 거의 200여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결의안 121호는 일본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궁극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⁵⁾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의 권리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 즉 개인의 몸을 고결하고 흠 없이 지키는 권리와 모든(성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 이 두 가지 다임을 확인한다는 면에서 흥미 있는 주제이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이 같은 초점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네덜란드 연합 FNV(Dutch Union FNV)가 이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한 한국 연합(Korean Union)과 함께 일본은 강제 노동에 대한 ILO 협약을 위반했다고 2007년 5월 성명을 발표한 결의문에 또한 반영되어 있다.⁶⁾ 더군다나 금년 10월 29일, 유럽연합 위원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EU의 특별한 관심사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한 선언을 확인했다.⁷⁾ 우리는 그러

5) Ibidem.

6) Meeteren van, Wilma: ‘Het onrecht van zestig jaar geleden bestaat nog steeds’ in: *Trouw*, 31 mei 2007.

7)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구적인 대표들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E-5100/07.” 2007년 10월29일 브뤼셀.

므로 '위안부' 문제는 모든 국제적인 정치 기구에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그것은 위안부 여인들을 후원하는 지지자들뿐 아니라, 현재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들 자신들을 위한 커다란 성과라고 결론 맺을 수 있다.

3. 간단한 역사적 고찰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벌어진 '위안부 여인들'에 대한 간단한 역사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록보관소에 접근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록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접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출처는 네덜란드 외무부가 강제 매춘 문제에 관한 기록보관소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였다.⁸⁾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벌어진 네덜란드 여인들의 강제 매춘”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는 1993년에 수행되었고 결과물은 1994년 1월에 출간되었다. 이것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전쟁범죄자와 공범자들(이적행위자)을 추적(체포)하고, 법적인 고발과 재판을 행한 일에 참여한 정부의 여러 당국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에 기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를 점령했을 당시에 강제적인 매춘은 주요 섬들(수마트라, 자바, 셀레베스/술라웨시, 보르네오/칼리만탄 및 몰루칸)과 많은 작은 섬들(플로레스, 티모르)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관련된 여인들은 인도네시아 출신들이었지만 네덜란드와 유라시아 출신의 여인들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자발적'이나 혹은 '강제적'인 매춘이나에 대한 문제는 [규정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비군사적인 지하수용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수용소 경비병들이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음식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었

8) 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voormalig Nederlands-Indië*. Kamerstuk 23607. Den Haag, vergaderjaar 1993-1994.

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허약함과 (고질적인) 질병과 많은 수의 수용자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다.⁹⁾ 수용소 밖에 있는 대부분 유라시아와 인도네시아 계 여인들로서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매우 어려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로 인하여 그런 특별한 상황에 속하게 된 것이다.

바타비아/자카르타에서 열린 임시 군법회의(*Temporaire Krijgsraad*)에서 만약 여자들이 일본의 요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일본 당국이 여자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려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강요된 매춘을 의미한다고 결정을 했다. 이 보고서는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총 200명에서 300명의 여자들이 일본군의 매음굴에서 일을 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대략 65명의 여자들은 그들이 강제로 매춘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1943년 중반까지 자바 섬에서 일본군 제16군은 여자들을 새로 뽑기 위하여 유라시아인, 중국인, 인도네시아 인들을 동원했다. 매일 매일의 작업으로 여자들은 일본군이나 일본인 민간인 개인들을 위하여 '가정부'로 선발되었다.

1943년 후반, 군과 군 당국은 그들 스스로 일본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 매음굴을 만들었다. 자바 섬에서 이 같은 일은 바타비아, 페깅롱겐, 마젤랑, 세마랑과 본도위소 등지에서 일어났다. 유럽 여자들은 이러한 매음굴에서 일하기 위해 모집되었다. 이런 매음굴 외에 인도네시아와 중국계 여자들을 위한 매음굴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강제적인 매춘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경우는 마젤랑과 세마랑(1943년 11월부터 1944년 1월 사이)에서 군인들을 위한 매음굴에 넣으려고 유럽여자들을 징집했던 것이다. 역사학자 빈 린즈마-아드미랄(Win Rinzema-Adnuraal)은 매음굴에 넣기 위하여 여자들을 끌고 가려는 일본인들에게 대항하는 수용자들의 저항이 수많은 지하수용소에서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일은 계당간, 할마헤이라, 람페그사리, 암바라와 6, 암바라와 8, 그리고 암바라와 9 지하수용소에서 벌어졌다.¹⁰⁾

1944년 중반쯤 유럽계 여자들이 갇혀 있던 매음굴은 폐쇄되었다. 이것은 동경에 있는 전쟁부의 한 대령이 자바 섬을 검열하려고 방문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전쟁 후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장군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은 임시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들 중 한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¹¹⁾

9) Ibidem, p. 2.

10) Rinzema-Admiraal, Win: *Het laatste front. Sociale gevolgen van de Japanse bezetting op Centraal-Java voor Indonesiërs en Europeaan*. Zutphen: Walburg Pers, pp. 98-132.

11) 지면의 제약 때문에, 나는 수마트라와 소위 말하는 '외곽 지역'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가 없다. 이것은 ibidem, p. 13-16을 참조하십시오.

네덜란드 외무부의 공식 보고서는 대략 65명의 여인들이 강제로 매춘을 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마가리타 해머-모노드 드 프로이더빌 여사(Marguerite Hamer-Monod de Froideville)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숫자는 약간 더 높을 수 있다.¹²⁾ 해머-모드 드 프로이더빌 여사는 네덜란드의 프로젝트 실행 위원회(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in the Netherlands, PICN)의 의장으로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아시아 여성기금(Asian Women's Fund, AWF)을 위하여 활동했다. 그런 만큼 그녀는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매춘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였다. 그녀의 PICN 기록에 따르면,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해 일인당 57,450 플로린(네덜란드 화폐단위, 대략 25,130유로)을 79명에게 특별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¹³⁾ 이들 79명에게 지급된 기금 가운데 28건은 이전 민간인 수용자들이 가져갔다. 여성들뿐 아니라 네덜란드 소년들도 일본인들의 희생자들이었다. 2명의 네덜란드 남성은 그들이 각각 열두 살과 여덟 살이었을 때 여러 명의 일본군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익명으로 증언했다.¹⁴⁾ 나머지 51명의 생존자들은 민간인 지하수용소 밖에서 살았고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 출신의 여성들이었다.

아시아와 유럽 여인들이 끌려와 살았던 군인들 용 매음굴은 여성들에게 강제로 매춘을 시키는 한 가지 방편이었다. 이러한 매음굴은 일본군의 군법 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들은 성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으므로, 군인들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군 당국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매일 매일의 행위는 대부분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군인들 용 매음굴 외에, 지하수용소 밖에 살고 있던 유라시아, 인도네시아, 중국계 여인들이 일본군의 희생이 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은 많았다.¹⁵⁾ 우선,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 있는 도시의 일부는 울타리가 쳐진 혹은 '출입이 통제된 마을'이어서, 여자들이 도망을 갈 가능성이나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포위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여자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때때로

12) 2007년 9월19일 헤이그에서 가진 에스더 캡튼과 마가리타 해머-모노드 드 프로이더빌 여사와의 인터뷰.

13) 아시아여성기금(AWF)으로부터의 특별기금은 사적인 기금으로 기부된 것이지, 일본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배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고, 3명의 네덜란드인 생존자들은 원칙적인 이유를 들어 이 돈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14) 이들 네덜란드 남성들은 AWF로부터 특별기금을 각각 받았다. Ars, 2000, p. 107을 참조하십시오.

15) 잔 배닝(Banning, Jan)의 『출판되지 않은 페이지』(*Unpublished Paper*), 2007. 이러한 사실의 발견은 현재 나이가 78-80세 혹은 그 이상 되는 인도네시아 여성들과의 최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가정부의 일과 같은 다른 일을 하면서 성적인 서비스를 일본군에게 행해야만 했다. 둘째로, 여자들이 성적으로 복종을 강요받는 당시(시골의 판자 집)라는 곳이 있었다. 비록 여자들은 집에서 혼자 살았지만, 거의 매일같이 군인들에 의해 선택되어 판자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 이런 일은 미혼 여성뿐 아니라 기혼여성들에게도 행해졌다. 세 번째, 어떤 특정 군인에 의해 강제로 '첩'이 되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그 군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그런 여성들 일부는 그를 억지로 따라 가도록 강요당했다.

4. 강제 매춘이란 문제에 대한 전후의 반응

다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즉, 1991년 8월, 한국 여인인 김학순 여사는 전쟁 중에 일본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공개석상에서 최초로 말을 했다. 다른 두 한국의 생존자들과 함께 김학순 여사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그들의 범죄를 추적하는 일을 시작했다. 1992년 일본의 역사가 요시아키 요시미는 일본 군국정부가 강제 매춘이란 문제에 연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모음집 *Jugun Ianfu Shiryoshu*라는 책을 출판했다.¹⁶⁾ 그 결과는 일본정부가 당시 책임 있는 군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위 '위안소'라는 장소를 설치하고 이 '위안소'에서 일을 시키기 위하여 여자들을 강제로 차출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1993년의 소위 코노 선언(Kono-declaration)을 이끌어냈다. 비록 일본정부는 사과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금전적인) 배상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다.¹⁷⁾

1994년 진 러프 오현 여사(당시 71세)는 '50년 동안의 침묵'(Fifty Years of Silence)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증언을 출판했다. 그 책에 그녀는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 살고 있던 젊은 여성인 자신이 어떻게 세마랑에 있는 매음굴에서 '위안부'로 강제

16) Yoshimi, Yoshiaki: 'De kwestie van de 'troostvrouwen voor het leger': de houding van de huidige Japanse regering'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13-18.

1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기타 상호 합의에는 강제 매춘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전 세기의 60년대와 70년대에 금전적인 배상에 대한 협상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개인들의 모든 주장은 일본 재판관에 의해 기각되었다. 마가리타 해머-모노드 드 프로이드빌, 2007을 참조하십시오.

로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했다.¹⁸⁾ 전쟁 후 러프 오헌 여사는 영국 군인과 결혼했다. 현재 그녀는 호주에서 살고 있다.¹⁹⁾

1)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의 진 러프 오헌 여사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의 진 러프 오헌 여사.
출처: *Jaarboek NIOD*, 1994

오헌 여사의 충격적인 설명은 그녀가 동경에서 있었던 일본 전범에 대한 국제 공개 청문회(1992년 12월)에 갔다는 사실과 더불어 네덜란드와 해외에서 미디어에 의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²⁰⁾ 이 일은 네덜란드에 있는 다른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강제 매춘에 대하여 말을 꺼내게 해준 자극제가 되었다. 한 여인은 익명으로 지역의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다.²¹⁾ 벅시 누호프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은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로 동의했다.²²⁾ 그 결과는 충격적이고 동시에 감동적인 모습의 그녀의 사진으로 나왔다.

2) 벅시 누호프 여사

당시 75세였고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는 자신이 '위안부'였

18) Ruff O'Herne, Jeanne: 'Vijftig jaar zwijgen'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46-68.

19) 진 러프 오헌 여사와 관계가 있는, 그 당시에 자서전적인 기억력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Withuis, Jolande: 'Een kleine sociologie van het herinneren. Over de sociale context van het autobiografisch geheugen' in: *Cogiscope*, nr. 1, 2006, pp. 7-12.

20)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Rijen van, Mark: 'Een pijn die blijft' in: *Algemeen Dagblad*, 9 december 1992; Soest van, Marjo: 'JanRuff kan na vijftig jaar eindelijk haar verhaal vertellen. Gedwongen in een Japanse legerbordeel' in: *Vrij Nederland*, 4 september 1993.

21) Kraayeveld, Maaïke: 'Altijd die angst, die panische angst' in: *Goudse Courant*, 15 augustus 1992.

22) Zee van der, Renate: "Altijd weer die klopp op de deur." Het verhaal van Betsie Nuhoff (85) over haar tijd als troostmeisje in Semarang' in: *NRC Handelsblad*, 24 maart 2007.

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러프 오헌 여사는 세마랑에서 반 데어 플로그 여사와 중·고등학교 때 친구였다. 반 데어 플로그 여사의 이야기는 1998년 출간되었다.²³⁾ 현재까지 러프 호헌 여사(84세)와 반 데어 플로그 여사(85세)는 일본정부로부터 도덕적이고 금전적인 배상을 얻어내기 위해 '위안부' 출신 여성들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벤티 누호프 여사. 촬영: 플립 프란센

이 논문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프 오헌 여사는 2007년 2월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2007년 11월 반 데어 플로그 여사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중지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 투어에 합류했다. 이 투어는 '일본이 갚아야하는 명예의 빚 재단' (JES: Foundation for Japanese Honorary Debts)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캠페인을 조직한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하는 연합 활동이다. 청원서는 2007년 11월3일 네덜란드 의회 의원인 한스 반 바알렌(Hans van Baalen, VVD: 자유당)에게 전달되었다. 올 3월에 이미 반 바알렌은 외무부와 공중보건, 복지 및 체육부에 강제 매춘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냈다.

3)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

강제적으로 자행된 매춘 문제를 전후의 세대가 반응하는데 있어서 어느 민족 출신이냐는 것은 중대한 역할을 했다. 나의 관점은 서방 세계의 미디어와 학계에 깊이 박혀있는, 네덜란드적인 역사학자의 관점과 같다. 김학순 여사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 강제 매춘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러브 오헌 여사가 강제 매춘을 당한 생존자로서 증언을 했을 때 네덜란드는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그녀를 강제로 '위안부'가 된 최초의 '백인'이며 '서양' 여성으로 드러내었다.²⁴⁾ 또한 아시아의 대중매체도 반응했다. 인도네시아 신문인 『템포』

23) Goos, Jos: *Gevoelloos op bevel. Ervaringen in een jappenkamp van Ellen van der Ploeg*. Utrecht: Het Spectrum, 1998.

24) Captain, Esther: *Achter het kawat was Nederland. Indische oorlogservaringen en -*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
출처: 2007년 8월자 *Moesson*,
사진 프레드릭 플라밍스

(*Tempo*)와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그들의 신문 1면에 “네덜란드 여성들 제2차 세계 대전의 성 노예 리스트에 추가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²⁵⁾

한편으로, 뉴스는 현장에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언론의 집중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백인’이며 ‘서양’ 여성이 강압에 의하여 매춘을 했다는 사실은 뉴스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 의견으로 이전 식민지에서의 계급의식과 사고방식은 탈식민주의 시대의 현실과도 여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식민사회에서 ‘백인’과 ‘서양’ 여성이라는 신분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인 여성들의 신분

보다 더 높았다(더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결혼과 성차별(sexuality)은 이론적으로 인종과 나이와 젠더에 따라 철저하게 선이 그어져서 규정되어 있었다. 매춘은 흔히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필요악’으로 간주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이었다.²⁶⁾ 이렇게 역사적으로 함축된 의미들은 ‘강요된 매춘’이라는 문제에 관한한, 대중매체가 특별히 ‘서양’ 여성들의 경우에 쏟는 요즘의 관심 집중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4) 동경에서 진 러프 오현 여사

그러나 만약 우리가 ‘네덜란드인이고 백인이고 서양 여성’으로 소개하는 러프 오현 여사와 반 데어 플로그 여사의 인종적인 배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게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러프 오현 여사와

herinneringen 1942-1995. Kampen: Kok, 2002, p. 280.

25) van, Bart: ‘Oosters stille dwang’ in: *NRC Handelsblad*, 8 augustus 1992.

26) 리스베스 헤세링크(Hesselink, Liesbeth) “매춘: 필요악, 특히 식민지에서. 네덜란드령 인도제도에서의 매춘에 관한 관찰(‘Prostitution: a necessary evil, particularly in the colonies. Views on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Indies’ in: Elsbeth Locher-Scholten and Anke Niehof [eds], *Indonesian women in focus* [Leiden: KITLV, 1987], pp. 205-225).



동경에서 진 러프 오현 여사. 1992년 12월.
출처: *Jaarboek NIOD*, 1994

반데어 플로그 여사는 유라시아인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혼혈인종이라는 배경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즉, 그들은 네덜란드 계와 인도네시아 계의 혼혈아로 태어났다.

다음은 자신의 부친의 가족에 관하여 러프 오현 여사가 한 말이다. “나의 부친은 자바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유라시아 계 어머니였다. (중략) 부친의 어머니 진은 당시 네덜란드 여성들의 관습대로 사롱(sarong)과 케바야(kebaja)를 입고 있었다.”²⁷⁾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강제 매춘 제도는 분명히 인종차별적이었다. 군대(일본군들 - 저자 추가)의 선호도 리스트에 일본 ‘위안부’들은 첫 번이었고, 일본 여자들의 얼굴과 몸매를 닮은 한국 여인들은 그 다음이었다. 그 다음은 대만과 중국 여인들이 뒤따랐다. 이 리스트의 가장 아래에는 검은 피부의 동남아 여인들이었다. 유라시아 계 여자들은 매우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중략) 일부 일본인들은 드러내놓고 서양 여자들을 이국적이고 에로틱하다고 여겼다. (중략) 복수도 한 가지 이유였다. 네덜란드인과 백인종에 대한 복수였다.”²⁸⁾ 반 데어 플로그 여사는 그녀가 가진 부분적인 아시아인의 모습이 일본 군인들의 선호도에 한 가지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나는 일본군들이 매일 찾아오지 않았다. 그건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여인들을 일본군이 더 좋아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은 앞 쪽에 있는 방에 있었다. 나는 뒷방에 있었다.”²⁹⁾

27) Ruff O'Herne, Jeanne: 'Vijftig jaar zwijgen'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 48.

28) Ars, Brigitte: *Troostmeisjes. Verkrachting in naam van de Keizer*. Amsterdam: Arbeiderspers, 2000, p. 51 and 104-105. 알스(Ars)는 이러한 차별이 여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데도 반영되었다고 기록한다. 필리핀의 매음굴에서 한국과 일본 여인들은 5.50엔을 벌 때, 스페인 계 여인은 11엔, 그리고 미국 여인은 13엔을 벌었다.

5)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

유라시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동인도제도에서 만약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낳았다고 인정하면 유럽계 인구 그룹에 속했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러프 오현 여사와 반 데어 플로그 여사는 유럽계 여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유라시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백인' 여성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후 강제 매춘이라는 문제를 수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엘렌 반 데어 플로그 여사. 촬영: 잔 배닝.
네덜란드 우트레흐트

결국, 특별히 '서양' 여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중매체의 관심이 집중될 경우, 만약 그런 관심이 강압에 의해 매춘을 한 모든 여성들의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진척시킨다면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러프 오현 여사는 자신이 증언을 했고 또 '서양' 여성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매우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 여성들이 텔레비전에서 일본정부를 향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래도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생각했다. 위정자들이 알아야 한다. 만약 유럽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일본은 들어줄지도 모른다. (중략) 그들 [한국 여인들 - 저자 추가]은 너무 행복했다. 마침내 한 유럽계 여성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서양' 여성이라는 것에 집중되는 초점은 유럽 여인들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아시아 여인들이 매춘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1930년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기까지 대략 총 200,000명의 여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마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200명에서 300명의 여인들도 이 시스템의 일부로 추산된다. 이들 여인들 가운데 65명은 분명 강요에 의하여 매춘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29) Lappain, Denise: 'Ik was bang voor de reactie van mensen.' Ellen van der Ploeg geeft troostmeisjes een stem' in: *Moesson, het Indisch maandblad*, augustus 2007, p. 44.

30) Soest van, Marjo: 'Jan Ruff kan na vijftig jaar eindelijk haar verhaal vertellen. Gedwongen in een Japanse legerbordeel' in: *Vrij Nederland*, 4 september 1993, pp. 12-13.

리프 오현 여사(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음)와 반 데어 플로그 여사(현재 네덜란드에 살고 있음)는 그들 중 두 명이고 일반대중들에게 드러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인들이다. 60년 이상이 지난 후 그들은 둘 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볼 수 없는 한국과 기타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동료 생존자들과 함께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위하여 투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참고문헌

- Ahn, Johnson: 'Out of the Darkness: The Story of a 'Comfort Woman' in: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vol. 3, nr. 2, 1996, pp. 225-232. (어둠으로부터: '위안부 여인'의 이야기)
- Ars, Brigitte: *Troostmeisjes. Verkrachting in naam van de Keizer*. Amsterdam: Arbeiderspers, 2000.
- Asian Women's Fund,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Asian Women's Fund*. Tokyo: Asian Women's Fund, 2004. (아시아여성기금.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 Banning, Jan en Hilde Jansen: 'Troostmeisjes' in Indonesië'. Unpublished paper 2007.
- Captain, Esther: *Achter het kawat was Nederland. Indische oorlogservaringen en -herinneringen 1942-1995*. Kampen: Kok, 2002.
- Goos, Jos: *Gevoelloos op bevel. Ervaringen in een jappenkamp van Ellen van der Ploeg*. Utrecht: Het Spectrum, 1998.
- Hamer-Monod de Froideville, Marguerite: *Dwangprostitutie*. Lecture at the Commemoration of the Japanese Surrender, The Hague, the Netherlands, August 15, 2007.
- Hesselink, Liesbeth: 'Prostitution: a necessary evil, particularly in the colonies. Views on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Indies' in: Elsbeth Locher-Scholten and Anke Niehof (eds.), *Indonesian women in focus*(Leiden: KITLV, 1987), pp. 205-225. ('매춘: 필요악, 특히 식민지에서. 네덜란드 인도제도에서의 매춘에 대한 관찰')
- Hicks, George: 'Japanese legerprostitutie 1932-1945: een overzicht'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19-30.
- Hirano, Keiji: 'Website documents wartime sex slaves' in: *Kyodo News*, September 28, 2007. (웹사이트 문서 戰時의 성 노예들)
- Jansen, Hanneke: 'Troostmeisjes op tournee. Petitie om steun Nederlandse regering tegen Japanse overheid' in: *Trouw*, 2 november 2007.
- Kamervragen van de Tweede Kamerleden Van Baalen en Zijlstra (VVD) aan de ministers van Buitenlandse Zaken en van Volksgezondheid, Welzijn en Sport*, Den Haag, the Netherlands, 16 maart 2007. [*Questions of Members of the Dutch Parliament Van Baalen and Zijlstra (VVD) to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of Public Health, Welfare and Sport*, The Hague, the Netherlands, March 16, 2007].
- Kamervragen van de Tweede Kamerleden Van Gennip en De Vries (CDA) aan de ministers van Buitenlandse Zaken en van Volksgezondheid, Welzijn en Sport*, Den

Haag, the Netherlands, 22 maart 2007. [*Questions of Members of the Dutch Parliament Van Gennip en De Vries (CDA) to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of Public Health, Welfare and Sport*, The Hague, the Netherlands, March 22, 2007].

Kraayeveld, Maaïke: 'Altijd die angst, die panische angst' in: *Goudse Courant*, 15 augustus 1992.

Lappain, Denise: "Ik was bang voor de reactie van mensen.' Ellen van der Ploeg geeft troostmeisjes een stem' in: *Moesson, het Indisch maandblad*, augustus 2007, pp. 42-45.

Lugt van der, Hans: "Troostmeisjes' verdwijnen uit de geschiedschrijving' in: *NRC Handelsblad*, 20 maart 2001.

Meeteren van, Wilma: 'Het onrecht van zestig jaar geleden bestaat nog steeds' in: *Trouw*, 31 mei 2007.

Poelgeest van, Bart: 'Oosters stille dwang' in: *NRC Handelsblad*, 8 augustus 1992.

Postma, Eun-mi: De week van Eun-mi Postma over 'troostmeisjes' in: *Nieuwsbrief Amnesty International*, november 2007.

Ravensbergen, Sanne: 'Troostmeisjes in de actualiteit' in: *De Sobat*, oktober 2007, pp. 20-21.

Rinzema, Win: *Het geschonden beeld. Aspecten van gedwongen legerprostitutie in door Japan gekoloniseerd en bezet Azië*. Leeuwarden: zonder uitgever, 1993.

Rinzema-Admiraal, Win: *Het laatste front. Sociale gevolgen van de Japanse bezetting op Centraal-Java voor Indonesiërs en Europeanen*. Zutphen: Walburg Pers, 2000.

Rijen van, Mark: 'Een pijn die blijft' in: *Algemeen Dagblad*, 9 december 1992.

Ruff O'Herne, Jeanne: 'Vijftig jaar zwijgen'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46-68.

Soest van, Marjo: 'Jan Ruff kan na vijftig jaar eindelijk haar verhaal vertellen. Gedwongen in een Japanse legerbordeel' in: *Vrij Nederland*, 4 september 1993.

Tokudome, Kinue: 'Passage of H.R. 121 on 'Comfort Women', the US Congress and Historical Memory in Japan' in: *Asia Pacific Newsletter*, September 3, 2007. The article was published at *Japan Focus* on August 30, 2007. ("위안부'에 대한 미 하원 결의안 121호의 통과를 통해본 미국 의회와 일본의 역사 인식")

Touwen-Bouwsma, Elly: 'Japanse legerprostitutie in Nederlands-Indië 1942-1945'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31-45.

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voormalig Nederlands-Indië. Kamerstuk 23607*. Den Haag, vergaderjaar 1993-1994.

Verslaggever *Trouw*, 'Japan boos over motie in de VS over 'troostmeisjes' in: *Trouw*, 20 februari 2007.

Velden van, Dora: *De Japanse interneringskampen voor burgers gedurende de Tweede Wereldoorlog*. Franeker: T. Wever, 1985 (vierde druk).

Written Question E-5100/07 from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n the subject of 'Comfort Women' in Japan. Brussels, October 29, 2007.

Withuis, Jolande: 'Een kleine sociologie van het herinneren. Over de sociale context van het autobiografisch geheugen' in: *Cogiscope*, nr. 1, 2006, pp. 7-12.

Yoshimi, Yoshiaki: 'De kwestie van de 'troostvrouwen voor het leger': de houding van de huidige Japanse regering'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13-18.

Zee van der, Renate: "Altijd weer die klop op de deur.' Het verhaal van Betsie Nuhoff (85) over haar tijd als troostmeisje in Semarang' in: *NRC Handelsblad*, 24 maart 2007.

웹사이트

www.awf.or.jp

감사의 말

마가리트 해머-모노드 드 프로이테빌, 네덜란드 프로젝트 이행 위원회 의장/아시아여성기금 <Ms. Marguerite Hamer-Monod de Froideville, chairwoma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in the Netherlands (PICN)/Asian Women's Fund (AWF)>

주소

Dr. Esther Captain, Tiberdreef 42, 3561 GG Utrecht, the Netherlands.

Telephone: + 31 30 2400371, email: esther.captain@orange.nl

(번역 : 충남대 통번역센터)

「동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에게 행해진 강제매춘(1942~1945)과 현재(1945~2007) 네덜란드 생존자의 증언」에 대한 토론문

토론: 장석홍(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캡틴 박사의 글은 일본군의 성적 야만 행위가 세계 도처에서 각국의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자행되었음을 밝히는 귀중한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군의 성적 만행은 단순히 희생자의 개별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에 자행된 일본군의 성적 범죄를 국제사회가 인식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 학계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한 것도 10여 년 남짓할 뿐입니다. 그만큼 일본군의 야만적 행위는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것입니다. 희생자를 비롯하여 몇몇 단체와 연구자들이 열성적으로 일본군의 만행을 밝혀내고 있지만,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조망하려는 오늘의 학술심포지움은 더욱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동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진 일본군의 성적 만행과 관련한 1차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본격적 토론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캡틴 박사의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캡틴 박사는 발표문은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벌어진 네덜란드 여인들의 강제매춘”(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voormalig Nederlands-Indië*. Kamerstuk 23607. Den Haag, vergaderjaar 1993~1994.)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원자료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접하지 못하였기에,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는지요.

2. 일본군이 매음굴을 만들 때 '한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무자들이 매음굴을 만드는데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국의 지원'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입니다.

3.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200~300명의 여자들이 일본군의 매음굴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끌려간 한국인 여성만도 정부 차원에서 신고 확인된 수가 30여 명이고, 학계에서 추정하는 인원은 3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볼때, 일본군 주둔의 규모에 비하면 그보다 많은 숫자가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지요.

4. 일본군의 매음굴에서 일한 여성 가운데는 '자발적 매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매춘'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매춘' 행위를 하던 여인들이라면 몰라도, '매춘' 행위를 하지 않던 여인들이 전장터에서 '매춘' 행위를 해야 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5. 200~300명의 여인이 강제매춘에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서양계 여성의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서양계 여성과 동양계 여성에 대한 차별(차이?)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말씀해 주실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Forced Prostitution in the Dutch East Indies Then (1942-1945) and Post-War Voices of Survivors in the Netherlands Now (1945-2007)

Dr. Esther Captain(Utrecht University, the Netherlands)

NOTE: THIS IS NOT THE FINAL DRAFT. PLEASE DO NOT QUOTE.

Abstrac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Dutch East Indies, an estimated number of 200-300 women of Dutch and Eurasian women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by the Japanese military. In the first part of my paper, I will present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forced prostitution in the former colony of the Netherlands. The issue of ethnicity of the women who received attention of the Dutch media will be taken into account. It was particularly after the 'discovery' that 'western' women had been involved with forced prostitution that the Dutch media were interested. In the second part of my paper, I will pay attention to the post-war reception of this issue: varying from neglect, coping with trauma to claims for financial compensation, an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demands for moral responsibility and apologies.

1. Introduction

When I received the invitation of professor Kim to be one of the speakers at the conference of today and the prospect of travelling to Asia again, I was very eager to know more about Korea. So, as modern travellers of today do, I bought the *Lonely Planet Guide* of Korea in order to prepare myself for the journey. When I started reading the history section of the *Lonely Planet*

Guide, I was struck by the fact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was included in the book – which, after all, is a tourist guide.

In the chapter that deals with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huge amount of Korean men and women (more than three million!) that were “uprooted from their home and sent to work as miners, farm labourers, factory workers and soldiers abroad, mainly in Japan and Manchukuo” is mentioned.¹ The next quote is very clear: “The worst aspect of this massive mobilisation (...) came in the form of ‘comfort women’ – the 100.000 to 200.000 young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to work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ed forces.”² The historical overview is completed with the personal story of Hwang Geum-joo and a reference to a website (www.twotigers.org) that includes the personal testimonies by Korean ‘comfort women’ “that give a unique insight into their horrifying ordeals.”³

In my opinion,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issue of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during the occupation the Japanese Army is included in a tourist guide. Although claims of the women themselves never have been fully met, their lobby has succeeded in raising attention to a very broad and general public, which is not necessarily interested in this history. In my opinion,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included in the canonical history of Korea. This is an

¹ Robinson, Martin, Ray Bartlett and Rob Whyte, *Lonely Planet Guide – Korea*. Victoria: Lonely Planet Publications, 2007 (7th edition, first published in 1988), p. 37.

² Ibidem, p. 38.

³ “A long protest. Since 1992, Hwang Geum-joo and a handful of other Korean ‘comfort women’, survivors of the WW II camps where they were forced to have sex with Japanese soldiers, have protested outside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every Wednesday at noon. ‘Our numbers are dwindling every year and nothing has changed,’ she has said. With their young supporters, the old ladies hold up placards demanding an apology and financial compensation. Hwang Geum-joo has taken part in over 554 protests outside the embassy but has refused to give up. ‘We are still full of anger and they should apologise for what they did to us!’” in: ibidem, p. 37.

accomplishment that is not to be underestimated. The worldwide lobby of 'comfort women' has certainly attracted the public attention.

My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first part of my paper, I will present a brief history of forced prostitution in the former colony of the Netherlands. In the second part of my paper, I will pay attention to the post-war reception of the issue of 'comfort women', which includes the post-war voices of survivors in the Netherlands. Although I know that legal matters are of crucial importance to the issue of 'comfort women', I will not deal with jurisdiction and other topics that are related to law, since I have not been trained as a law student.

2. A Worldwide Lobby

But before I will start with the discussion of the two topics that I just mentioned, I would like to return briefly to the successful lobby of 'comfort women' in the past recent years, especially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affairs. It was in February 2007 that Ms. Jeanne Ruff O'Herne, 85 years old and living in Australia, testified at the US Congress in Washington DC, USA, She spoke as a former ex-'comfort woman' about her experiences during the war in the former Dutch East Indies (after its independence know as Indonesia). She was accompanied by two South-Korean survivors.



(Ms. Jeanne Ruff O'Herne in Washtington DC in: *Trouw*, February 17, 2007)

Ms. Ruff O'Herne was invited by Mr. Michael Honda,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ese-American descent. Mr. Honda hope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ould adopt Resolution 121, in which “the government of Japan w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concern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⁴ Former Prime Minister Japan Abe got himself in trouble when he stat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for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Six months later, Resolution 121 was passed succesfully by the full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ly 30, 2007. A coalition of support groups, known as the “121 Coalition”, was established. It comprised almost 200 organisations across the USA, notably Korean-American citizen groups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They emphasize that “Resolution 121 is the ultimate human rights and woman’s rights issue, not a Japan-bashing issue.”⁵

⁴ Tokudome, Kinue: ‘Passage of H.R. 121 on ‘Comfort Women’, the US Congress and Historical Memory in Japan’ in: *Asia Pacific Newsletter*, September 3, 2007. The article was published at *Japan Focus* on August 30, 2007.

⁵ Ibidem.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is emphasis on the rights of *humans* confirms that the case of 'comfort women' is both about *women's* rights as well as *universal* rights: the right of integrity of one's own body and protection from (sexual) violence. This focus on universal rights is also reflected in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the Dutch Union FNV in May 2007, in line with the Korean Union who started the campaign, to state that Japan had violated the ILO-Convention against forced labour.⁶ Moreover, at October 29 of this year,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firmed that women's rights and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 "matters of particular concern to the EU" and that the Council would continue to follow Japan closely on the matter of 'comfort women'.⁷ We thus can conclude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s been put on the agenda of all major international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is a major achievement of the ladies themselves, who are now in their old age, as well as their supporters.

3. A Brief History

A brief history of 'comfort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shows that admission to the archives on this issue is limited to strict rules. It is evident that these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personal life of persons that are mentioned in the archival records. Therefore, my most important source is the report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the Dutch Parliament, in which an inventory was made of all the archival records in

⁶ Meeteren van, Wilma: 'Het onrecht van zestig jaar geleden bestaat nog steeds' in: *Trouw*, 31 mei 2007.

⁷ *Written Question E-5100/07 from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n the subject of 'Comfort Women' in Japan*. Brussels, October 29, 2007.

the Netherlands concerning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⁸ The research for this report, titled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former Dutch East Indies', was conducted in 1993 and published in January 1994. It is based on documents, created by various governmental authorities, that were involved in the tracing, legal prosecution and trial of war criminals and collaborators in the Dutch East Indies.

The report indicates tha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Dutch East Indies, forced prostitution existed on the five major islands (Sumatra, Java, Celebes/Sulawesi, Borneo/Kalimantan and the Moluccan islands) and a number of smaller islands (Flores, Timor). The women involved were of Indonesian, but also of Dutch and Eurasian descent. In the report it is clearly indicated that the issue of 'voluntary' or 'forced' prostitution is very difficult indeed. Each form of 'voluntariness' cannot be seen withou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civilian internment-camps, this meant brutal behaviour by the camp-guards and an urgent shortage of food, leading to invalidity, (chronical) diseases and high numbers of deceases among the internees.⁹ For women outside the camps, mostly Eurasian and Indonesian, the very difficult financial and social position in which they had to live, belonged to those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Temporary Court Martial (*Temporaire Krijgsraad*) in Batavia/Jakarta had decided that one speaks of forced prostitution if women refused to cooperate to the Japanese demands and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had used physical force to make the women comply. The report concludes that in the former Dutch East Indies a total amount of 200 till 300

⁸ 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voormalig Nederlands-Indië*. Kamerstuk 23607. Den Haag, vergaderjaar 1993-1994.

⁹ *Ibidem*, p. 2.

women were working in the Japanese military brothels. Of approximately 65 women it is evident that they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On the island of Java, until mid 1943, the 16th Japanese army used Europeans, Chinese and Indonesians to recruit women. In daily practice, the women were recruited as 'housekeeper' for individual Japanese soldiers or civilians.

In the second half of 1943, the army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themselves established brothels with the help of Japanese and Korean support. At Java, this happened in Batavia, Bandoeng, Pekalongan, Magelang, Semarang and Bondowoso. European women were recruited for these brothels. Besides these brothels, there were separate brothels for Indonesian and Chinese women. The most known cases of forced prostitution were the recruitment of European women for the army brothels in Magelang and Semarang (November 1943-January 1944). Historian Win Rinzema-Admiraal has written that in a number of internment-camps, there was resistance of the internees against the Japanese who tried to recruit women for the brothels. This happened in the internment-camps Gedangan, Halmaheira, Lampersari, Ambarawa 6, Ambarawa 8 and Ambarawa 9.¹⁰

Mid 1944, the brothels in which European women were kept, were closed.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a colonel of the ministry of War in Tokyo was making an inspector's visit at Java. After the war, the responsible general, his colleagues and other soldiers, stood on trial for the Temporary Court Martial. One of them received the death penalty, while others were sentenced to jail.¹¹

¹⁰ Rinzema-Admiraal, Win: *Het laatste front. Sociale gevolgen van de Japanse bezetting op Centraal-Java voor Indonesiërs en Europeaan*. Zutphen: Walburg Pers, pp. 98-132.

¹¹ Because of lack of space, I cannot discuss the situation at Sumatra and the so-called 'Outer Regions'. For this, see: *ibidem*, p. 13-16.

The official report Dutch report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tates that approximately 65 women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An interview with Ms. Marguerite Hamer-Monod de Froideville shows that this number might be slightly higher.¹² Ms. Hamer-Monod de Froideville acted from 1998 until 2001 on behalf of the Asian Women's Fund (AWF) as chairwoma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in the Netherlands (PICN). As such, she was a mediator for those who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in the former Dutch East Indies. Her PICN-records show that 79 allowances of fl. 57.450,- (approximately €25.130,-) per person were paid by the Asian Women's Fund (AWF).¹³ Of these 79 allowances, 28 claims were from former civilian internees. Not only women, but also young Dutch boys have been victims of the Japanese. Two Dutch men have testified anonymously that they have systematically been violated by various Japanese soldiers: one was twelve, the other was eight years of age.¹⁴ The remaining 51 survivors were living outside the civilian internment-camps and were women from Indonesian and Eurasian background.

The military brothels, in which Asian and European were forced to stay, were one way of forcing women into prostitution. As these brothels were established under Japanese military rule, attention was paid to the 'health' of women. As they should be free from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use of condoms by the soldiers was advocated by the authorities. The daily practice, however, turned out to be different most of the time.

¹² Interview of Esther Captain with Ms. Marguerite Hamer-Monod de Froideville, September 19, 2007 in The Hague.

¹³ As the allowances from the Asian Women's Fund (AWF) were donated as a private fund and not as an official allowanc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ree Dutch survivors refused to accept the money out of principal reasons.

¹⁴ These Dutch men do receive an allowance from the AWF. See: Ars, 2000, p. 107.

Besides the military brothels, there was a number of other ways in which Eurasian, Indonesian and Chinese women living outside the internment camps, could becom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¹⁵ Firstly, parts of the cities in the Dutch East Indies were made into enclosures with a fence, or 'gated communities', in which women did not have the possibility and courage to run away. The soldiers had guns and were intimidating the women, who had to perform sexual services, sometimes in combination with other work, such as housekeeping. Secondly, there were *tangsi's* (barracks in the rural areas) where women were forced into sexual obedience. Although the women were living at home, almost every day were picked up by the soldiers and raped in the barracks. This happened to married as well as unmarried women. Thirdly, there were women that were claimed as a forced 'concubine' by one certain soldier. He visited her frequently in her house. When the soldier was transferred to another place, some of these women were forced to follow him.

4. Post-War Reception of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

The story is well-known: in August 1991, the Korean woman Ms. Kim Hak Soon spoke as the first one out in the public about what had happened to her by Japan during the war. Together with two other Korean survivors, Ms. Kim Hak Soon started a trail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92, the Japanese historian Yoshiaki Yoshimi published *Jugun Ianfu Shiryoshu*, a data-collection containing documents that prov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¹⁵ Banning, Jan: *Unpublished paper*, 2007. These findings are based on recent interviews with Indonesian women, who are now 78-80+ years of age.

authorities were involved in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¹⁶ This resulted in the so-called *Kono*-declaration of 1993,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admitted that the then responsible military government directly or indirectly had been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comfort stations' and the recruitment of women by force to work in these 'comfort stations'.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offered its apologies, there were no words about (financial) compensation.¹⁷

In 1994, Ms. Jeanne Ruff O'Herne (then 71 years old) published her personal testimony 'Fifty years of silence', in which she wrote how she, a young woman living in the former Dutch East Indies, was forced to work as a 'comfort woman' in a brothel in Semarang.¹⁸ After the war, Ms. Ruff O'Herne married a British soldier. At present, she is living in Australia.¹⁹

¹⁶ Yoshimi, Yoshiaki: 'De kwestie van de 'troostvrouwen voor het leger': de houding van de huidige Japanse regering'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13-18.

¹⁷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agreements, no mention is made of forced prostitution. Negotiations about financial compensation in the fifties and sixties of the previous century were solved at an international level. All claims by individuals were rejected by Japanese judges. See: Marguerite Hamer-Monod de Froideville, 2007.

¹⁸ Ruff O'Herne, Jeanne: 'Vijftig jaar zwijgen'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46-68.

¹⁹ See for the development of autobiographic memory during time, also related to Jeanne Ruff O'Herne: Withuis, Jolande: 'Een kleine sociologie van het herinneren. Over de sociale context van het autobiografisch geheugen' in: *Cogiscope*, nr. 1, 2006, pp.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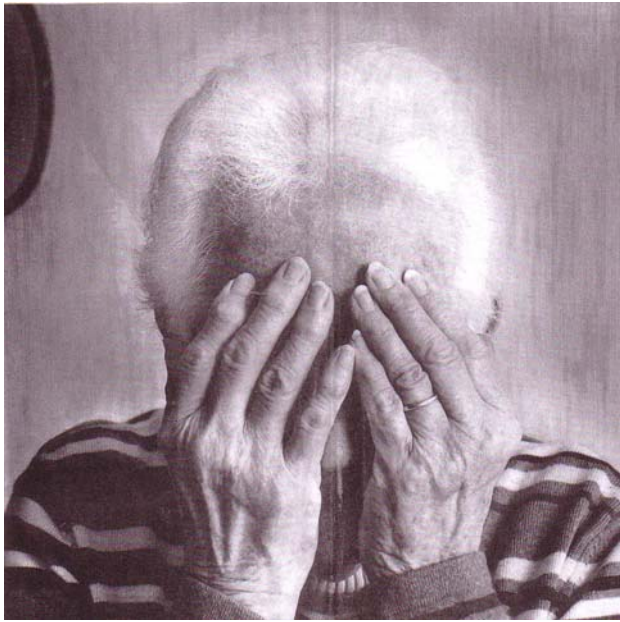
(Ms. Jeanne Ruff O'Herne before WW II in: *Jaarboek NIOD*, 1994)

The shocking account of Ms. O'Herne, combined with the fact that she went to the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of Japanese War Crimes in Tokyo (December 1992), received a lot of attention by the media in the Netherlands and abroad.²⁰ It also prompted other women in the Netherlands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forced prostitution. One woman gave an anonymous interview to a local newspaper.²¹ Another woman, named Ms. Betsie Nuhoff, agreed to talk to the newspaper about her experiences as long as she could not be recognized in the pictures made of her.²² This resulted in a picture of her that is shocking and moving at the same time.

²⁰ See for example: Rijen van, Mark: 'Een pijn die blijft' in: *Algemeen Dagblad*, 9 december 1992; Soest van, Marjo: 'Jan Ruff kan na vijftig jaar eindelijk haar verhaal vertellen. Gedwongen in een Japanse legerbordeel' in: *Vrij Nederland*, 4 september 1993.

²¹ Kraayeveld, Maaïke: 'Altijd die angst, die panische angst' in: *Goudse Courant*, 15 augustus 1992.

²² Zee van der, Renate: "'Altijd weer die klopp op de deur.' Het verhaal van Betsie Nuhoff (85) over haar tijd als troostmeisje in Semarang' in: *NRC Handelsblad*, 24 maart 2007.



(Ms. Betsie Nuhoff, picture by Flip Franssen)

Ms. Ellen van der Ploeg, then 75 years and living in the Netherlands, decided to talk openly about her experiences as a 'comfort women'. Ms. Ruff O'Herne was a friend of Ms. Van der Ploeg at secondary school in Semarang. The story of Ms. Van der Ploeg was published in 1998.²³ Till the present day, both Ms. Ruff O'Herne (84 years) and Ms. Van der Ploeg (85 years) are active participants in the struggle of former 'comfort women' to acquire moral and financial compens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s I mentioned in the beginning of my paper, Ms. Ruff O'Herne spoke in February 2007 at the US Congress. In November 2007, Ms. Van der Ploeg joined an European tour named 'Stop violence against women'. This was a joint action of the Dutch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JES: 'the Foundation for Japanese Honorary Debts') and Amnesty International,

²³ Goos, Jos: *Gevoelloos op bevel. Ervaringen in een jappenkamp van Ellen van der Ploeg*. Utrecht: Het Spectrum, 1998.

who organised a similar worldwide campaign. At November 3, 2007, a petition was handed over to Hans van Baalen (VVD: liberal party), member of the Dutch Parliament. Already in March of this year, Van Baalen had sent questions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er of Public Health, Welfare and Sport about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



(Ms. Ellen van der Ploeg in: *Moesson*, August 2007, picture by Frédérique Vlamings)

In the post-war reception of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 ethnicity seems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My perspective is that of a historian based in the Netherlands, embedded in the western world of media and academics. In the Netherlands,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 did not receive a lot of attention when Ms. Kim Hak Soon first spoke about her painful past. When Ms. Ruff O'Herne gave her testimony as a survivor, the Dutch media were immediately interested and presented her as the first 'white' and 'western'

woman that was forced to become a 'comfort woman'.²⁴ Also the media in Asia responded. The Indonesian newspaper *Tempo* and the Japanese *Asahi Shimbun* wrote on their first page: "Dutch women added to the list of WW II sex slaves."²⁵

On the one hand, the attention of the press is understandable, as news that is close to home generally captures more attention.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fact that 'white' and 'western' women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had something that made the news more worthwhile. In my opinion, former colonial hierarchies and ways of thinking meet the post-colonial actuality here. The status of 'white' and 'western'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colonial society was (suppos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Indonesian and Chinese women. Marriage and sexuality were in theory regulated along strict lines, according to ethnicity, age and gender. Prostitution was considered 'a necessary evil', in which women of an often dubious background were active, such was the prejudice.²⁶ These historical connotations seem to be reflected in the present attention of the media to notably the case of 'western' women,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

²⁴ Captain, Esther: *Achter het kawat was Nederland. Indische oorlogservaringen en – herinneringen 1942-1995*. Kampen: Kok, 2002, p. 280.

²⁵ Poelgeest van, Bart: 'Oosters stille dwang' in: *NRC Handelsblad*, 8 augustus 1992.

²⁶ Hesselink, Liesbeth: 'Prostitution: a necessary evil, particularly in the colonies. Views on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Indies' in: Elsbeth Locher-Scholten and Anke Niehof (eds.), *Indonesian women in focus* (Leiden: KITLV, 1987), pp. 205-225.



(Ms. Jeanne Ruff O'Herne in Tokyo, December 1992 in: *Jaarboek* NIOD, 1994)

However, if we look more closely at the ethnic background of Ms. Ruff O'Herne and Ms. Van der Ploeg, who are presented as 'Dutch, white and western women', we must conclude that that is not the whole story. Both Ms. Ruff O'Herne and Ms. Van der Ploeg are Eurasian, that is to say of mixed ethnic background: they are Dutch and Indonesian. This is a quote of Ms. Ruff O'Herne about her father's family: "My father was born at Java and had a French father and an Eurasian mother. (...) His mother, Jeanne, dressed in *sarong* and *kebaja*, as was the habit then by Dutch women."²⁷ Journalist Brigitte Ars states that there was hierarchy of skin-colour that prevailed in the 'comfort stations'. She wrote in her book: "The system of forced prostitution was clearly racist. At the list of preference of the (Japanese –EC) army, Japanese 'comfort women' were first. Korean women, whose features resemble those of Japanese, were next. Then Taiwanese and Chinese followed. At the bottom of the list were dark-skinned South-East-Asian women. European women possessed a very high status. (...) Some

²⁷ Ruff O'Herne, Jeanne: 'Vijftig jaar zwijgen' in: *Oorlogsdok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k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48.

Japanese saw notably western women as exotic and erotic. (...) Revenge was also a reason: revenge against the Dutch and the white race.”²⁸ Ms. Van der Ploeg recently confirmed that her partly Asian features played a role in the preferences of the Japanese soldiers. She remembered: “I did not have visits every day.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blonde women with blue eyes were preferred by the Japanese. They were in the front rooms. I was in the back.”²⁹



(Ms. Ellen van der Ploeg, picture by Jan Banning, Utrecht, the Netherlands)

People of Eurasian background belonged to the European population-group in the colonial Dutch East Indies if their father had acknowledged them by

²⁸ Ars, Brigitte: *Troostmeisjes. Verkrachting in naam van de Keizer*. Amsterdam: Arbeiderspers, 2000, p. 51 and 104-105. Ars writes that this was also reflected in the payment of women. In a brothel in the Philippines, Korean and Japanese women would earn 5,50 yen, while a woman of Spanish descent earned 11 yen and an American woman 13 yen.

²⁹ Lappain, Denise: ‘Ik was bang voor de reactie van mensen.’ Ellen van der Ploeg geeft troostmeisjes een stem’ in: *Moesson, het Indisch maandblad*, augustus 2007, pp. 44.

birth, so in that sense it is clear that Ms. Ruff O'Herne and Ms. Van der Ploeg are presented as European women. The fact that they are of Eurasian background, presented as 'white' women, shows the post-war reception of the issue of forced prostitution is more complex than it seems.

After all, the attention of the media to particularly 'western' women should not be a negative thing if it promotes the case of all the women that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Ms. Ruff O'Herne actually was very conscious of the fact that she testified and was being perceived as a 'western' woman. She remembers when she saw Korean women on television, asking the Japanese government for compensation: "And nobody listened to them. (...) Suddenly I thought: the authorities have to know. If a European woman tells the story, then the Japanese might listen (...) They [the Korean women –EC] were so happy that finally an European woman supported them."³⁰ The focus on 'western' women, however, should not turn the attention away from the fact that considerable more Asian than European women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Estimations of historians claim that since 1930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total approximately 200.000 women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by the Japanese military. Possibly 200 till 300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were part of this system. Of 65 of these women it is undeniable that they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Ms. Ruff O'Herne (at present living in Australia) and Ms. Van der Ploeg (living in the Netherlands) were two of them and are visible to the public. More than sixty years later, they are both actively involved in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and human rights, together with their visible as well as non-visible fellow-survivor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Asia.

³⁰ Soest van, Marjo: 'Jan Ruff kan na vijftig jaar eindelijk haar verhaal vertellen. Gedwongen in een Japanse legerbordeel' in: *Vrij Nederland*, 4 september 1993, p. 12-13.

List of literature

Ahn, Johnson: 'Out of the Darkness: The Story of a 'Comfort Woman' in: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vol. 3, nr. 2, 1996, pp. 225-232.

Ars, Brigitte: *Troostmeisjes. Verkrachting in naam van de Keizer*. Amsterdam: Arbeiderspers, 2000.

Asian Women's Fund,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Asian Women's Fund*. Tokyo: Asian Women's Fund, 2004.

Banning, Jan en Hilde Jansen: 'Troostmeisjes' in Indonesië'. Unpublished paper 2007.

Captain, Esther: *Achter het kawat was Nederland. Indische oorlogservaringen en -herinneringen 1942-1995*. Kampen: Kok, 2002.

Goos, Jos: *Gevoelloos op bevel. Ervaringen in een jappenkamp van Ellen van der Ploeg*. Utrecht: Het Spectrum, 1998.

Hamer-Monod de Froideville, Marguerite: *Dwangprostitutie*. Lecture at the Commemoration of the Japanese Surrender, The Hague, the Netherlands, August 15, 2007.

Hesselink, Liesbeth: 'Prostitution: a necessary evil, particularly in the colonies. Views on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Indies' in: Elsbeth Locher-Scholten and Anke Niehof (eds.), *Indonesian women in focus* (Leiden: KITLV, 1987), pp. 205-225.

Hicks, George: 'Japanse legerprostitutie 1932-1945: een overzicht'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19-30.

Hirano, Keji: 'Website documents wartime sex slaves' in: *Kyodo News*, September 28, 2007.

Jansen, Hanneke: 'Troostmeisjes op tournee. Petitie om steun Nederlandse regering tegen Japanse overheid' in: *Trouw*, 2 november 2007.

Kamervragen van de Tweede Kamerleden Van Baalen en Zijlstra (VVD) aan de ministers van Buitenlandse Zaken en van Volksgezondheid, Welzijn en Sport, Den Haag, the Netherlands, 16 maart 2007. [*Questions of Members of the Dutch Parliament Van Baalen and Zijlstra (VVD) to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of Public Health, Welfare and Sport*, The Hague, the Netherlands, March 16, 2007].

Kamervragen van de Tweede Kamerleden Van Gennip en De Vries (CDA) aan de ministers van Buitenlandse Zaken en van Volksgezondheid, Welzijn en Sport, Den Haag, the Netherlands, 22 maart 2007. [*Questions of Members of the Dutch Parliament Van Gennip en De Vries (CDA) to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of Public Health, Welfare and Sport*, The Hague, the Netherlands, March 22, 2007].

Kraayeveld, Maaïke: 'Altijd die angst, die panische angst' in: *Goudse Courant*, 15 augustus 1992.

Lappain, Denise: '“Ik was bang voor de reactie van mensen.” Ellen van der Ploeg geeft troostmeisjes een stem' in: *Moesson, het Indisch maandblad*, augustus 2007, pp. 42-45.

Lugt van der, Hans: '“Troostmeisjes” verdwijnen uit de geschiedschrijving' in: *NRC Handelsblad*, 20 maart 2001.

Meeteren van, Wilma: 'Het onrecht van zestig jaar geleden bestaat nog steeds' in: *Trouw*, 31 mei 2007.

Poelgeest van, Bart: 'Oosters stille dwang' in: *NRC Handelsblad*, 8 augustus 1992.

Postma, Eun-mi: De week van Eun-mi Postma over 'troostmeisjes' in: *Nieuwsbrief Amnesty International*, november 2007.

Ravensbergen, Sanne: 'Troostmeisjes in de actualiteit' in: *De Sobat*, oktober 2007, pp. 20-21.

Rinzema, Win: *Het geschonden beeld. Aspecten van gedwongen legerprostitutie in door Japan gekoloniseerd en bezet Azië*. Leeuwarden: zonder uitgever, 1993.

Rinzema-Admiraal, Win: *Het laatste front. Sociale gevolgen van de Japanse bezetting op Centraal-Java voor Indonesiërs en Europeanen*. Zutphen: Walburg Pers, 2000.

Rijen van, Mark: 'Een pijn die blijft' in: *Algemeen Dagblad*, 9 december 1992.

Ruff O'Herne, Jeanne: 'Vijftig jaar zwijgen'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46-68.

Soest van, Marjo: 'Jan Ruff kan na vijftig jaar eindelijk haar verhaal vertellen. Gedwongen in een Japanse legerbordeel' in: *Vrij Nederland*, 4 september 1993.

Tokudome, Kinue: 'Passage of H.R. 121 on 'Comfort Women', the US Congress and Historical Memory in Japan' in: *Asia Pacific Newsletter*, September 3, 2007. The article was published at *Japan Focus* on August 30, 2007.

Touwen-Bouwsma, Elly: 'Japanse legerprostitutie in Nederlands-Indië 1942-1945'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31-45.

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voormalig Nederlands-Indië. Kamerstuk 23607*. Den Haag, vergaderjaar 1993-1994.

Verslaggever Trouw, 'Japan boos over motie in de VS over 'troostmeisjes'
in: *Trouw*, 20 februari 2007.

Velden van, Dora: *De Japanse interneringskampen voor burgers gedurende
de Tweede Wereldoorlog*. Franeker: T. Wever, 1985 (vierde druk).

*Written Question E-5100/07 from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n the subject of 'Comfort Women' in Japan*. Brussels, October 29,
2007.

Withuis, Jolande: 'Een kleine sociologie van het herinneren. Over de sociale
context van het autobiografisch geheugen' in: *Cogiscope*, nr. 1, 2006, pp. 7-
12.

Yoshimi, Yoshiaki: 'De kwestie van de 'troostvrouwen voor het leger': de
houding van de huidige Japanse regering' in: *Oorlogsdocumentatie '40-'45*.
Vijfde Jaarboek van het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Zutphen:
Walburg Pers, 1994, pp. 13-18.

Zee van der, Renate: "'Altijd weer die klopp op de deur.' Het verhaal van
Betsie Nuhoff (85) over haar tijd als troostmeisje in Semarang' in: *NRC
Handelsblad*, 24 maart 2007.

Website

www.awf.or.jp

Word of thanks

Ms. Marguerite Hamer-Monod de Froideville, chairwoma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in the Netherlands (PICN)/Asian Women's
Fund (AWF)

Address

Dr. Esther Captain, Tiberdreef 42, 3561 GG Utrecht, the Netherlands.
Telephone: + 31 30 2400371, email: esther.captain@orange.nl

대만의 일본군 위안소와 성폭력(1936~1945)

朱 德 蘭 *

1. 들어가는 말
2. 대만에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
 - 1) 대만군 병력의 증가
 - 2) 군수시설과 군수담당인원의 증가
3. 일본군 '위안소' 건립에 식민정부가 개입한 상황
 - 1) 지이롱 일본군 '위안소' 사례
 - 2) 자이이 일본군 '위안소' 사례
 - 3) 고우슝 일본군 '위안소' 사례
4. 대만 일본군 '위안소'들의 래원과 육체 및 정신상의 피해
 - 1) 대만 일본군 '위안소'의 래원
 - 2) 대만 일본군 '위안소'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상황
5. 결론

1. 들어가는 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1937년~1945년)기간 동안 일본군이 해외의 점령지와 주둔지에서 '위안소'를 설립하고 '위안부'들을 모집한 문제는 학계에서 이미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성과도 많이 거두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립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쟁 당시 대만은 일본제국주의가 중국 및 동남아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의 최전방으로서 일본의 해안선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

* 대만 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연구원.

'위안소'가 대만에 설치되었는지? '위안소'가 설치된 곳은 어디이며?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측에서 직접 개입했는지? '위안부'들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이 동원되었는지? 위안부들이 육체적 및 정신상에서 입은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대만에서 소장하고 있는 과거 일본정부가 발행한 신문과 선배 학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문제들을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2. 대만에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 3. 일본군 '위안소'의 건립계획에 식민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여한 상황 4. 대만 일본군 '위안부'의 래원과 그녀들이 육체와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상황이다.

2. 대만에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

일본의 식민통치하의 대만군은 곧 일본군을 가리킨다. 대만군의 조직체계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이루어졌다. 1895년부터 1918년까지는 대만총독이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군을 거느렸다. 1919년부터 대만에서 文官이 총독을 맡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타이베이에 대만군사령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군의 통수권은 천황에게 환수되었고 천황이 다시 육군 대장 혹은 중장 중에서 한 명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지휘권을 수여하였다. 대만군사령부는 휘하에 대만수비대사령부(타이베이에 주둔)를 두었다. 대만수비대사령부 휘하에는 대만보병 제1연대(타이베이에 주둔), 대만보병 제2연대(타이난에 주둔), 대만야전포대대(타이베이에 주둔), 지룽항중포병연대, 마아궁항(피엡후)중포병연대, 쑹산(타이베이)항공대, 미인쑤웅(자아이)항공대, 피엡항공대를 두고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1937년 일본이 대중국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대만에 주둔한 일본군 병력은 비교적 적은 숫자인 5천 명 전후였다.¹⁾

1) 대만군 병력의 증가

대만은 지리상으로 화남, 동남아지역과 인접해 있고 교통운송에 있어서도 아주 편

1) 佐藤眠洋: 『改隸40년의 대만』, (臺北: 臺北圖書刊行會, 1935), p.50.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상)(臺北: 國史館, 1937), pp.55-58.

리하였다. 때문에 1937년 일본의 대중국침략전쟁이 일어난 후 대만은 곧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일본군은 대만에서 집결한 후 군함을 타고 중국으로 출항하여 중국에서 작전하는 일본군사단을 돕는 전투에 참여하였다.²⁾

대만군이 중국대륙에 상륙하여 전쟁에 투입된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38년 대화남지역 작전을 책임진 대만군사령관 古莊幹郎中將은 제21대 군사령관(11월 9일부터는 安藤利吉中將으로 교체되었다)에 임명되었다. 그는 澎湖群島의 마아궁항(馬弓港)에 7만 5천명의 병력을 집결한 후 10월 11일 광둥성 연해지역인 따아아완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15일에는 혜양(惠陽)을 함락하고 21일에는 광주시를 점령하였다.³⁾ 또 예를 들면 대만군으로 편성된 飯田支隊는 1939년 1월 19일 해남도를 공략하라는 대본영 육군의 지시에 따라 제21군에 편입되어 해남도작전의 주력부대가 되었다.⁴⁾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 일본군은 해양작전에서 물자보급, 교통운송 및 통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전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남방지역에 대한 작전을 기획할 때 병참보급기지를 프랑스령 베트남 남부지역에 세우고 중계역할을 하는 보급기지는 대만에 세우기로 하였으며, 대만 기지를 지원하는 중계기지를 광둥(해남도를 포함함)성과 프랑스령 베트남 북부지역에 세워 군수물자운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일본군은 대만을 대남방지역 작전의 심장으로 여겼으며 대남방지역 작전에서 필요한 군수품 대부분을 대만에서 징수한 후 고우슝(高雄)항을 통해 공급하였다.⁵⁾

태평양전쟁기간동안 대만군 병력과 일본 교민(정부관리와 각 분야에서 일하는 일반 대중들이 포함됨)의 숫자는 아래와 같다. 도표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일본육군의 병력은 128, 537명으로 증가하였고 해군 병력은 37,472명이었으며 일본 교민은 322,149명이나 되었다. 그 외에 육군 소속 조선인 군인은 1,320명이고 해군 소속 군인은 17명이고 조선인 교민은 2,177명이었다. 일본 육군이 방위를 위해 주둔한 곳은 주로 타이베이, 씨인주(新竹), 타이중(臺中), 타이난(臺南), 고우슝, 화래앤(花蓮), 타이똥(臺東), 피영후 등 지역이다. 그 중에서 여성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였다.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과 조선 군인 및 교포들의 숫자를 합하면 모두 491,655명이 된다.⁶⁾

2)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 p.61.

3)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 p.61.

4)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 pp.70-71.

5)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 p.82.

6) 대만경비총사령부, 「臺灣地區日韓官兵僑民配置要圖」 『臺灣省軍事接收總報告』(타이베이: 대만경비총사령부, 1946), 그림. 조선여성의 분포지역은 주덕란의 「일제통치시대 대만의 유흥업소문

2) 군수시설과 군수담당인원의 증가

전시 일본군은 남방전선이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부대를 대만에 집결시키거나 체류시키는 일이 더욱 빈번하였다. 이와 함께 전쟁승리를 위해 대만의 군수공업시설을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예를 들면 공업 분야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진행하였다.

1. 육군 제5야전항공정비공장을 항공제8비행사단 부대에 예속시켰다. 본공장은 원래 피잉퉁에 있었으나 1944년 미군 폭격기의 폭격을 받은 후 타이베이 씨인페엔(新店)으로 이전하였으며 타이중, 자아이(嘉義), 화래엔, 피잉퉁에 4개의 분공장을 설립하였다.

2. 해군 제61항공공장은 본 공장이 원래 가양산(岡山)에 있었는데 규모가 아주 컸다. 본래는 소형 비행기를 제조하려고 기획했으나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폭격을 받은 후 타이베이 스린(士林)으로 이전하였다. 본 공장 밑에는 씨인주, 貝林, 타이난 등 지역에 4개의 분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들은 주로 해군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 외에 간단한 병기류인 폭탄과 수류탄을 제조하였다.

3. 대만자동차공장은 본 공장이 타이베이에 있었고 그 밑에 타이중출장소 및 자아이 분공장, 치이산(旗山)지사, 씨인주출장소 등 4개의 분공장을 설립하였다.

4. 병기기차정비공장은 타이난 위이징(玉井)에 설립하였다.

5. 알콜공장은 타이베이 씨인페엔에 설립하였다.

6. 정유공장은 고우슁에 설립하였다.

7. 고우슁해군공작부를 건립하고 그 밑에 지이룅(基隆)출장소, 타이베이출장소, 마아궁 등 3개 분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외에 육군 소속 창고에는 아래의 시설들이 있었다.

1. 무기창고 : 본 공장은 타이베이에 있었고 분공장은 지이룅, 씨인주, 타이중, 자아이, 고우슁에 설립되었다. 보병과 포병용 탄환과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2. 군수품저장고. 타이베이, 고우슁, 피영산(鳳山) 등 지역에 각각 하나의 창고를 설립하였다.

3. 육군화물공장 : 본 공장은 타이베이 쑤오산(松山)에 있고 그 밑에 아안커엥(安坑) 연락소, 지이룅출장소, 이라안(宜蘭)출장소, 씨인주출장소, 씨안썸(三峽)출장소, 타이난출장소, 핑이똥출장소, 자아이출장소, 타이중출장소, 고우슁출장소, 타이똥출장소, 화래엔항지사 등 12개 분공장을 설립하였다.

제 『인문학보』 제27기(中壢: 국립중앙대학문원, 2003), pp.164-168를 참조할 것.

4. 연료창고 : 지이룽, 타이베이, 씨인주, 타이중, 따투운취인(大屯郡), 자아이, 타이난, 자양화(彰化), 위이징, 치이산, 고우슝, 피영산 화래엔 등 지역에 나누어 설립하였으며 기차와 전차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류품을 저장하였다.

공군 소속 창고는 주로 육군 제5야전항공정비공장(후에는 항공 제8사단부대에 소속됨)이 있었다. 본 공장은 피잉똥(후에는 타이베이로 이전함)에 있었고 자아이, 타이중, 화래엔항, 피잉똥 등 네 곳에 분공장을 설립하였다.⁷⁾

상기 군사시설의 설립은 일본과 대만사이에 기술자, 노무자, 관리자들의 이동이 아주 빈번하였음을 의미한다. 대만내의 일본군과 군수 병력의 증가는 대만 일본군 ‘위안소’ 시설이 이미 여러 항구도시와 병영 및 군수품 생산 공장 부근에 많이 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3. 일본군 ‘위안소’ 건립에 식민정부가 개입한 상황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열도의 면적은 2천여km²이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 병력은 약 8만 9천명이다. 일본군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설립된 '위안소'는 총 134개였다고 한다.⁸⁾ 해남도의 면적은 3만 3천 9백20km²이고 일본 점령군의 병력은 약 1만 6천여 명이며 각 지방에 설립한 '위안소'는 총 62개다.⁹⁾ 이 두 전략거점에 '위안소'를 설립할 때 지역 면적의 크기에 따라 숫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가치의 높고 낮음이 설립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대만은 일본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일본본토로부터 군 병력과 물자를 중국대륙, 동남아, 태평양

7) 대만경비사령부편, 『일본군이 대만을 점령한 기간 동안의 군사시설 史實』(타이베이: 대만경비총사령부, 1948), pp.115-116.

8) 오키나와열도는 일본 규슈와 대만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146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오키나와는 가장 큰 섬으로서 면적이 1,434.49km²이다. 두 번째로 큰 섬은 八重山열도로서 면적이 584, 67km²이고 宮古島는 면적이 158, 37km²이다. 『오키나와백과대사전』(오키나와, ナムス社, 1983)상권, p.531, 하권, pp.590-591, p.700를 참조할 것. 오키나와열도에 설치된 '위안소'의 숫자에 관해서는 ナムスの家歴史館後援會編, 『ナムスの家歴史館ハンドブック』(東京: 栢書房, 2002), p.27, p.28를 참조할 것. 沖繩群島の 병력에 관해서는 Frank O. Hough著, 鉦先鍾譯, 『태평양전쟁중의 도서 쟁탈전』(타이베이: 軍事譯粹社, 1978年版), p.21를 참조할 것.

9) 藤原彰, 「해남도에서의 일본군의 <三光政策>」 『계간전쟁책임연구』 제24호(동경: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1999하계호), p.53. 주덕란, 「1939-1945 일본군이 해남도를 점령하였을 때의 황군 “위안부”」 『인문학보』 제25기(中歴: 국립중앙대학문학회, 2002), p.182.

군도로 운송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인 동시에 병력, 노무자, 군수품을 직접 보급하는 군사기지였다. 따라서 대만은 지리적으로 보나 주둔군 및 군속인원의 숫자 상으로 보나 오키나와열도 및 해남도와 비교해 더욱 중요하였다. 대만에서 집결한 후 남방전선에 투입된 일본군의 병력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도표 1을 참조할 것). 이러한 사실로부터 대만에 설립한 일본군 '위안소'의 숫자는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식민지정부와 대만 '위안소'와의 관계는 도표 2를 참고하기 바란다. 도표 2에서 열거한 일본정부가 개입한 건축계획은 모두 15개이다.

1) 지이룅 일본군 '위안소' 사례

대만 북부에 위치한 지이룅은 일본이 대만을 통치한 후 가장 먼저 군사요새를 건설한 항구도시이다. 지이룅요새사령부는 지이룅, 따안수이(淡水), 씨인주 등 3개 지역을 관할하였는데 독립보병 제76여단(후에 독립혼성 제76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독립혼성제103여단, 제9사단이 각각 수방 임무를 책임졌다. 전쟁 당시 일본군은 지이룅에 육군병기보급공장 지이룅분공장(창고 1개), 해군병기군수품보급공장(창고 3개), 연료공급창고 1개, 육군화물공장 지이룅출장소(3곳)를 선후하여 설립하였다.¹⁰⁾

지이룅항은 일본과 중국 화남지역, 동남아국가, 태평양군도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문호이다. 지이룅항에 출입하는 일본군인과 군무원들의 숫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지이룅시정부는 '위안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 지이룅 해군오락 '위안소'

1940년 7월 지이룅시정부는 부족한 일본군위안소시설을 갖고서는 군부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합한 장소를 골라 군인회관을 설립해 육해군 하사관들이 오락위안장소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 르시인팅(日新町)에 있는 해군사관들이 자주 출입하는 목욕탕 근처를 장소로 선택했는데 이 땅은 대만흥업신탁회사가 소유한 공지로서 면적이 약 4백 평이 된다. 다만 건축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층 목조구조로 된 설계에서는 주거용 방을 위주로 하였다. 기타의 위안과 오락시설 예컨대 목욕탕, 이발소, 오락실, 영화상영관, 테니스장

10)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 pp.167-169, pp.235-238, p.243.

등은 군인가족들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다.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요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일반 시민들도 모임과 같은 활동을 위해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¹¹⁾

(2) 지이룽 군인회관

전쟁 당시 지이룽시정부는 건축용지, 자재 그리고 위안소로 쓰기에 적합한 낮은 건물에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말미암아 일본군위안소를 건립하는 일을 비교적 완만하게 추진하였다. 1943년 10월 지이룽시정부는 군부의 요청과 일부 관련 인사들의 노력 하에 시정부 맞은 편에 있는 일본요리식당인 ‘뽄妻樓’를 매입하여 육해군 장병들과 가족들이 주거와 위안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함으로써 대만에 주둔한 일본군인과 가족들의 주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이룽시정부가 건물을 매입하고 개조하는데 쓴 비용(유지비를 포함)은 약 45만 엔이 들었으며 이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해결했다.¹²⁾ 항만도시로서 지리적 위치가 특수한 점에 착안하여 지이룽시정부는 군인회관을 직접 운영하였다. 같은 해 12월 군인회관의 추가예산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이룽시 르씨인팅 一丁目에 있는 옛 요리식당인 ‘뽄妻樓’의 3백 80평이 되는 큰 홀과 16개의 응접실을 매입하여 군인과 가족들에게 주거 및 휴식용으로 제공해 주었다. 이 외에 하사관들을 접대하는 수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시정부의 뒤쪽 편에 크기가 75평되는 별관을 별도로 건설하였다.¹³⁾

2) 자아이 일본군 ‘위안소’ 사례

대만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자아이는 일본군이 군수품을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다. 전쟁 당시 일본군은 자아이에 육군 제5야전항공정비공장 소속 분공사(종업원이 334명 근무하였음) 한 개를 설립하였고, 제113독립정비대(병사와 노동자 159명 근무하였음), 제193독립정비대(병사와 노동자 406명 근무하였음), 육군병기보급공장 자아이분공장(인원 미상), 연료공급창고(인원 미상), 육군화물공장 자아이출장소(인원 미상)를 설립하였다.¹⁴⁾ 군사인원 숫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소’를 설립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다.

(1) 자아이 군인 ‘위안소’

11) 『대만일일신보』, 1940년 7월 27일, p.11.

12) 『대만일일신보』, 1943년 10월 19일, p.3.

13) 『대만일일신보』, 1943년 12월 23일, p.4.

14)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 pp.231-236.

1939년 9월 자아이시정부는 지나사변(중일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군인위안소 하나를 설립하여 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민간 인사들과 시정부는 서로 협력하여 약 2만 엔의 공사비를 가지고 시공에 착수하였다. 군인위안소의 부지와 관련해 자아이시정부는 公會堂 안쪽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여겼다. 준공된 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유지비를 마련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고려했었는데 회원조직에 가입한 시민들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¹⁵⁾

(2) 자아이 군인회관

1940년 6월 자아이시정부는 군인을 위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회관의 건설 부지로서 세무출장소 뒤쪽에 있는 공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다. 본래 8만 5천 엔의 총공사비를 투입하여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원래 계획을 변경하고 市民館의 物主인 嘉南大圳管理處로부터 시민관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인회관에서 접대하는 대상은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주말은 장병들만 이용하는 전용일로 정하고 그 외의 평일에는 회비를 납부한 시클럽의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⁶⁾

(3) 자아이 군인회관

1941년 6월 전매국 자아이분국관할지역내의 전매품업자들은 皇紀 2600년을 기념하는 사업비가운데서 1만 엔을 자아이 군인회관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자아이시정부에 헌납하였다. 5일 오전 井原分局長은 업자들을 대표하여 시정부를 방문하고 기부수속을 마쳤다.¹⁷⁾

(4) 자아이 군인회관

1942년 9월 자아이시정부는 인근 지역의 협력 하에 자아이 군인회관건설을 완공하였다. 18일 오전 10시 반 시정부는 군인회관에서 지역의 관리와 유지들을 초대하고 성대한 개관식을 가졌다. 군인회관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군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고 사회상의 일반 민중들에게도 개방하였지만 그들에게서는 요금을 받았다. 시정부에서는 운영 및 유지에 드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15) 『대만일일신보』, 1939년 9월 16일, p.5.

16) 『대만일일신보』, 1940년 6월 10일, p.4, 같은 신문, 11월 22일, p.8.

17) 『대만일일신보』, 1941년 6월 5일, p.4.

유지회를 조직하고 재력가들을 유지회회원에 가입하도록 추천하였다(회원의 년 간 회비는 10만 엔으로 정하였다)¹⁸⁾

3) 고우슁 일본군 '위안소' 사례

대만 남부에 위치해 있는 고우슁은 넓고 평탄한 지역이다. 1937년 일본군은 적들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 타이산에 요새사령부를 세웠다. 그 이후 1945년까지 일본군은 고우슁에 일련의 시설들을 설립하였다. A. 참모부를 설립하고 작전, 정보, 정비, 통신, 기동 등 5개 반을 관할하였다. B. 관리부를 설립하고 서무, 경리, 위생 등 3개 반을 관할하였다. C. 시설부를 설립하고 총무, 회계, 토목수도, 건축전기기계, 의무, 教導兵工 등 업무를 관할하였다. 이 외에 좌영에 군항을 건설하고 동시에 육군병기보급공장 고우슁분공장(모두 12개 창고), 해군병기 및 군수품보급공장(모두 9개 창고), 해군공작부창고 1개, 연료공급창고 4개, 육군화물공장 고우슁출장소(모두 23곳) 등을 설립하였다.¹⁹⁾ 고우슁에 주둔한 부대와 군무원들의 숫자는 자료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상세히 밝힐 수 없다. 그러나 고우슁시, 가양산군, 피영산군, 두옹강군, 허영춘군 등 지역에 많은 방어와 작전시설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위안소'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군수시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고우슁 해군 '위안소'

고우슁시정부(市役所)는 중요한 전력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찍이 1936년 우연히 발생한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위안소를 건립할 데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36년 고우슁시에서 두 명의 일본군병사가 건달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대만 상류층 인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1천 5백 엔의 위로금을 기부하였다. 그러자 이 두 병사는 받은 현금을 고우슁시정부에 재기부하였다. 고우슁시 시장대리인 小野田快는 기타 관리들을 모여 놓고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하였다. 논의 결과 같은 해 5월 27일(해군기념일)에 선원들의 집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들의 이 계획은 고우슁주 주지사인 內海忠司의 동의를 받았다. 고우슁시정부는 이 기부금 외에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현금을 기대하는 동시에 총 5만 엔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마야궁 要港部の 海軍集會所를 모방한 해군 '위안소'를 건립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18) 『대만일일신보』, 1942년 9월 11일, p.4.

19) 劉鳳翰, 『대만에서의 일본군』, pp.192-195. pp.208-210, pp.235-238, p.245.

였다.²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일본군 부대는 번번히 먼저 고우슁에 집결한 후 다시 동남아지역 작전에 투입되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당국에서 제출한 '위안소' 건립계획에는 적어도 아래 두 가지 항목이 있었다.

(2) 고우슁 군인회관

1940년 7월 고우슁시정부는 육해군 장병들의 위안·휴양시설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군인회관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고우슁주에서 자신들이 관할하는 60개 산업조합들로부터 6만 엔을 모으고 해군·고우슁연합분회에서 4만 엔을 모으기로 분담했으며 총공사비 10만 엔을 투입하여 고우슁주 관청청사 내에 있는 토지에 군인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²¹⁾

(3) 고우슁 군인회관

1941년 5월 애국부녀회 고우슁주지부에서는 본래 2층에 있던 부녀회관을 '해군위안소'로 만들어 해군에 빌려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여 공간이 비좁아지자 회관과 가까운 곳에 약 1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백 평 규모의 2층 목조구조의 새 회관을 건설하여 군인들이 잘 휴식할 수 있게 하자고 결정하였다. 이 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8월 1일에 완공할 예정이었다.²²⁾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식민지정부가 위안소를 설립할 계획을 할 때 늘 아래의 문제들에 봉착하였다. 一. 충분한 건축비의 확보문제. 二. 토지의 징수문제. 三. 건축자재확보의 어려움. 四. 운영 및 유지문제. 五.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위안소의 영향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한 지역사회 및 경제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전시상황에서 인력과 물력의 확보도 나날이 어려워지고 건물을 건설하는 속도도 급박한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설립한 위안소는 전체 숫자를 놓고 볼 때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식민지정부가 취한 변통방식은 아래와 같았다. 반은 강요 반은 격려 혹은 매입방식을 통해 요리점 업주들이 일본군 장교들을 접대하는 위안소사업에 동참하도록 동원하였다. 요리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공중시설을 빌렸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실을 '위안소'로 개조하거나 병영내의 군인숙소를 '위안소'로 썼으며, 심지어는 군수품창고(산속의 동굴 등), 노동자숙소를 '위안소'로 사용

20) 『대만일일신보』, 1936년 5월 22일, p.9.

21) 『대만일일신보』, 1940년 7월 4일, p.9.

22) 『대만일일신보』, 1941년 5월 15일, p.4.

하였다.²³⁾

4. 대만 일본군 ‘위안부’ 들의 래원과 육체 및 정신상의 피해

대만 내 여러 민족 일본군 ‘위안부’ 들의 숫자와 관련해 히스(George Hicks)는 그가 쓴 책에서 약 7천 명이 된다고 말하였다.²⁴⁾ 이 숫자를 갖고 대만에 체류한 일본과 조선 교민의 숫자를 대조해 보면 일본 국적 여성들이 전체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대만 일본군 ‘위안부’의 래원

일본군 ‘위안부’ 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모집되었는가? 金富子は 그의 연구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25년 일본정부는 「부녀자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조인하였지만 식민지에서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활동한 업자들은 이런 법적 제한 때문에 일본 본토 내에서 여성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위안부’ 들 중에서 일본 국적을 소유한 여성들의 숫자는 비교적 적었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에 종사한 경력을 지닌 여성들이었다.²⁵⁾

유흥업소와 일본군 ‘위안소’ 사이에는 인원이 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만 유흥업소의 종업원 숫자에 대해서도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도표 3과 도표 4에 근거하면 전쟁 당시 영업허가서를 갖고 있는 公娼, 酌婦(술집녀)중에서 일본 국적을 소유한 공창은 886명에서 674명으로 감소하였고 일본국적의 작부는 534명에서 529명으로 감소하였다. 대만인 공창의 숫자는 34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였고 대만인 작부의 숫자는 2,079명에서 3,016명으로 증가하였다. 조선인 공창

23) 韓國挺身隊問題 대책협의회·韓國挺身隊研究會編, 金鏞烈·黃一兵(역), 「나는 12세때 “자양화 위안소”에 들어갔다」, 「대만 동굴에서 해군위안부로 일했다」, 「내가 배에서 내린 항구는 대만의 자양화였다」 『침략전쟁에 잡혀 간 위안부』(북경, 중국문사출판사, 2001), p.97, p.249, p.261. 주덕란, 『역사의 상처-대만 위안부들이 구술한 역사』(臺北, 타이베이시정부문화국보조계획서, 2002).

24) George Hicks저, 濱田徹(역), 『성과 노예종군위안부』(동경,三一書店, 1977), p.101.

25) 金富子·梁澄子 등 저, 『더욱 알고 싶은 ‘위안부’ 문제와 민족의 시각에서』(동경, 明石書店, 1996), pp.101-102, 吉見義明·川田文子 편저, 『從軍慰安婦’をめぐる30のウソと眞實』(동경, 大月書店, 1997), p.27.

의 숫자는 198명에서 227명으로 증가하였고 조선인 작부의 숫자는 261명에서 19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전쟁 당시 유흥업이 대체적으로 번창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유흥업소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될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놓고 볼 때 16, 7만 명이나 되는 일본주둔군과 군수원들의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성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총독부는 아래의 대응책을 시행하였다. 기생업을 경영하는 주인이나 여성이 영업허가서를 신청하거나 납세 등을 신고할 때 적용하는 법규를 일본군 '위안부'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민정부는 대만의 사회치안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정치'를 실시하고 인구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국책을 지지하는 자들이娼妓가 아닌 일반여성들을 '위안부'로 모집하는데 편리를 주기 위해 '위안소'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방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 당시 투장방식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모집이나 직접 운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흥업소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일본국책회사, 어용상사, 항구운송업자, 잡화상, 퇴역군인, 브로커 등도 포함된다. 그중 유흥업소 경영자들과 일본군 '위안소' 경영자들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형성하는 동업자관계였다. 그러므로 양측 사이에는 서로 배척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²⁶⁾

둘째, 도표5의 불완전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대만을 경유하여 중국대륙으로 간 '위안소' 여성의 숫자를 알 수 있다. 1938년 두 달간의 종업원 숫자를 놓고 보면 일본인이 331명이고 대만인이 157명이고 조선인이 202명이었다. 1939년 전년의 종업원 숫자를 놓고 보면 일본인이 692명이고 대만인이 228명이고 조선인이 378명이었다. 1940년 한 달 간의 종업원 숫자를 놓고 보면 일본인 4명이고 대만인이 15명이고 조선인이 16명이었다. 1941년 한 달 간의 종업원 숫자를 놓고 보면 일본인이 15명이고 대만인이 5명이고 조선인이 16명이었다. 위의 통계를 통해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 일본인과 조선인 위안부들이 대만을 경유하여 해외로 나간 숫자는 대만 현지의 여성들보다 더 많았으며 그중에는 유흥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일본 국적의 여성들과 사기를 당해 위안부가 된 조선 여성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후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위안소' 업주들은 남방전선이 계속 확대되고 戰勢가 더욱 급박해짐에 따라 '위안부'를 될수록 빨리 모집해야 했다.

26) 구체적 사례는 주덕란의 『대만 총독부와 위안부』, 제4장, 제5장, 주덕란의 「해외금도굴: 일본인들의 대만 양안에서 개척한 매음시장에 관한 연구(1895-1945)」, 『중국해양발전사』, 제10집 (타이베이, 중앙연구원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2008 예정출판) 등을 참조할 것.

대만은 남방전선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대만 본토의 여성들을 직접 모집하여 사병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재부를 축적하는 좋은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국책에 협력한다는 미명하에 대만 본토의 여성들을 사기 혹은 강제수단을 동원해 ‘위안부’로 팔아넘긴 자들이 아주 많았다. 이 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대만 일본군 ‘위안부’ 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상황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리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종족, 계급, 배치지역, 종사자의 경력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였다.

(1) 일본국적 ‘위안부’

일본국적 ‘위안부’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유흥소 경영자, 어용상인, 보로커 등 일본인 업자들은 일본 여성들에게는 거의 모두 “선불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을 정하는 ‘인신매매’ 방식을 취했다. 특수 업종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 예컨대 게이샤, 술집여성, 호스티스, 기생 등을 ‘위안부’로 고용하였다. 일본국적 여성들의 봉사대상은 주로 일본의 고급·중급·하급 장교들이다. 때문에 소득이 많았고 대우도 훌륭했으며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빚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²⁷⁾

(2) 조선족 ‘위안부’

대만의 조선족 ‘위안부’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조선교민 2,177명 중에서 공창과 술집여성은 약 4, 5백 명이 되고 기타 여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은 수백 명이 된다. 이들을 전체 숫자에서 빼내면 ‘위안부’가 된 조선인은 약 1천 명 전후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녀들이 대만에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대부분 어려운 가정형편 출신인 그녀들은 지방경찰관이나 공무원 등 식민지정부 관리들이 동원하여 ‘위안소’에 왔거나 ‘위안소’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해 억지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²⁸⁾

배를 타고 대만에 건너 온 조선여성들은 비참히 유린당하였다. 李容洙의 예를 들어 보자. 1928년 조선 대구시에서 출생한 그녀는 1944년 16살 때 어느 한 일본인으로부터 외지에 나가면 취업을 시켜 준다는 말에 유혹되어 기타 4명의 조선 여성들과 함께 가출하였지만 1945년 초 그녀들이 보내진 곳은 씨인주(대만 북부에 위치해 있음)에

27) 주덕란, 『대만 총독부와 위안부』, pp.157-169.

28) 尹明淑, 『일본의 군대위안소제도와 조선군대 위안부』(동경, 明石書店, 2003), pp.294-299.

있는 '위안소'였다. 일본인 업소주인은 이용수에게 'Toshiko'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강제로 매일 4, 5명의 [특공대]대원들을 접대하게 하였다. 업소 주인은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거리가 왔을 때도 손님을 접대하게 하였다. 이용수는 위안소에 있는 기간 동안 성병에 걸린 적 있지만 부근에 병원과 위생소 등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업소 주인한테서 606호 매독약제 주사를 맞는 것으로 치료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아직 완쾌되기도 전에 손님을 접대해야만 했다. 업소 주인은 그녀들이 주인의 동의가 없이 함부로 외출하거나 손님을 거절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처형된다고 규정하였다.²⁹⁾

또 다른 한명의 당사자의 예를 들어 보자. 박두리는 1924년 조선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출생하였다. 1940년 어느 한 일본인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기타 여러 명의 여성들과 함께 출국했는데 도착한 곳은 자양화(대만 중부에 위치해 있음)에 있는 '위안소'였다. 후에 그녀는 길을 안내한 일본인이 곧 자신이 일하는 업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박두리는 'Fujiko'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당시 '위안소'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은 약 20명이나 되었으며 연령은 비슷한 또래인 15, 6세 전후였다. 업소 주인은 그녀들이 사람마다 하루 일본군 병사를 10명을 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녀들은 자양화에서 한동안 일을 한 후 또 다른 일본위안소 업주에게 팔렸다. 박두리는 5년간 일했는데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였다.³⁰⁾

(3) 대만 원주민 '위안부'

태평양전쟁 후기(1944-1945)에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가 된 대만 원주민 여성들은 적어도 12명이 되며, 민족으로는 太魯閣族, 泰雅族, 布農族 등이 포함된다. 그녀들은 낮에는 일본군을 위해 빨래, 청소 등 잡일들을 하고 저녁이 되면 강제로 섹스를 제공하였다. 그녀들이 일하는 장소는 일본군 사관기숙사, 노동자들이 휴식하는 숙소, 산속의 무기창고인 동굴 등이었다. 연령은 대부분 20세 이하였고 그 중 가장 어린 여성은 13세밖에 되지 않았다.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은 29세였는데 이미 결혼한 여성으로서 아이 3명을 둔 어머니였다. 원주민 '위안부'들은 일본군을 위해 몸을 바치는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군인들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6명이나 임신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그중 2명은 3번이나 유산을 하였고 2명은 1번 유산을 하였다. 1945년 일본군은 패전한 후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도 바깥

2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편, 『침략전쟁에 잡혀 간 위안부』, pp.80-91.

3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편, 『침략전쟁에 잡혀 간 위안부』, pp.259-269.

형세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산간지역의 원주민여성들을 침해하였다.³¹⁾

(4) 대만 한족 '위안부'

苗栗泰雅族여성들에 대한 방문취재록 가운데는 꺾박에 의해 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된 대만 한족 '위안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다만 개별사안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녀들이 어떻게 되어 위안부가 된 사연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힐 수 없다. 1992년 이래 48명의 대만 한족여성들이 '위안부'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장소는 모두 해외였다.³²⁾ 대만 한족 '위안부'의 연령은 16세로부터 20세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시골에서 살고 있던 농촌 출신들이었다. 유흥업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은 아주 적었으며 14세의 연극배우(藝旦: 노래와 곡조를 부르는 기녀)와 15세의 술집 여성도 있었다. 대만 한족여성들의 경우 대다수는 외지에 나가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브로커들의 말에 속아 위안부가 되었거나 지방의 경찰,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끌려온 경우도 있다. 이들이 일한 곳은 상해, 하문, 광주, 하남(광둥성 주장이남지역), 해구(海口), 유림(榆林), Iloilo, Cebu, Balikpapan, Johor, Lashio, Andaman 등 지역이었으며 접대한 손님은 일본군의 하급 장교, 군인가족, 사병들이었다.³³⁾

대만 한족 '위안부'의 운명은 역시 아주 비참하였다. 어떤 여성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적군 잠수함에 의해 배가 격침되면서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친구들이 폭격을 맞고 죽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떨면서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어떤 여성은 전쟁터에서 총탄을 맞고 부상을 당하였다. 어떤 여성은 술에 취한 일본 군인에게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어떤 여성은 허벅지에 일본군이 새긴 문신 때문에 평생 굴욕적으로 살았다. 어떤 여성은 일본 군인들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로 임신시켜 사생아를 낳았다. 어떤 여성은 손님을 너무 많이 접대한 탓에 '자궁염'에 걸렸으며 어떤 여성은 말라리아, 콜레라, 뎅그열에 감염되었다. 어떤 여성은 처지를 비판하여 약이나 등유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1945년 일본군이 전쟁에서 패하여 철퇴할 때 부대를 따라 망명길에 나선 대만 한족 '위안부'들은 산간지대에서 기아와 비바람, 추위 등에 시달렸다. 그녀들은 생존을 위

31) 주덕란, 『대만총독부와 위안부』, pp.196-197. 주덕란, 「역사의 상처-대만 위안부들의 구술계획」, pp.27-34.

32) 필자는 해외의 대만국적 '위안부'들의 숫자는 1천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吉見義明, 『從軍慰安婦資料集』(東京, 大月書店, 1993), pp.136-137. 주덕란, 『대만 총독부와 위안부』, pp.208-217.

해 시체가 떠다니는 강물을 마셔야 했고 야생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혹은 병에 걸리고 혹은 부상을 당하고 혹은 몸이 허약해 대오에서 낙오하여 죽는 경우까지 있었다.³⁴⁾ 일본군이 항복한 후 다행히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 간 '위안부' 들은 자신이 이미 '정조'를 잃었다거나 혹은 '성교 회수'가 너무 빈번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고민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고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다. 어떤 여성은 결혼한 후 마을 사람들의 유언비어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이혼을 하였다. 어떤 여성은 결혼 후 자신의 '수치심'과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종교 신앙에 의지함으로써 독실한 기독교신자나 불교신자가 되었다.³⁵⁾

5.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쟁 당시 대만은 일본제국주의가 남방작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보급기지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대만을 출입하는 일본군과 군무원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였고 군사시설들도 끊임없이 보강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부의 수요에 부응하는 '위안소'의 설립문제는 일본의 총동원체제하의 군수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었다.

대만 일본군 '위안소'의 숫자는 대만 각 지역에 있는 군수품 시설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으며 총 숫자는 수백 개에 달한다. 식민지정부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로 새롭게 위안소를 건립하거나 낡은 건물을 매입하여 개조하는 일에 간여한 외에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으며 유흥업소경영자들과 기업인들도 동참하게 하였다. 식민지정부는 행정과 사회자원을 이용하여 건축공사비, 토지의 징수, 건축자재와 운영 및 유지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정부가 건축한 건물들은 어떤 곳은 '군인회관'이라고 불렀고 어떤 곳은 '위안소'라고 불렀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용도로 썼으며 주된 이용자는 일본군이였다.

'위안부'의 모집과 대우문제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았다. 일본 본토에서는 유흥업에

34) 주덕란이 다카코 나미코를 방문한 기록, 2001년 8월 28일 피잉퉁에서, 2003년 12월 5일 타이베이에서.

35) 타이베이시 부녀구원기금회 정리, 『대만위안부조사자료』(비공개자료, 1992-2002). 타이베이시 부녀구원기금회 주편, 『대만위안부보고』(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9).

서 흔히 채용하는 전통적 운영방식을 택했다. 즉 여성가장들에게 생활비로써 ‘선불금’을 먼저 지불해 주고 여성이 업소에서 빚을 다 갚은 후 자유의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전쟁 당시 대만의 일본국적 ‘위안부’들의 숫자는 약 1천명에 달했으며 손님은 주로 일본군 고위급장교들이었다.

조선족과 대만본토 ‘위안부’들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식민지정부에서 실시하는 公娼管理制度는 종사자들이 반드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찰서에 영업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고 등록된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당시 ‘위안소’경영자들에게는 이들을 제한하는 어떠한 관리규정이나 법령도 제정하지 않았다. 식민지정부가 이처럼 자유방임의 정책을 시행한 목적은 한편으로는 ‘국책’사업에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책’사업을 위해 뛰는 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군 ‘위안부’를 대량 모집하는데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데 있었다.

표1) 1944~1945년 이주 대만방면 일본부대

부대명칭	년월일	지점	임무	출전
독립자동차제305중대	1944.11.16.	臺南	편성완료 및 부근경비	221쪽
특설육상근무제111중대	1944.11.26	臺灣	편성완료	222쪽
	1944.11.27~ 1945.08.15		제10방면군 야전화물창고의 긴급작전 용군수품 집산. 간이건물과 동굴 구축	
특설육상근무제112중대	1944.11.22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23쪽
특설육상근무제113중대	1944.11.22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24쪽
특설육상근무제114중대	1944.11.22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25쪽
특설육상근무제115중대	1944.11.22	臺中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26쪽
특설육상근무제116중대	1944.11.22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27쪽
특설육상근무제117중대	1944.11.22	高雄小港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28쪽
특설건축근무제106중대	1944.11.26	高雄鳳山	旗山부근후방시설 구축 旗山에서 臺北으로 이주 臺北 부근후방설시 구축	229쪽
	1945.02.01	旗山		
	1945.06.26	旗山		
	1945.06.27	文山		
특설건축근무제7대대	1944.08.15	湖州	動員集結 완성	230쪽
	1944.10.12~15		臺灣 방위전투 참가	
특설건축근무제8대대 야전기관총제56중대	1944.08.15	臺南	臨時動員集結 완성	231쪽
	1944.10.12~15		臺灣 방위전투 참가	
	1944.08.03	門司港	門司에서 臺灣基隆港으로 출발	
	1944.08.18	基隆	상륙	
	1944.08.19	桃園	防衛勤務	
	1944.10.12~15		臺灣 방위전투 참가	
1945.01.03	桃園	桃園 비행장부근대공전투 참가		
1945.01.19	蘇澳	蘇澳街 南方澳로 이주. 대공전투 담임. 防空勤務		
특설경비제518중대	1945.03.31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33쪽
	1945.07.05		특설경비제518대대로 개편	
특설경비제519대대	1945.04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34쪽
	1945.07.05		특설경비제519대대로 개편	
특설경비제520대대	1945.03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35쪽
	1945.07.05		특설경비제520대대로 개편	
특설경비제521대대	1945.03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36쪽

	1945.07.05		특설경비제521대대로 개편	
특설경비제522대대	1945.04 1945.07.05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22대대로 개편	237쪽
특설경비제523대대	1945.03 1945.07.05	新竹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23대대로 개편	238쪽
특설경비제524대대	1945.03 1945.07.05	新竹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24대대로 개편	239쪽
특설경비제525대대	1945.03 1945.07.05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25대대로 개편	240쪽
특설경비제526대대	1945.03 1945.07.05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26대대로 개편	241쪽
특설경비제528대대	1945.03 1945.07.05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28대대로 개편	242쪽
특설경비제530대대	1945.04 1945.07.05	嘉義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30대대로 개편	243쪽
특설경비제531대대	1945.04 1945.07.05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31대대로 개편	244쪽
특설경비제532대대	1945.04 1945.07.05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32대대로 개편	245쪽
특설경비제533대대	1945.03 1945.07.05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33대대로 개편	246쪽
특설경비제534대대	1945.03 1945.07.05	屏東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34대대로 개편	247쪽
특설경비제511중대	1945.03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48쪽
특설경비제512중대	1945.03 1945.07.05	桃園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임시편성. 특설경비제512중대로 개칭	249쪽
특설경비제513중대	1945.04 1945.07.05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13중대로 개칭	250쪽
특설경비제515중대	1945.04 1945.07.05	花蓮港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15중대로 개칭	251쪽
특설경비제516중대	1945.04 1945.07.05	花蓮港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16중대로 개칭	252쪽
특설경비제518중대	1945.04 1945.07.05	基隆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18중대로 개칭	253쪽
특설경비제551대대	1945.01	高雄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54쪽

특설경비제552대대	1944.01.04	臺北	임시편성	255쪽
	1944.02.25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특설경비제502대대	1944.02	新竹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56쪽
특설경비제501대대	1945.02	花蓮港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57쪽
	1945.07.05		경비제501대대 특설	
특설경비제561대대	1945.01.01	花蓮港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58쪽
특설경비제541대대	1944.02.25	基隆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59쪽
	1945.07.05		특설경비제541대대로 개칭	
특설경비제566대대	1945.01.01	屏東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60쪽
특설경비제506중대	1944.02.25	馬公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戰備 준비	261쪽
특설경비제562대대	1945.02	臺中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62쪽
특설경비제563대대	1945.01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63쪽
특설경비제564대대	1945.01	嘉義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64쪽
독립속사포제4대대	1945.01.01	臺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65쪽
	1944.07.08	釜山港	釜山 출발, 이날 臺灣軍에 예속	
	1944.07.27 1944.07.31	基隆港 新竹	상륙 新竹도착, 주변지구방위	
야전기관포제60중대	1944.07.23	門司港 基隆港	편성완료	268쪽
	1944.08.03		臺灣으로 향함	
	1944.08.16		상륙	
	1944.08.17~ 10.11	嘉義	嘉義비행장 방위	
	1944.10.12~15		항공작전 준비, 대만방위전투참가	
	1945.05.10	嘉義	宜蘭으로 이주	
	1945.05.11	宜蘭	宜蘭비행장 도착. 방위임무	
1945.06.21~ 08.15	宜蘭	宜蘭비행장 방위. 작전준비		
제507특설경비공병대	1944.10.20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69쪽
제508특설경비공병대	1944.10.20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70쪽
제509특설경비공병대	1944.10.20	臺北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71쪽
제511특설경비공병대	1944.10.01	臺中	편성완료 및 주변경비	272쪽

비주 : 원자료가 방대하여 지면상의 관계로 본 도표는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제작하였다.
 자료출처 : 후생성 원호국 편, 《南方. 支那. 臺灣方面陸上部隊略歷 (航空. 船舶除) 第2
 回 追録》 (東京 : 厚生援護局, 1963년).

표2) 대만일군위안소건축계획

단위 : 日圓

년별	건축지점	용지출처	집행계획기구	건축경비출처	건물형상 및공정예산	건물명칭
1940	基隆市	基隆臺灣興業信託會社 400坪	基隆市役所		木造二樓	陸海軍人之娛樂慰安所
1943	基隆市 吾妻樓	市役所 收購	基隆市役所			軍人會館
1943	臺北市臺北 州會館	臺北州讓與	臺北州			軍人會館
1943	臺中市		臺中市役所	臺中市籌款 100,000圓		軍人慰安所
1939	嘉義市 公會堂		嘉義市役所	嘉義市民捐款 200,000圓		軍人慰安所
1940	嘉義 市民館	嘉南大圳 出售	嘉義市役所		85,000圓	軍人會館
1941	嘉義市		嘉義市役所	專賣品業者 捐款10,000圓		軍人會館
1936	臺南市		臺南市役所			
1943	臺南市 料亭	軍人援護會 收購	臺南州	軍人援護會		軍人會館
1936	高雄市		高雄市役所	高雄市民捐款 4,500圓	50,000圓	海兵慰安所
1939	高雄市 中央公園		高雄市役所		300,000圓	市民遊樂. 慰安所
1940	高雄市		高雄市役所	60個產業組合捐 款60,000圓 高雄市聯合會 捐款40,000圓	100,000圓	軍人會館
1941	高雄市愛國 婦人會館附 近	愛國婦人會 高雄州支部 提供	愛國婦人會 高雄州支部	愛國婦人會 高雄州支部	木造二樓 100坪	軍人會館

1938	屏東市		屏東市	高雄州國防議會 籌款	和洋混合式 二樓 24,000圓	軍人慰安所
1939	馬公	臺灣銀行 提供	馬公支廳			陸海軍 慰安所

비주: 공백란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臺灣에서 북에서 남으로 배열하였다.
자료출처: 《臺灣日日新報》, 1936년, 1943년.

표3) 臺灣 각 민족 공창인수(1937-1941년)

항목	년도	종족별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소계	합계
각주 공창 인수	S12 (1937)	일본인	420	--	58	26	177	--	10	117	808	1,040
		대만인	--	--	--	34	--	--	--	--	34	
		조선인	50	--	29	56	28	--	35	--	198	
	S13 (1938)	일본인	440	--	58	21	191	--	10	116	836	1,055
		대만인	--	--	--	30	--	--	34	--	64	
		조선인	40	--	21	59	35	--	--	--	155	
	S14 (1939)	일본인	395	--	35	14	191	--	14	47	696	969
		대만인	--	--	--	33	--	--	--	--	33	
		조선인	60	--	28	55	41	--	56	--	240	
	S15 (1940)	일본인	392	--	25	16	212	--	69	24	738	1,017
		대만인	--	--	--	30	--	--	--	--	30	
		조선인	71	--	24	61	37	--	56	--	249	
	S16 (1941)	일본인	380	--	19	24	225	--	2	24	674	925
		대만인	--	--	1	23	--	--	--	--	24	
		조선인	55	--	15	66	33	--	58	--	227	

비주: S는 소화 년호(이하 같음). 1941년 이후 정부에서는 통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음(이하 같음).

자료출처: 臺灣總督府 民政部文書課, 『臺灣總督府第一、二、三、九、十九、二十九、三十四、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統計書』, 『警察取締二係ル臺北: 臺灣總督府官房調査課, 1899-1943』.

표4) 대만 각 민족 작부인수(1937-1941년)

항목	년 도	종족별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소계	합계
각종 작부 인수	S12 (1937)	일본인	155	33	43	92	145	35	24	7	534	2,882
		대만인	387	127	397	522	538	26	40	42	2,079	
		조선인	33	30	76	55	59	8	--	--	261	
		대륙인	5	--	--	3	--	--	--	--	8	
	S13 (1938)	일본인	122	10	28	67	114	31	11	14	397	2,841
		대만인	378	141	353	582	602	62	72	46	2,236	
		조선인	37	14	47	20	74	8	8	--	208	
	S14 (1939)	일본인	142	32	33	79	114	24	15	8	447	3,397
		대만인	447	176	415	688	723	146	85	57	2,737	
		조선인	34	--	63	30	63	10	4	--	204	
		대륙인	7	--	--	2	--	--	--	--	9	
	S15 (1940)	일본인	168	27	49	42	104	12	14	9	425	3,578
		대만인	515	154	463	736	739	93	124	66	2,890	
		조선인	42	26	69	31	69	7	11	--	255	
		대륙인	3	--	--	--	5	--	--	--	8	
	S16 (1941)	일본인	170	31	57	82	153	8	13	15	529	3,796
		대만인	511	92	477	873	873	57	79	54	3,016	
		조선인	31	--	50	52	50	--	12	--	195	
		대륙인	5	28	1	--	10	12	--	--	56	

자료출처 : 臺灣總督府 民政部文書課, 『臺灣總督府第一、二、三、九、十九、二十九、三十四、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統計書』, 「警察取締二係ル臺北 : 臺灣總督府官房調査課, 1899~1943).

표5) 대만에서 중국대륙으로 건너간 위안소 종업인수 통계표(1938-1941년)

년도	민족별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민족별 소계	합계
S13년 11-12월 (1938)	일본	270	58	2	1	--	--	--	--	331	*747
	대만	136	5	16	--	--	--	--	--	157	
	조선	70	53	57	22	--	--	--	--	202	
지역별 소계		476	116	*132	23	--	--	--	--	*747	
S14년 1-12월 (1939)	일본	383	16	1	2	249	--	--	41	692	** 1,299
	대만	91	10	9	--	117	--	--	1	228	
	조선	137	35	86	51	54	2	--	13	378	
지역별 소계		611	61	96	53	420	2	**1	55	** 1,299	
S15년 1월 (1940)	일본	2	--	--	2	--	--	--	--	4	31
	대만	--	--	--	--	15	--	--	--	15	
	조선	1	2	--	8	1	--	--	--	12	
지역별 소계		3	2	--	10	16	--	--	--	31	
S16년 7월 (1941)	일본	--	--	--	--	15	--	--	--	15	*** 124
	대만	--	--	--	--	5	--	--	--	5	
	조선	9	--	7	--	--	--	--	--	16	
지역별 소계		***97	--	7	--	20	--	--	--	***124	
년도 불명	일본	--	--	--	--	167	--	--	19	186	277
	대만	--	--	--	--	--	--	--	2	2	
	조선	--	--	--	--	89	--	--	--	89	
지역별 소계		--	--	--	--	256	--	--	21	277	

174 일제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일본군 '위안부'

		1,187	179	235	86	712	2	1	76	2,478	일본인, 228 대만인 407 조선인 697 족별 불명46
1938- 1941 합계											

비주 : 慰安所業은 慰安所營業者,就業婦女,從業員을 포함한다.

*132는 昭和13년 臺中州에서 민족이 불분명한 누계인수.

**1은 昭和14년 花蓮港廳의 민족이 불분명한 누계인수.

***97은 昭和16년 臺北州의 민족이 불분명한 누계인수.

자료출처 : 後藤乾一,高崎宗司,和田春樹 共編,《政府調査 “從軍慰安婦” 關係資料集成》
第1卷(東京 : 龍溪書舍,1997), 171-430쪽.

(번역: 김훈 충남대 교수)

「대만의 일본군 위안소와 성폭력(1936~1945)」에 대한 토론문

토론: 후지나가 다케시(藤永 壯) *

주덕란 교수는 현재 타이완에서 거의 유일하게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다. 그간 타이완에 남겨져 있던 ‘위안부’ 관계 자료를 발굴해서 그 성과를 자료집으로 간행했으며, 그 외에도 『타이완 총독부와 위안부』(아카시 서점, 2005년)라는 연구에서는 타이완 척식주식회사(臺拓)가 하이난(海南)섬에서 위안소를 경영한 점, 대만척식주식회사의 사실상의 자회사인 북대공사(福大公司)가 푸치엔성(福建省)의 위안소를 경영했던 상황 등을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위안부’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셨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은 위 저서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서 타이완 내에 설치된 위안소에 초점을 맞추고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보완해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번 논문에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코멘트를 대신하고자 한다.

주덕란 교수는 위 저서에서 “타이완의 ‘위안소’에는 성질이 다른 2종류의 시설이 있었다”며, “하나는 공공오락시설이고 또 하나는 일본군의 ‘강간 센터’다”고 지적했다(96쪽). 이 중 우리들이 문제삼아 온 일본군 병사의 성적 위안을 목적으로 한 시설은 후자의 일본군의 ‘강간 센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본 논문을 보는 한, 주덕란 교수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주로 전자의 ‘공공오락시설’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실제로 본문에 소개된 ‘군인위안소’ ‘군인회관’ 등의 명칭을 가진 시설 중에서 지룽(基隆)의 <사례 1>(육해군 오락 ‘위안소’)와, <표2>의 가오슝(高雄)의 ‘시민유락·위안소’(1939년), 핑둥(屏東)의 ‘군인위안소’(1938년), 마공(馬公)의 ‘육해군 위안소’(1939년)에 대해서, 주덕란 교수는 위 저서에서 ‘오락시설’로 분류했다. 또 서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거의가 신문기사인데, 일본군이 병사의 성욕처리시설을 공공연하게 신문에 신도록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들 ‘위안소’는 대식당과 목욕탕, 당구장, 테니스 코트, 수영장 등의 오락시설을 갖추고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

* 일본 大阪産業大學 교수.

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 타이페이 교외의 빼이토우(北投) 온천에서는 '장교구락부'로 사용되던 요정에서 오키나와 출신의 작부들이 출정 전의 일본군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있다(강신자, 『나미이! 야에야마(八重山) 할머니의 노래 이야기』, 이와나미 서점, 2006년, 139-142쪽). 이는 사실상의 '위안소'로 분류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부대 주둔지 부근에 종종 유곽이 형성되었다. 거꾸로 말하면, 이미 유곽을 비롯한 접대업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병사의 성욕처리시설로서의 '위안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적지 않았을까? 빼이토우 온천의 '장교구락부'의 사례는 그러한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면, 주덕란 교수가 본 논문에서 소개한 타이완의 '위안소' 중에서 일본군 병사의 성적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일까? 또 타이완 내에 설치된 위안소를 몇 백 개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반적인 오락시설로서의 '위안소'도 포함되는 것인가? 그리고 일본군이 행한 성폭력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오락시설을 본 논문에서 소개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

다음으로 주덕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구체적인 연차는 불명)에 타이완에 재주하던 조선인 2,177명(군인 제외) 중에서 공창·작부 400-500명과 각종 직업에 종사하던 수백 명의 남성을 제외한 약 1,000명이 '위안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창·작부와 직업을 가진 남성 이외에도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이 어느 정도 있었으리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공창·작부와 직업을 가진 남성 이외는 모두가 '위안부'였을 것이라고 보는 주덕란 교수의 추정치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³⁷⁾ 원래 일반 민간인과는 구별되어야 할 '위안부'가 이러한 통계치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점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한편, 주덕란 교수가 지적했듯이, 중일전쟁이 화남지방으로 확대되면서 타이완군이 전지에 동원되며 타이완이 일본군의 집결지점이 되었던 점,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전

37) 1940년에 타이완 총독부가 실시한 제7차 국세조사에 따르면, 타이완 재주 조선인 인구는 2,376 명으로, 남자가 1,026명, 여자가 1,350명이었다. 이 중에 '무직'은 남자가 230명, 여자가 518명으로 합계 748명이었다. 또한 여성의 유직자 내역을 보면, 농업 1, 상업 794 (물품판매업주 6, 흥업주 6, 오락장 경영주 23, 접대업 765), 공무·자유업이 4, 가사도우미 33으로 나와 있으며, 공창·작부 기타의 접대업 종사자 이외에는 '직업'을 가진 여성은 극히 적었다(『타이완 제7차 인구조사(普查)결과표』 타이완성정부 주계처, 1953년).

쟁이 발발하면서 전선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어 타이완이 중계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갔다는 지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선의 확대에 따른 타이완의 병참기지화에 연동해서 타이완 내에 위안소 설치도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면, 조선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된 뒤의 병력동원수가 대략 6만명 전후였는데, 전쟁 말기인 1945년 3월부터 급증해 패전 즈음에는 23만 명에 달했다(조선군 잔무 정리부, <조선에 있어서 전쟁준비>(1946년 2월) 부표 제1<조선군병력량의 증감추이 개견표>[미야타 세츠코 편, 『조선군 개요사』, 不二出版, 1989년]). 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병력이 증강된 제주도를 포함해서 1945년 단계에서 조선 내에 병사의 급증에 따른 위안소의 설치 흔적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이완에 주둔하는 부대가 늘어남에 따라, 타이완 내의 위안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갔는가?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

朱徳蘭論文へのコメント

藤永 壯

朱徳蘭教授は現在、台湾において、ほとんど唯一の「慰安婦」問題を専攻する歴史研究者である。朱教授は台湾に残されている「慰安婦」関係資料を発掘し、その成果を資料集として刊行されたほか、著書『台湾総督府と慰安婦』（明石書店、2005年）では、台湾拓殖株式会社（台拓）の海南島での慰安所経営や、台拓の事実上の子会社である福大会社の福建省における慰安所経営の状況などを実証的に明らかにされ、「慰安婦」研究の水準向上に大きな貢献をなされた方である。

今回の国際会議で発表された論文は、上の著書の中から、台湾内で設置された慰安所の分析に、新たに発掘した資料を補完しつつ、再構成されたものと言える。ただ今回の論文には、私には理解しづらい内容も含まれており、そのような疑問点を伺うことでコメントに代えたいと思う。

朱徳蘭教授は、上の著書で「台湾の「慰安所」には、性質の異なる2種類の施設があった」として、「一つは公共娯楽施設であり、もう一つは日本軍の「強姦センター」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96頁）。このうち私たちが問題にしてきた日本軍兵士の性的慰安を目的とする施設は、後者の「強姦センター」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ところが本論文を読む限り、朱教授がここで扱っているのは、おもに前者の「公共娯楽施設」ではないかという印象を受ける。実際に本文中で紹介された「慰安所」の事例のうち、基隆の事例1（基隆陸海軍娯楽「慰安所」）、また表2の高雄の「市民遊楽・慰安所」（1939年）、屏東の「軍人慰安所」（1938年）、馬公の「陸海軍慰安所」（1939年）は、朱教授みずから著書で「娯楽施設」として紹介しておられる。一般にこれらの「慰安所」は、大食堂、浴場、ビリヤード場、テニスコート、プールなどの娯楽設備を整え、一般市民にも開放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

しかし一方で台北郊外の北投温泉では、「将校倶楽部」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料亭で、沖縄出身の酌婦たちが出征前の日本軍兵士たちに対する性的慰安の対象にさせられていたとの証言もある（姜信子『ナミイ！ 八重山おばあの歌物語』岩波書店、2006年、139～142頁）。これは事実上の「慰安所」に分類される施設と言えるのかも知れない。

では、朱教授がこの論文で紹介した台湾の「慰安所」のうち、日本軍兵士の性的慰安を目的とする施設は、どのくらいあったのだろうか。また朱教授は台

湾内に設置された慰安所を数百カ所と推定しておられるが、その中には一般的な娯楽施設としての「慰安所」も含まれるのだろうか。そしてそもそも朱教授が、日本軍による性暴力と直接関係あるとは思えない娯楽施設を、本論文で紹介された意図はどこにあるのだろうか。お教えいただければ幸いである。

次に朱教授は、アジア太平洋戦争期（具体的な年次は不明）に台湾に在住していた朝鮮人 2,177 名（軍人を除く）のうち、公娼・酌婦 400~500 名と各種職業に従事する数百名の男性を除いた約 1,000 名が、「慰安婦」であったと推定しておられる。しかし公娼・酌婦や職業をもつ男性のほかにも、学生や専業主婦などがある程度はいたであろう状況を考えるならば、公娼・酌婦や男性有職者以外をすべて「慰安婦」と見る朱教授の推算には、いささか無理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¹⁾。そもそも「慰安婦」がこのような統計値に含まれているのか、というところから検証をはじめめる必要があるようにも思われる。

しかし朱教授が指摘するように、日中戦争が華南地方へ拡大したことによって台湾軍が戦地に動員され、台湾が日本軍の集結地点となったこと、さらにアジア太平洋戦争の開戦にともない、戦線が東南アジアに拡大したことによって、台湾が中継補給基地としての役割を強めていったとの指摘は大変重要である。戦線の拡大にともなう台湾の兵站基地化に連動して、台湾内の慰安所設置が進行してい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では具体的に、台湾に駐屯する部隊の増大にともなう、台湾内の慰安所はどのように設置されていたのだろうか。すでに明らかにされている事実があれば、お教えいただきたいと思う。

¹⁾ 1940年に台湾総督府が実施した第7次国勢調査によれば、台湾在住朝鮮人人口 2,376 人中、男は 1,026 人、女は 1,350 人で、そのうち「無職」は男 230 人、女 518 人で合計 748 人であった。また女性の有職者の内訳は農業 1、商業 794（物品販売業主 6、興業主・娯楽場経営主 23、接客業 765）、公務・自由業 4、家事使用人 33 となっており（『台湾第七次人口普查結果表』台湾省政府主計処、1953 年）、公娼・酌婦その他の接客業従事者以外に「職業」をもつ女性はきわめて少なかった。

臺灣日軍慰安所與性暴力（1936-1945）

朱德蘭(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研究員)

一、前言

中日戰爭與太平洋戰爭（一九三七至一九四五）期間，有關日軍在海外各個佔領區、駐屯地設置「慰安所」、徵集「慰安婦」的問題，儘管學術界已經做過不少調查與研究，成果相當豐碩，但與此對照，日本殖民地臺灣有無設置日軍「慰安所」的問題，似乎沒有引起學者的關注。

戰時臺灣作為日本帝國對中國和南進東南亞作戰的前線，並肩負防衛日本海岸的重大任務，是否有日軍「慰安所」？日軍「慰安所」的設立地點在哪裡？數量多少？官方有無直接介入？「慰安婦」的徵召方式如何？身心傷害又如何？等疑點，應是一值得深入探討的研究課題。

本文利用臺灣收藏日本官方報紙以及諸先輩的研究論著，擬對：一、臺灣日軍「慰安所」的設立背景，二、殖民政府執行日軍「慰安所」興建計畫，三、臺灣日軍「慰安婦」的來源與身心傷害等項目，試做一分析。

二、臺灣日軍「慰安所」的設立背景

日治時代所謂臺灣軍是指日本軍隊，有關它的編制，大體來說，一八九五至一九一八年，是由臺灣總督統領，擁有最高的統帥權。一九一九年臺灣實施文官總督制後，因在臺北設立臺灣軍司令部，故將統帥權交還給天皇，由天皇直接從陸軍大將或中將裡任命司令官，授予指揮權。臺灣軍司令部下轄臺灣守備隊司令部（地點在臺北）。臺灣守備隊司令部下設臺灣步兵第一聯隊（臺北）、臺灣步兵第二聯隊（臺南）、臺灣山砲大隊（臺北）、基隆港重砲兵聯隊、馬公港（澎湖）重砲兵聯隊、松山（臺北）航空隊、民雄（嘉義）航空隊、屏東航空隊。根據統計，直到一九三七年日本發動侵華戰爭為止，駐防臺灣的日軍人數不多，約計五千人。¹

（一）臺灣軍人數的增加

¹ 佐藤眠洋，《改隸四十年の臺灣》（臺北：臺灣圖書刊行會，1935），頁 50；劉鳳翰，《日軍在臺灣》（上）（臺北：國史館，1997）頁 55-58。

一九三七年日本發動侵華戰爭後不久，臺灣因與華南、東南亞地區地理位置接近，交通運輸方便，與中日戰爭產生了直接的連結關係，故日軍常到臺灣集結，由臺灣搭乘軍艦出發，協助日本師團在中國大陸的作戰。²

關於臺灣軍前往大陸戰場的實況，如一九三八年擔任華南作戰的臺灣軍司令官古莊幹郎中將，出任第二十一任軍司令官（十一月九日起改由安藤利吉中將接替）統領七萬五千人，以澎湖群島的馬公港為各部隊的集結地，於十月十一日登陸廣東沿海的大亞灣，十五日攻陷惠陽，二十一日佔領廣州。³又如由臺灣軍編成的飯田支隊，在一九三九年一月十九日攻打海南島的大本營陸軍指示中，編入第二十一軍，成為海南島作戰的主力部隊。⁴

一九四一年在太平洋戰爭爆發以前，日軍非常重視對海洋作戰的補給、交通及通信，認為這三者為推進戰爭之先決條件，因此，在規劃南方作戰時，將後勤補給基地設於法屬越南南部，將中繼補給基地設在臺灣，將輔助中繼補給基地設於廣東（含海南島）和法屬越南北部，藉以運輸軍需物資。要言之，日軍視臺灣為南方作戰的心臟，在南方作戰的軍需品多自臺灣徵收，由高雄輸出供應。⁵

太平洋戰爭期間臺灣軍與日僑（包括官員、各行各業民眾）人數的配置，如圖所示，日本陸軍人數增為 128,537 人、日本海軍 37,472 人、日本僑民 322,149 人。另，朝鮮族陸軍人數有 1,303 人、朝鮮族海軍 17 人、朝鮮僑民 2,177 人。日本陸軍的駐防區以臺北、新竹為主，約佔總人數的 32.4%，日本海軍主要分佈於高雄，約佔總人數的 38.7%。朝鮮籍陸、海軍都駐留臺北、新竹，二者共計 1,320 人。朝鮮僑民則分佈於基隆、臺北、新竹、臺中、臺南、高雄、花蓮、臺東、澎湖等地，其中以女性居多。以上駐臺日本、朝鮮軍人與僑民的總人數共 491,655 人。⁶

（二）軍需設施與軍需人數的增加

戰時日軍鑑於南方戰場不斷的擴大，部隊集結或停留臺灣的情形愈

² 劉鳳翰，《日軍在臺灣》，頁 61。

³ 劉鳳翰，《日軍在臺灣》，頁 69。

⁴ 劉鳳翰，《日軍在臺灣》，頁 70-71。

⁵ 劉鳳翰，《日軍在臺灣》，頁 82。

⁶ 臺灣警備總司令部，〈臺灣地區日韓官兵僑民配置要圖〉《臺灣省軍事接收總報告》（臺北：臺灣警備總司令部，1946），附圖。關於朝鮮婦女的分佈地，參見朱德蘭，〈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人文學報》第 27 期（中壢：國立中央大學文院，2003），頁 164-168。

來愈多，為能取得勝利，故開始加強在臺灣的軍需工業設施。舉例言之，在工業方面有：

- 1、陸軍第五野戰航空修理廠，屬於航空第八飛行師團部隊。總廠原設於屏東，一九四四年因被美國飛機轟炸而遷移臺北新店，下設臺中、嘉義、花蓮、屏東等四個分廠。
- 2、海軍第六十一航空廠，總廠原址設在岡山，規模宏大。本來計劃製造小型飛機，太平洋戰爭爆發後因遭轟炸而遷移臺北士林。總廠之下分設新竹、新社、員林、臺南等四個分廠。該廠除了修理海軍飛機之外，兼製簡單的兵器，如炸彈、手榴彈等。
- 3、臺灣自動車廠總廠設於臺北，下設臺中出張所、嘉義分廠、旗山支廠、新竹出張所等四個分廠。
- 4、兵器汽車修理廠設於臺南玉井。
- 5、酒精工廠設於臺北新店。
- 6、煉油廠設於高雄。
- 7、成立高雄海軍工作部，下設基隆出張所、臺北出張所、馬公等三個分工廠。

另，在陸軍所屬倉庫方面，主要設施有：

- 1、武器倉庫：總廠設於臺北，分廠設於基隆、新竹、臺中、嘉義、高雄，用於儲藏步砲兵彈藥及武器。
- 2、軍需品倉庫：分別於臺北、高雄、鳳山等地各設一個倉庫。
- 3、陸軍貨物廠：總廠設於臺北松山，下設安坑連絡所、基隆出張所、宜蘭出張所、新竹出張所、三峽連絡所、臺南出張所、屏東出張所、嘉義出張所、臺中出張所、高雄出張所、臺東出張所、花蓮港支廠等十二個分廠。
- 4、燃料倉庫：分設於基隆、臺北、新竹、臺中、大屯郡、嘉義、臺南、彰化、玉井、旗山、高雄、鳳山及花蓮等地，用於儲存汽車及戰車用各種油料。

又，在空軍所屬倉庫方面，主要有陸軍第五野戰航空修理廠（後屬航空第八師團部隊），總廠設於屏東（後遷至臺北），分廠設於嘉義、臺中、花蓮港、屏東等四處。⁷

以上軍事設施的興建，意味著往來日本、臺灣之間技術、勞務、管理人員的流動相當頻繁。而來臺日軍與軍需人數的增加，也可反映臺灣日軍「慰安所」的設施已經遍及各個港口、軍營與軍需工廠附近。

⁷ 臺灣警備總司令部編，《日軍佔領臺灣期間之軍事設施史實》（臺北：臺灣警備總司令部，1948），頁 115-116。

三、殖民政府執行日軍「慰安所」興建計畫

根據學者調查指出，沖繩群島面積二千餘平方公里，駐守日軍人數約八萬九千人，適應日軍需要的「慰安所」共有一百三十四個。⁸海南島面積三萬三千九百二〇平方公里，日本佔領軍人數約一萬六千餘人，各地「慰安所」設施總共六十二個。⁹以上兩個戰略據點的「慰安所」數量，反映「慰安所」的多寡並非依照面積的大小，而是視其軍事價值的高低做為設置的標準。據此，位居日本帝國最南端，既是日本本土運輸部隊、物資到南方的通過地，也是日軍直接向中國大陸、東南亞、太平洋群島補給兵力、勞務、軍需品的軍事基地—臺灣，不僅在地理位置、駐軍及軍屬人數上，要比沖繩群島、海南島重要，而且日軍到臺灣集結前往南方作戰的人數也多到難計其數（見表一），由此推估臺灣日軍「慰安所」的數量可能有數百個。

又，日本殖民政府與臺灣「慰安所」的關聯，見於表二。表二所列日本官方參與執行的建築計畫共有十五件。

（一）基隆日軍「慰安所」事例

基隆位於臺灣北部，為日本統治臺灣後最早建設軍事要塞的港市。基隆要塞司令部管轄基隆、淡水、新竹等地，分別由獨立步兵第七十六旅團（後改名獨立混成第七十六旅團）、獨立混成第一百零三旅團、第九師團負責。戰時日軍在基隆設有陸軍兵器補給廠基隆分廠（一個倉庫）、海軍兵器及軍需補給廠（三個倉庫）、燃料供應倉庫一個、陸軍貨物廠基隆出張所（三處）。¹⁰

基隆市政府認為基隆港乃連結日本與華南、東南亞、太平洋群島的重要門戶，鑑於出入基隆的日軍、軍務人員增多，故有興建「慰安所」的方案。

⁸ 沖繩群島位於日本九州與臺灣之間，共有 146 個島嶼，最大的島是沖繩島，面積 1,434.49 平方公里，其次是八重山群島 584.67 平方公里、宮古島 158.37 平方公里。參見《沖繩大百科事典》（沖繩：タイムス社，1983）上卷，頁 531、下卷，頁 590-591、700。關於沖繩群島的「慰安所」數量，參見ナヌムの家歴史館後援會編，《ナヌムの家歴史館ハンドブック》（東京：柏書房，2002），頁 27、28。關於沖繩群島的兵力，參閱 Frank O.Hough 著、鈕先鍾（譯），《太平洋戰爭島嶼爭奪戰》（臺北：軍事譯粹社，1978 版），頁 291。

⁹ 藤原彰，〈海南島における日本海軍の「三光作戰」〉《季刊戰爭責任研究》第 24 號（東京：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1999 夏季號）頁 53；朱德蘭，〈1939-1945 日佔海南下的皇軍「慰安婦」〉《人文學報》第 25 期（中壢：國立中央大學文學院，2002），頁 182。

¹⁰ 劉鳳翰，〈日軍在臺灣〉，頁 167-169、235-238、243。

1、基隆陸海軍娛樂「慰安所」

一九四〇年七月基隆市政府因日軍慰安設施不足，不能符合軍方需求，故計畫選一適合的地方建設軍人會館，以為陸海軍下士官的娛樂慰安所。經過考慮興建地點選在日新町海軍士官浴場附近，屬於臺灣興業信託會社所有大約四百坪的空地。惟因資材入手困難，遂在木造二樓的建築設計裡，以建蓋住屋為主，其他慰安與娛樂設備，譬如澡堂、理髮室、娛樂室、電影室、網球場等，可以供給出征軍人家族利用。又，為籌措維持費，故擬以收費方式，允許一般市民申請以為集會之用。¹¹

2、基隆軍人會館

戰時基隆市政府受到建築用地、資材、沒有適合舊建物等限制的影響，興建日軍慰安所的工程比較緩慢。一九四三年十月基隆市政府因為軍方要求，以及相關人物的努力，而得收購市政府斜對面的日本料亭「吾妻樓」，改建成陸海軍人、軍屬的住宿慰安設備，解決了一部份來臺日軍、軍屬住宿的困難。關於基隆市政府收購、改造建築物的經費（包括維持費），約計四十五萬圓，費用來源全部依靠捐款。¹²又，鑑於港灣都市的地理位置特殊，故基隆市政府決定直接經營軍人會館。同年十二月在通過軍人會館追加預算之決議下，除了收購基隆市日新町一丁目舊料亭「吾妻樓」三百八十坪大的大廳、十六間客廳，提供軍人、軍屬住宿與休息外，還為接待日本下士官之需，另於市政府後面建設一間七十五坪大的別館。¹³

（二）嘉義日軍「慰安所」事例

嘉義位於臺灣西南部，是日軍補給軍需品的重要據點之一。戰時日軍在嘉義設有陸軍第五野戰航空修理廠一個分廠（員工三三四人）、第一一三獨立整備隊（兵工一五九人）、第一九三獨立整備隊（兵工四〇六人）、陸軍兵器補給廠嘉義分廠（人數不詳）、燃料供應倉庫（人數不詳）、陸軍貨物廠嘉義出張所（人數不詳）。¹⁴由於軍事人員不少，故也有設置「慰安所」的需要。

1、嘉義軍人「慰安所」

一九三九年九月嘉義市政府為紀念支那事變（中日戰爭），計畫建設一間軍人慰安所，感謝皇軍將兵的功勞。經由民間有志者與市政府合作，約以二萬元工程費開始動工。關於軍人慰安所的用地，嘉義市政府認為公會堂內最合適。預定在完工後，經營方式要以娛樂將兵為原則，

¹¹ 《臺灣日日新報》，1940年7月27日，頁11。

¹² 《臺灣日日新報》，1943年10月19日，頁3。

¹³ 《臺灣日日新報》，1943年12月23日，頁4。

¹⁴ 劉鳳翰，《日軍在臺灣》，頁231-236。

另，也有維持經營的考慮，擬讓有會員組織的市民俱樂部使用。¹⁵

2、嘉義軍人會館

一九四〇年六月嘉義市政府為建設以軍人慰安為目的之軍人會館，認為稅務出張所後邊的空地是最適合的地方，本來預定投入總工程費八萬五千圓興建，但因某種原因，變更稅務出張所後邊的預定用地，改向市民館的物主嘉南大圳管理處收購市民館。有關軍人會館的接待對象，為維持經營起見，規定週末為將兵專用，平日為採取會費制度的市俱樂部組織會員使用。¹⁶

3、嘉義軍人會館

一九四一年六月專賣局嘉義分局轄區內的專賣品業者，將皇紀二千六百年記念事業費中的一萬圓，捐贈嘉義市政府當作建設嘉義軍人會館的費用，五日上午由井原分局長代表業者訪問市政府，辦理捐款手續。¹⁷

4、嘉義軍人會館

一九四二年九月嘉義市政府在鄰近地區的協力下完成嘉義軍人會館的興建工程。十八日上午十點半市政府在軍人會館招待地方官民，舉行盛大的開館儀式。有關軍人會館的經營方式，免費供給軍人利用為第一要務，其次開放民眾使用，但要收費。市政府也有維持經營之需，擬組織維持會，推薦有勢力的人擔任維持會員（會員會費一年十圓）。¹⁸

（三）高雄日軍「慰安所」事例

高雄位於臺灣南部，土地平坦寬闊。一九三七年日軍為防禦敵軍登陸，在壽山成立要塞司令部，此後直到一九四五年為止，日軍在高雄一共設有A、參謀部，管轄：作戰、情報、整備、通信、機動等五班，B、管理部，管轄：庶務、經理、衛生等三班，C、施設部，管轄：總務、會計、土木水道、建築電氣機械、醫務、教導兵工等業務。又，在左營建設軍港，並設置陸軍兵器補給廠高雄分廠（共計十二個倉庫）、海軍兵器及軍需補給廠（共計九個倉庫）、海軍工作部倉庫一個、燃料供應倉庫四個、陸軍貨物廠高雄出張所（共計二十三處）。¹⁹有關高雄駐防部隊與軍務人員的數目，礙於資料的限制，不詳。不過，從高雄市、岡山郡、鳳山郡、東港郡、恆春郡等地擁有許多守備、作戰設施，也可推知「慰安所」是一項不可或缺的軍需設施。

¹⁵ 《臺灣日日新報》，1939年9月16日，頁5。

¹⁶ 《臺灣日日新報》，1940年6月10日，頁4；同，11月22日，頁8。

¹⁷ 《臺灣日日新報》，1941年6月5日，頁4。

¹⁸ 《臺灣日日新報》，1942年9月11日，頁4。

¹⁹ 劉鳳翰，《日軍在臺灣》，頁192-195、208-210、235-238、245。

1、高雄海軍「慰安所」

高雄市政府（市役所）鑑於高雄戰略地位的重要，其實早在一九三六年時就以一個社會案件為契機，提出興建日軍慰安所的計畫。具體的說，一九三六年高雄市有兩名日本兵曹（士兵）被無賴漢襲擊，臺灣上流人士為向受害者表達關心，自動捐獻了一千五百圓慰問金，結果這兩名兵曹把捐款贈給高雄市政府。高雄代理市長小野田快雄就與官員們討論如何處理捐款事宜。經過協商並得到高雄州長（州知事）內海忠司的同意，便於同年五月二十七日海軍記念日當天，發表建設海員之家的計畫。高雄市政府除了保留這筆捐款外，還期待一般市民捐款，打算以總金額五萬圓的工程費，模仿馬公要港部的海軍集會所，執行興建海軍「慰安所」的方案。²⁰一九三七年中日戰爭爆發後，日軍到高雄集結前往東南亞地區作戰的部隊相當頻繁，根據報紙報導，由當局提出的興建「慰安所」計畫，至少有以下二項。

2、高雄軍人會館

一九四〇年七月高雄市政府認為陸海軍人慰安休養設施不足，因計畫建設軍人會館，故決定讓高雄州下轄六十個產業組合負責籌款六萬圓，海軍高雄市聯合分會分擔籌款四萬圓，以總金額十萬圓的工程費，借用高雄州官廳內的一塊土地建設軍人會館。²¹

3、高雄軍人會館

一九四一年五月愛國婦人會高雄州支部本來將二樓婦人會館作為「海軍慰安所」，借給海軍使用，但因利用人數增加，呈現空間狹隘的狀態，故決定在靠近會館之處興建木造二樓建築物一百坪，約可收容一百人的新館，好讓軍人好好的休息。該工程自五月動工，預定於八月一日完工。²²

綜上所述，殖民地政府在興建慰安所計畫時，難免會面臨：一、有無足夠的建築費用？二、有無徵收土地問題？三、有無取得建築材料困難？四、如何維持經營？五、慰安所對附近居民有何影響？等問題。正因這些疑慮牽涉複雜的地方社會與經濟問題，加上戰時人力、物力日趨匱乏，興建房屋也有緩不濟急的情形，因此由政府執行的慰安所興建計畫實際上只佔整體的一小部份。殖民地政府的變通方式為：半鼓勵、半強迫或以收購方式，讓料理店業主參與接待日本軍官的慰安所事業。而在沒有料理店的地區，則借用公共設施，譬如把學校教室改建成「慰安

²⁰ 《臺灣日日新報》，1936年5月22日，頁9。

²¹ 《臺灣日日新報》，1940年7月4日，頁9。

²² 《臺灣日日新報》，1941年5月15日，頁4。

所」，或讓軍營宿舍充當「慰安所」，或讓軍需倉庫（譬如山區中的洞窟），或「勞工宿舍」充當「慰安所」。²³

四、臺灣日軍「慰安婦」的來源與身心傷害

有關臺灣島內各族日軍「慰安婦」的人數，George Hicks 的著作記載，約有七千名。²⁴以此數字對照旅臺日本、朝鮮的僑民人數，應可發現日籍婦女所佔總人數的比率較高。

1、臺灣日軍「慰安婦」的來源

有關日軍「慰安婦」的徵召途徑為何？如據金富子的研究指出，一九二五年日本政府簽署的「婦女買賣禁止國際條約」不適用於殖民地。日本周旋業者因有此一法律限制，在日本本土募集婦女不易，故認為在「慰安婦」總人數方面，日籍婦女不只人數較少，且多屬於有花柳業從業背景的婦女。²⁵

花柳業與日軍「慰安所」業之間既然存有人員流動的關係，那麼，臺灣花柳業的從業人數，也須做一觀察。

首先，根據表三、表四所示，戰時有營業執照的公娼、酌婦（酒家女）人數，日籍公娼從八百零八人減到六百七十四人，日本酌婦從五百三十四人減為五百二十九人。臺灣公娼從三十四人減為二十四人，臺灣酌婦從二千零七十九名增至三千零十六名。朝鮮公娼從一百九十八人增為二百二十七人，朝鮮酌婦自二百六十一人減至一百九十五人，反映戰時花柳業大致呈現繁榮的發展趨勢。

花柳業婦女轉為日軍「慰安婦」的情形不是沒有可能，不過，在數量上頗不符合十六、七萬駐臺日軍、軍需人數的市場需求。而為了解決婦女不足的問題，臺灣總督府的因應策略是，不將實施娼妓業店主、婦女申請營業執照、納稅的法規用於日軍「慰安婦」。具體的說，殖民政府為了控制臺灣的社會治安，儘管實行「警察政治」，嚴密的管理流動

²³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韓國挺身隊研究會編，金鎮烈、黃一兵（譯），〈十二歲的時候我走進了“彰化慰安所”〉、〈在臺灣洞穴裡做了海軍慰安婦〉、〈我下船的那個港口是臺灣彰化〉《被掠往侵略戰場的慰安婦》（北京：中國文史出版社，2001）頁97、249、261；朱德蘭，「歷史的傷口－臺灣慰安婦口述歷史」（臺北：臺北市政府文化局補助計畫，2002年）。

²⁴ George Hicks 著、濱田徹（譯）《性の奴隸從軍慰安婦》（東京：三一書房，1977），頁101。

²⁵ 金富子、梁澄子等著，《もっと知りたい「慰安婦」問題性と民族の視點から》（東京：明石書店，1996），頁101-102、吉見義明、川田文子編著，《「從軍慰安婦」をめぐる30のウソと眞實》（東京：大月書店，1997），頁27。

人口，但為方便支持國策的人徵用不具娼妓身份的普通婦女充當「慰安婦」，故對「慰安所」從業者、關係人士，採取了相當自由放任，沒有資格限制的管理政策。也正因為如此，戰時以花柳業經營者為核心，參與投資、經營、徵集日軍「慰安婦」的人，包括了範圍廣泛的日本國策會社、御用商社、港口運輸業者、雜貨商、退役軍人、捐客。其中，花柳業者與日軍「慰安所」業者成爲一種混合體的同業，雙方之間不存在互相排斥的競爭關係。²⁶

其次，根據表五不完整資料統計，可以得知經由臺灣到中國大陸從事「慰安所」業的人數。亦即：一九三八年兩個月份的從業人數，日本人三百三十一人、臺灣人一百五十七人、朝鮮人二百零二人。一九三九年全年的從業人數，日本人共六百九十二人、臺灣人二百二十八人、朝鮮人三百七十八人。一九四〇年一個月份的從業人數，日本人四人、臺灣人十五人、朝鮮人十二人。一九四一年一個月份的從業人數，日本人十五人、臺灣人五人、朝鮮人十六人。反映一九四一年十二月太平洋戰爭爆發以前，日本人、朝鮮人通過臺灣前往海外從事慰安婦業的人數，不僅多於臺灣本地婦女，而且其中可能有花柳業從業背景的日籍婦女，以及被欺騙就業的朝鮮女子。

值得注意的是，從太平洋戰爭開始到一九四五年戰爭結束，「慰安所」業者因為南方戰線延長，軍務緊急，需要儘速徵集「慰安婦」，而臺灣距離南方較近，直接招募臺灣籍婦女供應大量士兵之需，為其發財致富的有利途徑，因此打著配合國策的旗號，欺騙、強迫臺灣籍婦女充當「慰安婦」的人相當多。

（二）臺灣日軍「慰安婦」的身心傷害

日軍對於「慰安婦」的管理方式，大體而言，依其種族、階級、配置地區、從業婦職歷等區別，實施不同程度的差別待遇。

1、日籍「慰安婦」

以日籍「慰安婦」來論，包括花柳業者、御用商人、捐客在內的日本業者，幾乎都付日本婦女「預支款」，採取契約年限制，用「人身買賣」的方式，讓有特種行業經驗的婦女，包括藝妓、酌婦、女給（女侍）、娼妓充當「慰安婦」。由於日籍婦女的服務對象為日本高、中、低階軍官，收入較高，待遇較佳，故多能在短期間內清償債務，束裝回國變成自由之身。²⁷

²⁶ 具體事例參見朱德蘭，《臺灣總督府と慰安婦》，第四章、第五章；朱德蘭，〈海外淘金：日本人在臺海兩岸拓展賣淫業市場之研究（1895-1945）〉，《中國海洋發展史》第十輯（臺北：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2008 預定出版）。

²⁷ 朱德蘭，《臺灣總督府と慰安婦》，頁 157-169。

2、朝鮮族「慰安婦」

就在臺朝鮮族「慰安婦」而言，若從朝鮮僑民二千一百七十七人中減去公娼、酌婦人數四、五百名，以及各行各業的數百名男性，估計成爲「慰安婦」的朝鮮人約爲一千名左右。論及她們來臺灣的途徑，根據研究指出，許多身份普通的貧窮婦女，通過殖民地官員介入，或被地方警察、公職人員動員，或有「慰安所」業者參與，因爲被勸說、欺騙、強迫就業，而變成日軍「慰安婦」。²⁸

關於渡臺朝鮮女子的遭遇，例如李容洙，一九二八年出生於朝鮮大邱市，一九四四年十六歲時，被一名日本人以出外就業爲由，騙她和四名朝鮮女子離家，結果一九四五年初她們被送到新竹（臺灣北部）的「慰安所」。店主日本人爲李容洙取名「Toshiko」，強迫每人每天接待四、五名「特攻隊」隊員。慰安所店主不給報酬，規定月經來了也要接客。李容洙在從業期間罹患性病，但因附近沒有醫院和衛生所設施，故只得讓店主注射六〇六號梅毒藥劑治療，且在未痊癒前仍須接客。店主規定她們如果擅自外出或抗拒接客，就要接受處罰或被處死。²⁹

又如朴頭理，一九二四年出生於朝鮮慶尙南道密陽郡，一九四〇年被一名日本人勸誘到日本內地工廠就業，她和數名女子結伴同行，結果被送到彰化（臺灣中部）的「慰安所」後，才知道帶路的日本人就是那間店的老闆。朴頭理被改名爲「Fujiko」。當時在「慰安所」一起工作的朝鮮婦女約有二十名，大家的年紀相仿，約在十五、十六歲左右。店主規定每人每天要接待十名日軍。她們在彰化服務一段時日後，被轉賣給另一個日本慰安所店主。朴頭理從業五年，從未得到任何工資。³⁰

3、臺灣原住民「慰安婦」

太平洋戰爭後期（一九四四至一九四五年）被山地警察強迫爲「慰安婦」的臺灣原住民婦女至少有十二名，包括有太魯閣族、泰雅族、布農族。她們白天爲日軍洗衣、打掃，做些雜工，晚上被強制留下來做性服務。她們的工作場所分別在日軍士官宿舍、勞工休息宿舍、儲藏兵器的山洞。年齡多在二十歲以下，其中最小的只有十三歲，最大的二十九歲已婚，是三個孩子的母親。原住民「慰安婦」爲日軍獻身期間，不但沒有酬勞，還因日軍不用保險套（sack），而有六人懷孕，生下私生子、

²⁸ 尹明淑，〈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軍隊慰安婦〉（東京：明石書店，2003），頁 294-299。

²⁹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韓國挺身隊研究會編，〈被掠往侵略戰場的慰安婦〉，頁 80-91。

³⁰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韓國挺身隊研究會編，〈被掠往侵略戰場的慰安婦〉，頁 259-269。

女，有二人曾經流產三次，有二人流產一次。一九四五年日軍戰敗，等待遣返回國前，仍侵害不知時局已經發生變化的山地原住民婦女。³¹

4、臺灣漢族「慰安婦」

在苗栗泰雅族婦女的訪問記錄裡，曾經提及若干被迫在山區做日軍「慰安婦」的臺灣漢族「慰安婦」，但因不知個案的去向，故不詳其從業過程。一九九二年以來，四十八名表示有「慰安婦」從業經歷的臺灣漢族婦女，其工作地點都在海外。³²臺灣漢族「慰安婦」的年齡以十六歲到二十歲為多，大部份出身於鄉下農家。有花柳業背景的女子只佔少數，包括有十四歲的藝旦（指表演唱曲的藝妓）、十五歲的酌婦。臺灣漢族婦女除了大多數被捐客欺騙出外就業以外，也有若干被地方警察、公職人員勸誘或強迫就業者。關於從業地點，分佈於上海、廈門、廣州、河南（廣東珠江以南）、海口、榆林、Iloilo、Cebu、Balikpapan、Johor、Lashio、Andaman 等地，其服務對象包括日本低階軍官、軍屬、兵卒。

³³

臺灣漢族「慰安婦」的遭遇幾乎都很悲慘。有的在搭船途中，遭受敵軍潛水艦炸沉，雖被救活，但因目睹同伴被炸死，內心恐懼，而患有精神憂鬱症。有的在戰場被槍彈射擊受傷。有的被喝醉酒的日軍毆打。有的被日軍在大腿上「刺青」，留下恥辱的符號。有的被不用保險套的日軍強迫「懷孕」，生下私生女。有的過度接客，罹患「子宮炎」。有的染上瘧疾（malaria）、霍亂（cholera）、登格熱（dengue fever），也有因怨歎命運悲慘，曾經喝過藥水、燈油「尋死」被救活的。

一九四五年日軍戰敗撤退之際，追隨部隊逃命的臺灣漢族「慰安婦」在山區逃亡中，備受飢餓、寒熱之苦，她們為了求生喝過有屍體漂流的溪水、吃過野生植物，也有因身體虛弱無力步行，患病、受傷而亡故的。³⁴日軍投降後，幸運生還回鄉的「慰安婦」，有的自認為已經喪失「貞操」，和「性交」過度不能生育，而放棄婚姻，依靠做粗工過活。有的結了婚，因飽受村民流言蜚語的傷害而離婚。也有的結婚後，以宗教信仰原諒自己的「羞恥」與「罪惡」，變成虔誠的基督徒或佛教徒。³⁵

³¹ 朱德蘭，《臺灣總督府と慰安婦》，頁 196-197；朱德蘭，「歷史的傷口－臺籍慰安婦口述計畫」，頁 27-34。

³² 筆者估計海外臺籍「慰安婦」的人數可能超過一千人。

³³ 吉見義明，《從軍慰安婦資料集》（東京：大月書店，1993），頁 136-137；朱德蘭，《臺灣總督府と慰安婦》，頁 208-217。

³⁴ 朱德蘭訪問 Takako、Namiko 記錄，2001 年 8 月 28 日於屏東、2003 年 12 月 5 日於臺北。

³⁵ 臺北市婦女救援基金會會整理，《臺灣慰安婦調查資料》（不公開資料），

五、結論

綜上本文的討論，可知戰時臺灣作為日本帝國推行南方作戰的補給基地，由於進出臺灣的日軍、軍需人員增加，軍事設施加強，故為適應軍方要求的「慰安所」，成為日本總動員體制下軍需事業的一環。

論及臺灣日軍「慰安所」的數量，應與全臺各地軍需設施的多寡齊頭並進，約計數百個。其中，殖民政府所扮演的角色，除了積極的介入，負責規劃興建或收購舊建築物以外，尚以公權力動員市民捐款，讓花柳業者、企業界人士一同參與。殖民政府利用行政與社會資源，解決了不少建築經費、徵收土地、建築材料與維持經營等問題。又，在官方所興建的建築物裡，有的稱為「軍人會館」，有的稱為「慰安所」，其功能一般趨於多元性，使用對象則以接待日軍為主。

關於「慰安婦」的徵集與待遇。大體而言，日本本土是比照花柳業的傳統經營模式，也就是說，以「預支款」方式支給婦女家長一筆生活費，等待婦女就業償清債務以後，便可回復自由之身。戰時在臺從業的日籍「慰安婦」估計約有數千名，其服務對象主要是高階軍官。

在朝鮮族與臺灣族「慰安婦」方面。向來殖民地政府的公娼管理政策，有從業者必須要向轄區警察申請營業執照，經過允許登記立案之後才可營業的法規。然而，戰時「慰安所」業根本沒有制定任何有關約束從業者的管理法令。殖民地政府之所以實施自由放任的（不取締業者）政策，其目的，主要是為配合「國策」需要，方便支持「國策」的業者使用種種手段，擴大徵集充當日軍「慰安婦」的人數。

1992-2002)；臺北市婦女救援基金會會主編，《臺灣慰安婦報告》（臺北：臺灣商務印書館，1999）。

臺灣日軍配置圖

(臺灣警備總司令部製作, 194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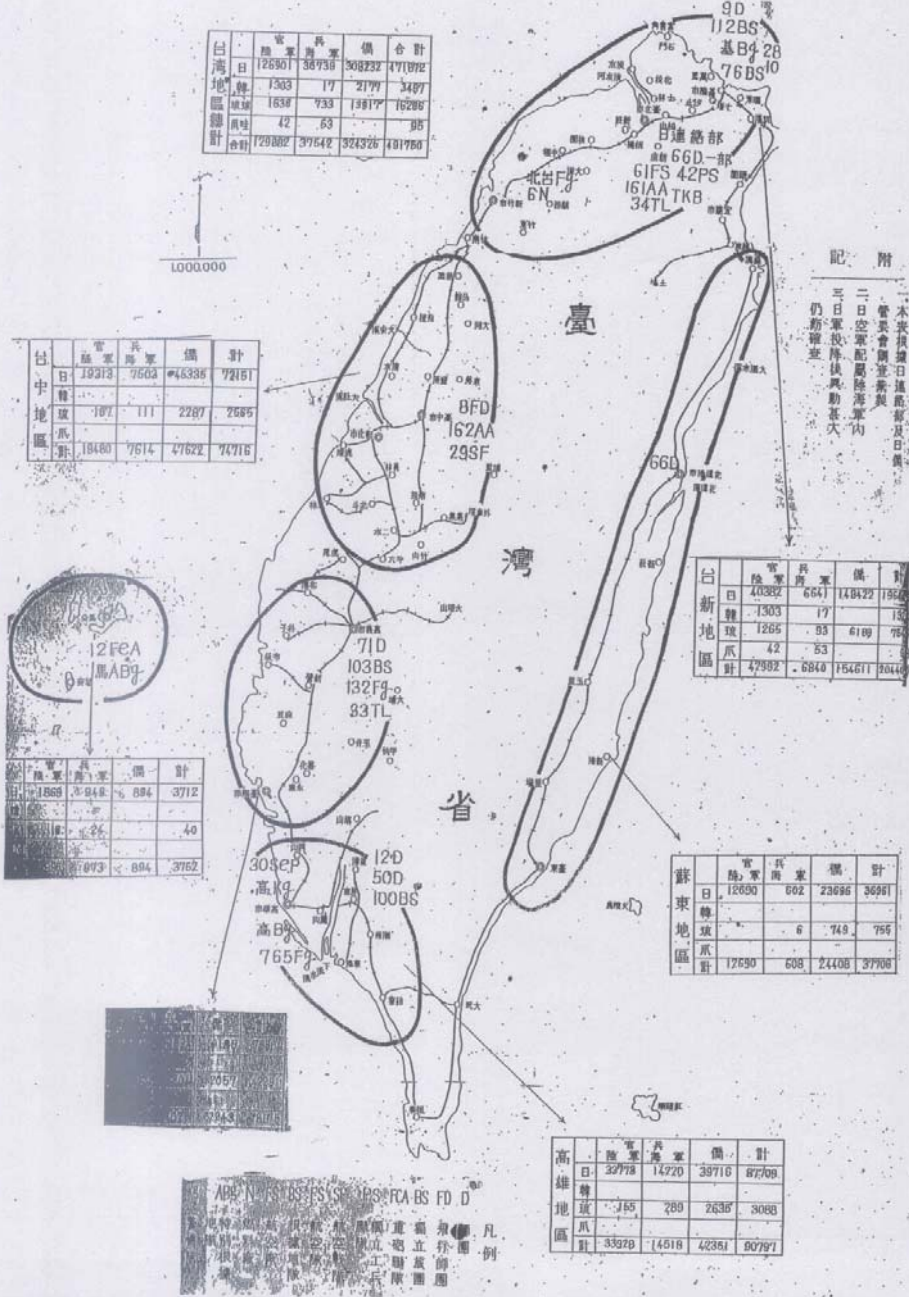


表 1 1944~1945 年移駐臺灣方面的日本部隊

部隊名稱	年月日	地點	任務	出典
獨立自動車第 305 中隊	1944.11.16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附近警備。	頁 221
特設陸上勤務第 111 中隊	1944.11.26 1944.11.27~ 1945.08.15	臺灣	在臺灣編結完成 集散第十方面軍野戰貨物廠的緊急 作戰用軍需品、構築簡易建物與洞 窟。	頁 222
特設陸上勤務第 112 中隊	1944.11.22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整備。	頁 223
特設陸上勤務第 113 中隊	1944.11.22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整備。	頁 224
特設陸上勤務第 114 中隊	1944.11.22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整備。	頁 225
特設陸上勤務第 115 中隊	1944.11.22	臺中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26
特設陸上勤務第 116 中隊	1944.11.22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27
特設陸上勤務第 117 中隊	1944.11.22	高雄小港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28
特設建築勤務第 106 中隊	1944.11.26 1945.02.01 1945.06.26 1945.06.27	高雄鳳山 旗山 旗山 文山	編結完成 構築旗山附近後方設施 由旗山出發移駐臺北 構築臺北附近後方設施	頁 229
獨立機關銃第 7 大隊	1944.08.15 1944.10.12~15	湖州	完成動員集結 參加臺灣防衛戰鬥	頁 230
獨立機關銃第 8 大隊	1944.08.15 1944.10.12~15	臺南	完成臨時動員集結 參加臺灣防衛戰鬥	頁 231
野戰機關銃第 56 中隊	1944.08.03 1944.08.18 1944.08.19 1944.10.12~15 1945.01.03 1945.01.19	門司港 基隆 桃園 桃園 蘇澳	由門司出發前往台灣基隆港 上陸 擔任防衛勤務 參加臺灣防衛戰鬥 參加桃園機場附近對空戰鬥 移駐蘇澳街南方澳、擔任駐地的對 空戰鬥與防空勤務。	
特設警備第 518 中隊	1945.03.31 1945.07.05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改編為特設警備第 518 大隊	頁 233
特設警備第 519 大隊	1945.04 1945.07.05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19 大隊改編	頁 234
特設警備第 520 大隊	1945.03 1945.07.05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20 大隊改編	頁 235
特設警備第 521 大隊	1945.03 1945.07.05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21 大隊改編	頁 236
特設警備第 522 大隊	1945.04 1945.07.05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22 大隊改編	頁 237
特設警備第 523 大隊	1945.03 1945.07.05	新竹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23 大隊改編	頁 238
特設警備第 524 大隊	1945.03	新竹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39

	1945.07.05		特設警備第 524 大隊改編	
特設警備第 525 大隊	1945.03 1945.07.05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25 大隊改編	頁 240
特設警備第 526 大隊	1945.03 1945.07.05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26 大隊改編	頁 241
特設警備第 528 大隊	1945.03 1945.07.05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28 大隊改編	頁 242
特設警備第 530 大隊	1945.04 1945.07.05	嘉義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30 大隊改編	頁 243
特設警備第 531 大隊	1945.04 1945.07.05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31 大隊改編	頁 244
特設警備第 532 大隊	1945.04 1945.07.05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32 大隊改編	頁 245
特設警備第 533 大隊	1945.03 1945.07.05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33 大隊改編	頁 246
特設警備第 534 大隊	1945.03 1945.07.05	屏東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34 大隊改編	頁 247
特設警備第 511 中隊	1945.03	臺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48
特設警備第 512 中隊	1945.03 1945.07.05	桃園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臨時編成，並改稱特設警備第 512 中隊。	頁 249
特設警備第 513 中隊	1945.04 1945.07.05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改稱特設警備第 513 中隊	頁 250
特設警備第 515 中隊	1945.04 1945.07.05	花蓮港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改稱特設警備第 515 中隊	頁 251
特設警備第 516 中隊	1945.04 1945.07.05	花蓮港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改稱特設警備第 516 中隊	頁 252
特設警備第 518 中隊	1945.04 1945.07.05	基隆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改稱特設警備第 518 中隊	頁 253
特設警備第 551 大隊	1945.01	高雄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54
特設警備第 552 大隊	1944.01.04 1944.02.25	臺北	臨時編成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55
特設警備第 502 大隊	1944.02	新竹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56
特設警備第 501 大隊	1945.02 1945.07.05	花蓮港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特設警備第 501 大隊改編	頁 257
特設警備第 561 大隊	1945.01.01	花蓮港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58
特設警備第 541 大隊	1944.02.25 1945.07.05	基隆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改稱特設警備第 541 大隊	頁 259
特設警備第 566 大隊	1945.01.01	屏東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60
特設警備第 506 中隊	1944.02.25	馬公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與戰備 築城業務。	頁 261
特設警備第 562 大隊	1945.02	臺中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62
特設警備第 563 大隊	1945.01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63
特設警備第 564 大隊	1945.01	嘉義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64

特設警備第 565 大隊	1945.01.01	臺南	編結完成，並擔任週邊警備。	頁 265
獨立速射砲第 4 大隊	1944.07.08	釜山港	自釜山出發，同日改隸臺灣軍下。	
	1944.07.27	基隆港	上陸	
	1944.07.31	新竹	到達新竹，並擔任週邊地區防衛。	
野戰機關砲第 60 中隊	1944.07.23		編結完成	頁 268
	1944.08.03	門司港	出發前往臺灣	
	1944.08.16	基隆港	上陸	
	1944.08.17~ 10.11	嘉義	擔任嘉義機場防衛	
	1944.10.12~15		準備航空作戰並參加臺灣防衛戰鬥	
	1945.05.10	嘉義	出發移駐宜蘭	
1945.05.11	宜蘭	抵達宜蘭機場，並擔任防衛任務		
1945.06.21~ 08.15	宜蘭	防衛宜蘭機場，並從事作戰準備		
第 507 特設警備工兵隊	1944.10.20	臺北	編結完成，並擔任警備。	頁 269
第 508 特設警備工兵隊	1944.10.20	臺北	編結完成，並擔任警備。	頁 270
第 509 特設警備工兵隊	1944.10.20	臺北	編結完成，並擔任警備	頁 271
第 511 特設警備工兵隊	1944.10.01	臺中	編結完成，並擔任警備	頁 272

備註：原資料過於龐大，因考慮篇幅的關係，故本表僅根據一部份資料製成。

資料來源：筆者根據厚生省援護局編，《南方·支那·臺灣方面陸上部隊略歷（航空·船舶除）第二回追錄》（東京：厚生省援護局，1963年3月）製成。

表 2 臺灣日軍慰安所建築計畫

單位：日圓

年別	興建地點	用地來源	執行計畫機構	建築經費來源	建物形狀與工程預算	建物名稱
1940	基隆市	基隆臺灣興業信託會社 400 坪	基隆市役所		木造二樓	陸海軍人之娛樂慰安所
1943	基隆市 吾妻樓	市役所 收購	基隆市役所			軍人會館
1943	臺北市臺北 州會館	臺北州讓與	臺北州			軍人會館
1943	臺中市		臺中市役所	臺中市籌款 100,000 圓		軍人慰安所
1939	嘉義市 公會堂		嘉義市役所	嘉義市民捐款 200,000 圓		軍人慰安所
1940	嘉義 市民館	嘉南大圳 出售	嘉義市役所		85,000 圓	軍人會館

1941	嘉義市		嘉義市役所	專賣品業者 捐款 10,000 圓		軍人會館
1936	臺南市		臺南市役所			
1943	臺南市 料亭	軍人援護會收 購	臺南州	軍人援護會		軍人會館
1936	高雄市		高雄市役所	高雄市民捐款 4,500 圓	50,000 圓	海兵慰安所
1939	高雄市 中央公園		高雄市役所		300,000 圓	市民遊樂· 慰安所
1940	高雄市		高雄市役所	60 個產業組合捐 款 60,000 圓 高雄市聯合會 捐款 40,000 圓	100,000 圓	軍人會館
1941	高雄市愛國 婦人會館附 近	愛國婦人會 高雄州支部 提供	愛國婦人會 高雄州支部	愛國婦人會 高雄州支部	木造二樓 100 坪	軍人會館
1938	屏東市		屏東市	高雄州國防議會 籌款	和洋混合式 二樓 24,000 圓	軍人慰安所
1939	馬公	臺灣銀行 提供	馬公支廳			陸海軍 慰安所

備註：空白欄為資料缺載。依照臺灣地區從北到南排列。

資料來源：筆者根據《臺灣日日新報》，1936 年-1943 年製作。

表 3 臺灣各族公娼人數（1937-1941 年）

項目	年度	種族別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 廳	澎湖廳	小計	合計	
各族公 娼人數	S12 (1937)	日本人	420	--	58	26	177	--	10	117	808	1,040	
		臺灣人	--	--	--	34	--	--	--	--	34		
		朝鮮人	50	--	29	56	28	--	35	--	198		
	S13 (1938)	日本人	440	--	58	21	191	--	10	116	836		1,055
		臺灣人	--	--	--	30	--	--	34	--	64		
		朝鮮人	40	--	21	59	35	--	--	--	155		
S14 (1939)	日本人	395	--	35	14	191	--	14	47	696	969		
	臺灣人	--	--	--	33	--	--	--	--	33			
	朝鮮人	60	--	28	55	41	--	56	--	240			

	S15 (1940)	日本人	392	--	25	16	212	--	69	24	738	1,017	
		臺灣人	--	--	--	30	--	--	--	--	30		
		朝鮮人	71	--	24	61	37	--	56	--	249		
	S16 (1941)	日本人	380	--	19	24	225	--	2	24	674		925
		臺灣人	--	--	1	23	--	--	--	--	24		
		朝鮮人	55	--	15	66	33	--	58	--	227		

備註：S 指昭和年號（以下同）。1941 年以後，官方沒有統計資料（以下同）。

資料來源：作者根據臺灣總督府民政部文書課，『臺灣總督府第一、二、三、九、十九、二十九、三十四、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統計書』，「警察取締二係ル營業」（臺北：臺灣總督府官房調查課，1899~1943）製作。

表 4 臺灣各族酌婦人數（1937-1941 年）

項目	年度	種族別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小計	合計	
各族酌婦人數	S12 (1937)	日本人	155	33	43	92	145	35	24	7	534	2,882	
		臺灣人	387	127	397	522	538	26	40	42	2,079		
		朝鮮人	33	30	76	55	59	8	--	--	261		
		大陸人	5	--	--	3	--	--	--	--	8		
	S13 (1938)	日本人	122	10	28	67	114	31	11	14	397		2,841
		臺灣人	378	141	353	582	602	62	72	46	2,236		
		朝鮮人	37	14	47	20	74	8	8	--	208		
		大陸人	7	--	--	2	--	--	--	--	9		
	S14 (1939)	日本人	142	32	33	79	114	24	15	8	447		3,397
		臺灣人	447	176	415	688	723	146	85	57	2,737		
		朝鮮人	34	--	63	30	63	10	4	--	204		
		大陸人	7	--	--	2	--	--	--	--	9		
	S15 (1940)	日本人	168	27	49	42	104	12	14	9	425		3,578
		臺灣人	515	154	463	736	739	93	124	66	2,890		
		朝鮮人	42	26	69	31	69	7	11	--	255		
		大陸人	3	--	--	--	5	--	--	--	8		
	S16 (1941)	日本人	170	31	57	82	153	8	13	15	529		3,796
		臺灣人	511	92	477	873	873	57	79	54	3,016		
		朝鮮人	31	--	50	52	50	--	12	--	195		
		大陸人	5	28	1	--	10	12	--	--	56		

資料來源：作者根據臺灣總督府民政部文書課，『臺灣總督府第一、二、三、九、十九、二十九、三十四、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統計書』，「警察取締二係ル營業」（臺北：臺灣總督府官房調查課，1899~1943）製作。

表 5 臺灣到中國大陸的慰安所業從業人數統計表 (1938-1941 年)

年度	族別	臺北 州	新竹 州	臺中 州	臺南 州	高雄 州	臺東 廳	花蓮 港廳	澎湖 廳	族別 小計	合計
S13 年 11-12 月 (1938)	日本	270	58	2	1	--	--	--	--	331	*747
	臺灣	136	5	16	--	--	--	--	--	157	
	朝鮮	70	53	57	22	--	--	--	--	202	
地域別 小計		476	116	*132	23	--	--	--	--	*747	
S14 年 1-12 月 (1939)	日本	383	16	1	2	249	--	--	41	692	** 1,299
	臺灣	91	10	9	--	117	--	--	1	228	
	朝鮮	137	35	86	51	54	2	--	13	378	
地域別 小計		611	61	96	53	420	2	**1	55	** 1,299	
S15 年 1 月 (1940)	日本	2	--	--	2	--	--	--	--	4	31
	臺灣	--	--	--	--	15	--	--	--	15	
	朝鮮	1	2	--	8	1	--	--	--	12	
地域別 小計		3	2	--	10	16	--	--	--	31	
S16 年 7 月 (1941)	日本	--	--	--	--	15	--	--	--	15	*** 124
	臺灣	--	--	--	--	5	--	--	--	5	
	朝鮮	9	--	7	--	--	--	--	--	16	
地域別 小計		***97	--	7	--	20	--	--	--	***124	
年度 不明	日本	--	--	--	--	167	--	--	19	186	277
	臺灣	--	--	--	--	--	--	--	2	2	
	朝鮮	--	--	--	--	89	--	--	--	89	
地域別 小計		--	--	--	--	256	--	--	21	277	
1938- 1941 合計		1,187	179	235	86	712	2	1	76	2,478	日本人 1,228 臺灣人 407 朝鮮人 697 族別不 明 146

備註：慰安所業包括慰安所營業者、就業婦女、從業員。*132 為昭和 13 年臺中州族別不明之累計人數。**1 為昭和 14 年花蓮港廳族別不明之累計人數。***97 為昭和 16 年臺北州族別不明之累計人數。

資料來源：作者根據後藤乾一、高崎宗司、和田春樹共編，《政府調查「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第 1 卷(東京：龍溪書舍，1997)，頁 171-430 製作。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나타나는 식민 지배의 “폭력”성

한 혜 인 *

1. 머리말
2. 불법적 강제와 연속성
3. 정책의 상충과 혼란
4. 동원되는 협력
5. 맺음말

1. 머리말

강제연행이 전쟁범죄라고 인식된 것은, 1948년 BC급 전범을 재판한 요코하마(横浜) 재판에서 하나오카(花岡)광업소의 시카지마구미(鹿島組)의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범죄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8군 군정재판에서의 판결이 시카지마구미(鹿島組)의 개별적인 가혹행위의 폭력성에 두어져 있었기 때문에¹⁾ 강제연행을 일본제국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폭력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어졌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강제연행의 진상이 규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민인 조선인의 강제연행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구도 속에서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식민지민으로서 전쟁에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침략전쟁의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 西成田豊, 『中國人強制連行』, 東京大學出版會, 2002, 6.

한쪽도 배제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로 보다 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고 보다 진지하게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인강제연행의 문제를 보다 다각적인 시선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당시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하는 동원이라는 시대적 전제가 어떻게 일상을 강제화해 갔는가 하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노무동원에 관련 징용령(1939년 7월 공포, 조선은 1939년 9월 공포)이 모집과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원이 어려울 경우 징용령을 시행한다는 전제는, 거꾸로 말하면 징용령을 시행하기 이전의 모든 방법들은 용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징용보다도 모집과 그 외의 방법이 보다 강제(폭력을 포함한) 적인 기재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강제연행이 모집, 알선의 형태로 변해간 것은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래로 강제되었다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을 거꾸로 법적으로 용인해 주는 과정을 거쳐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라는 것이 강제연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전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찰해 내보고자 한다. 하나의 제도 및 행정적 조치가 어떤 기재들 속에서 강제화 되어 가는가하는 점을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불법적 강제의 연속성

■ 「노동자모집취체규칙」(1918년 1월 府令 제6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으로의 강제연행은 위의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1939년도 노무동원실시 계획요령」에 따라 1939년 7월 4일 각의 결정되어 시작된 일련의 행정조치에 의한 노동력 동원을 말한다. 즉, 1939년 7월 29일 후생, 내무 양 차관 연명에 의한 「조선인노동자내지이주에 관한 건」, 「조선인노동자의 내지이입에 관한 방침」에 따라 조선내에서는 1918년 1월 府令 제6호 「노동자모집취체규칙」으로 실무적인 절차를 행한다. 이 규칙은 조선외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모집하려고하는 자가 조선의 모집 대상지역 경무부장 및 도의 허가를 받아 노동자를 직접 모집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또한 이 규칙은 1938년 9월 개정되어 조선내의 노동자에게도 적

용되어, 조선에서의 모든 노무자 모집은 허가제로 개정되었다.

이 규칙이 강제연행의 실질적인 실행 규칙이라고 본다면, 그간의 노동자 모집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할린의 미츠이(三井)광산주식회사는 홋카이도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해 보았던 경험에서 그동안 계절노동자로 고용해 왔던 중국의 쿠리 노동자의 유입을 줄이고 겨울에도 작업을 할 수 있게 정주할 수 있는 조선인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가와카미(川上)광업소는 경무부장 및 도의 허가를 얻어 조선 함경북도 신의주에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모집하여 1921년 말에 약 500여 명²⁾에 달하였다. 노동자의 노동기간은 1년 반으로 계약, 귀도, 귀향 여비를 주는 것을 약속으로 고용하였다. 노동자는 독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온 사람도 數戶 있기도 하였다.³⁾

보다 많은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했던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의 경우 이 규칙에 의해 원산과 부산을 근거지로 직접 사원이 출장해서 모집사무소를 개설하고 모집 중 업자를 상주시켜 신망 있는 조선인 조수를 고용하여 각지의 유력자에게 알선을 의뢰 하여 응모자 모으고, 부산에서도 또 지정 알선인을 두고 모집을 시켜 건강진단, 인물고사를 행하여 합격자를 아오모리까지 연송시켜 아오모리의 노무계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이동 시켰다.⁴⁾

그러나 1921년부터 1924년까지는 집단적인 노동자 모집을 금지하였으나 홋카이도탄광주식회사는 ‘(중략) 대량모집이 아니면 도저히 각 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1924년 5월 초순 노무과장이 조선에 출장하여 총독부 당국에 운동을 시도함과 동시에 내무성 방면의 이해를 얻어 6월 23일부로 함경남도지사로부터 당사에 대한 허가를 얻어 원산에서 홋카이도까지 직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시 집단모집을 개시’ 할 수 있게 되었다.⁵⁾

이들 대량모집 노동자는 1927년 통계표를 보면 채용인원 1,512명 중에 계약기간 2년을 만료한 사람은 173명에 지나지 않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어

2) 『樺太日日新聞』, 1917년 9월 23일.

3) 『樺太日日新聞』, 1920년 7월 8일.

4) 七十年史編纂室 『北海道炭鉱汽船株式会社 七十年史・勤勞編—第一次稿本—』 360쪽.

5) 大槻文平 『北海道に於ける朝鮮人鉱夫問題 -상- 사회정책시보, 제121호, 1930년 10월.

〈조선인 노무자 모집조건〉

응모자 자격, 연령 20~45미만 신체건강한 남성. 고용계약기간 착산 후 24개월. 전대금 응모본인 1인 30엔 이내. 단지 응모지에서는 5위까지 대여해서 잔액은 착산까지의 도중에 있어서 대여함. 모집비 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 1인당 9엔50전, 충청북도·경기도·황해도·함경남북도·제주도·강원도 1인당 11엔 50전

버린 사람(폐업자)이 717명 해고자는 12명, 도망자가 224명, 사망자가 10명이었다. 이들 폐업자 및 도망자의 수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① 모집조건이 상이해서 불만 ② 임금 및 작업시간에 대한 불만 ③ 임금계산의 오해에 의한 불평 ④ 동료의 임금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⑤ 항내 작업에 대한 공포심 혹은 협오 ⑥ 항내작업의 중노동 때문에 다른 쉬운 일을 구하려고 ⑦ 식량문제(만복감을 얻을 수 없어서)로 조사되었다.⁶⁾

「노동자모집취체규칙」에 그 자체는 조선인들을 취업시키는 합법적인 수단이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행에 있어서 업자의 관과의 유착, 유력자를 통한 알선, 취업조건 및 대우의 상이,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상황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작업기피 및 도망을 하게 하는 기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관과의 유착 및 취업조건 및 대우의 상이는 일종의 불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1939년 이후 강제연행에서 보여지는 현상과 많이 다르지 않다.

3. 정책의 상충과 혼란

■ 「모집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내지이주에 관한 건」(1940년 3월 12일)

1940년 1월 11일 조선총독부는 노동자모집취체규칙을 폐지하고, 「조선직업소개령」을 실시하였다. 이 직업소개령은 “「조선직업소개령 실시에 관한 건」으로는 나라가 행하는 노동자 모집에 대해 편의상 본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도(道)에서 행하는 노동자 모집에 관해서도 위에 준해 운용”⁷⁾하기로 되어있다.

이 때 ‘나라가 실시’하는 노동력 동원으로는 「도알선」과 「총독부알선」, 그리고 조선 외로의 노동력 동원을 말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국산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도알선」과 「총독부알선」은 그 대상이 토목 건축업 이외에도 광업, 교통운송업 노동자로 확대하여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망」으로, 또한 조선 외로 동원되는 노동자의 경우는 내무, 경무국장이 「모집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내지이주에 관한 건」을 1940년 3월 12일에 각도지사 앞으로 통달하여 그것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였다.⁸⁾

6) 七十年史編纂室 『北海道炭鉄汽船株式会社 七十年史・勤勞編—第一次稿本—』 363쪽.

7) 「朝鮮職業紹介令ノ適用ニ関スル件」(昭和十五年三月二日各道知事宛内務、警務局長通牒).

“이 건은 선내노무조정 및 내지도향취체에 관한 것 많은 이 때, 조선인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내지에 공출하기에 이르는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실시되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내지(内地) 이외의 鮮外에 대해 집단적으로 조선인노동자를 공출할 때에 있어서도 본 건에 준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한 지역의 “모집기간은 최대한 3개월로 할 것, 또 모집완료에 이르기까지는 동일 읍면 내에 있어서 새로운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할 것, 특히 취업지를 조선 내에 있는 것과 조선 외에 있는 것과의 모집을 동시에 행하지 말 것, 모집은 부락을 단위로 해서 동일 부락민은 동일 고용주에 사역시킬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공장, 광산, 사업장 등에 있어서는 지금 취로중인 노동자를 절대로 모집 또는 빼내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 노동자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단순하게 모집을 모집 신청자의 자유에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官에 의해 그것을 협력하게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앞의 「노동자모집취체규칙」과 이 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공출 방법에서 다른 점은 사업체의 모집종사자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노동자모집취체규칙」에서는 없던 규정 즉, 모집기간, 모집 지역, 관과의 협력체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조선 내에서의 노동력 유출을 줄이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견 조선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으로의 노동자 동원이 시작되자 저임금과 강압적 노무관리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던 조선내 기업은 “반도 노무자 부족으로 생산 확충 속행 상에 지장이 있으니 이들 반도노무자의 내지 이주를 억제하고, 선내의 노동자로 적극 양성하여 적정하게 배분해야한다”⁹⁾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내지로의 노동자 동원으로 인해 조선인 “노무자가 어디든 가도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내지의 고용조건이 비교적 좋은 것 등으로 인해 내지에 가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우 조건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지에 가버리지 라는 식의 일종의 시위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쓰기 어려워졌다.”¹⁰⁾는 이유에서다. 조선 내 기업가들은 일본행 조선인 노동자 집단 이주의 결과로 조선 내의 노동 시장이 경색되어 전쟁수행을 위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국익의 이유를 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즉 조

8) 「募集ニ依ル朝鮮人労働者ノ内地移住ニ関スル件」(昭和十五年三月十二日各道知事宛内務、警務局長通牒) 내용 이하 주 없이 따옴표로 인용.

9) 『京城日報』 1940년 11월 21일.

10) 河村静観 「半島労働者の内地移動」 『社会事業』 〈一九四一年一月〉, 59쪽.

선 내의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지키고 싶다는 이기심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인 노동자의 내지이입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조선 내 노무수급의 중요성을 강조¹¹⁾했던 조선총독부는 조선내의 노무수급 문제에 있어서 조선 내 신흥재벌, 군과 군견한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총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으므로 총독부가 정한 「모집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내지이주에 관한 건」은 조선 내 노무수급을 좀 더 중요시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노무동원계획실시에 따른 소위 연고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이주 취급에 관한 건」(1941년 4월)¹²⁾

일본 본국정부가 정한 조선인 집단이주 정책에 따른 이주 방법으로 일본 기업측은 모집비용 및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통한 '연고도향'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일본 본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 내 기업들이 일본 본국으로의 '연고도향'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침해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연고도향'이었다.

'연고도향'이라는 것은 이미 일본지역에 취업되어 있는 조선인 노동자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하여 취직을 시키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최대한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 방법은 자발성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이점 뿐 만 아니라, 정착율도 높고 노동자의 감시와 통제도 용이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 측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조선 내 노동자들은 조선 내 총동원체제 속에서 자신들이 조선의 서북선 행이든 일본 내지 행이든지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탄광, 토목공사 장으로 官에 의해 강제 동원되는 상황 하에 처해 있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친지에 의해 노동 사정을 알고 갈 수 있는 '연고도향'에 응한다는 것은 총동원체제라는 국가적인 폭력 속에서 그나마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자기표현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강제연행이 시작된 시기부터 연고 도향자 수가 급격히 늘었던 것¹³⁾도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41년 2월 내무성보안과장으로부터 경시청특고과장, 각부현 경찰부장 앞

11) 줄고, 「朝鮮人強制連行政策の運用-朝鮮總督府の運用を中心-」(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 문화연구』 제6집, 2002, 2).

12) 『극비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제32권 한국출판문화원, 1990, 113-114쪽.

13) 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東京東京大学出版会, 1998. 203-204쪽.

으로 보낸 「노무동원계획실시에 따른 소위 연고에 의한 조선인노동자의 이주 취급에 관한 건」도 노무동원 계획이외의 불급불요 산업 방면에 있어서는 일반연고도항은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¹⁴⁾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적인 연고도항은 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고도항, 연고모집에 대한 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당국에서는 1942년 발령한 「노무동원실시 계획에 의한 조선인노무자의 내지이입알선요강」에서 ‘조선총독부 제2항의 신청서를 수리할 때는 도부현으로부터 조선인노무자 이입고용승락통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한 후에 요원충족을 **종래의 연고 및 지반** 혹은 선내노무조정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도별 알선인원 및 알선기간을 정’¹⁵⁾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업주의 알선 희망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면 메이지광업주식회사 히라야마 광업소는 1942년 알선신청서에 제1희망지역 전라북도, 제2희망지역 충청남도를 지정하고 그 이유로 전라북도는 노무자의 소질이 양호하고 응모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충청남도는 연고관계라고 하였다.¹⁶⁾

4. 동원되는 협력

■ 관의 협력과 공출 성과

일본 내지의 사업자가 이 시기의 모집이 자유모집 때와 가장 다르게 느꼈던 것은 ‘관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한 1942년부터 실시된 소위 관알선 제도라고 하는 것도 또한 관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관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지위의 고하에 따라 그 협력의 범위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14) 『극비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제32권 한국출판문화원, 1990, 113-114쪽.

15)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202, ぎょうせい.

16) 田中直樹 「戦時期における朝鮮人鉱夫の雇用状態」、小沢有作編 『近代民衆の記録10 在日朝鮮人』 新人物往来社、599쪽.

17) 해방후 친일과 청산을 위한 반민족특별위원회에서 강제징용의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으로는 일제시기 평안북도 노무과장이었던 김용근이 있다. 그는 “日政時 평안북도 노무과장으로 있었으며 (중략)금이 체포된 이유는 반민법 제4조 9항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의 혐의로서라 하는데 김은 왜정시 광무과장의 직에 있었을 때 많은 청년들을 징용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동아일보, 1949년 3월 5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것처럼 강제동원에 관해서 혐의를 받았던 사람으로는 그 외에도 다수 있다. 관리

다. 우선 여기에서는 홋카이도탄광기선 주식회사가 1944년 5월부터 8월까지 조선인노무자공출표¹⁸⁾를 보고 그 경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의 '조선인노무자공출표'는 공출지역과 공출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이다. 할당면, 수송일, 출발항, 소속탄광, 보도원, 연송인(인솔자), 할당인원, 할당면(갯수), 집합인원, 군에서 인수한 인원, 현지에서 항구까지 수송 중도망자, 사중 및 부산주재원의 절충 불합격자, 공출지의 탄광에 관한 인식정도, 응모자의 탄광에 대한 인식태도, 군에 있어서의 공출여유의 유무, 면에 있어서의 공출여유의 유무, 참고 등의 난으로 나누어져 공출지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특별한 사고나 도망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말서」 형식으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되어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노동자 공출을 해 나갔다.

이 공출표에서 관의 협력관련은 공출지의 탄광에 대한 인식정도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난에 쓰여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관의 협력정도¹⁹⁾

협력상황	郡, 경찰: 협력적	郡, 경찰: 협력적	郡, 경찰: 비협력적	계
		면: 비협력적	면: 비협력적	
면 수	38	7	1	46

군과 경찰이 협력적이라고 했던 면이 38면, 군과 경찰은 협력적이었으나, 면이 비협력적이었다고 하는 면이 7개면, 그리고 군, 경찰, 면이 모두 비협력적이었다고 하는 면이 1곳이 있다. 항상 군과 경찰의 협력정도를 함께 묶어 이야기하고 면(혹은 하부기관)의 협력 정도를 떼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아 군, 경찰과 면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군에서 인수한 인원이라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선, 공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군, 경찰임을 알 수 있다. 군과 경찰은 비교적 협조적이었고 면이나 말단으로 가면 소극적이었다.

군과 경찰이 성의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첨부】 1. 노무자가 악질, 4면 가와

이외에 경방단장, 징용후원회장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징용징병, 정신대동원의 협의, 노동자공출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신고가 있었으나 재판을 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강수, 『반민특위연구』, 나남신서)

18) 「供出通知表」, 北海道炭礦汽船株式会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学図書館所藏.

19) 北海道炭礦汽船株式会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学図書館所藏.

구치구미(川口組)의 평판이 좋지 않음 등)가 없는 한 대체로 집합인원이 할당인원을 상회하고 또 군으로부터의 인수인원 또한 할당인원에 가깝게, 그리고 도망인원 또한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번과 같은 경우는 군과 경찰이 인식이 충분하게 있지만, 공출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교해 보면 【첨부】 30번의 경우를 보면 ‘군당국에 있어서는 알선에 성의가 없고 노무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많다’라는 평으로, 공출 성적을 보면 할당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집합인원이 100명, 군에서 인계한 인원이 63명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도망자 또한 21명이나 되었다. 그것에 비해 【첨부】 31번의 경우 ‘군,경찰 모두 좋고 특히 경제과 야스하라부장으로부터 송출에 성심, 성의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은 할당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집합인원이 160명에 군에서 인수한 인원이 98명, 도망자가 4명 뿐이었다.

■ 「鮮人인솔자 선정에 관한 건」(1944년 7월 10일)²⁰⁾

노동자 모집, 인솔 중에 도망자가 속출하여 홋카이도탄광주식회사는 대책을 세워 조선인을 모집 노동자의 인솔자로 하는 「선인인솔자 선정에 관한 건」(1944년 7월 10일) 결정하여 각 광업소에 송부한다. 인솔자를 조선인으로 할 경우에 우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한 노동자가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리에 밝으니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각 광업소에서 사람을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모집일정에 맞추어 부산 혹은 여수로 파견한다. 이들이 인솔하여야 하는 구간은 노동자 ‘송출군부터 부산 혹은 여수’까지로, 모집 노동자를 郡에서 인계 받은 후부터 부산이나 여수로 오는 도중, 숙박지에서 숙박 도중 도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배가 일본을 향해 출발할 때까지의 인솔 책임을 맡는다.²¹⁾

인솔해야 할 노동자수가 100명일 경우, 전임자 3명과 광업소로부터 송출 현지까지 파견한 인솔책임자 등 전부 4명이 인솔책임을 맡고, 노동자수가 50명을 인솔할 경우, 전임자 2명과 광업소로터 현지까지 파견한 인솔책임자 등 전부 3명이 책임을 맡는다. 關釜 및 關麗 간 배 안에서의 인솔은 광업소에서 파견한 인솔책임자 한명이 맡으나, 일손이 부족할 경우 선원에게 적당하게 사례를 하고 비상훈련을 시킨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20) 「鮮人引率者選定ニ関スル件」北海道炭礦汽船株式会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学図書館所藏.

21) 「鮮人引率者選定ニ関スル件」北海道炭礦汽船株式会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学図書館所藏.

인솔자는 출발 노동자군 집합 2일 전에 송출지에 도착해야 한다. 만일 일정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 부산에 체재 중에는 정시에 사무소에 출근하여 대기하도록 해야 한다. 인솔자의 임무수행에 따라 상여규정이 다른데 그 상여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100명을 인솔할 경우, 전임자 한 사람 당 郡에서 인계 후 여관숙박, 그리고 시발역까지 결원이 없는 경우 10엔 추가, 시발역에서 승차 후 부산 및 여수항까지 결원이 없을 경우 10엔을 추가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또 근무성적표와 인솔성적표를 매월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의 본점과 在籍 탄광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임금 및 모든 수당은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의 부산사무소에서 지불한다.

이들 조선인 인솔자는 20명이 임명되어 1944년 8월 인솔부터 파견되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우선, 인솔자가 되기 전의 광업소에서의 직책으로는 <기숙사 통역>이 13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광부>가 4명,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3명이다. 광산취직 시기로는 1943년 1명, 1942년 4명, 1941년 5명, 1940년 5명, 1939년 3명, 그 이전 1명, 불명 1명으로 대부분이 강제연행시기에 취직된 사람들이다. 광산에 취직하기 전의 직업으로 <농업> 10명, <공업> 0명, <상업> 1명, <광업> 1명, <관리직(면리직, 교원)>이 6명, 불명 2명이다. 학력으로는 보통학교 이하(초등과 5년) 1명, 보통학교(소학교 초등과) 6명, 중학교 4명, 실업학교(농업학교) 3명, 불명 6명이다. 출신지로는 <경북> 2명, <경남> 5명, <충북> 2명, <충남> 1명, <전북> 5명, <전남> 5명이다. 연령대는 20~30세 11명으로 제일 많고 31~40세 7명, 40세 이상이 2명이다. 이들에 대한 회사 측의 인물평가로는 '성격 온순하'고 '직무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평과 '통솔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23)

5. 맺음말

미쓰비시 다카지마(三菱高島)광업소의 노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도인이입 관계에서 당국의 지시 명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시명령의 범위 내에

22) 「送出勞務者ノ鮮人鮮人連送者選定ニ關スル件」北海道炭礦汽船株式会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学図書館所藏.

23) 각 이력서, 北海道炭礦汽船株式会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学図書館所藏.

서 어떻게 하면 운용이 잘될 것인가를 연구하면 길은 스스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업자 측의 연구가 필요합니다.”²⁴⁾

이 발언은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 실태의 속성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가 피해사실을 규명해 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각각의 행정조치들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생겼던 모순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조선 내에서의 실행령을 중심으로 조선내의 다른 노무동원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인강제연행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즉, 각각의 주체들이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착취하려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하여 편법들이 행해지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조선인 노무동원에 있어서의 행정조치는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모든 수단을 용인해 주는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은 일상적으로 존재했던 행정력의 강제가 일본으로의 모집으로는 실무자들의 편법으로 작용하였고 이 편법에 의해 조선인들은 불법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인은 점령지인 중국인과는 달리 일본제국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의와는 달리 강제연행의 주체가 되는 상황도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인이 강제연행의 주체가 되어가는 행정조치, 회사의 방침,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개괄적으로 언급하였다. 강제연행의 주체가 되었던 조선인과 피해를 입은 조선인 사이의 간극을 규명해 내는 것은 우리 역사가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과제이다.

일본제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일사분란한 단일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강제연행을 경험해야 했다.

24) 「第二回勞務担当者會議々事録(1940年7月9日·10日)」, 16쪽.

【첨부】北海道炭鉱株式会社 조선인로무지공출표²⁵⁾

(1944年度)

번호	할당면	수송일	출발	광업소	합당 인원	합당면	집합인원	郡에서 인계한 인원	현지에서 항구까지 수송도중 도망자	형구 수송인원	공출지의 탄광에 관한 인식정도
1	慶南 昌寧	4月12日	釜山	夕張	100	7	103	69	6 (9)	60	군경찰 모두 탄광에 대한 인식 및 공출알 선에도 극력 협력이 있었지만 노무자질 좋지 않고 도망자가 많아 예기의 성과를 얻지 못해 정말 유감이다.
2	慶北 高靈	4月18日	釜山	夕張	100	8	110	100	3	97	군경찰 모두 극력 알선에 힘쓴다.
3	慶北 義城	4月26日	釜山	幌内	100	8	114	81	5	76	군경찰 모두 인식 있어 공출에 협력하지만 군경,경찰관에 기밀한 연락이 빠진 것 같은 것이 있어 공출도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4	江原 旌善	5月16日	麗水	夕張	100	6	106	100	21(26)	79	1년전 당 군으로부터 홋카이도 가와구치 구미(北海道川口組)의 공출이 있었는데 평판이 나빠 홋카이도행 공출문관하게 되었을 관계 관청 인식 강하고 성의를 가지고 공출에 임함
5	江原 平昌	5月24日	釜山	夕張	100	7	111	100	2	98	군경찰 모두 인식 충분해서 특히 경찰에 있어서는 서장 이하 전원 알선에 열의 있음
6	全南 靈光	5月28日	麗水	夕張	100	6	64	40	11	28	군경찰 같이 의식 충분
7	慶北 醴泉	5月9日	釜山	空知	26	3	28	23	3	19	군청 및 경찰서 모두 공출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만 하급계원이 아직 인식 없고 성의 없다.
8	慶北 安東	5月9日	釜山	空知	43	6	49	25		25	군경찰 모두 탄광에 대한 인식 충분하고 공출에 대해 극력원조를 하고 있다.
9	慶南 昌寧	5月9日	釜山	夕張	30	7	22	22	7	15	지방에 인격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유에 의한 것도 있지만 공출에 대한 성의가 보이지 않고 결국 석탄사업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5) 「供出通知表」北海道炭礦汽船株式会社 『釜山往復』, 北海道大学図書館所藏

10	全北 長水	6月10日	麗水	平和	100	6	100	100 (90)	14	76	군경찰 모두 탄광에 대한 인식이 깊고 공출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
11	慶北 迎日	6月11日	釜山	幌内	50	7	51	45	4	41	군경 및 경찰서 모두 석탄사업에 대하여 인식이 깊고 공출 앞선에 대한 활동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에 있다.
12	全北 完州	6月18日	麗水	新幌内	100	13	107	67 (70)	20	51	군경찰 간부들은 인식 충분하지만 하급관리는 충분한 인식도 성의도 없다.
13	全北 茂朱	6月20日	麗水	平和	100	5	93	81	25	56	각 관계 관청 모두 시국을 인식하고 공출에 대하여 협력 협력을 한다.
14	忠南 天安	6月21日	麗水	空知	50	4	60	48(50)	1(3)	47	군경찰 모두 시국을 인식하고 공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15	江原 江陵	6月23日	釜山	夕張	100	12	120	100	26	74	탄광에 대한 인식이 깊고 공출에 대한 성의도 적극적이다.
16	全南 珍島	6月24日	麗水	夕張	50	1	39	37	16	21	군경찰은 상당 인식 있어 앞선에 성의를 가지고 있지만 面吏員에게는 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무자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17	全南 長城	6月24日	麗水	夕張	50	4	50	28	11(6)	17	각 관계 관청 모두 공출에 대해 형식적으로 임하여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
18	全北 井邑	6月28日	麗水	新幌内	100	10	152	118 (100)	42	54	군경찰 모두 간부들은 인식이 충분하지만 하급관리는 충분한 인식 없고 또한 성의도 없다.
19	忠南 天安	6月29日	釜山	空知	50	4	66	46(50)	8(12)	36	군경찰 모두 적극적인 앞선을 하여 완전 공출을 하였음
20	黃海 鳳山	6月30日	釜山	幌内	100	11	147	62	22	40	군경찰 모두 상당 시국을 인식하고 공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1	黃海 載寧	6月30日	釜山	幌内	50	11	53	43	5	38	군경찰 모두 시국인식 잘 하고 있고 매우 협력적이다.
22	全北 扶安	6月6日	麗水	幌内	25	2	19	19	2	15	군경찰 모두 시국에 대한 인식이 깊고 공출 앞선에 열의가 있다.
23	忠南 瑞山	8月10日	釜山	夕張	100	20	102	86	26	60	군경에게는 인식 있고 면장 중에는 아직 인식부족인 사람이 있어 할당인원 공출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반수 이상이다.
24	全南 珍島	8月13日	麗水	平和	50	2	46	38	14	24	군경찰 모두 탄광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있어 단지 공출앞선에 협력하지만 노무자의 힘이 나빠 도망자가 많기 때문에 예기의 성적을 얻지 못하였다.

25	全南 唐津	8月13日	麗水	夕張	50	4	63	38	1	37	탄광에 대해 다소 인식은 있지만 面書記들은 열의 없다.
26	江原 旌善	8月14日	釜山	空知	100	6	96	72	11		군·경찰 모두 잘 인식하고 있고 송출에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일선한다.
27	全南 濟州島	8月15日	麗水	空知	50	1	77	30	3	27	시국을 잘 인식하고 송출에 열의가 있다.
28	忠南 論山	8月15日	釜山	夕張	50	7	70	49	12	37	인식 충분하고 열의를 가지고 원조하고 있다.
29	忠南 唐津	8月17日	釜山	夕張	100	10	145	100	25	75	군·경찰, 面 모두 강하게 시국을 인식하고 송출하고 있다.
30	全北 金堤	8月20日	麗水	平和	100	12	100	63	21	42	郡당국에 있어서 알선에 성의가 없고 노무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31	忠南 天安	8月21日	釜山	幌内	100	2	160	98	4	94	군·경찰 모두 좋고, 특히 경제과 야스하라 과장으로부터 송출에 성심성의를 받을 수 있었다.
32	忠南 保寧	8月24日	釜山	夕張	100	10	100	89	19	70	군·경찰 모두 송출에 성의 없다.
33	忠北 永同	8月26日		口幌	100	8	93	69	6	63	군·경찰 모두 인식이 깊고 또한 성의를 가지고 송출에 협력한다.
34	全北 井邑	8月27日	麗水	口幌	50	3	79	45	15	30	郡警은 인식이 있지만 面은 군까지 인솔하면 책임은 벗게 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노무자를 대하여)송출하기 때문에 도망지에는 물론 관심이 없다.
35	忠南 論山	8月29日	釜山	夕張	100	13	60	45	7	38	時局을 인식하고 송출에 대해 적극적인 원조를 한다.
36	全北 益山	8月2日	麗水	夕張	100	12	120	51	2	49	송출에 있어서 성의를 가지고 협력한다.
37	忠南 唐津	8月5日	釜山	夕張	100	8	92	68	5	63	군·경찰, 面 모두 극히 시국을 인식하여 송출에 임함
38	全南 谷城	8月5日	麗水	空知	50	3	59	32	3	29	군·경찰 모두 인식 충분하지만 공출에는 적극적이 않음을 결여됨.
39	全南 莞島	8月5日	麗水	空知	50	2	55	29	4	25	인식 충분하고 성의를 가지고 원조해 준다
40	黃海 信州	8月9日	釜山	夕張	100	15	102	80			군·경찰 모두 충분한 인식이 있어 성의가 있지만 靑面에 대한 위신이 없어 공출성적이 좋지 않음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나타나는 식민 지배의 “폭력”성」 에 대한 토론문

토론 : 박 맹 수(원광대 교수)

1. 이 논문은 日帝의 조선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한 유형인 노동력 동원(2004년 3월 5일에 제정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서는 ‘노무동원’이라 부르고 있음) 관련법규의 검토와 함께, 일본 홋카이도지역에서 조선인 노무자를 대량으로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켰던 北海道炭鑛汽船株式會社 사례를 중심으로 일제의 노동력 동원에 나타난 ‘폭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논문이다.

2. 가해자 측인 日帝가 식민지 母國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민중들을 어떤 제도적 (폭력적) 장치를 통해 總動員하였으며, 그 같은 총동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적 (폭력적) 장치들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暴力的 요소들이 내재해 있었는가를 實證的으로 고찰하는 일은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해명하는 데, 나아가 식민지배에 관련된 일제의 전쟁범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혜인 선생이 이 논문에서 우선적 과제로 일제의 ‘노동력 동원’ 관련 법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관점이라 평할 만하다.

3.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의 ‘폭력성’은 비단 각종 법규로 대표되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1939년) 징용령을 시행한다는 전제는 (중략) 징용령을 시행하기 이전의 모든 방법들은 용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한혜인 선생이 이 논문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의 새로운 제도적 폭력 장치가 마련되게 되면 자연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폭력적 機制들이 다양하게 동원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제도적(폭력적) 장치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동원된 또 다른 폭력적 기제들을 포착하여 밝혀내는 일이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4. 제도적 (폭력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폭력적 기제들은 대체로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는 과정이나 시행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 혜인 선생이 '北炭'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5. 하지만 한 혜인 선생의 발표 내용에 대해 논평자로서 매우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일제 식민지배, 그 중에서도 노동력 동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北炭'과 같은 일본기업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사례분석의 대상이 바로 '북탄'과 같은 日帝의 기업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을 혹사당했던 朝鮮의 노무자들이다. 바로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인 것이다. 일제와 일제 기업들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을 혹사당했던 조선인 노무자들이 느낀 노동력 동원의 '폭력성'은 매우 다양하며 매우 구체적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인 노무자들은 임금에서 일본인 노무자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일본인 노무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그 임금마저도 도주 방지를 목적으로 직접 지불하지 않고 일본인 관리자들이 관리를 했다. 그 외 의식주 면에서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은 생존 귀환자들에 의해 이미 밝혀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차별들이 바로 노동력 동원의 '폭력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혜인 선생이 지적하고 있듯이, 조선인 노무자들의 상당수는 고향 땅에서 집결할 때부터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끊임없이 탈주를 시도했다. 이 같은 탈주는 노동력 동원의 폭력적 성격이 강화되어 갈수록 증가되어 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탈주와 노동력 동원의 '폭력성'이 깊은 상관관계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타코베야'는 노동력 동원의 '폭력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6. 이처럼 일제의 노동력 동원 과정에서 조선인 노무자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다양한 '폭력적 사례'들을 구체적이며 실증적으로 밝혀내야만 비로소 일제 식민지배가 지닌 폭력적 성격의 全貌가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